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3981호
2024. 5. 30.(목)



목 차

◆ 자치법규 등

[입법예고]

제2024-1603호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4

제2024-1624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11

제2024-1634호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15

제2024-1635호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26

제2024-1646호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37

제2024-1660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41

◆ 고 시

제2024-259호 도시계획시설(철도)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5호선 목동역
외 4역 승강편의시설 설치)45

제2024-260호 능동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52

제2024-261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85

제2024-262호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내 문화공원1 조성계획
결정(최초) 및 지형도면 고시87

제2024-264호 서울특별시 문화유산 지정 고시97

제2024-265호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변경 고시104

제2024-266호 방화2동 592-1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107

제2024-267호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및 자양동 695일대
(자양한양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129

제2024-268호 제3차 서울특별시 건축기본계획 고시159

제2024-269호 장안평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고시161

제2024-270호 공덕7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지구단위
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164

제2024-273호 특별건축구역 지정 고시188

◆ 공 고

제2024-1546호 종합건설사업자 행정처분(영업정지) 공시송달 공고191

제2024-1572호 도시계획시설(철도)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192

제2024-1574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통지 공시송달 공고194

제2024-1589호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부과고지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195

제2024-1590호 철도안전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197

제2024-1591호 철도안전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201

제2024-1592호 철도안전법 위반 과태료 수시분 부과 공시송달 공고203

제2024-1597호 정보통신공사업 신규 등록 공고214

제2024-1598호 「건설기술 진흥법」 위반(건설기술인 교육·훈련 미이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215

제2024-1600호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환수금 체납에 따른 납부 독촉 공고218

제2024-1601호 시유재산 변상금 체납고지 공시송달 공고219

제2024-1607호 서울특별시 문화유산 지정 계획 예고220

제2024-1611호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부과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235

제2024-1618호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 등록변경 신고사항 공고237

제2024-1620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고도지구,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결정(변경)(안)
주민 재열람공고238

제2024-1621호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재공람 공고249

제2024-1628호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서 제출 요청 공시송달 공고296

제2024-1658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조정 공고300

제2024-1659호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안) 및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공람 공고309

◆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

제2024-3호 2024년 수시 재산변동사항 공고314

◆ 구 고 시

제2024-68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 작성 고시(성북구)322

제2024-69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작성 고시(성북구)323

제2024-73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고시(서대문구)324

제2024-60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지하도로)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영등포구)338

◆ 구 공 고

제2024-789호	도시계획시설(유수지,주차장,문화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중랑구)	339
제2024-912호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 체결 공고(도봉구)	343
제2024-1088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유수지, 체육시설, 문화시설, 도로) 결정(변경) (안) 재열람 공고(구로구)	344
제2024-1100호	온수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열람공고(구로구)	346
제2024-1128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관악11) 보상계획 공고-봉천동 산58일대 (관악구)	363
제2024-1392호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 체결 공고(강남구)	369
제2024-1158호	천호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 천호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공람공고(강동구)	370
제2024-1172호	도시관리계획(강동구 길동 368-5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 열람공고(강동구)	394

◆ 사업소고시

제2024-155호	하천점용허가 고시(미래한강본부)	396
------------	-------------------------	-----

◆ 기 타

제2024-199호	하천점용(일시)허가 고시(한강유역환경청)	397
제2024-201호	하천점용(일시)허가 고시(한강유역환경청)	398

자치법규 등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603호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5월 30일
서울특별시장

1. 개정이유

- 가. 기술제안입찰공사 심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공사 실시설계심의도 일괄 입찰공사 실시설계심의와 동일하게 분과위원장이 소위원회 심의위원을 별도로 구성·운영토록 하는 한편, 전기·기계·조경 분야 설계심의 대상 기준을 현실여건을 반영하여 현행화하고,
- 나.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개정·공포(' 24.3.15.)에 따른 설계심의 사후평가 명칭 변경을 반영하는 등 건설기술심의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일괄입찰공사와 동일하게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공사에 대한 실시설계심의 시에는 분과위원장이 소위원회 심의위원을 별도로 구성·운영토록 함(안 제4조제3항)
- 나. 시행규칙 개정(' 01.8.30.) 시 책정된 전기·기계·조경 분야 설계심의 기준을 현실여건을 반영하여 기존 10억에서 20억으로 변경함(안 제6조제2항제6호)
- 다.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개정·공포(' 24.3.15.)에 따라 설계심의 사후평가 명칭을 설계심의 이행관리 확인으로 변경함(안 제38조제1호, 제39조제1항 및 제2항)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기술심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기술심사담당관(전화: 02-2133-85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팩스 · 이메일 · 등기우편 · 온라인

- (1) F A X : 02)768-8892
- (2) E-mail : ragen22@seoul.go.kr
- (3) 우 편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7층 기술심사담당관
- (4)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및 시의회 심의 결과 등
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하여 필요한” 을 “필요한” 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1” 을 “별표 1”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표2” 를 “별표 2” 로 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일괄입찰공사” 를 “일괄입찰공사,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공사” 로 한다.

제5조 중 “공무원이 되고” 를 “공무원이 맡고,” 로, “된다” 를 “맡는다” 로 한다.

제6조제2항제6호 중 “10억원” 을 “20억원” 으로 한다.

제20조제3항 중 “별표1” 을 “별표 1” 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3” 을 “별표 3” 으로 한다.

제38조제1호 중 “사후평가” 를 “이행관리 확인” 으로 한다.

제39조제1항 중 “사후평가는 소위원장이 평가단” 을 “이행관리 확인은 소위원장이 확인단” 으로, “평가방법” 을 “확인방법” 으로 하고, 같은 항 및 제2항 중 “평가결과” 를 각각 “확인결과” 로 한다.

별표 2의 제13조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3조” 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22조” 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u>관하여 필요한 사항</u>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 --- <u>필요한</u> ----- -----.</p>
<p>제3조(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세 부구성 등) ①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하 "분과위원"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u>별표1</u>의 전문분야별로 임명 또는 위촉하고, 그 명단을 공개한다.</p>	<p>제3조(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세 부구성 등) ① ----- ----- ----- ----- ----- ----- ----- <u>별표 1</u> ----- -----.</p>
<p>1. ~ 3. (생략) ② 분과위원은 <u>별표2</u>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윤리행동강령을 따라야 한다. ③ (생략)</p>	<p>1. ~ 3. (현행과 같음) ② ----- <u>별표 2</u> ----- -----. ③ (현행과 같음)</p>
<p>제4조(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 ①·② (생략) ③ 시장이 조례 제3조제1항제3</p>	<p>제4조(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p>

제20조(기술검토 등) ①·② (생략)

③ 소위원장은 심의안건별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의위원 등에게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관계 전문기관에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으며, 제3조제1항에 따른 별표1의 전문분야를 벗어나는 특수한 전문분야의 경우 관계전문기관이나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24조(설계의 채점 및 공개) ①

심의위원은 일괄입찰공사 기본설계 및 대안입찰공사 실시설계,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공사 기술제안서,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공사 기술제안서에 대하여 별표3의 설계평가지표 및 배점 기준을 참고로 하여 심의요청자가 100점 만점을 기준(이하 "만점기준"이라 한다)으로 작성한 입찰안내서의 설계 평가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채점하여야 한다.

- 1. ~ 6. (생략)
- ② ~ ④ (생략)

제20조(기술검토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별표 1 -----

-----.

제24조(설계의 채점 및 공개) ①

별표 3-----

-----.

- 1. ~ 6. (현행과 같음)
- ② ~ ④ (현행과 같음)

<p>제38조(자문내용) 건설기술자문소 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소위원회"라 한다)는 조례 제3조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자문한다.</p> <p>1.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설계심의 <u>사후평가</u></p> <p>2. ~ 5. (생략)</p>	<p>제38조(자문내용) ----- ----- ----- ----- ----- ----- ----- ----- ----- ----- 1. ----- ----- <u>이행관리 확인</u></p>
<p>제39조(구성·운영 등) ① 제38조 제1호의 설계심의 <u>사후평가</u>는 <u>소위원장</u>이 <u>평가단</u>의 구성 및 <u>평가방법</u> 등을 따로 정하여 실시하고, 그 <u>평가결과</u>를 시장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u>평가결과</u>를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p> <p>③ ~ ⑥ (생략)</p>	<p>제39조(구성·운영 등) ① ----- ----- <u>이행관리 확인</u> <u>은 소위원장이 확인단</u>----- <u>확인방법</u> ----- ----- <u>확인결과</u>----- ----- ----- ② ----- <u>확인결과</u>----- ----- ----- ----- ③ ~ ⑥ (현행과 같음)</p>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624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5월 30일
서울특별시

1. 개정이유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항목 중 공유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대한 내용을 삭제함(안 제4조의2제2항제4호)
- 나. 기부채납된 공유재산의 무상사용기간 기준일을 ‘기부채납일’ 이 아닌 ‘사용허가일’ 로 개정함(안 제1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참조 : 재산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재산관리과(전화 : 2133-328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서 보내실 곳

- 1) 우 편: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
- 2) 팩 스: 02-2133-1031
- 3) 이메일: stop4now@seoul.go.kr
-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전임강사” 를 “조교수” 로 한다.

제4조의2제2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16조 중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 시장의 승인을 받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를 “사용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10조의3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민간위원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위촉직 위원 구성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p> <p>1. (생략)</p> <p>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회계학, 토목공학, 건축공학 등 관련 분야의 <u>전임강사</u> 이상으로 재직경력이 있는 자</p> <p>3. (생략)</p> <p>② ~ ⑦ (생략)</p>	<p>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 ----- ----- ----- ----- ----- ----- ----- ----- -----</p> <p>1. (현행과 같음)</p> <p>2. ----- ----- ----- ----- ----- <u>조교수</u> -----</p> <p>3. (현행과 같음)</p> <p>② ~ ⑦ (현행과 같음)</p>
<p>제4조의2(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 ① (생략)</p> <p>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p> <p>1. ~ 3. (생략)</p> <p>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p>	<p>제4조의2(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u><삭제></u></p>

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제16조(무상사용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영 제17조에 따르며 그 기산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 시장의 승인을 받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제16조(무상사용기간) -----

----- 사용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634호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5월 30일
서울특별시

1. 개정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을 더욱 내실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환경영향평가 예외 대상사업에 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추가함(안 제4조제2항)
-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정비사업 통합심의회 의무화됨에 따라, 조례의 단서 조항 삭제함(안 제14조제2항)
- 다.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환경보전방안을 5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안 제18조제3항)
- 라. 재난관리 또는 안전관리를 위한 공사는 의견수렴 절차 전 사전공사 시행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21조제2항)
- 마.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자문 기능을 추가하고, 심의·자문 사항에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검토’를 추가함(안 제22조제1항)
- 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함(안 제22조제7항, 안 제24조)
- 사. 평가항목 및 심의기준이 고시된 사업은 환경영향평가서작성계획서 제출을 “제외한다”에서 “제외할 수 있다”로 변경하여 사업자가 작성계획서 제출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제1항)
- 아.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절차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함(안 제27조제1항)
- 자. 협의절차 면제대상 사업의 경우에도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장에게 제출하도록 명시함(안 제28조제1항)
- 차. 자문 활동을 한 위원에게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9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친환경건물과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친환경건물과(전화: 02-2133-35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2)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이메일 · 등기우편 · 온라인

- (1) 이메일: heanyey1@seoul.go.kr
- (2) 우 편: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 친환경건물과
- (3)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 심의회 및 시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자연재해 대책법」 제46조에 따른 재해복구계획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9조에 따른 재난 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긴급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과 협의한 사업.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환경보전방안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4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8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이 경우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자로부터 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1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다만, 제1항제2호의 공사 중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공사는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기 전에 공사의 범위 등을 미리 협의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시행할 수 있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항을 심의하기”를 “사항을 심의·자문 하기”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남은기간으로”를 “남은 임기로”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8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9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항(중전의 제9항) 중 “구성·운영 및 심의방법”을 “구성·운영, 심의방법 및”으로 한다.

- 6. 제20조제9항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의 검토
 - ⑦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위원의 해촉) 위원 해촉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른다.

제25조제1항 중 “제외한다” 를 “제외할 수 있다” 로 한다.

제27조제1항제1호 중 “대상사업” 을 “협의 또는 재협의 대상사업” 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작성” 을 “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승인기관장등은 제20조제2항에 따라 시장에게 협의내용의 반영 여부 및 반영내용을 통보할 때에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제2호 중 “심의활동” 을 “심의·자문 등의 활동”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제4호 개정규정은 2025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① (생 략)</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p> <p>1. ~ 3. (생 략)</p> <p><신 설></p>	<p>제4조(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u>」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u>자연재해대책법</u>」 제46조에 따른 재해복구계획 및 「<u>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u>」 제59조에 따른 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긴급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과 협의한 사업.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환경보전방안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p>
<p>제14조(평가서의 검토·보완) ① (생 략)</p> <p>② 시장은 평가서의 검토를 함에 있어 제22조에 따라 서울특</p>	<p>제14조(평가서의 검토·보완) ① (현행과 같음)</p> <p>② ----- -----</p>

별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은 건
축위원회에서 통합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③·④ (생략)

제18조(변경협의) ①·② (생략)

③ 승인기관장등은 제1항과 제2
항에 따라 환경보전방안을 마련
하거나 검토할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후단 신
설>

④ (생략)

제21조(사전 공사시행의 금지) ①
(생략)

② 사업자는 제1항의 단서에 따
라 사전에 공사를 시행하려면
제8조에 따른 평가서 초안에 대
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평가
서 초안의 작성 및 협의 절차를
생략한 경우를 포함한다) 후 사
전공사의 근거, 내용 및 사전공

----- . <단서
삭제>

③·④ (현행과 같음)

제18조(변경협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이 경우 승
인기관의 장은 사업자로부터 서
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5일 이내
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현행과 같음)

제21조(사전 공사시행의 금지) ①
(현행과 같음)

② -----

사의 범위 등을 협의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③·④ (생략)

제22조(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 5. (생략)

<신설>

6. (생략)

② ~ ④ (생략)

⑤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⑥ (생략)

⑦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 다만, 제1항제2호의 공사 중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공사는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기 전에 공사의 범위 등을 미리 협의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③·④ (현행과 같음)

제22조(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① -----
--- 사항을 심의·자문 하기 ---

1. ~ 5. (현행과 같음)

6. 제20조제9항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의 검토

7. (현행 제6호와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

----- 남은 임기로-----

⑥ (현행과 같음)

⑦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되며, 위원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대하여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직접·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⑧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척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장은 직권 또는 위원의 회피 신청에 따라 해당 위원의 제척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⑨ 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심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제22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다.

<삭 제>

⑧ ----- 구성·운영, 심의방법 및 -----

제24조(위원의 해촉)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른다.

있다.

-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2. 품위손상·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제25조(환경영향평가서작성계획서 제출) ① 사업자는 별표 1에서 정한 대상사업(별표 1의 대상사업별 평가항목 및 심의기준이 고시된 사업은 제외한다)의 평가서 초안을 작성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서작성계획서(이하 “작성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관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27조(협의 절차 등에 관한 특별) ① 시장은 대상사업 중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5조(환경영향평가서작성계획서 제출) ① -----

----- 제외할 수 있다-----

-----.

②·③ (현행과 같음)

제27조(협의 절차 등에 관한 특별) ① -----

-----.

1. 대상사업의 규모가 별표 1에 따른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의 200퍼센트 이하인 사업으로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한 사업

2. 3. (생략)

②·③ (생략)

제28조(협의절차 면제대상 사업자의 의무) ① 사업자는 제27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 면제 대상사업의 경우에도 제8조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평가서를 작성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신설>

② (생략)

제31조(수당 등의 지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

1. 협의 또는 재협의 대상사업-

2. 3.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28조(협의절차 면제대상 사업자의 의무) ① -----

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

② 승인기관장등은 제20조제2항에 따라 시장에게 협의내용의 반영 여부 및 반영내용을 통보할 때에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31조(수당 등의 지급) -----

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1. (생략)
- 2. 제22조에 따라 평가서의 실의활동에 참여한 위원(다만,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 3. (생략)

-----.

- 1. (현행과 같음)
- 2. ----- 심의·자문 등의 활동-----

- 3. (현행과 같음)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635호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5월 30일

서울특별시장

1. 개정이유

환경영향 평가에 관한 서류(이하 “평가서”) 초안 검토회의를 활성화하고, 변경협의 대상을 완화하며, 평가서 초안 공람 시 공고관 계층 규정을 완화하는 등 규칙 일부를 개정하여 원활한 사업 진행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평가서 초안 및 평가서 제출 부수(20부) 삭제(안 제3조제3항, 안 제12조제1항)
- 나.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평가서 초안 검토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4항)
- 다.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시행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비대면 방식의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제4항)
- 라. 사업계획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할 때 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요건을 정비함(안 제15조제3항제1호, 제2호)
 - ‘최종 협의내용’에 반영된 대상사업·시설 규모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된 경우로 그 기준을 명확히 함
 - 협의내용 변경 시 시장의 의견을 듣도록 미리 정한 사항에 대해서만 시장의 의견을 듣도록 요건을 완화함
- 바. 평가서 초안의 공고관 계층 기준을 완화함(안 별표 1)
- 사. 협의내용 관리책임자 지정통보서 서식의 ‘공사기간’을 ‘협의내용 관리기간’으로 수정함(안 별지 제7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친환경건물과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친환경건물과(전화: 02-2133-35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이메일 · 등기우편 · 온라인

(1) 이메일: heanyey1@seoul.go.kr

(2) 우 편: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 친환경건물과

(3)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규칙 제 호

이 규칙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초안 20부와” 를 “초안과” 로 한다.

제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평가서 초안 검토를 위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업자에게 사업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거나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1. 사업자가 평가서 초안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
- 2. 조례 제27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 3. 그 밖에 원활한 평가서 작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시행으로 제1항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비대면 방식의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승인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12조제1항의 “평가서 20부” 를 “평가서” 로 한다.

제15조제3항제1호 본문 중 “규모의” 를 “규모(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른 재협의 또는 조례 제18조제3항에 따른 변경협의를 한 경우에는 최종 협의 내용에 포함된 전체 사업·시설 규모를 말한다)의” 로,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른 협의 및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른 재협의” 를 “최종 협의” 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조례 제15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협의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협의내용 통보 시 시장의 의견을 듣도록 미리 정한 사항(주요 보호지역에서의 사업계획 변경, 주요 저감대책의 변경 등)에 한정한다.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따라야 하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예외로” 를 “따라야” 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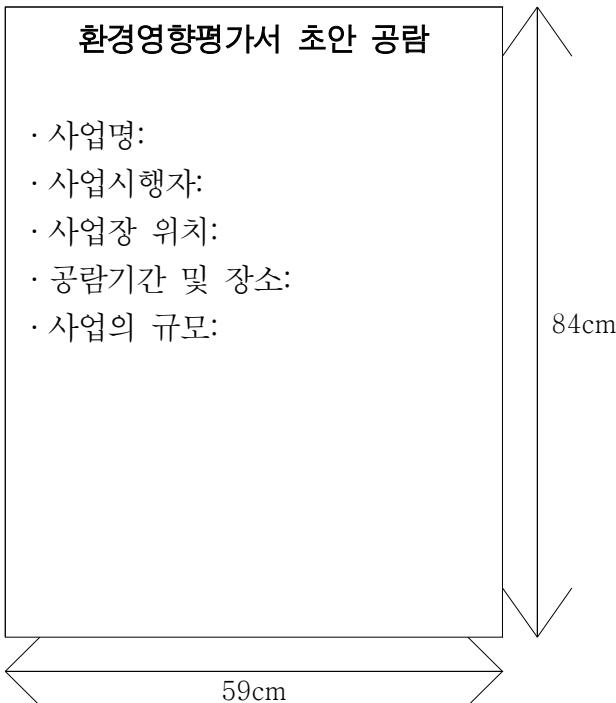
평가서초안 공람 방법 중 공고판 게시 방법 등(제4조 관련)

가. 게시 방법

구분	게시 수	게시내용	게시위치 등
조례 별표 1의 대상사업 범위 중 면적 및 시설용량 사업	4	· 사업명 · 사업시행자 · 사업장 위치 · 공람기간 및 장소 · 사업의 규모	사업장부지 경계 벽면 네 방향에 고정하여 설치(단, 통행이 불가능하거나 막힌 벽면 제외)
조례 별표 1의 대상사업 범위 중 길이 사업	사업장 경계길이를 500(m)으로 나누어 반올림한 수	· 사업명 · 사업시행자 · 사업장 위치 · 공람기간 및 장소	사업장 경계 500m 간격으로 설치

※ 날씨 등의 영향으로 훼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나. 게시 규격



- 규격: 가로(59cm)×세로(84cm) *A1 규격

[별지 제7호서식]

<p style="font-size: 1.2em; margin: 0;">협의내용 관리책임자</p> <p style="font-size: 1.2em; margin: 0;">[]지정 통보서</p> <p style="font-size: 1.2em; margin: 0;">[]변경</p>	
사업명	
사업자	
사업장 위치	
협의내용 관리기간	
<p style="font-size: 0.8em; margin: 0;">협의내용 관리책임자 인적사항</p>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소속
	직책
	지정일
	자격증 명칭 번호
<p>「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협의내용관리 책임자를 지정(변경)하였음을 통보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20px;"> 년 월 일 사업자 (서명 또는 인) </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귀하</p>	

※ 구비서류 없음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 (재활용품)]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평가서 초안의 작성) ① · ② (생략)</p> <p>③ 사업자가 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 제출할 때에는 평가서 초안 20부와 내용을 담은 전자 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p>	<p>제3조(평가서 초안의 작성)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 ----- 초안과 ----- -----.</p>
<p>제5조(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제출 등) ① ~ ③ (생략)</p> <p>④ 시장은 사업자가 평가서 초안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 또는 조례 제27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평가서 초안 검토를 위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사업자에게 사업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거나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p>	<p>제5조(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제출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평가서 초안 검토를 위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업자에게 사업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거나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p>
<p><신 설></p>	<p>1. 사업자가 평가서 초안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p>
<p><신 설></p>	<p>2. 조례 제27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p>
<p><신 설></p>	<p>3. 그 밖에 원활한 평가서 작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p>
<p>⑤ (생략)</p> <p>제6조(설명회의 개최) ① ~ ③</p>	<p>⑤ (현행과 같음)</p> <p>제6조(설명회의 개최) ① ~ ③</p>

(생 략)

<신 설>

제12조(평가서의 제출 및 검토 등) ① 승인기관장등이 시장에
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평가서 20부와 평가서 내용을
담은 전자문서를 제출하여야 한
다.

② (생 략)

제15조(환경보전방안 검토 시의
서류제출 등) ①·② (생 략)

③ 조례 제18조제3항에 따른 환
경보전방안을 마련하거나 검토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의견
을 들어야 한다.

1.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른 협
의내용에 반영된 대상사업·
시설 규모의 10퍼센트 이상
증가되는 경우(누적 변경으로

(현행과 같음)

④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
른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시행
으로 제1항에 따른 설명회를 개
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비대면
방식의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
다. 이 경우 승인등을 받아야 하
는 사업자는 승인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12조(평가서의 제출 및 검토
등) ① -----

평가서-----

--.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환경보전방안 검토 시의
서류제출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 규모(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른 재협의 또는 조례 제18

증가한 규모가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른 협의 및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른 재협의 내용에 반영된 규모보다 10퍼센트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조례 별표 1 제1호자목의 경우에는 협의내용에 반영된 대상사업·시설 규모가 연면적 1만㎡ 이상 변경되는 경우로 한다.

2. 조례 제18조제1항의 협의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④ (생략)

제22조(공사중지의 예외) 조례 제20조제7항 및 제21조제4항에 따라 시장이 공사중지를 요청할 경우 승인기관장등은 이에 따라야 하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예외로 한다. <단서 신설>

1. 2. (생략)

조례3항에 따른 변경협의를 한 경우에는 최종 협의 내용에 포함된 전체 사업·시설 규모를 말한다)의 --- 최종 협의-----.

2. 조례 제15조제1항 및 제18조1항에 따른 협의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협의내용 통보 시 시장의 의견을 듣도록 미리 정한 사항(주요 보호지역에서의 사업계획 변경, 주요 저감대책의 변경 등)에 한정한다.

④ (현행과 같음)

제22조(공사중지의 예외) ----- 따라야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 (현행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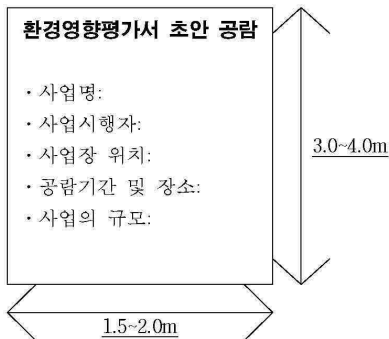
[별표 1]

평가서초안 공람 방법 중 공고판 게시 방법 등(제4조 관련)

가. 게시 방법

구분	게시 수	게시내용	게시위치 등
조례 별표 1의 대상 사업 범위 중 면적 및 시설 용량 사업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명 · 사업시행자 · 사업장 위치 · 공람기간 및 장소 · 사업의 규모 	사업장부지 경계 벽면 내 방향에 고정하여 설치하되 (단, 통행이 불가능하거나 막힌 벽면 제외) 지면으로부터 수직 지상 1.5~4m높이로 설치한다.
조례 별표 1의 대상 사업 범위 중 길이 사업	사업장 경계 길이를 500(m)으로 나누어 반올림한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명 · 사업시행자 · 사업장 위치 · 공람기간 및 장소 	사업장 경계 500m 간격, 지상 2~8m 높이로 설치

나. 게시 규격



- 규격 : 가로(1.5~2.0m)×세로(3.0~4.0m)×두께(0.05~0.10m)
- 색채 : 바탕-노란색, 글씨-검정색
- 재질 : 스틸

[별표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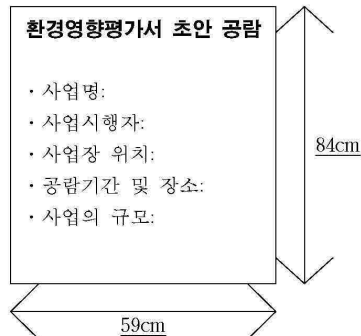
평가서초안 공람 방법 중 공고판 게시 방법 등(제4조 관련)

가. 게시 방법

구분	게시 수	게시내용	게시위치 등
조례 별표 1의 대상 사업 범위 중 면적 및 시설 용량 사업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명 · 사업시행자 · 사업장 위치 · 공람기간 및 장소 · 사업의 규모 	사업장부지 경계 벽면 내 방향에 고정하여 설치(단, 통행이 불가능하거나 막힌 벽면 제외)
조례 별표 1의 대상 사업 범위 중 길이 사업	사업장 경계 길이를 500(m)으로 나누어 반올림한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명 · 사업시행자 · 사업장 위치 · 공람기간 및 장소 	사업장 경계 500m 간격으로 설치

※ 날씨 등의 영향으로 훼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나. 게시 규격



- 규격 : 가로(59cm)×세로(84cm) *A1 규격

[별지 제7호서식]

협의내용 관리책임자		[]지정 []변경	통보서
사업명			
사업자			
사업장 위치			
공사기간			
협의내용 관리책임자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소속		
	직책		
	지정일		
	자격증	명칭	
번호			
<p>「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협의내용관리책임자를 지정(변경)하였음을 통보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사업자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귀하</p>			

※ 구비서류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제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협의내용 관리책임자		[]지정 []변경	통보서
사업명			
사업자			
사업장 위치			
협의내용 관리기간			
협의내용 관리책임자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소속		
	직책		
	지정일		
	자격증	명칭	
번호			
<p>「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협의내용관리책임자를 지정(변경)하였음을 통보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사업자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귀하</p>			

※ 구비서류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제활용품)]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646호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5월 30일
서울특별시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버스요금 지원대상·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대상 및 지원 방법 신설(안 제9조제1항)

나.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범위 신설(안 제9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참조: 장애인복지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장애인복지정책과(전화: 02-2133-73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 (1) 입법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서 보내실 곳

- (1) 이메일 : letitflow@seoul.go.kr
- (2) 우 편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1층 장애인복지정책과
- (3)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규칙 제 호

이 규칙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
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를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로 한다.

제9조를 제10조로 하고,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버스요금 지원 대상 등) ① 조례 제19조에 따른 버스요금 지원은 신청일 기준 6세 이상 서울
시 등록장애인의 신청에 의하여 시행하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경우 장애인 본인과
동반 보호자 1인
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경우 장애인
본인

② 조례 제19조에 따른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 장애인 본인
및 동반 보호자 각각 월 5만원, 제1항제2호의 경우 월 5만원을 한도로 한다.

1. 서울버스(간·지선, 순환, 광역, 마을) 이용요금
2. 인천버스(간·지선, 좌석, 광역) 환승요금
3. 경기버스(일반, 좌석, 직행좌석, 마을) 환승요금
4.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환승요금
5. 서울시 리버버스 이용요금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센터의 지원) ① 시장은 조례 제6조에 따라 장애인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운영비·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p> <p>1. (생략)</p> <p>2. 「민법」 제32조 및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사단법인, 재단법인이 설치하고 운영하는 센터</p> <p>3. (생략)</p> <p>②·③ (생략)</p> <p><신설></p>	<p>제3조(센터의 지원) ① ----- ----- ----- ----- ----- -----.</p> <p>1. (현행과 같음)</p> <p>2.-----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 --</p> <p>3. (현행과 같음)</p> <p>②·③ (현행과 같음)</p> <p><u>제9조(버스요금 지원 대상 등) ①</u> <u>조례 제19조에 따른 버스요금 지원은 신청일 기준 6세 이상 서울시 등록장애인의 신청에 의하여 시행하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u></p> <p>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p>

<p><u>제9조 (생략)</u></p>	<p><u>심한 장애인 경우 장애인 본인과 동반 보호자 1인</u></p> <p>2. 「<u>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u>」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u>심하지 않은 장애인 경우 장애인 본인</u></p> <p>② <u>조례 제19조에 따른 지원 범위</u>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u>제1항제1호의 경우 장애인 본인 및 동반 보호자 각각 월 5만원, 제1항제2호의 경우 월 5만원을 한도로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서울버스(간·지선, 순환, 광역, 마을) 이용요금</u> 2. <u>인천버스(간·지선, 좌석, 광역) 환승요금</u> 3. <u>경기버스(일반, 좌석, 직행좌석, 마을) 환승요금</u> 4. <u>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환승요금</u> 5. <u>서울시 리버버스 이용요금</u> <p><u>제10조 (현행 제9조와 같음)</u></p>
------------------------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660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5월 30일

서울특별시 장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62조제3항이 개정됨에 따라 규칙에 관련 서식을 신설하여 정비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미해산(청산) 지연 문제를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청장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조합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추진실적 제출 서식을 신설함(안 제32조제8호, 안 별지 제46호서식)

나. 그 밖에 조문 등을 정비함(안 제2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주거정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주거정비과(전화 : 2133-72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서 보내실 곳

- 1) 우 편: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 2) 팩 스: 02-768-8923
- 3) 이메일: attwinkle@seoul.go.kr
-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규칙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규칙 제 호

이 규칙(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2조제1항”을 “제62조제1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 2호, 제3호, 제6호 및 제7호 중 “서류:”를 각각 “서류:”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조례 제62조제3항에 따른 서류: 별지 제46호서식의 미해산(미청산) 정비조합 관리대장

별지 제4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6호서식]

미해산(미청산) 정비조합 관리대장

사업명	(위치)						
조합명	정비사업 조합						
대표자 (조합장/청산인)	성명				생년월일		
	사무실주소						(연락처)
임원(청산인) 구성	성명 (직책)	연락처			성명 (직책)	연락처	
준공일		이전고시일		해산일 (해산총회일)		청산종결일	
잔여자금			월평균사용금액 / 주요사용내역				
해산(청산) 계획 및 추진사항 요약							
미해산(미청산) 사유 등							
실태조사	조사일	참여자	실태조사 결과 및 조치계획				
종합의견							

※ 조합 해산(청산) 계획 및 추진사항은 구체적인 해산·청산 종료일(예정일) 및 소송현황을 포함하여 작성
 ※ 실태조사는 조합 제출자료에 대한 사실확인, 조합운영 현황 파악 등을 위해 실시

제출서류	1. 조합 해산(청산) 계획 및 추진사항 관련자료 1부.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2조(추진실적의 보고) 조례 제 62조제1항에 따른 추진실적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생략)</p> <p>2. 조례 제6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서류: 별지 제10호서식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서 사본</p> <p>3. 조례 제6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서류: 별지 제12호서식의 조합설립(변경)인가서 사본</p> <p>4.·5. (생략)</p> <p>6. 조례 제6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서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라 승인한 입주자모집공고안 사본 1부</p> <p>7. 조례 제6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서류: 공사완료 고시문 사본 1부</p> <p><신설></p>	<p>제32조(추진실적의 보고) ----- 제62조제1항 및 제3항----- ----- -----.</p> <p>1. (현행과 같음)</p> <p>2. ----- ----- 서류: ----- -----</p> <p>3. ----- ----- 서류: ----- -----</p> <p>4.·5. (현행과 같음)</p> <p>6. ----- ----- 서류: ----- -----</p> <p>7. ----- ----- 서류: ----- -----</p> <p>8. 조례 제62조제3항에 따른 서류: 별지 제46호서식의 미해산(미청산) 정비조합 관리대장</p>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259호

도시계획시설(철도)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5호선 목동역 외 4역 승강편의시설 설치)

1. 건설부고시 제695호('90.10.19.), 건설교통부고시 제151호('91.04.01.) 및 제399호('91.07.24.), 서울시고시 제104호('94.03.30.)로 최초결정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철도)에 대해 승강편의시설 설치에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열람공고(서울특별시 공고 제2024-1264호) 시행한 「5호선 목동역 외 4역 승강편의시설 설치」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6조, 제97조, 제10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서울시 도시철도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5월 30일
서울특별시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규모

연번	구분	위치	규모
1	5호선 목동역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1072 일대	114.0㎡
2	5호선 오금역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44-2 일대	195.0㎡
3	6호선 증산역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동 199-8 일대	54.0㎡
4	6호선 응암역	서울특별시 은평구 역촌동 43-13 일대	130.0㎡
5	7호선 하계역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동 273-5 일대	124.0㎡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철도) 설치사업
- 2) 명 칭 : 2021년도 지하철 승강편의시설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목동역 등 10역)

다.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1) 명 칭 : 서울교통공사
- 2) 주 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346

라.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1) 착 수 일 : 실시계획인가일(2024년 5년 30일)
- 2) 준공예정일 : 2029년 07월 01일

마.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물건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 명세 및 그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 주소 : 별첨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청 도시철도과(☎2133-4351)로 문의 바랍니다.

1. 목동역

□ 위치도



□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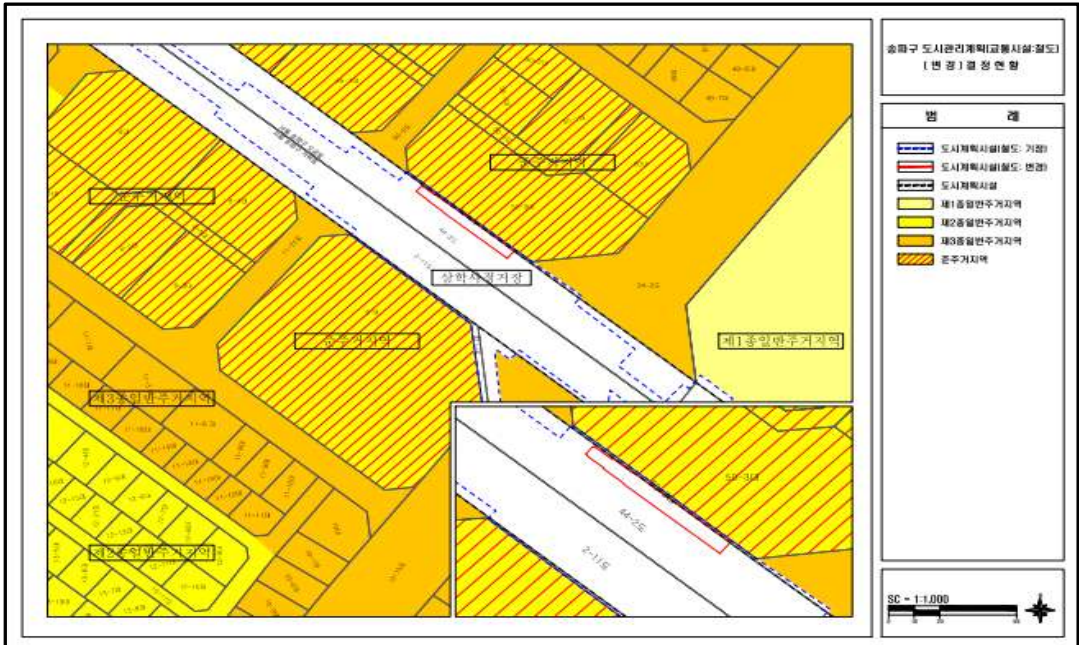


2. 오금역

□ 위치도



□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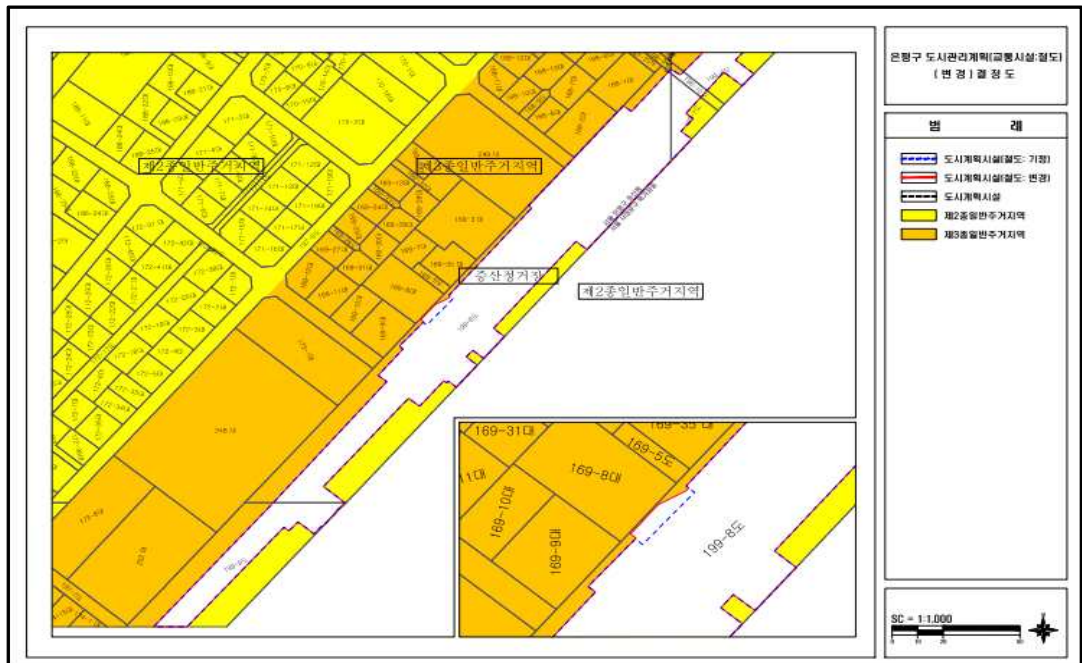


3. 증산역

□ 위치도



□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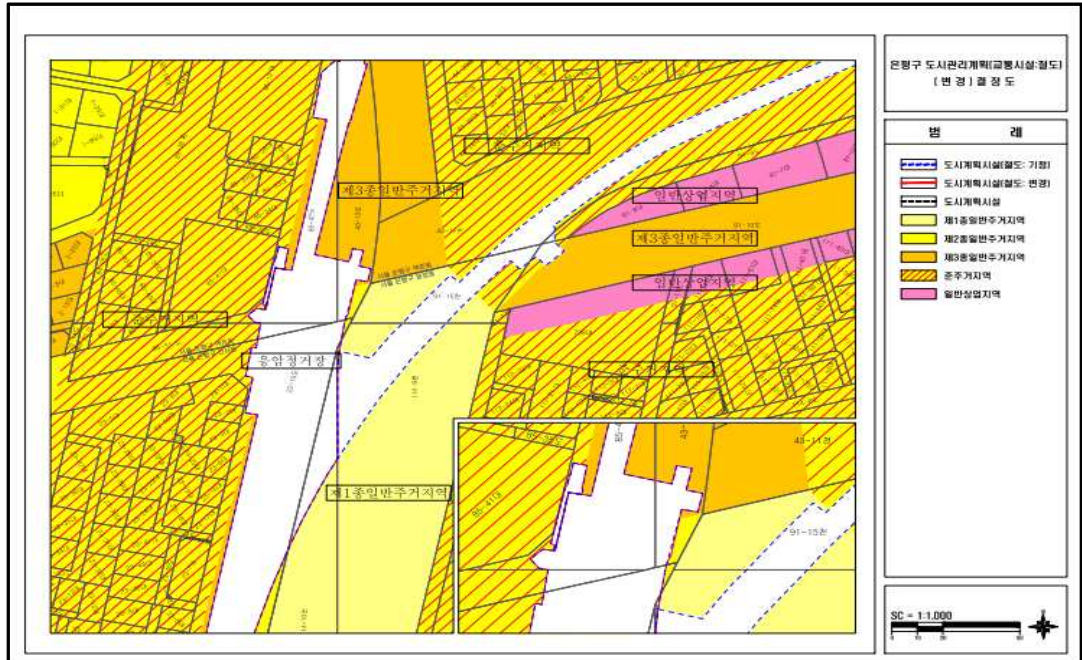


4. 응암역

□ 위치도



□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안)도



5. 하계역

□ 위치도



□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안)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260호

능동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498호(1971.8.1.)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64호(2024.2.1.)로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된 광진구 능동로 216 일대 능동근린공원에 대하여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고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5월 30일
서울특별시

1. 결정취지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노후화된 구의문(경비실)을 관리실 및 화장실로 정비하여 공원 이용자에게 편의 제공 등
2. 위 치 :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216 일대
3. 면 적 : 560,552㎡
4. 조성계획결정 조서 및 도면 :공원 조성
 - ※ 첨부된 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5.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공원조성과 (☎02-2133-2068)
 - 서울특별시 공원여가정책과 (☎02-2133-2036)

능동근린공원(어린이대공원지구) 조성계획결정(변경)조서

1. 총괄표 (위치 : 광진구 능동18번지 일대)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동수(등)	바닥면적(㎡)	연면적(㎡)				동수(등)	바닥면적(㎡)	연면적(㎡)		
계	560,552.00	222,426.24	72	24,263.76	52,670.05	667	560,552.00	223,316.35	72	24,390.96	52,737.63	668	
어린이 대공원지구	536,088.50	212,832.60	60	22,664.09	49,646.42	663	536,088.50	213,722.71	60	22,791.29	49,714.00	664	시설면적 증 890.11㎡
어린이 화관지구	24,463.50	9,593.64	12	1,599.67	3,023.63	4	24,463.50	9,593.64	12	1,599.67	3,023.63	4	
시설율 (법정40%)	$(222,426.24 / 560,552.00) \times 100 = 39.68 \%$												
건폐율 (법정10%)	$(24,263.76 / 560,552.00) \times 100 = 4.33 \%$												
	$(223,316.35 / 560,552.00) \times 100 = 39.84 \%$												
	$(24,390.96 / 560,552.00) \times 100 = 4.35 \%$												
	증 0.16%												

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동수 (층)	비대면적 (㎡)	연면적 (㎡)				동수 (층)	비대면적 (㎡)			연면적 (㎡)
합계	560,552.00	222,426.24	72	24,263.76	52,670.05	667	560,552.00	223,316.35	72	24,390.96	52,737.63	668	시설면적 증 890.11㎡
기 반 시 설	소계	65,177.02	65,177.02				65,184.53	65,184.53					증 7.51㎡
	도로	50,753.10	50,753.10				50,760.61	50,760.61					증 7.51㎡
	광장	14,423.92	14,423.92				14,423.92	14,423.92					
	조경시설	18,146.54	18,146.54			5	18,146.54	18,146.54				5	
휴양시설	1,893.09	1,893.09	4	236.56	236.56		1,893.09	1,893.09	4	236.56	236.56		
유흥시설	29,303.30	29,303.30	4	847.44	1,560.72		29,303.30	29,303.30	4	847.44	1,560.72		
운동시설	23,271.93	23,271.93	10	1,262.05	2,666.01	4	23,271.93	23,271.93	10	1,262.05	2,666.01	4	
교양시설	59,441.65	59,441.65	31	17,220.41	41,556.09	26	59,442.29	59,442.29	31	17,220.41	41,556.09	27	증 0.64㎡
편익시설	22,566.51	22,566.51	15	3,128.70	4,846.07	26	23,480.39	23,480.39	16	3,287.82	4,945.57	26	증 913.86㎡
관리시설	1,879.20	1,879.20	8	1,568.60	1,784.60	606	1,847.28	1,847.28	7	1,536.68	1,732.68	606	감 31.92㎡
복지기타	338,125.76						337,235.65						감 890.11㎡
그밖의 시설 (승용차대)	747.00	747.00					747.00	747.00					

2. 조성계획 총괄표 (어린이대공원지구)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 면 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 면 적 (㎡)
계	536,088.50	212,832.60	60	22,664.09	49,646.42	663	536,088.50	213,722.71	60	22,791.29	49,714.00	664	시설면적 증 890.11㎡
기반 시설	소 계	63,580.49					63,588.00	63,588.00					증 7.51㎡
	도로	49,156.57	49,156.57				49,164.08	49,164.08					증 7.51㎡
	광 장	14,423.92	14,423.92				14,423.92	14,423.92					
조경시설	18,082.64	18,082.64				5	18,082.64	18,082.64				5	
휴양시설	1,878.89	1,878.89	4	236.56	236.56		1,878.89	1,878.89	4	236.56	236.56		
유희시설	29,303.30	29,303.30	4	847.44	1,560.72		29,303.30	29,303.30	4	847.44	1,560.72		
운동시설	15,857.54	15,857.54	2	167.00	167.00	1	15,857.54	15,857.54	2	167.00	167.00	1	
교양시설	58,937.03	58,937.03	27	16,715.79	41,051.47	25	58,937.67	58,937.67	27	16,715.79	41,051.47	26	증 0.64㎡
편의시설	22,566.51	22,566.51	15	3,128.70	4846.07	26	23,480.39	23,480.39	16	3,287.82	4,945.57	26	증 913.88㎡
관리시설	1,879.20	1,879.20	8	1,568.60	1,784.60	606	1,847.28	1,847.28	7	1,536.68	1,752.68	606	감 31.92㎡
특지·기타	323,255.90						322,365.79						감 890.11㎡
그밖의 시설 (동물놀이타)	747.00	747.00					747.00	747.00					

3. 시설조서(어린이대공원지구)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연면적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연면적	공작물 (기)			
	계			63,580.49	63,580.49						63,588.00	63,588.00				증 7.51㎡		
	도로	가	능동18	39,786.87	39,786.87					가	능동 18	39,794.38	39,794.38			증 7.51㎡		
	산책로	나	"	9,369.70	9,369.70					나	"	9,369.70	9,369.70					
	광장	다	"	14,423.92	14,423.92					다	"	14,423.92	14,423.92					
	진입광장	다-1	"	(4,427.00)	(4,427.00)					다-1	"	(4,427.00)	(4,427.00)					
	빛의광장	다-2	"	(4,445.38)	(4,445.38)					다-2	"	(4,445.38)	(4,445.38)					
	판타지플라자	다-3	"	(1,465.58)	(1,465.58)					다-3	"	(1,465.58)	(1,465.58)					
	육각정광장	다-4	"	(2,281.90)	(2,281.90)					다-4	"	(2,281.90)	(2,281.90)					
	아외음악당광장	다-5	"	(370.00)	(370.00)					다-5	"	(370.00)	(370.00)					
	후문광장-1	다-6	"	(588.19)	(588.19)					다-6	"	(588.19)	(588.19)					
	후문광장-2	다-7	"	(394.03)	(394.03)					다-7	"	(394.03)	(394.03)					
	후문광장-3	다-8	"	(451.84)	(451.84)					다-8	"	(451.84)	(451.84)					

기 반 시 설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비대면적	연면적								비대면적	연면적				
	계			18,082.64	18,082.64				5			18,082.64	18,082.64						5			
	화 단	라	"	2,215.50	2,215.50					라	"	2,215.50	2,215.50									
	실개천	아	"	524.41	524.41					아	"	524.41	524.41									
	연못	①	능동 18	14,382.78	14,382.78				3	①	능동 18	14,382.78	14,382.78						3			
	- 환경연못	①-1	"	(5,061.78)	(5,061.78)				(1)	①-1	"	(5,061.78)	(5,061.78)						(1)			
	- 생태연못	①-2	"	(8,700.00)	(8,700.00)				(1)	①-2	"	(8,700.00)	(8,700.00)						(1)			
	- 생태계류	①-3	"	(621.00)	(621.00)				(1)	①-3	"	(621.00)	(621.00)						(1)			
	분수대	②	"	959.95	959.95				2	②	"	959.95	959.95						2			
	- 혼합형조형분수	②-1	"	(706.50)	(706.50)				(1)	②-1	"	(706.50)	(706.50)						(1)			
	- 터널분수	②-3	"	(253.45)	(253.45)				(1)	②-3	"	(253.45)	(253.45)						(1)			

조경시설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바닥면적	건축물(㎡)	공적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바닥면적	건축물(㎡)
	계			1,878.89	1,878.89	4		236.56	236.56			1,878.89	1,878.89	4		236.56	236.56		
	육각정	1	능동 18	445	445	R.C 3		223.34	223.34			445	445	R.C 3		223.34	223.34		
	- 육각정 1	1-1	"	(210.00)	(210.00)	R.C (1)		(99.17)	(99.17)			(210.00)	(210.00)	R.C (1)		(99.17)	(99.17)		
	- 육각정 2	1-2	"	(210.00)	(210.00)	R.C (1)		(99.17)	(99.17)			(210.00)	(210.00)	R.C (1)		(99.17)	(99.17)		
	- 육각정 3	1-3	"	(25.00)	(25.00)	R.C (1)		(25.00)	(25.00)			(25.00)	(25.00)	R.C (1)		(25.00)	(25.00)		
	군자정	2	"	39	39	R.C 1		13.22	13.22			39	39	R.C 1		13.22	13.22		
	실터	자	"	135.84	135.84							135.84	135.84						
	아영장	야	"	960	960							960	960						
	휴게실터-1	버	"	180.71	180.71							180.71	180.71						
	휴게실터-2	스	"	72.87	72.87							72.87	72.87						
	휴게실터-3	휴	"	45.47	45.47							45.47	45.47						
	계			29,303.30	29,303.30	4		847.44	1,560.72			29,303.30	29,303.30	4		847.44	1,560.72		

한강도시철

안회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연면적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연면적	공작물 (기)	
시설	소계	소계	능동18	1,432.15	1,432.15	4	847.44	1,560.72		소계	능동18	1,432.15	1,432.15	4	847.44	1,560.72					
		매포소	"	136.08	136.08	R.C 1	136.08	136.08		5	"	136.08	136.08	R.C 1	136.08	136.08					
		과학오락관	"	287.89	287.89	R.C 1	287.89	565.16		7	"	287.89	287.89	R.C 1	287.89	565.16					
		- 과학오락관 7-1			(225.66)		(225.66)	(225.66)		7-1	"	(225.66)	(225.66)		(225.66)	(225.66)		(225.66)	(225.66)		
		- 임계영상관 7-2			(225.66)		(225.66)	(171.01)		7-2	"	(225.66)	(225.66)		(225.66)	(171.01)		(225.66)	(171.01)		
		- 화장실 3 7-3			(62.23)		(62.23)	(168.49)		7-3	"	(62.23)	(62.23)		(62.23)	(168.49)		(62.23)	(168.49)		
		사무실	능동18	332.75	332.75	R.C 1	332.75	729.88		8	"	332.75	332.75	R.C 1	332.75	729.88		332.75	729.88		
		유령의나라	"	90.72	90.72	R.C 1	90.72	129.6		45	"	90.72	90.72	R.C 1	90.72	129.6		90.72	129.6		
		쉼터(아와무대)	"	584.71	584.71					46	"	584.71	584.71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연면적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연면적	공작물 (기)
	소 계	소계		21,761.03	21,761.03							소계		21,761.03	21,761.03					
	스왕거	⑧	능동 18	176.63	176.63	철골						⑧	능동 18	176.63	176.63	철골				
	회전목마	⑨	"	86.55	86.55	철골						⑨	"	86.55	86.55	철골				
	회전킴	⑩	"	66.44	66.44	철골						⑩	"	66.44	66.44	철골				
	키다리아타 (미니카)	⑪	"	176	176	철골						⑪	"	176	176	철골				
	범포카	⑫	"	254.34	254.34	철골						⑫	"	254.34	254.34	철골				
	디노기차	⑬	"	392.24	392.24	철골						⑬	"	392.24	392.24	철골				
	카니발 코너	⑭	"	69.75	69.75	철골						⑭	"	69.75	69.75	철골				
	모노리일	⑮	"	762.54	762.54	레이						⑮	"	762.54	762.54	레이				
	기차여행	⑯	"	157.5	157.5	레이						⑯	"	157.5	157.5	레이				
	스페이스호이더	⑰	"	86.59	86.59	철골						⑰	"	86.59	86.59	철골				
	뮤직익스프레스	⑱	"	346.7	346.7	철골						⑱	"	346.7	346.7	철골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바닥면적	연면적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바닥면적	연면적	공작물 (기)	
	트릭스태이션	㉑	"	87.92	87.92	철골					㉑	"	87.92	87.92	철골						
	문도당고 (편하우스)	㉒	"	82.68	82.68	철골					㉒	"	82.68	82.68	철골						
	전자사격장	㉓	"	40	40	철골					㉓	"	40	40	철골						
	서스펜디드패미 리코스터	㉔	"	2,377.89	2,377.89	철골					㉔	"	2,377.89	2,377.89	철골						
	드림타워	㉕	"	178.69	178.69	철골					㉕	"	178.69	178.69	철골						
	웨이브스퀘어	㉖	"	422.42	422.42	철골					㉖	"	422.42	422.42	철골						
	슈퍼점퍼	㉗	"	285.27	285.27	철골					㉗	"	285.27	285.27	철골						
	후름라이드	㉘	"	1,658.65	1,658.65	철골					㉘	"	1,658.65	1,658.65	철골						
	슈퍼바이킹	㉙	"	264.87	264.87	철골					㉙	"	264.87	264.87	철골						
	계구리점프	㉚	"	61.83	61.83	철골					㉚	"	61.83	61.83	철골						
	공	㉛	능동 18	225.03	225.03	철골					㉛	능동 18	225.03	225.03	철골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유	컨터키	㉜	능동 18	225.03	225.03	철골					㉜	능동 18	225.03	225.03	철골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연면적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연면적	공작물 (기)					
자 물	스윙베어	㉔	"	106.8	106.8	철골				㉔	"	106.8	106.8	철골								
	크레이지마우스	㉕	"	343	343	철골				㉕	"	343	343	철골								
	크레이지댄스	㉖	"	255	255	철골				㉖	"	255	255	철골								
	아쿠아보트	㉗	"	358	358	콘크리트				㉗	"	358	358	콘크리트								
	미니바이킹	㉘	"	12.34	12.34	철골				㉘	"	12.34	12.34	철골								
회 시 설	기 타		"	12,425.36	12,425.36						"	12,425.36	12,425.36									
	소 계	소계		6,110.12	6,110.12					소계		6,110.12	6,110.12									
	분수놀이마당	11	능동 18	1,660.76	1,660.76					11	능동 18	1,660.76	1,660.76									
	감성놀이마당	12	"	4,301.53	4,301.53					12	"	4,301.53	4,301.53									
	바다놀이마당	점	"	147.83	147.83					점	"	147.83	147.83									
안 내 시 설	계	계		15,857.54	15,857.54	2	167.00	167.00	1	계		15,857.54	15,857.54	2	167.00	167.00	1					
	총 구 장	13	능동 18	8,392.31	8,392.31	1	167.00	167.00	1	13	능동 18	8,392.31	8,392.31	1	167.00	167.00	1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바닥면적 연면적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바닥면적 연면적	공작물 (기)
	축구장	13-1	"	(8,212.00)	(8,212.00)					13-1	"	(8,212.00)	(8,212.00)					
	탈의실 및 샤워실	13-2	"	(180.31)	(180.31)	R.C	1	(167.00)	(167.00)	13-2	"	(180.31)	(180.31)	R.C	1	(167.00)	(167.00)	1
	헬스파크	14	"	4,317.54	4,317.54					14	"	4,317.54	4,317.54					
	- 헬스파크1	14-1	"	(3,545.54)	(3,545.54)					14-1	"	(3,545.54)	(3,545.54)					
	- 헬스파크2	14-2	"	(227.00)	(227.00)					14-2	"	(227.00)	(227.00)					
	- 헬스파크3	14-3	"	(320.00)	(320.00)					14-3	"	(320.00)	(320.00)					
	- 헬스파크4	14-4	"	(225.00)	(225.00)					14-4	"	(225.00)	(225.00)					
	미니축구장	15	"	750.00	750.00					15	"	750.00	750.00					
	실내테니스장	43	"	809.25	809.25		1	809.25	809.25	43	"	809.25	809.25		1	809.25	809.25	
	실외테니스장	44	"	1,588.44	1,588.44					44	"	1,588.44	1,588.44					
	실외테니스장-1	44-1	"	(794.22)	(794.22)					44-1	"	(794.22)	(794.22)					
	실외테니스장-2	44-2	"	(794.22)	(794.22)					44-2	"	(794.22)	(794.22)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계	계		58,937.03	58,937.03	27	16,715.79	41,051.47	25	계		58,937.67	58,937.67	27	16,715.79	41,051.47	26	증 0.64㎡				
	소계	소계		58,234.67	58,234.67	27	16,715.79	41,051.47	4	소계		58,234.67	58,234.67	27	16,715.79	41,051.47	4					
	아외음악당	16	능동 18	7,662.23	7,662.23	RC+철골	1,664.99	2,193.28		16	능동 18	7,662.23	7,662.23	RC+철골	1,664.99	2,193.28						
	아외음악당	16-1	"	(7,327.60)	(7,327.60)	RC+철골	(1,395.05)	(1,926.10)		16-1	"	(7,327.60)	(7,327.60)	RC+철골	(1,395.05)	(1,926.10)						
	옥외화장실 1	16-2	"	(112.70)	(112.70)	R.C	(89.98)	(89.06)		16-2	"	(112.70)	(112.70)	R.C	(89.98)	(89.06)						
	옥외화장실 2	16-3	"	(112.51)	(112.51)	R.C	(89.98)	(89.06)		16-3	"	(112.51)	(112.51)	R.C	(89.98)	(89.06)						
	옥외화장실 3	16-4	"	(109.42)	(109.42)	R.C	(89.98)	(89.06)		16-4	"	(109.42)	(109.42)	R.C	(89.98)	(89.06)						
	식물원	17	"	1,600.00	1,600.00	R.C	1,598.00	2,492.00		17	"	1,600.00	1,600.00	R.C	1,598.00	2,492.00						
	동물사	18	"	27,346.14	27,346.14		5,334.39	6,332.46	2	18	"	27,346.14	27,346.14		5,334.39	6,332.46	2					
	열대동물사	18-1	"	(1,007.00)	(1,007.00)	R.C	(565.15)	(988.15)		18-1	"	(1,007.00)	(1,007.00)	R.C	(565.15)	(988.15)						
	물새장	18-2	"	(1,229.00)	(1,229.00)	조적	(468.67)	(468.67)		18-2	"	(1,229.00)	(1,229.00)	조적	(468.67)	(468.67)						
	어린이동물원	18-3	"	(2,373.67)	(2,373.67)	(3)	(226.20)	(226.20)		18-3	"	(2,373.67)	(2,373.67)	(3)	(226.20)	(226.20)						
	대동물관	18-4	"	(4,247.35)	(4,247.35)	R.C	(1,082.14)	(1,162.26)		18-4	"	(4,247.35)	(4,247.35)	R.C	(1,082.14)	(1,162.26)						
	완충이동산	18-5	"	(1,552.02)	(1,552.02)	"	(507.79)	(507.79)		18-5	"	(1,552.02)	(1,552.02)	"	(507.79)	(507.79)						

교양시설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연면적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연면적	공작물 (기)			
	소맹수사	18-6	"	(357.13)	(357.13)	"	(1)	(126.79)	(126.79)		18-6	"	(357.13)	(357.13)	"	(1)	(126.79)	(126.79)				
	맹금사	18-7	"	(184.75)	(184.75)	"		-	-	(1)	18-7	"	(184.75)	(184.75)	"		-	-	(1)			
	초석수 사파리	18-8	"	(60.00)	(60.00)	조적	(1)	(60.00)	(60.00)		18-8	"	(60.00)	(60.00)	조적	(1)	(60.00)	(60.00)				
	시습전시장	18-9	"	(375.72)	(375.72)	"	(3)	(81.00)	(81.00)		18-9	"	(375.72)	(375.72)	"	(3)	(81.00)	(81.00)				
	수서동물사	18-10	"	(1,129.31)	(1,129.31)	R.C	(1)	(355.89)	(483.19)		18-10	"	(1,129.31)	(1,129.31)	R.C	(1)	(355.89)	(483.19)				
	초석전시장	18-11	"	(1,500.00)	(1,500.00)						18-11	"	(1,500.00)	(1,500.00)								
	공연장	18-12	"	(3,170.10)	(3,170.10)	SRC	(1)	(1,501.36)	(2,122.41)		18-12	"	(3,170.10)	(3,170.10)	SRC	(1)	(1,501.36)	(2,122.41)				
	동물원	18-13	"	(666.50)	(666.50)	조적	(1)	(263.40)	(263.40)		18-13	"	(666.50)	(666.50)	조적	(1)	(263.40)	(263.40)				
	기타(관람동표)	18-14	"	(9,407.59)	(9,407.59)					(1)	18-14	"	(9,407.59)	(9,407.59)					(1)			
	누타사육장	18-15	"	(96.00)	(96.00)	조적	(1)	(96.00)	(96.00)		18-15	"	(96.00)	(96.00)	조적	(1)	(96.00)	(96.00)				
	시민안전체험관	19	"	1,795.20	1,795.20	R.C	1	1,795.20	5,441.00	1	19	"	1,795.20	1,795.20	R.C	1	1,795.20	5,441.00	1			
	인형전시장	20	"	365.00	365.00	R.C	1	365.00	365.00		20	"	365.00	365.00	R.C	1	365.00	365.00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연면적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연면적	공작물 (기)		
	숲속체험장	21	능동18	707.08	707.08					21	능동18	707.08	707.08							
	숲속체험시설	22	"	1,063.69	1,063.69					22	"	1,063.69	1,063.69							
	전시장	23	"	4,320.00	4,320.00	R.C	1	1,461.93	3,346.79	23	"	4,320.00	4,320.00	R.C	1	1,461.93	3,346.79			
	유강원	24	"	424.56	424.56					24	"	424.56	424.56							
교양시설	어린이교통체험관	35	"	3,000.00	3,000.00	R.C	1	450.00	450.00	35	"	3,000.00	3,000.00	R.C	1	450.00	450.00	1		
	서울키즈센터	36	"	6,600.00	6,600.00	RC+	1	3,367.18	19,543.44	36	"	6,600.00	6,600.00	RC+	1	3,367.18	19,543.44			
	아리수용모관	37	"	3,350.77	3,350.77	RC+	1	679.10	887.50	37	"	3,350.77	3,350.77	RC+	1	679.10	887.50			
	소계	소계		702.36	702.36					소계		702.36	702.36					22		
편익시설	동상	㉞	능동18	579.36	579.36					12	능동18	580.00	580.00					13	증 0.64㎡(127)→13(71)	
	기념비	㉟	"	123.00	123.00					9	"	123.00	123.00					9		
	계	계		22,566.51	22,566.51					26		23,480.39	23,480.39					26	증 913.88㎡	
	소계	소계		22,483.71	22,483.71					20		23,407.59	23,407.59					20	증 913.88㎡	
	판매시설	25	능동18	1,955.37	1,955.37					25	능동18	1,955.37	1,955.37					3	940.03	940.03
	- 카페테리아	25-1	"	(818.85)	(818.85)	R.C	(1)	(383.89)	(383.89)	25-1	"	(818.85)	(818.85)	R.C	(1)	(383.89)	(383.89)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연면적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연면적
	-	25-2	"	(640.34)	(640.34)	R.C (1)	(1)	(340.14) (340.14)		25-2	"	(640.34)	(640.34)	R.C (1)	(1)	(340.14) (340.14)	
	홍내음개폐터미아 - 북침판메시탈	25-3	"	(496.18)	(496.18)	R.C (1)	(1)	(216.00) (216.00)		25-3	"	(496.18)	(496.18)	R.C (1)	(1)	(216.00) (216.00)	
	안내센터	26	"	717.70	717.70	R.C	1	636.50	636.50	26	"	717.70	717.70	R.C	1	636.50	636.50
	화장실	27	"	1,688.34	1,688.34		10	907.87	965.41	27	"	1,847.46	1,847.46		11	1,066.99	1,064.91
	- 화장실 1	27-1	"	(95.12)	(95.12)	R.C (1)	(1)	(95.12)	(95.12)	27-1	"	(95.12)	(95.12)	R.C (1)	(1)	(95.12)	(95.12)
	- 화장실 2	27-2	"	(34.71)	(34.71)	조적 (1)	(1)	(34.71)	(34.71)	27-2	"	(34.71)	(34.71)	조적 (1)	(1)	(34.71)	(34.71)
	- 화장실 3	27-3	"	(94.02)	(94.02)	R.C (1)	(1)	(94.02)	(94.02)	27-3	"	(94.02)	(94.02)	R.C (1)	(1)	(94.02)	(94.02)
	- 화장실 4	27-4	"	(69.30)	(69.30)	R.C (1)	(1)	(69.30)	(69.30)	27-4	"	(69.30)	(69.30)	R.C (1)	(1)	(69.30)	(69.30)
	- 화장실 5	27-5	"	(70.71)	(70.71)	R.C (1)	(1)	(70.71)	(70.71)	27-5	"	(70.71)	(70.71)	R.C (1)	(1)	(70.71)	(70.71)
	- 화장실 6	27-6	"	(65.86)	(65.86)	R.C (1)	(1)	(65.86)	(65.86)	27-6	"	(65.86)	(65.86)	R.C (1)	(1)	(65.86)	(65.86)
	- 화장실 7	27-7	"	(145.50)	(145.50)	R.C (1)	(1)	(90.76)	(156.16)	27-7	"	(145.50)	(145.50)	R.C (1)	(1)	(90.76)	(156.16)

증 159.12㎡(신설)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 회장실 8	27-8	능동 18	(49.59)	(49.59)	조적 (1)	(49.59)	(49.59)	(49.59)	27-8	능동 18	(49.59)	(49.59)	조적	(1)	(49.59)	(49.59)	(49.59)				
	- 복합화장실	27-9	"	(526.63)	(526.63)	R.C (1)	(188.58)	(188.58)		27-9	"	(526.63)	(526.63)	R.C (1)	(1)	(188.58)	(188.58)					
	- 교차리화장실	27-10	"	(536.90)	(536.90)	R.C (1)	(141.36)	(141.36)		27-10	"	(536.90)	(536.90)	R.C (1)	(1)	(141.36)	(141.36)					
	- 구의문주차장화장실	27-11	"							27-11	"	(159.12)	(159.12)	R.C (1)	(1)	(159.12)	(99.50)		증 159.12㎡(신설)			
	팔각 단	28	"	644.30	644.30	R.C 1	644.30	2,304.13		28	"	644.30	644.30	R.C 1	1	644.30	2,304.13					
	주차장	29	"	17,488.00	17,488.00				4	29	"	18,242.76	18,242.76					4				
	- 정문	29-1	"	(5,159.00)	(5,159.00)				(2)	29-1	"	(5,159.00)	(5,159.00)					(2)				
	- 후문	29-2	"	(7,155.00)	(7,155.00)				(1)	29-2	"	(7,155.00)	(7,155.00)					(1)				
	- 구의문	29-3	"	(5,174.00)	(5,174.00)				(1)	29-3	"	(5,928.76)	(5,928.76)					(1)	증 754.76㎡			
	간이판매시설(정문)		"	(31.36)	(31.36)				8		"	(31.36)	(31.36)					8				
	간이판매시설(후문)		"	(31.36)	(31.36)				8		"	(31.36)	(31.36)					8				
	공작물	소계		72.80	72.80				6	소계		72.80	72.80					6				
	음수대	㉞	"	72.80	72.80				6	㉞	"	72.80	72.80					6				
	공중전화	㉟	"	(9.70)	(9.70)				(1)	㉟	"	(9.70)	(9.70)					(1)				

편의시설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연면적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연면적	공작물 (기)
	의자	㉔	"	(1,952.00)	(1,952.00)					(1)							(1)	
	휴지통	㉕	"	(300.00)	(300.00)					(1)							(1)	
	계	계		1,879.20	1,879.20	8	1,568.60	1,784.60	606	계		1,847.28	1,847.28	7	1,536.68	1,732.68	606	감 31.92㎡
	정문	30	능동18	432	432	R.C 1	216	432				432.00	432.00	R.C 1	216.00	432.00		
	후문	31	"	31.92	31.92	R.C 1	31.92	31.92				31.92	31.92	R.C 1	31.92	31.92		
	구역문	32	"	31.92	31.92	1	31.92	31.92										감 31.92㎡(폐지)
	특고압 변전실	33	"	396	396	R.C 1	396	396				396.00	396.00	R.C 1	396.00	396.00		
	영선반장고	34	"	420	420	경량 철골	420	420				420.00	420.00	경량 철골	420.00	420.00		
	수목관리실	38	"	320.67	320.67	조적	320.67	320.67				320.67	320.67	조적	320.67	320.67		
	수처리시설	39	"	59.13	59.13	조적	59.13	59.13				59.13	59.13	조적	59.13	59.13		
	공원초소(능동문)	49	"	12.96	12.96	R.C 1	12.96	12.96				12.96	12.96	R.C 1	12.96	12.96		

관 립 시 설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비대면적 연면적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비대면적 연면적	공작물 (기)		
관리시설	공작물	소계		174.60	174.60			80.00	80.00	606	소계		174.60	174.60			80.00	80.00	606	
	물타미 담장		능동 18							1	능동 18								1	
	안내관		"							140	"								140	
	가로등		"							460	"								460	
	고압변전실	㉔	"	94.60	94.60					4	㉔	"	94.60	94.60					4	
부지 및 기타	음압분수제어실	㉕	"	80.00	80.00			80.00	80.00	1	㉕	"	80.00	80.00			80.00	80.00	1	
	계			323,255.90								323,255.90								감 890.11㎡
	잔디밭	마	능동18	50,836.45							마	능동18	50,836.45							
	녹지대	바	"	80,115.82							바	"	79,225.71							감 890.11㎡
	수림대	사	"	192,303.63							사	"	192,303.63							
그밖의 시설	통	능동18	747.00	747.00						통	능동18	747.00	747.00							

4. 도로조서(어린이대공원지구)

- 공원시설 계획도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중 점	비고
당초	합 계				8,220.93	49,156.57				감 7.51㎡
변경					9,102.51	49,164.08				
당초	소 계				393.00	10,024.76				
당초	대로	3	1	25~61	271.00	5,882.17	후문진입로	판타지플라자	후문	
당초		3	2	24~50	122.00	4,142.59	정문진입로	정 문	빛의광장	
당초	소 계				5,085.37	29,762.11				감 7.51㎡
변경					5,085.37	29,769.62				
당초	소로	2	1	8	443.20	3,545.60	중앙로	빛의광장	팔각당	
당초		3	1	6	684.80	4,458.00	놀이마당,외곽순환	빛의광장	판타지플라자	
당초		3	2	6	916.10	5,523.93	생태연못,순환	정문진입로	판타지플라자	
당초		3	3	4	633.00	2,532.00	숲속체험장순환	축구장	동물원	
당초		3	4	6	74.00	444.00	대동물관	팔각당	대동물관 동쪽	
당초		3	5	5	138.02	690.10	동물원,카페테리아	어린이동물원	동물공연장	
당초		3	6	6	474.00	2,844.00	식물원, 동물원	전시장	팔각당	
당초		3	7	6	75.00	450.00	능동문 진입로	주차장	놀이마당	
당초		3	8	5	240.00	1,200.00	구의문 진입로	구의문	사슴전시장	
당초		3	9	5	232.00	1,160.00	동물공연장	광나루길	동물공연장	
당초		2	3	10	125.00	1,250.00	전시장	전시장	전시장	
당초		3	10	5	93.00	465.00	수목관리실	구의문	수목관리실	감 7.51㎡
변경		3	10	5	93.00	472.51	수목관리실	구의문	수목관리실	
당초		3	11	5	232.00	1,160.00	관리동선	후문주차장	후문진입로	
당초		3	12	4	123.02	453.41	육각정	식물원	낙타사육장	
당초		3	13	4	57.00	228.00	카페테리아	식물원	카페테리아	
당초		3	14	4	143.00	572.00	놀이마당	중앙로	생태숲	
당초	3	15	4	45.00	180.00	영선반창고	중앙로	영선반창고		
당초	3	16	6	57.25	343.50	아외음악당	아외공연장	아외공연장		
당초	4	17	4	26.60	106.40	아외음악당	김동인등상	김동인등상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초		4	18	4	36.80	147.20	야외음악당	분수놀이마당	김동인동상	
당초		4	27	6~10	236.58	2,008.97	후문진입로	후문	아차산역	
당초		소 계			3,624.14	9,369.70				
당초	산책로	4	1	3	150.00	450.00	산책로	중앙로	숫대원	
당초		4	2	2.3	140.70	323.61	산책로	후문진입로	숲속체험장순환로	
당초		4	3	1.5~3	305.01	983.53	산책로	전시장	팔각당	
당초		4	4	3	214.00	642.00	산책로	숫대원	어린이동물원	
당초		4	5	3	150.00	450.00	산책로	화장실	조만식동상	
당초		4	6	3	120.00	360.00	산책로	흙내음카페테리아	조만식동상	
당초		4	7	3	124.02	372.06	산책로	놀이마당	놀이마당	
당초		4	8	3	75.03	225.09	산책로	놀이마당	중앙로	
당초		4	9	3	87.00	261.00	산책로	놀이마당	놀이마당	
당초		4	10	3	54.00	162.00	산책로	분수놀이마당	생태계류	
당초		4	11	2.3	68.20	156.86	산책로	후문진입로	숲속체험장순환로	
당초		4	12	2	70.91	141.82	산책로	전시장	야외공연장	
당초		4	13	2	65.69	96.08	산책로	육각정	녹지	
당초		4	14	2	42.00	84.00	산책로	야외공연장	생태연못	
당초		4	15	2	28.20	56.40	산책로	부지외곽	외곽순환로	
당초		4	16	2	22.30	44.60	산책로	부지외곽	숲속체험장순환로	
당초		4	17	1.8	168.07	302.53	산책로		외곽순환로	
당초		4	18	1.8	44.99	80.98	산책로	생태숲산책로	생태숲산책로	
당초		4	19	1.8	24.24	43.63	산책로	부지외곽	생태숲산책로	
당초		4	20	1.5	95.30	142.95	산책로	산책로	산책로	
당초		4	20	1.5	28.83	43.25	산책로	산책로	아리수홍보관	
당초		4	21	1~2	392.00	427.48	산책로	구의문	동물병원	
당초		4	22	1	50.80	50.80	산책로	산책로	산책로	
당초		4	23	4	96.40	385.60	산책로	김동인동상	야외공연장	
당초	4	24	4	71.30	285.20	산책로	야외공연장	야외공연장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초		4	25	2	49.15	98.30	산책로	환경연못	육각정	
당초		4	26	1.5~3	357.00	848.50	산책로	조만식동상	수목관리실	
당초		4	28	3~4.5	233.00	931.91	산책로	후문	아차산역	
당초		4	29	1.5~3	296.00	919.52	산책로	후문	아차산역	

5. 조성계획 총괄표 (어린이회관지구)

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24,463.5	9,593.64	12	1,599.67	3,023.63	4	24,463.5	9,593.64	12	1,599.67	3,023.63	4		
기반시설	1,596.53	1,596.53					1,596.53	1,596.53						
조경시설	63.90	63.90					63.90	63.90						
휴양시설	14.20	14.20					14.20	14.20						
운동시설	7,414.39	7,414.39	8	1,065.05	2,519.01	3	7,414.39	7,414.39	8	1,065.05	2,519.01	3		
교양시설	504.62	504.62	4	504.62	504.62	1	504.62	504.62	4	504.62	504.62	1		
녹지,기타	14,869.86						14,869.86							

6. 시설조서 (어린이회관지구)

구분	시 설 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기반 시설	계			1,596.53	1,596.53							1,596.53	1,596.53							
	도 로	가	능동8	1,450.74	1,450.74					가	능동8	1,450.74	1,450.74							
	산책로	나	"	145.79	145.79					나	"	145.79	145.79							
조경 시설	계	계		63.90	63.90					계		63.90	63.90							
	벽 천	소계	능동8	63.90	63.90					소계	능동8	63.90	63.90							
	계	계		14.20	14.20					계		14.20	14.20							
휴양 시설	계	소계	능동8	14.20	14.20					소계	능동8	14.20	14.20							
	계	계		7,414.39	7,414.39					계		7,414.39	7,414.39							
	가로휴게공간	소계	능동8	14.20	14.20					소계	능동8	14.20	14.20							
안방 시설	계	계		1,095.05	1,095.05					계		1,095.05	1,095.05							
	(건축물)	소계	능동8	1,095.05	1,095.05					소계	능동8	1,095.05	1,095.05							
	탈의실	1	"	705.96	705.96	RC	1	705.96	1,330.09	1	"	705.96	705.96	RC	1	705.96	1,330.09			
운동 시설	계	2	"	73.06	73.06	조적	1	73.06	872.89	2	"	73.06	73.06	조적	1	73.06	872.89			
	관리실	2	"	73.06	73.06	조적	1	73.06	872.89	2	"	73.06	73.06	조적	1	73.06	872.89			
	매점 1	3	"	82.31	82.31	목조	1	82.31	82.31	3	"	82.31	82.31	목조	1	82.31	82.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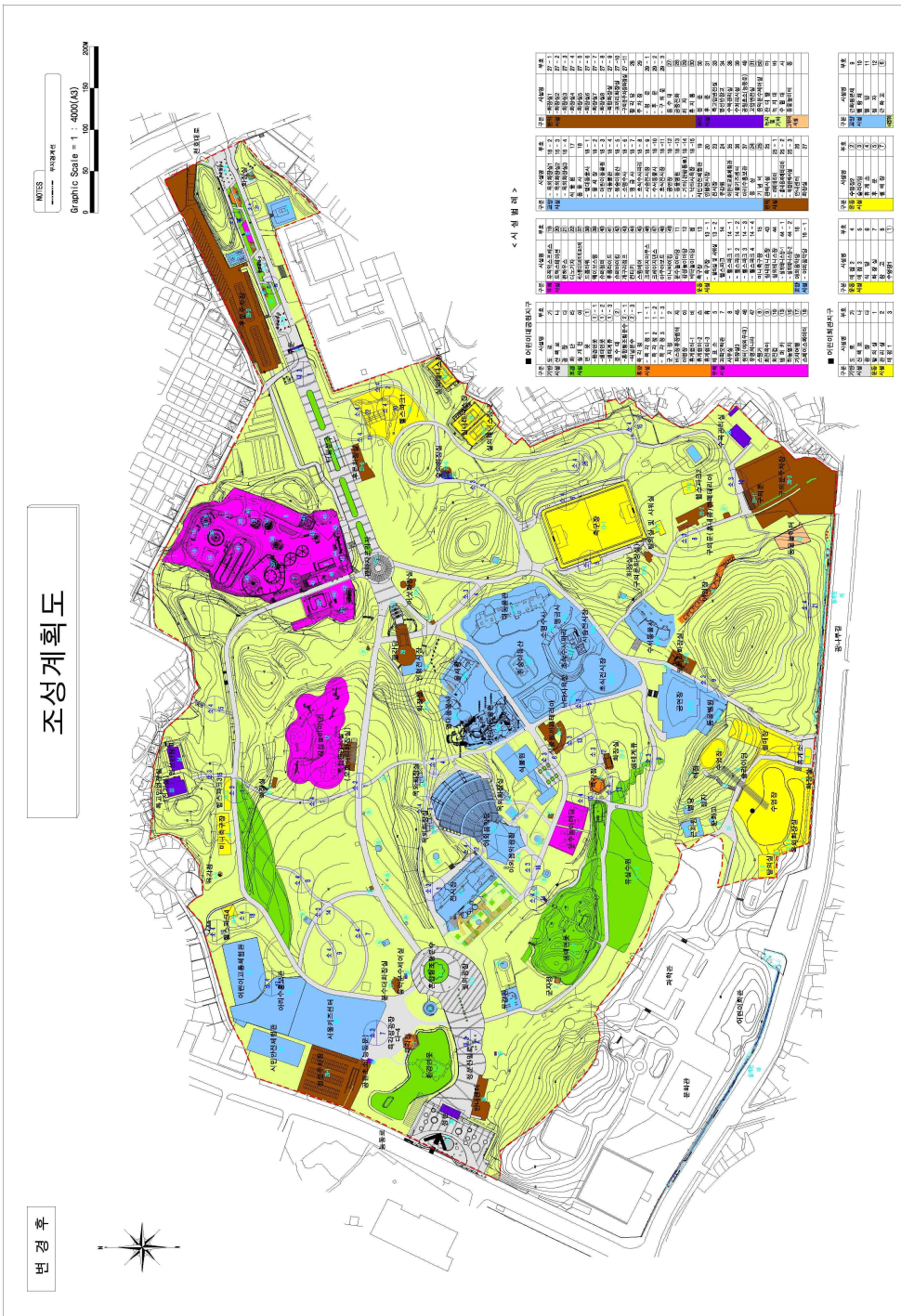
구분	시 설 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 (기)
	매 점 2	4	"	26.78	26.78	목조	1	26.78	26.78		4	"	26.78	26.78	목조	1	26.78	26.78		
	매 점 3	5	"	42.64	42.64	파이프 조	1	42.64	42.64		5	"	42.64	42.64	파이프 조	1	42.64	42.64		
	식 당	6	"	132.89	132.89	파이프 조	1	132.89	132.89		6	"	132.89	132.89	파이프 조	1	132.89	132.89		
	화 장 실	7	"	21.49	21.49	목조	1	21.49	21.49		7	"	21.49	21.49	목조	1	21.49	21.49		
	창 고	8	"	9.92	9.92	목조	1	9.92	9.92		8	"	9.92	9.92	목조	1	9.92	9.92		
	(공 작 물)	소계		6,319.34	6,319.34			6,319.34	6,319.34		3 소계		6,319.34	6,319.34					3	
	수 영 장 1	①	"	3,421.04	3,421.04	-	-	-	-		①	"	3,421.04	3,421.04	-	-	-	-	-	
	수 영 장 2	②	"	798.3	798.3	-	-	-	-		②	"	798.3	798.3	-	-	-	-	-	
	슬라이딩	③	"	-	-	FRP	-	-	-		③	"	-	-	FRP	-	-	-	1	
	휴게 소	④	"	100.0	100.0	조립	-	-	-		④	"	100.0	100.0	조립	-	-	-	1	
	후 문	⑤	"	-	-	철제	-	-	-		⑤	"	-	-	철제	-	-	-	1	
	벨메노드장	⑦	"	2,000.0	2,000.0	-	-	-	-		⑦	"	2,000.0	2,000.0	-	-	-	-	-	

구분	시 설 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계	계		504.62	504.62		4	504.62	504.62	1	계				504.62	504.62	1		
	(건축물)	소계	능동18	504.62	504.62		4	504.62	504.62		소계	능동18			504.62	504.62			
	근원본채	9	"	247.21	247.21	RC	1	247.21	247.21		9	"			247.21	247.21			
	행랑채	10	"	169.95	169.95	RC	1	169.95	169.95		10	"			169.95	169.95			
	별 당	11	"	71.46	71.46	목조	1	71.46	71.46		11	"			71.46	71.46			
	정 자	12	"	16.0	16.0	목조	1	16.0	16.0		12	"			16.0	16.0			
	(공작물)	소계								1	소계						1		
	근화교	⑥	"	-	-	R.C	-	-	-	1	⑥	"			-	-	1		
	특지 및 기타		능동18	14,869.86								능동18							

교 양 시 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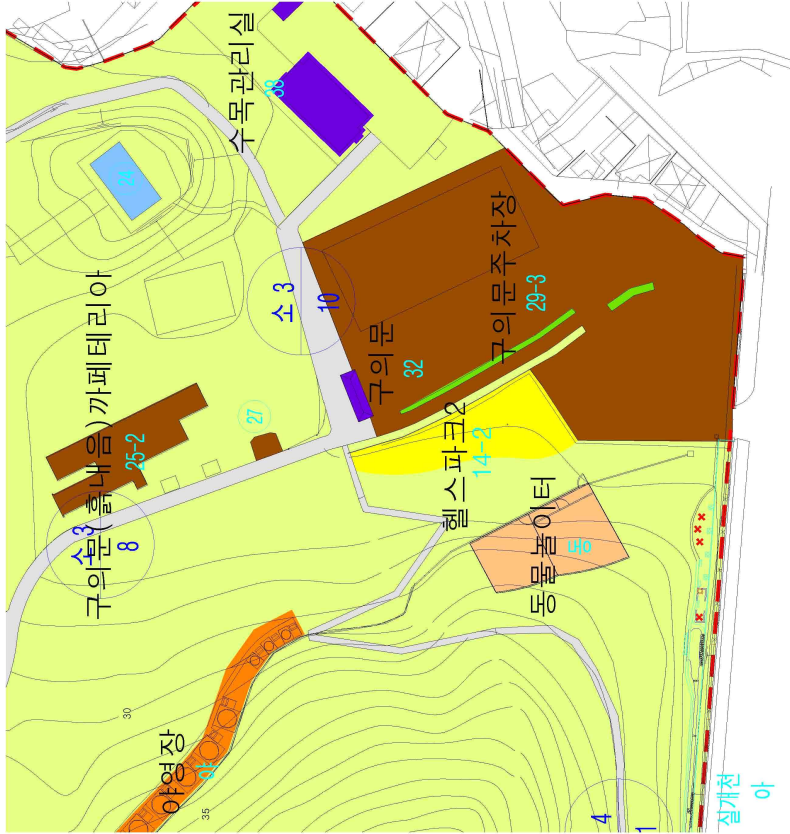
7. 도로조서(어린이회관지구)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초	합 계				279.41	1,596.53				
변경					279.41	1,596.53				
당초	소로	소 계			242.96	1,450.74				
변경					242.96	1,450.74				
당초		3	가	6	242.96	1,450.74	어린이회관, 수영장,내부도로	어린이회관	수영장 후문	
당초	산책로	소 계			36.45	145.79				
변경					36.45	145.79				
당초		3	나	4	36.45	145.79	수영장 내부 도로	수영장 1	수영장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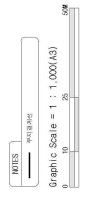
세부계획도(구의문)

변경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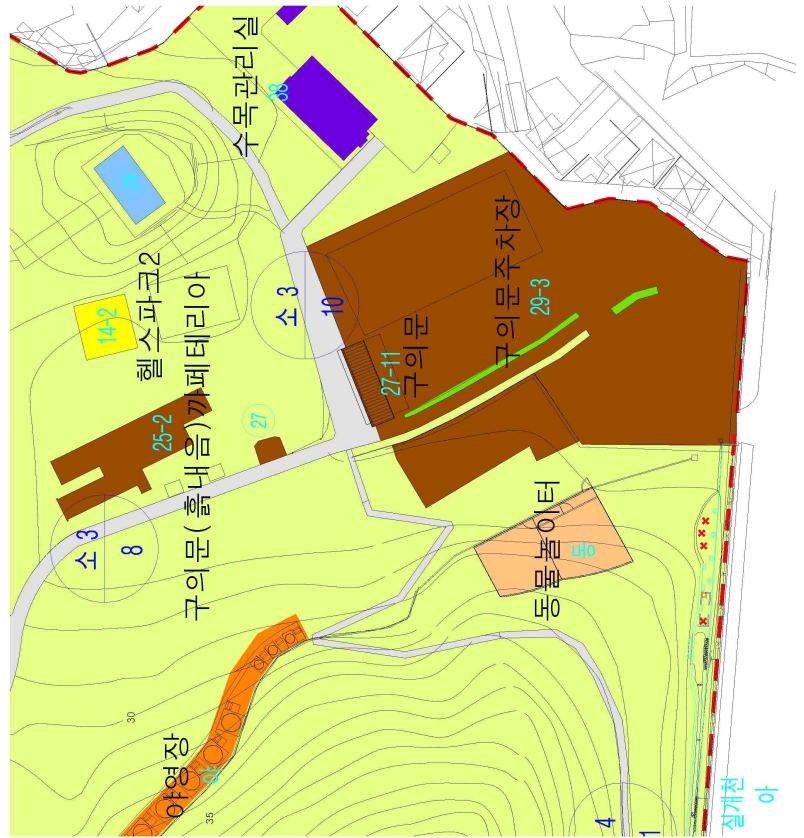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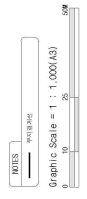
<시정면적>

구분	구의문	아영장	헬스파크2	동물놀이터	수목관리실	소
면적(㎡)	1,234	567	890	1,567	234	123
비율(%)	15.2	7.1	11.1	19.6	2.9	1.5



세부계획도(구의문)

변경 후



< 도시정밀계획 >

구분	색상	용도	비율	비고
1	Blue	주거용	100%	주거용지역
2	Green	공원	100%	공원지역
3	Yellow	상업용	100%	상업용지역
4	Purple	문화·체육용	100%	문화·체육용지역
5	Orange	공업용	100%	공업용지역
6	Light Blue	수역	100%	수역지역
7	Light Green	녹지	100%	녹지지역
8	Light Purple	문화·체육	100%	문화·체육지역
9	Light Orange	공업	100%	공업지역
10	Light Blue	수역	100%	수역지역
11	Light Green	녹지	100%	녹지지역
12	Light Purple	문화·체육	100%	문화·체육지역
13	Light Orange	공업	100%	공업지역
14	Light Blue	수역	100%	수역지역
15	Light Green	녹지	100%	녹지지역
16	Light Purple	문화·체육	100%	문화·체육지역
17	Light Orange	공업	100%	공업지역
18	Light Blue	수역	100%	수역지역
19	Light Green	녹지	100%	녹지지역
20	Light Purple	문화·체육	100%	문화·체육지역
21	Light Orange	공업	100%	공업지역
22	Light Blue	수역	100%	수역지역
23	Light Green	녹지	100%	녹지지역
24	Light Purple	문화·체육	100%	문화·체육지역
25	Light Orange	공업	100%	공업지역
26	Light Blue	수역	100%	수역지역
27	Light Green	녹지	100%	녹지지역
28	Light Purple	문화·체육	100%	문화·체육지역
29	Light Orange	공업	100%	공업지역
30	Light Blue	수역	100%	수역지역
31	Light Green	녹지	100%	녹지지역
32	Light Purple	문화·체육	100%	문화·체육지역
33	Light Orange	공업	100%	공업지역
34	Light Blue	수역	100%	수역지역
35	Light Green	녹지	100%	녹지지역
36	Light Purple	문화·체육	100%	문화·체육지역
37	Light Orange	공업	100%	공업지역
38	Light Blue	수역	100%	수역지역
39	Light Green	녹지	100%	녹지지역
40	Light Purple	문화·체육	100%	문화·체육지역
41	Light Orange	공업	100%	공업지역
42	Light Blue	수역	100%	수역지역
43	Light Green	녹지	100%	녹지지역
44	Light Purple	문화·체육	100%	문화·체육지역
45	Light Orange	공업	100%	공업지역
46	Light Blue	수역	100%	수역지역
47	Light Green	녹지	100%	녹지지역
48	Light Purple	문화·체육	100%	문화·체육지역
49	Light Orange	공업	100%	공업지역
50	Light Blue	수역	100%	수역지역
51	Light Green	녹지	100%	녹지지역
52	Light Purple	문화·체육	100%	문화·체육지역
53	Light Orange	공업	100%	공업지역
54	Light Blue	수역	100%	수역지역
55	Light Green	녹지	100%	녹지지역
56	Light Purple	문화·체육	100%	문화·체육지역
57	Light Orange	공업	100%	공업지역
58	Light Blue	수역	100%	수역지역
59	Light Green	녹지	100%	녹지지역
60	Light Purple	문화·체육	100%	문화·체육지역
61	Light Orange	공업	100%	공업지역
62	Light Blue	수역	100%	수역지역
63	Light Green	녹지	100%	녹지지역
64	Light Purple	문화·체육	100%	문화·체육지역
65	Light Orange	공업	100%	공업지역
66	Light Blue	수역	100%	수역지역
67	Light Green	녹지	100%	녹지지역
68	Light Purple	문화·체육	100%	문화·체육지역
69	Light Orange	공업	100%	공업지역
70	Light Blue	수역	100%	수역지역
71	Light Green	녹지	100%	녹지지역
72	Light Purple	문화·체육	100%	문화·체육지역
73	Light Orange	공업	100%	공업지역
74	Light Blue	수역	100%	수역지역
75	Light Green	녹지	100%	녹지지역
76	Light Purple	문화·체육	100%	문화·체육지역
77	Light Orange	공업	100%	공업지역
78	Light Blue	수역	100%	수역지역
79	Light Green	녹지	100%	녹지지역
80	Light Purple	문화·체육	100%	문화·체육지역
81	Light Orange	공업	100%	공업지역
82	Light Blue	수역	100%	수역지역
83	Light Green	녹지	100%	녹지지역
84	Light Purple	문화·체육	100%	문화·체육지역
85	Light Orange	공업	100%	공업지역
86	Light Blue	수역	100%	수역지역
87	Light Green	녹지	100%	녹지지역
88	Light Purple	문화·체육	100%	문화·체육지역
89	Light Orange	공업	100%	공업지역
90	Light Blue	수역	100%	수역지역
91	Light Green	녹지	100%	녹지지역
92	Light Purple	문화·체육	100%	문화·체육지역
93	Light Orange	공업	100%	공업지역
94	Light Blue	수역	100%	수역지역
95	Light Green	녹지	100%	녹지지역
96	Light Purple	문화·체육	100%	문화·체육지역
97	Light Orange	공업	100%	공업지역
98	Light Blue	수역	100%	수역지역
99	Light Green	녹지	100%	녹지지역
100	Light Purple	문화·체육	100%	문화·체육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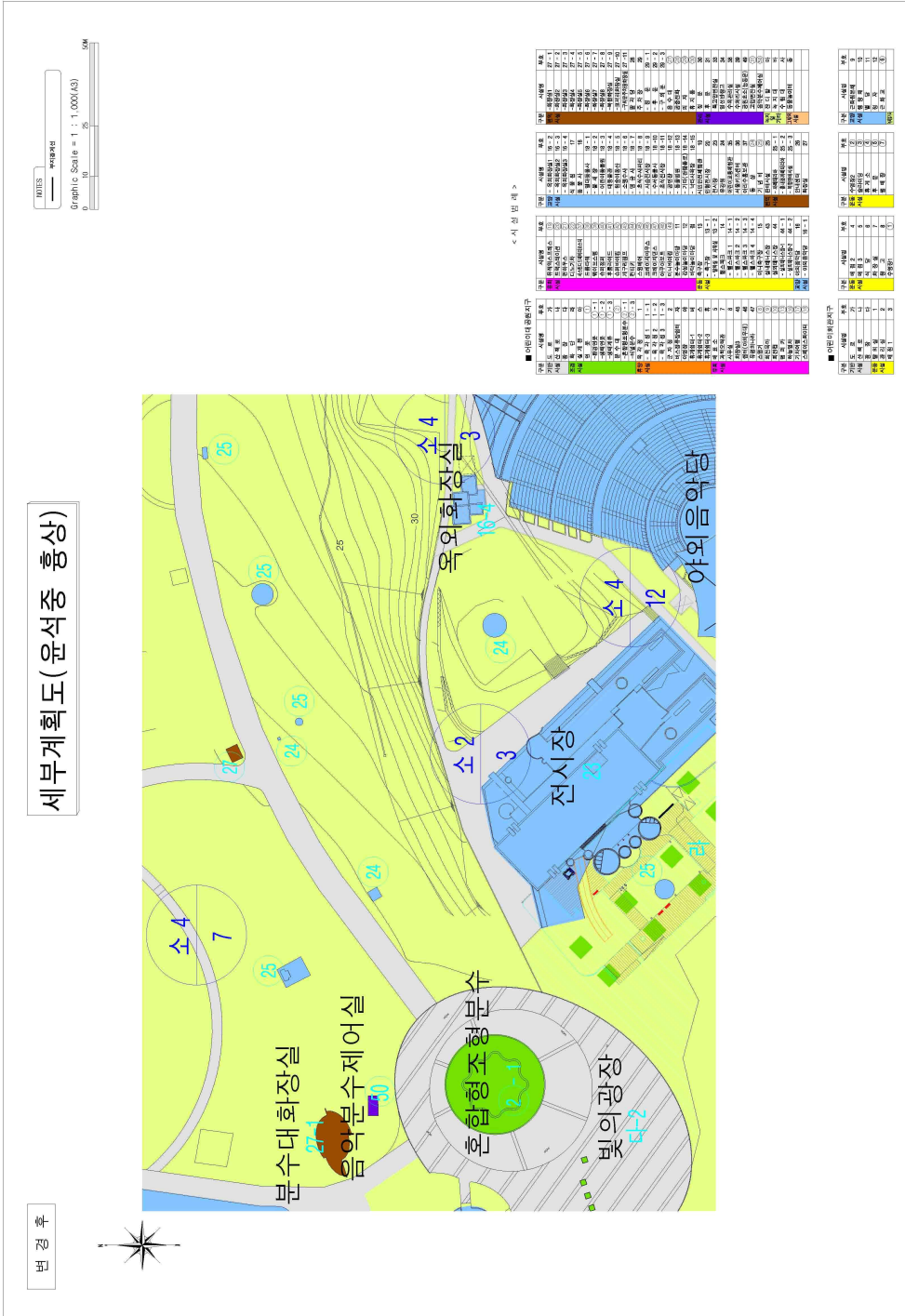
세부계획도(윤석중 흉상)

변경 전



<시정비계획>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1. 도로	2. 하수도	3. 상수도	4. 전기	5. 가스	6. 열
7. 통신	8. 기타	9. 조경	10. 기타	11. 기타	12. 기타
13. 기타	14. 기타	15. 기타	16. 기타	17. 기타	18. 기타



세부계획도(윤석중 흉상)

변경 후

< 시정 명세 >

구분	구분명	면적(㎡)	비고
■ 서울아트문화지구	1.1	13,111	서울아트문화지구
	1.2	13,111	서울아트문화지구
	1.3	13,111	서울아트문화지구
	1.4	13,111	서울아트문화지구
	1.5	13,111	서울아트문화지구
	1.6	13,111	서울아트문화지구
	1.7	13,111	서울아트문화지구
	1.8	13,111	서울아트문화지구
	1.9	13,111	서울아트문화지구
	1.10	13,111	서울아트문화지구
	1.11	13,111	서울아트문화지구
	1.12	13,111	서울아트문화지구
	1.13	13,111	서울아트문화지구
	1.14	13,111	서울아트문화지구
	1.15	13,111	서울아트문화지구
■ 서울아트문화지구	2.1	13,111	서울아트문화지구
	2.2	13,111	서울아트문화지구
	2.3	13,111	서울아트문화지구
	2.4	13,111	서울아트문화지구
	2.5	13,111	서울아트문화지구
	2.6	13,111	서울아트문화지구
	2.7	13,111	서울아트문화지구
	2.8	13,111	서울아트문화지구
	2.9	13,111	서울아트문화지구
	2.10	13,111	서울아트문화지구
	2.11	13,111	서울아트문화지구
	2.12	13,111	서울아트문화지구
	2.13	13,111	서울아트문화지구
	2.14	13,111	서울아트문화지구
	2.15	13,111	서울아트문화지구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261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

서울특별시 제2020-254호(2020.6.29.)로 고시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용도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에 대하여 기재 착오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정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와 같은법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정정 고시합니다.

2024년 5월 30일
서울특별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취지
 - ' 20년 6월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용도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254호, 20.6.29.)에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착오 결정한 사항 정정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변경)조서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봉산도시자연 공원구역	은평구 구산동 산59일대	1,337,746.6	감)2,236.5㎡	1,335,510.1	

- 공원구역 변경 사유서

구역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봉산도시자연 공원구역	공원구역 면적 변경 (감2,236.5㎡)	- ' 20.6.29일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254호(2020.6.29.) 결정 내용 중 착오 사항 정정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해제되는 면적은 녹지로 결정 후 기부채납 예정(은평구)

3. 관계도면 : 붙임 참조
 -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02-2133-8458), 은평구 정비사업신속추진단(☎02-351-7484)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서울도시계획포털(<http://urban.seoul.go.kr>) 및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계획(공원구역) 결정(기정)도



○ 도시관리계획(공원구역) 결정(변경)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262호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내
문화공원1 조성계획 결정(최초)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52호(2017.04.27.)로 최초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272호(2022.06.23.)로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 결정된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내 문화공원1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 결정(최초)하고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4년 5월 30일
서울특별시장

1. 결정취지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 결정(최초)에 관한 사항으로,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에 따른 한강 등 주변환경과 연계성을 강화한 공원계획을 통해 녹지축을 연결하고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2. 위 치: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1214 일대

3. 공원면적: 5,28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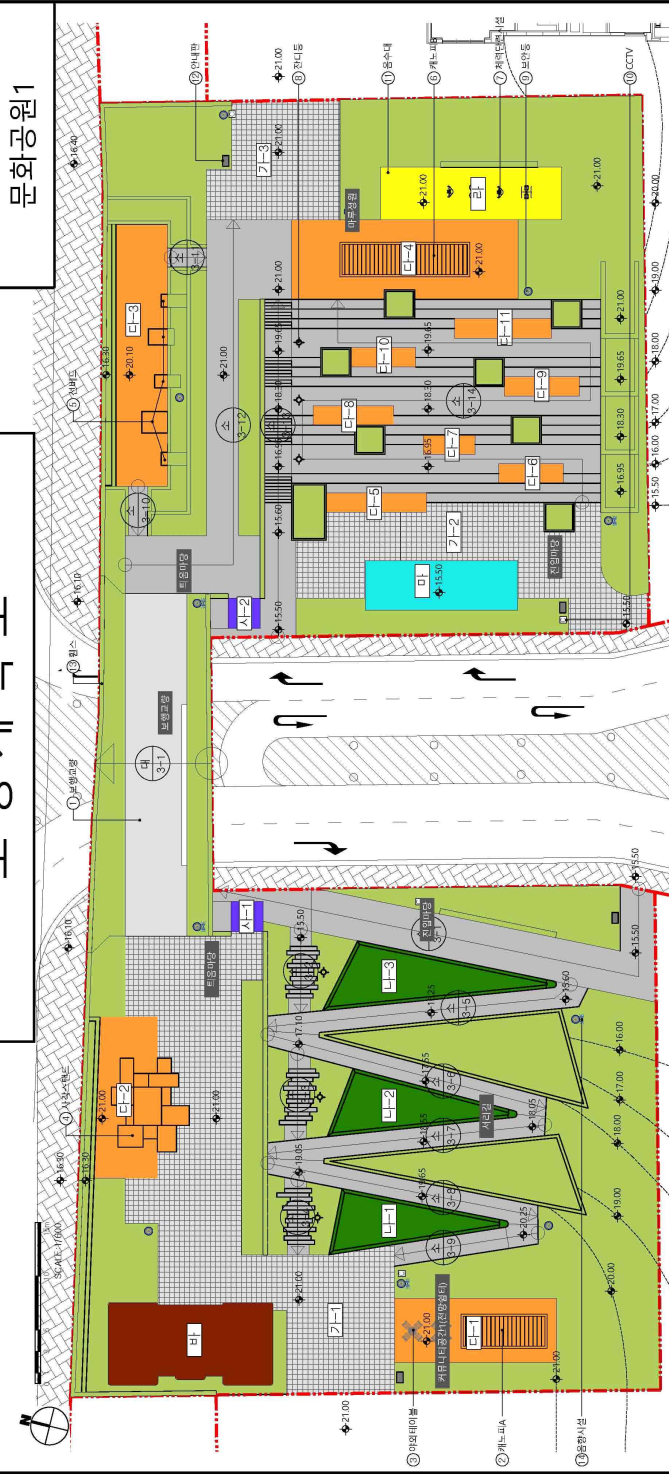
4. 공원조성계획(변경) 결정조서 및 도면: 따로 붙임

- ※ 첨부된 도면 등 (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으로 측량 또는 그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5.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공원조성과(☎2133-2074), 서초구청 공원녹지과(☎2155-6861)

조성계획도



민화공원1

시설투비계획표

구분	시정형	부호	부지면적(㎡)	공작물(기)	비고
기단시설	총 계		5,286.00	48	
	도로	가-1	1,950.00(931.000)	1	도로용비
	광장	가-2	1,176.00(931.000)	1	도로용비
보행공간	총 계		447.28		
	보행공간	가-3	202.00		
	보행공간	가-4	122.37		
조경시설	총 계		181.89	1	
	수경시설	나-1	52.29		
	수경시설	나-2	27.30		
휴양시설	총 계		71.01	10	
	휴양시설	다-1	50.32	10	
	휴양시설	다-2	90.00	1	
기단시설	총 계		116.76		
	기단시설	다-3	152.01	4	
	기단시설	다-4	16.74		
관리시설	총 계		10.80		
	관리시설	나-3	8.64		
	관리시설	나-4	12.00		
관리시설	총 계		16.80	30	
	관리시설	나-1	8.00	1	
	관리시설	나-2	8.00	2	
관리시설	총 계		100.00		
	관리시설	다-5	100.00		
	관리시설	다-6	100.00		
관리시설	총 계		68.91		
	관리시설	나-1	8.00		
	관리시설	나-2	8.00		
관리시설	총 계		2,081.28		
	관리시설	다-7	2,081.28		
	관리시설	다-8	2,081.28		
관리시설	총 계		5,200.00		
	관리시설	다-9	5,200.00		
	관리시설	다-10	5,200.00		
관리시설	총 계		465.00		
	관리시설	다-11	465.00		
	관리시설	다-12	465.00		
관리시설	총 계		2,915.72(2,991.00)		
	관리시설	다-13	2,915.72(2,991.00)		
	관리시설	다-14	2,915.72(2,991.00)		
관리시설	총 계		55.14		
	관리시설	다-15	55.14		
	관리시설	다-16	55.14		

반포 주공1단지 (1,2,4주구) 문화공원1 조성계획결정(최초)조서

1. 총괄표 (위치 :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1214번지 일대)

구 분	최 초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평면적 (㎡)	
			동수 (동)	비면적 (㎡)	연면적 (㎡)		
계	5,288.00	2,915.72(291.00)		69.91		48	
소계	1,950.66(291.00)	1,950.66(291.00)				1	도로중복
기반 시설	1,178.08(291.00)	1,178.08(291.00)					신설
광장	772.58	772.58					신설
조경시설	181.89	181.89					신설
휴양시설	549.32	549.32				10	신설
운동시설	82.12	82.12				4	신설
교양시설	65.02	65.02					신설
편익시설	69.91	69.91		69.91			신설
관리시설	16.80	16.80				33	신설
누지 및 기타	2,081.28						신설
시설률 (법정 제한없음)							$(2,915.72/5,288.00) \times 100 = 55.14\%$
건폐율 (법정 20%)							$(69.91/5,288.00) \times 100 = 1.32\%$

2. 시설조서

구 분	최 조										비 고
	부 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합 계			5,288.00	2,915.72(291.00)			69.91		48		
소 계			1,950.66(291.00)	1,950.66(291.00)					1		
	도 로		1,178.08(291.00)	1,178.08(291.00)							도로중복
	가	3개소	772.58	772.58							신설
광 장	가-1	반포동 1214번지 일대	447.28	447.28							신설
	가-2	반포동 1214번지 일대	202.93	202.93							신설
	가-3	반포동 1214번지 일대	122.37	122.37							신설
보행교량	①	복측도로							1		신설
소 계			181.89	181.89							
조 경 시											

구 분	최 조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설	나	3개소	181.89	181.89							신설
	나-1	반포동 1214번지 일대	53.28	53.28							신설
	나-2	반포동 1214번지 일대	57.30	57.30							신설
	나-3	반포동 1214번지 일대	71.31	71.31							신설
후 양 시 설	소계		549.32	549.32					10		신설
	다	4개소	549.32	549.32							신설
	다-1	반포동 1214번지 일대	90.00	90.00							신설
후 양 시	다-2	반포동 1214번지 일대	100.46	100.46							신설
	다-3	반포동 1214번지 일대	116.76	116.76							신설

구	분	최 조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다-4	반포동 1214번지 일대	152.81	152.81								신설
		다-5	반포동 1214번지 일대	16.74	16.74								신설
		다-6	반포동 1214번지 일대	10.80	10.80								신설
		다-7	반포동 1214번지 일대	8.64	8.64								신설
		다-8	반포동 1214번지 일대	13.50	13.50								신설
		다-9	반포동 1214번지 일대	12.60	12.60								신설
		다-10	반포동 1214번지 일대	10.80	10.80								신설
		다-11	반포동 1214번지 일대	16.21	16.21								신설
	캐노피A	㉔	다-1									1	신설

구 분	최 조										비 고
	부 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응답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③	다-1							2		신설
	④	다-2							1		신설
	⑤	다-3							5		신설
	⑥	다-4							1		신설
	소 계		82.12	82.12					4		
	라	반포동 121내방지 일대	82.12	82.12							신설
	⑦	라							4		신설
	소 계		65.02	65.02							
	안양시청										
	교 양 시 청										

구 분	최 조										비 고	
	부 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아외무대	마	반포동 1214번지 일대	65.02	65.02							신설	
	소계		69.91	69.91			69.91					건축물
화강길	바	반포동 1214번지 일대	69.91	69.91								
	소계		16.80	16.80					33			
엘리베이터	사	2개소	16.80	16.80							신설	
	사-1	반포동 1214번지 일대	8.40	8.40								신설
	사-2	반포동 1214번지 일대	8.40	8.40								
	소계											

편 의 시 설

관 릐 시 설

구 분	최 조										비 고
	부 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잔디등	⑧	전지역							6	신설	
보안등	⑨	전지역							11	신설	
CCTV	⑩	전지역							4	신설	
음수대	⑪	마							1	신설	
안내판	⑫	전지역							4	신설	
벤치	⑬	전지역							1	신설	
음향시설	⑭	전지역							6	신설	
소 계			2,081.28								
누 지 면적 기타		반포동 1214번지 일대	2,081.28							신설	

관 리 시 설

3. 도로조서
- 공원시설 계획도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합 계				377.3	1,178.08(291.00)					
당초	대로	소 계				10.9	291.00				
		3	1	30	10.9	291.00	도시 계획도로	공원경계	공원경계		
	* 도시계획도로는 부지면적에는 산입, 시설면적에는 ()로 표시하여 미 산입시킴으로서 시설율에 미포함.										
	소로	소 계				366.4	1,178.08				
		3	1	3.0-4.0	48.0	175.44	산책로	공원경계	공원경계	신설	
		3	2	3.0	7.8	17.36	산책로	소로 3-1	소로 3-5	신설	
		3	3	3.0	8.0	17.94	산책로	소로 3-6	소로 3-7	신설	
		3	4	3.0	7.0	15.99	산책로	소로 3-8	광장 가-1	신설	
		3	5	2.0	28.7	58.25	산책로	소로 3-1	녹지	신설	
		3	6	2.0	26.7	52.26	산책로	녹지	녹지	신설	
		3	7	2.0	25.9	50.87	산책로	녹지	녹지	신설	
		3	8	2.0	25.5	49.82	산책로	녹지	녹지	신설	
		3	9	2.0	13.5	26.95	산책로	녹지	광장 가-1	신설	
		3	10	1.8	3.2	8.28	산책로	휴게 다-3	소로 3-12	신설	
		3	11	1.8	3.6	6.48	산책로	휴게 다-3	소로 3-12	신설	
3		12	5.4-7.9	42.2	193.52	산책로	녹지	광장 가-3	신설		
3	13	2.5	31.4	91.95	산책로	공원경계	소로 3-12	신설			
3	14	3.5	94.9	412.97	산책로	광장 가-2	휴게 다-4	신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264호

서울특별시 문화유산 지정 고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0조(시·도지정문화유산의 지정 및 시·도등록문화유산의 등록 등),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7조(시지정유산)·제10조(지정의 고시 및 통지)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서울특별시 문화유산 지정 사실을 고시합니다.

2024년 5월 30일
서울특별시

1. 서울특별시 문화유산 지정 개요
가. 지정 대상

지정 종별	지정 명칭	수량	규격(cm)	조성연대	소재지(소유자)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유산 제583호	김홍도 필 송석원시사야연도 및 이인문 필 송석원시회도 (金弘道 筆 松石園詩社夜宴圖 및 李寅文 筆 松石園詩會圖)	1건 2점	25.5×31.8 25.5×31.9	1791년경	종로구 (김영무)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유산 제584호	제주십이경도 (濟州十二景圖)	12점	56.2×35.3	조선 후기	종로구 (이호재)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유산 제585호	분청사기 선각박지 모란절지문 호 (粉靑沙器 線刻剝地 牡丹折枝文 壺)	1점	높이 27.9 구경 13.1 저경 12.7	조선시대	마포구 (금성문화재단)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유산 제586호	묘각사 아미타삼존도불감 (妙覺寺 阿彌陀三尊圖佛龕)	1점	(불감) 31.7×24.0×2.0 (아미타삼존도) 27×24 (신중도 2폭) 각 27×11	조선 후기	종로구 (대한불교관음종 묘각사 주지 이무웅)

지정 종별	지정 명칭	수량	규격(cm)	조성연대	소재지 (소유자)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유산 제587호	진재해 필 조문명 초상 (秦再奚 筆 趙文命 肖像)	1점	(그림) 120×60 (전체) 66.4×74.6	1728년	종로구 (마아트옥션)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유산 제588호	만력을유 사마방목 (萬曆乙酉 司馬榜目)	1책 (37장)	31×19.8	1585년 (선조 18)	종로구 (성균관대학교)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유산 제589호	만력기축 증계증광 사마방목 (萬曆己丑 宗系增廣 司馬榜目)	1책 (37장)	28.2×19.5	1589년 (선조 22)	종로구 (성균관대학교)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유산 제590호	황여일 사초 (黃汝一 史草)	12책	24.5×18.5 등	조선시대 (1587~1589년)	종로구 (성균관대학교)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유산 제591호	문선 (文選)	18권 15책	32.5×21	1509년 (중종 4)	종로구 (성균관대학교)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유산 제592호	위정공간록 (魏鄭公諫錄)	5권 2책	36×21.8	1542년 (중종 37)	종로구 (성균관대학교)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유산 제593호	완영일록 (完營日錄)	8책	19.5×13.7	조선시대 (1833~1834년)	종로구 (성균관대학교)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유산 제594호	양금신보 (梁琴新譜)	1책 (26장)	32.2×21.0	1610년 (광해 2)	종로구 (서울특별시)

※ 「국가유산기본법」 및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에 따라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는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유산’ 으로 명칭을 변경함.

나. 지정 사유

【김홍도 필 송석원시사야연도 및 이인문 필 송석원시회도(金弘道 筆 松石園詩社夜宴圖 및 李寅文 筆 松石園詩會圖)】

<김홍도 필 송석원시사야연도>는 1791년 6월 15일에 천수경(千手經, ?~1818)의 후원(後園)

인 송석원(松石園, 인왕산 자락 옥류동 소재)에서 열린 시회를 기념하고자 제작된 《옥계청유첩(玉溪淸遊帖)》에 실린 작품으로 현재 상태는 표구되어 죽절형 유리 액자에 넣어져 있다. 화면에는 조선 후기의 전형적인 사의적 수지법을 이용해 여러 그루의 나무가 그려져 있으며, 특히 우측에는 나무에 둘러싸인 초가집이 표현되어 있고 안쪽의 뜰에는 9명의 선비가 모임을 갖는 모습이 보인다. 달이 표현되어 있어서 시간을 짐작할 수 있으며, 어슴푸레한 대기를 담묵으로 처리하였다. 그리고 깔끔한 필묵법과 경물의 강약 표현 등은 전형적인 김홍도의 화풍이다. 좌측 상단에는 마성린(馬聖麟, 1727~1798)의 관지(款識)와 제시(題詩)가 있다. 이 작품은 제작 시기를 19세기로 추정하는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금오계첩》의 모본이 되는 등, 아회도의 한 형식으로 사용되었다.

<김홍도 필 송석원시사야연도>는 제작 시기, 제작 동기, 제작자 등이 확실하며, 여항문인의 대표적인 시사인 송석원시사를 표현한 회화라는 점, 그리고 김홍도의 40세 후반 ~ 50세경의 회화 경향을 보여주는 완성도 높은 작품이라는 점에서 서울시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이 가능하다.

<이인문 필 송석원시회도>는 송석원 일대의 실경과 시회의 장면을 그린 그림이다. 이 그림은 1791년 6월 15일, 천수경의 집 후원에서 가진 시모임을 기념하여 만든 《옥계청유첩》에 김홍도의 작품(<송석원시사야연도>)과 함께 실렸다. 절벽처럼 보이는 큰 바위를 배경으로 넓게 자리 잡은 암반 위에 시회의 참가자들이 자유스럽게 나누어 앉아 시모임을 즐기고 있는 그림이다. 암반 뒤편으로는 인왕산 정상에 능선이 오른쪽으로 이어지며, 그 사이사이를 수채화처럼 가볍게 채색하였는데, 봉우리 부분을 밝게 남겨놓아 입체감 있는 변화를 주었다. 화면의 중단 오른쪽 공간은 옥류동에 해당하며, 이곳에 사는 사람들의 가옥이 드문드문 보인다. 간결하면서도 성근 소나무가 그 사이를 메우며 구체적인 실경의 공간을 설명해주고 있다.

<이인문 필 송석원시회도>는 40대 후반인 이인문의 개성적인 화풍이 돋보이는 실경산수화이며, 1791년의 제작연도가 파악되는 기년작(紀年作)이다. 아울러 《옥계청유첩》의 기록을 통해 평민 시인들이 주도한 그림의 제작 배경과 경위도 알 수 있고, 그림 속 실경의 경관도 찾아 비교할 수 있어 매우 중요한 사료적 가치를 지닌 그림이다. 아울러 보존 상태도 양호하고, 원형의 상태도 잘 유지하고 있어 지정대상으로서의 가치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

【제주십이경도(濟州十二景圖)】

<제주십이경도>는 조선 후기, 1694~1696년 제주목사를 역임한 이익태(李益泰, 1633~1704)가 제주도의 명승 10경을 꼽고 화공을 시켜 제작한 ‘탐라십경도(耽羅十景圖)’를 주제로 하였다. 이익태가 품제한 탐라십경은 조천관(朝天館), 별방소(別防所), 성산(城山), 서귀소(西歸所), 백록담(白鹿潭), 영곡(靈谷), 천지연(天池淵), 산방(山房), 명월소(明月所), 취병담(翠屏潭)이다. 이익태는 화면 상단에는 화기(畫記)를 배치하고, 하단에는 그림을 그려서 10폭의 소형 병풍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이 작품은 이익태가 품제한 10경을 모두 갖추고 있으며, 화면 구성 및 화기도 대부분 동일하다. 다만 <제주목도성지도>와 <화북진>의 2장면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이 장면들은 기존에 알려진 탐라십경도 이본에는 없던 것으로, 이익태의 탐라십경도가 후대에 다양하게 변용된 양상을 드러낸다.

현재 전하는 탐라십경도 후모본은 대부분 19세기에 제작되었으나, 이 작품은 이익태가 제작한 1696년의 ‘탐라십경도’, 1703년에 제작된 《탐라순력도》의 양식에 보다 가깝기 때문에, 18세기의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서울시 유형문화유산으로서 지정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분청사기 선각박지 모란절지문 호(粉靑沙器 線刻剝地 牧丹折枝文 壺)】

<분청사기 선각박지 모란절지문 호>는 조선시대 분청사기 항아리이다. 지정대상 항아리의 문양은 선각 기법과 박지 기법으로 장식되었다. 항아리는 구연부와 저부를 제외하고 백토로 분장되었으며, 어깨에는 분장된 백토를 선 위주로 음각하여 문양을 장식하는 선각 기법(線刻技法)으로 시문된 화관문(花瓣文)이 자리한다. 동체에는 모란절지문(牧丹折枝文)이 선각 기법으로 묘사되었고 그 배경은 박지 기법(剝地技法)으로 모두 걷어냈다. 모란절지문은 중앙에 활짝 핀 모란꽃과 줄기가 자리하고 그 양쪽으로 가지가 ‘V’ 자로 벌어지는 모습이다. 각 가지에는 잎사귀가 달려 있으며 유사한 모습의 모란절지문이 동체 양쪽에 대칭으로 자리한다.

현전하는 분청사기 가운데 선각박지 기법으로 문양을 장식한 입호(立壺)는 대체로 높이가 35cm 이상인 경우가 많다. 조사대상처럼 30cm 미만의 중형의 입호 형태의 항아리들은 완형에 가깝게 남아 있는 사례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지정대상 <분청사기 선각박지 모란절지문 호>는 구연부의 일부가 수리되었으나 원래 형태를 유지하고 있고, 문양 등 조형 특징의 희소성과 독창성 등이 15세기 후반 분청사기 제작 경향과 특징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는데 유용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서울시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해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묘각사 아미타삼존도불감(妙覺寺 阿彌陀三尊圖佛龕)】

<묘각사 아미타삼존도불감>은 나무로 제작한 불감 내부에 아미타삼존도를 붙여 봉안한 방형 불감으로, 상자 전면에 양쪽으로 여닫이문을 달아 열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감실의 문을 열면 중앙의 판면 바탕에 우선 비단이 붙어 있고 그 위에 다시 암적색 비단에 아미타삼존과 시방불(十方佛)의 비래(飛來) 장면이 황선묘(黃線描)로 그려진 비단 화면이 붙어 있다. 좌우 문비(門扉) 안쪽에는 역시 암적색 비단 바탕에 각기 신장상이 그려져 있어 중앙의 아미타삼존을 외호하는 구성을 이룬다. 삼면의 불화 테두리에는 2~3겹의 흑색 비단이 둘러져 화면의 외곽을 구획하고 있다.

<묘각사 아미타삼존도불감>은 비록 부분적으로 손상이 있고 기존의 조선 후기 불감에 비해 장식성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완형(完形)을 유지하고 있으며 불감 내부에 아미타삼존도를 그려 넣은 현존 사례가 극히 드문 불감이라는 점이 독특하다. 아미타삼존도는 특히 19세기에 성행한 적색 바탕에 황선묘로 그린 선묘불화라는 점과 불화의 양식 역시 19세기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으며, 목제 불감의 조형 역시 19세기로 추정된다. 불화를 그려 넣은 불감이라는 희소성을 감안해 볼 때 <묘각사 아미타삼존도불감>은 시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하여 보존 관리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진재해 필 조문명 초상(秦再奚 筆 趙文命 肖像)】

조문명(趙文命, 1680~1732)은 1728년 이인좌와 정희량 등이 주도하여 발생한 무신란(戊申亂)의 진압에 공을 세워 분무공신(奮武功臣) 2등에 녹훈되고, 풍릉군(豐陵君)에 책봉되었다. 그리고 병조판서, 대제학, 이조판서를 거쳐 우의정, 좌의정까지 지낸 인물이다. 조문명은 영조와 사돈 간으로 조선 후기 정치문화사상 중요한 인물이다.

<진재해 필 조문명 초상>은 배경을 생략하거나 간단한 화문석이나 교의(交椅), 족좌(足座) 정도를 비치한 일반적인 초상화와는 다른 형식인 점이 가장 주목된다. 주인공 조문명이 높은 산과 바위, 흐르는 개울물 앞에서 큰 소나무를 어루만지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 조문명은 흰색 학창의에 푸른 운건(雲巾)을 착용한 뒤 녹색 당혜(唐鞋)를 신고 반죽장(斑竹杖)을 들고 소나무를 만

지며 앞을 바라보는 모습이다. 이런 모습은 동양 회화에서 흔히 도연명의 귀거래사의 구절 중 ‘무고송이반환(撫孤松而盤桓, 외로운 소나무를 어루만지며 서성이다)’ 을 따서 ‘무송반환도’ 로 많이 그려졌다. 그의 일반적인 공신상 초상화와 함께 자연을 배경으로 하는 사적 초상화가 보존되어 있다는 것은 미술사적, 문화사적으로 의미 있는 일이다. 더욱이 이를 그린 화가 진재해(秦再奚)는 당대 최고의 초상화가로 꼽히던 인물로 회화적 수준도 아주 높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서울시 유형 문화유산으로서 지정할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만력을유 사마방목(萬曆乙酉 司馬榜目)】

<만력을유 사마방목(1585)>은 선조 18년(乙酉, 1585)에 성균관과 장악원에서 사마시(司馬試) 시험을 치르고 이에 합격한 생원시(生員試)와 진사시(進士試) 급제자들의 명단을 등급별로 기록하여 금속활자인 채주갑인자로 편찬한 방목이다. 생원·진사시는 ‘사마시(司馬試)’ 라고도 하며 방목은 보통 ‘사마방목(司馬榜目)’ 이라 한다. 내용은 크게 3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시험 출제자이자 채점관 곧 시관(試官)의 이름이 기록된 ‘은문(恩門)’, 생원시 합격자 이름이 기록된 ‘생원시(生員試)’, 진사시 합격자 명단이 기록된 ‘진사시(進士試)’ 로 나뉘어 있다. 은문은 시험 장소에 따라 ‘일소(一所)’ 와 ‘이소(二所)’ 로 구분하고 있으며 일소(一所)는 성균관의 시관의정부 좌참찬 이산해(李山海)를 비롯하여 6명의 관직과 이름이 그리고 이소(二所)인 장악원(掌樂院)의 시관은 의정부 우참찬 안자유(安自裕)를 비롯하여 6명의 관직과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1585년에 사마시를 치르고 간행한 동일본은 현재 지정대상본이 유일하나 내용이 동일한 필사본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다. 지정대상인 성균관대학교 소장본은 채주갑인자인 금속 활자로 인쇄한 희귀한 자료이다.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만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된 필사본이 전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서울시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

【만력기축 종계증광 사마방목(萬曆己丑 宗系增廣 司馬榜目)】

<만력기축 종계증광 사마방목(1589)>은 선조 22년(己丑, 1589)에 한성부와 장악원에서 조선 건국 이후 이성계의 가계에 대한 중국 명나라 측의 오류를 바로잡은 이른바 ‘종계변무(宗系辨誣)’ 에 관한 문제가 1588년에 이르러 원만히 해결되자 이를 기념하기 위해 이듬해인 1589년에 사마시(司馬試) 시험을 치르고, 이에 합격한 생원시(生員試)와 진사시(進士試) 급제자들의 명단을 등급별로 기록하여 금속활자인 채주갑인자로 편찬한 방목이다. 생원시에는 장원을 한 유헌(黃謹中)을 비롯한 1등 5인, 2등은 홍경신(洪慶臣) 등 25인, 3등은 이호의(李好義) 등 70인 총 100명의 생원 합격자 명단이 수록되어 있다. 이들의 응시 당시의 직역, 이름, 자(字), 생년, 본관, 거주지, 아버지의 품계와 직책 및 성명, 부모의 생존 여부, 형제의 이름 등이 차례대로 실려 있다. 진사시에도 장원 이성길(李成吉)을 비롯한 1등 5인, 2등은 김봉명(金鳳鳴) 등 25인, 3등은 박돈(朴濼) 등 70인의 진사시 합격자 명단이 수록되어 있다.

지정대상인 성균관대학교 소장본은 1589년에 종계변무 처리를 기념하여 사마시를 치르고 채주갑인자로 찍은 금속활자본으로서 희귀한 자료이다. 현재 성균관대에만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서울시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

【황여일 사초(黃汝一 史草)】

<황여일 사초>는 임진왜란 이전에 예문관 관원으로서 춘추관 기사관을 겸임한 황여일이 사관으

로서 그날그날 현장에서 작성한 기록이다. 전체 12책으로 구성되어 있고, 작성 시기는 1587(선조 20)~1589년(선조 22) 사이이다.

해월 황여일의 생애를 요약 기술한 행장(行狀)에는 한림[예문관]에 뽑혀 들어간 후 예문관의 검열, 대교, 봉교를 역임하고, 무자년 가을에 사고(史庫)의 포쇄 임무를 맡았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요컨대, <황여일 사초>는 이름 그대로 1587년 12월 26일로부터 1589년 8월 16일 사이에 예문관 관원이었던 황여일이 춘추관 기사관이라는 겸직을 맡아 작성한 사관의 사초이다. 다만, 최종 완성된 실록과 비교해 볼 때 다소간의 문장 출입이 확인되므로 실록 편찬 과정에 활용된 전형적인 ‘가장사초(家藏史草)’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조선시대 실록 편찬의 전 과정을 놓고 볼 때 이러한 자료를 ‘가장사초’라고 지칭할 수 있어 실록 편수 과정을 살펴보는 데도 매우 중요한 사료로 평가된다. 성균관대학교 소장본 <황여일 사초>는 조선시대 실록 편수 과정에서 작성된 1차 자료일 뿐만 아니라, 조선시대 사관이 현장에서 기록한 기록물로서도 매우 가치 있는 문화유산으로 평가할 수 있다.

【문선(文選)】

『문선』은 중국은 물론 한국, 일본 등에서 과거시험, 문예 창작 또는 외교문서 작성 그리고 국가의 전례 문장 등에 필수적으로 사용된 문헌으로 많이 이용하였다. 따라서 선비들의 필독서가 되어 우리나라에서도 삼국시대 이래 없어서는 안 되는 필독서로 자리매김하였다. 『문선』은 조선 세종과 성종 시기에 금속활자인 경자자로 인출된 바 있으며 선조 이후 목활자인 훈련도감자로 인출하기도 했다. 세종과 성종대에 인출된 판본은 매우 희귀하다. 다만 경상도 관찰사로 있었던 강혼(姜渾, 1464~1519)이 1509년 간행한 목판본이 온전하게 전해지고 있는데 이것이 가장 오래된 판본에 속한다. 성균관대 소장본은 이 경상도 관찰사가 간행한 판본 중 일부인 잔본(殘本)들(卷8, 卷11~卷17, 卷25~卷27, 卷29이 빠진 총 18권 15책)이다.

이 책은 원래 광산김씨예안파종가(光山金氏禮安派宗家) 후조당(後彫堂) 소장본으로 보인다. 각 책마다 ‘後彫堂’이라 목서되어 있으며, 장서인 ‘先相公家藏書’, ‘男富儀謹追記’가 날인되어 있기 때문이다. 후조당은 김부필(金富弼, 1516~1577)의 호이며 안동에 종택이 있다.

성균관대학교 소장 『문선』은 1509년에 경상도 관찰사 강혼이 간행한 것과 같은 판본으로, 비록 결본이나 이 판본은 매우 희귀하고, 시기적으로 오래되었음을 감안하여, 서울시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하여 보존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

【위정공간록(魏鄭公諫錄)】

『위정공간록』은 중국 당(唐)나라 무주(武周) 때 재상이며 장서가인 왕침(王絳, ?~702)이 편찬한 문헌으로 당시 문신인 위징(魏徵, 580~643)이 당나라 태종(太宗)에게 올린 간주(諫奏)와 문대(問對)를 모아 왕침이 5권2책으로 엮은 것이다. 성균관대학교 소장 『위정공간록』은 1507년 조대유가 간행한 목판본을 저본으로 1542년경 동활자(銅活字)인 초주갑인자(初鑄甲寅字)로 인출한 책이다. 표지의 문양은 연당초문이며 상태는 매우 좋은 편이다. 이 초주갑인자본 『위정공간록』은 5권2책의 완질본으로 매우 희귀한 판본이다. 인쇄사적 측면에서 문화유산 가치가 뛰어나다.

표지 뒷면 면지에는 내사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嘉靖二十一年(1542)四月日 內賜承政院右副承旨金緣魏鄭公諫錄一件 命除謝恩 左承旨臣洪手決”이라 목서되어 있으며, 서문면 상단에는 ‘宣賜

之記’, 내사인과 하단에는 ‘先相公家藏書’, ‘男富儀謹追記’이라는 광산김씨 예안과 종가의 소장 장서인이 날인되어 있다. 즉 이 성균관대학교 소장 『위정공간록』은 광산김씨 예안과 종가인 광산김씨 김연(金緣, 1487~1544)이 1542년 중종으로부터 하사받은 내사본으로서 그 가치가 크며 또한 남아 있는 동일본이 매우 희귀한 초주갑인자본이라는 점에서 문화유산 보존의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서울시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하는데 부족함이 없다고 판단한다.

【완영일록(完營日錄)】

『완영일록』은 서유구(徐有榘, 1764~1845)가 전라도관찰사 겸 병마수군절도사 도순찰사 전주부윤(全羅道觀察使兼兵馬水軍節度使都巡察使全州府尹)으로 재임하는 동안 업무일지 형식으로 쓴 문헌이다. 기록된 기간은 1833년 4월부터 1834년 12월까지로 약 1년 9개월이며, 업무 수행 내용과 함께 장계(狀啓)를 비롯하여 관문(關文)·감결(甘結)·보장(報狀) 등 각종 공문서를 필사해 놓았다.

『완영일록』은 조선 후기 감영 일기로는 가장 내용이 풍부하고 완결성을 갖춘 문헌이라 할 수 있다. 『완영일록』의 저자 서유구가 남긴 또 다른 업무일지인 『화영일록』이나, 경상감사 조재호(趙載浩, 1702~1762)의 『영영일기(嶺營日記)』 등과 형식면에서 매우 유사하나 『완영일록』에 수록된 공문서가 가장 많고, 여타 내용면에서도 구체성을 띠고 있다. 『완영일록』은 이미 지역사, 행정사, 사회사 등 다양한 분야에 사료로서 적극 활용되고 있어 사료적 가치가 입증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적 가치에 더해 감영일기로서의 형태적 가치, 다양한 공문서를 수록한 일종의 서식집으로서의 문헌학적 가치도 충분히 평가받을 만한 요소이다.

『완영일록』은 보존상태가 양호하고 결락이 없어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으므로 내용적 가치 평가에서 더 나아가 문화유산 가치도 평가받을 요소가 풍부하다고 판단된다.

【양금신보(梁琴新譜)】

『양금신보』는 조선시대에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남원에 피란 왔던 양덕수(梁德壽, 宣祖~光海, 음악이론가)가 당시 임실 현감으로 있었던 김두남(金斗南, 宣祖~光海)의 도움으로 악보를 만들어 1610년 처음 출간하게 되었는데 편찬자의 성을 따라 『양금신보(梁琴新譜)』라 하고 줄여서 『금보(琴譜)』라고도 하는 악보집이다.

지정대상자료인 서울역사박물관 소장본 『양금신보』는 간기가 있고 출간 내력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목판본으로 임진왜란 전후의 한국음악사 연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음악자료 중 하나이다. 또한 『금합자보(琴合字譜)』(간송미술관 소장)에 없는 <만대엽>과 <중대엽>의 악곡을 골고루 갖추었으므로 17세기 전후의 가곡사 연구에 매우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양금신보』에 나오는 한글들은 17세기 초에 사용되었던 음악 및 국어사 연구에 커다란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귀중한 한글들이라는 점에서 매우 가치 있는 자료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보존상태 역시 양호하여 서울시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다고 사료된다.

- 2. 문화유산 지정 일자 : 서울시보 고시 일자
-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문화재정책과(☎ 02-2133-26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265호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변경 고시

2022. 8. 25.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에서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되고, 서울 특별시고시 제2022-368호('22. 8. 26.)로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5동 77번지 일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 제 1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을 지정하고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변경 고시합니다.

2024년 5월 30일
서울특별시

1. 대상지(변경)

구분	자치구	명칭(가칭)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양천구	신월5동 77번지 일대	신월동 56~78번지	30,079	· 서울특별시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신월동 77번지 일대에 대하여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 등을 위한 구역면적 변경
변경	양천구	신월5동 77번지 일대	신월동 56~80번지	53,820	

2. 권리산정기준일 (변경)

구분	권리산정기준일	면적(㎡)	비 고
기정	2021. 12. 30.	30,079	· 기존 구역 권리산정기준일 변경없음 · 구역면적 변경으로 추가된 필지에 한하여 적용
변경	2021. 12. 30. (기존 구역) 2024. 5. 30. (추가 구역)	53,820	

3. 지정사유(변경 없음)

- 기존 세대수가 증가될 경우 지역주민들의 사업비 부담 증가에 대한 피해 최소화 및 투기억제를 위하여 정비사업을 통하여 분양받을 건축물이 토지의 분할, 단독·다가구주택의 다세대주택 전환, 토지와 건축물의 분리취득, 건축물의 신축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일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함

4.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 (변경 없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6조 제2항 규정에 따름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되는 필지에 한하여 적용하되, 구역지정에서 제외되는 필지에 대한 권리산정기준일은 자동 실효

5. 관계도면 : 붙임 참조

6.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02-2133-7188) 또는 양천구 도시계획과(☎02-2620-35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본 고시는 향후 주택재개발사업 추진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상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일만 정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신축, 토지분할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님
- ※ 첨부된 관계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관계도면
- 신월5동 77번지 일대



**신월5동77구역
공공재개발 정비사업**

구역계 변경 도면

범례

- 구역계 (기정)
- 구역계 (변경)
- 지적선

Scale : 1/3,000

0 20 50 100 200m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266호

**방화2동 592-1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모아타운 관리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2동 592-1번지 일대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을 위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의2(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 승인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5월 30일
서울특별시

1. 관리지역의 규모 및 정비방향

가. 관리지역의 명칭 : 방화2동 592-1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나. 관리지역 지정요건 충족 여부

구분	위치	관리계획 요건	노후·불량건축물	비고
기준	강서구 방화2동 592-1번지 일대	대상지역의 면적이 10만㎡ 미만일 것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해당 지역의 전체 건축물 수의 2분의 1 이상일 것	-
현황		66,975㎡	전체 : 243동 노후·불량 : 178동(73.3%)	

다. 정비방향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비기반시설 계획과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위한 공동이용시설 계획을 통해 저층 노후 주거지의 계획적 공동개발 유도

2. 관리지역의 지정 및 관리계획

가. 관리지역의 지정

■ 관리지역 지정 조서

구분	관리지역 명칭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규	방화2동 592-1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강서구 방화2동 592-1번지 일대	-	증) 66,975	66,975	-

나. 토지이용계획(안)
1) 사업시행구역별 정비(안)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합 계		66,975	100.0	-		
사업 가능 구역	공동주택 용지	소 계	48,446	72.3	-	
		A-1	사업가능1구역(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11,073	16.5	-
		A-2	사업가능2구역(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4,746	7.1	-
		A-3	사업가능3구역(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8,997	13.4	-
		A-4	사업가능4구역(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10,763	16.1	-
		A-5	사업가능5구역(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6,925	10.3	-
		A-6	사업가능6구역(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5,942	8.9	-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3,063	4.6	-	
		-	도 로	3,063	4.6	-
	사업추진구역	소 계	1,478	2.2	-	
B-1		방화동 584-1(서울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	1,478	2.2	-	
사업가능구역 외	소 계	13,988	20.9	-		
	D-1	대지 등	8,393	12.5	-	
	D-2	도 로	5,429	8.1	-	
	D-3	구립 해담어린이집	166	0.3	-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2) 통합 정비(안)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합 계		66,975	100.0	-		
사업 가능 구역	공동주택 용지	소 계	50,472	75.4	-	
		A-1	사업가능1구역(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15,995	23.9	-
		A-2	사업가능2구역(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17,193	25.7	-
		A-3	사업가능3구역(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17,284	25.8	-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3,279	4.9	-	
		-	도 로	2,979	4.5	-
		C-1	공공시설	300	0.4	-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사업추진구역	소 계	1,478	2.2	-
	B-1 방화동 584-1(서울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	1,478	2.2	-
사업가능구역 외	소 계	11,746	17.5	-
	D-1 대지 등	8,584	12.8	-
	D-2 도로	3,162	4.7	-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다. 정비기반시설 ·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안)

1) 도로 계획(안)

가) 사업시행구역별 정비(안)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2	22	8	국지도로	430	방화동 564-109	방화동 600-59	일반도로	금녕화로11길 (폭원8m→12m)
변경	중로	3	22	8~12	국지도로	330	방화동 564-4	방화동 600-59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38	6	국지도로	220	방화동 581-7	방화동 545-3	일반도로	양천로14길 (폭원6m→10.5m)
변경	소로	1	38	10.5	국지도로	110	방화동 581-7	방화동 582-7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33	6	국지도로	105	방화동 594-8	방화동 592-136	일반도로	금녕화로7길 (폭원6m→10m)
변경	소로	1	33	6~10	국지도로	105	방화동 594-8	방화동 592-136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34	6	국지도로	90	방화동 564-4	방화동 564-4	일반도로	금녕화로11길 (폭원6m→10.5m)
변경	소로	1	34	6~10.5	국지도로	35	방화동 564-4	방화동 564-4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23	8	국지도로	245	방화동 592-133	방화동 544-2	일반도로	금녕화로7길 (폭원8m→10m)
변경	소로	1	23	10	국지도로	145	방화동 592-133	방화동 583-33	일반도로	
신설	소로	1	2	10	국지도로	85	방화동 593-25	방화동 593-72	일반도로	신설도로 (폭원10m)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 2-22	중로 3-22	도로 확폭, 시종점 변경	도로 확폭 및 도로 폭원에 맞게 조정
소로 3-38	소로 1-38	도로 확폭, 시종점 변경	도로 확폭 및 도로 폭원에 맞게 조정
소로 3-33	소로 1-33	도로 확폭	도로 확폭 및 도로 폭원에 맞게 조정
소로 3-34	소로 1-34	도로 확폭, 시종점 변경	도로 확폭 및 도로 폭원에 맞게 조정
소로 2-23	소로 1-23	도로 확폭, 시종점 변경	도로 확폭 및 도로 폭원에 맞게 조정
-	소로 1-2	도로 신설	공동주택용지 진출입구 확보에 따른 도로 개설

나) 통합 정비(안)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2	22	8	국지도로	430	방화동 564-109	방화동 600-59	일반도로	금녕화로11길 (폭원8m→12m)
변경	중로	3	22	8~12	국지도로	330	방화동 564-4	방화동 600-59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38	6	국지도로	220	방화동 581-7	방화동 545-3	일반도로	양천로14길 (폭원6m→12m)
변경	중로	3	38	12	국지도로	110	방화동 581-7	방화동 582-7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34	6	국지도로	90	방화동 564-4	방화동 564-4	일반도로	금녕화로11길 (폭원6m→8m)
변경	소로	2	34	8	국지도로	55	방화동 564-4	방화동 564-4	일반도로	
폐지	소로	2	23	8	국지도로	245	방화동 592-133	방화동 544-2	일반도로	폐지
폐지	소로	3	33	6	국지도로	105	방화동 594-8	방화동 592-136	일반도로	폐지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 2-22	중로 3-22	도로 확폭, 시종점 변경	도로 확폭 및 도로 폭원에 맞게 조정
소로 3-38	중로 3-38	도로 확폭, 시종점 변경	도로 확폭 및 도로 폭원에 맞게 조정
소로 3-34	소로 1-34	도로 확폭, 시종점 변경	도로 확폭 및 도로 폭원에 맞게 조정
소로 2-23	-	도로 폐지	구역 통합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도로 폐지
소로 3-33	-	도로 폐지	구역 통합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도로 폐지

－ 도로 입체적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시설명	위치	구분	규모		비고
					당초	변경	
변경	소로 2-34	일반 도로	방화동 564-4	길이	-	55m	· 도시계획시설 - 도로(일반도로) 485㎡ 입체결정 · 비도시계획시설 - 지하에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설치
				폭	-	8m	
				높이	-	지표면 -1.2m ~ 지상부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 도로 입체적 결정 사유서

도로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소로 2-34	· 도시계획시설 : 도로 B=8m, L=55m, H=-1.2m~지상부 · 비도시계획시설 : 지하에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설치	모아주택 1구역(A-1)을 하나의 사업 구역으로 설정하고, 기존 차량통행을 유지하기 위해 입체결정 함

2)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안)

가) 사업시행구역별 정비(안)

구분	설치기준	비고
1	세대당 2.5㎡ × 1.25 이상 설치	구역내
2		구역내

구분		설치기준	비고
3	사업가능3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구역내
4	사업가능4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구역내
5	사업가능5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구역내
6	사업가능6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구역내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나) 통합 정비(안)

구분		설치기준	비고
1	사업가능1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세대당 2.5㎡ × 1.25 이상 설치	구역내
2	사업가능2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구역내
3	사업가능3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구역내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라. 교통계획(안)

구분	계획내용	비고
차량 진출입구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면도로를 통해 차량 진출입 입구 설치 	-
도로확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로 3-22호 : 8m → 12m 소로 1-38호, 소로1-34 : 6m → 10.5m 그 외 도로 : 6~8m → 10m 	-
건축한계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주택용지 : 대지경계로부터 3m 사업가능구역 외 금남화로7길, 금남화로11길 : 대지경계로부터 2m (사업가능구역 보도와의 연결성 및 정합성을 위하여 지정) 도시계획시설 도로와 연계하여 쾌적한 보도공간 조성 	-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 향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서울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교통처리 및 진출입로 계획을 고려한 계획수립 필요

마.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안)

1) 사업시행구역별 정비(안)

도면 표시	구 역 명	위 치	면적(㎡)			사 업 계 획					비고
			계	공동 주택 용지	정비 기반 시설	토지등 소유자	기준 호수	시행자	추진 단계	최초 결정일	
합 계			51,509	48,446	3,063	-	1,201	-	-	-	-
A-1	사업가능1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방화동 564-34 일대	11,803	11,073	730	-	237	-	-	-	-
A-2	사업가능2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방화동 583-38 일대	4,930	4,746	184	-	89	-	-	-	-
A-3	사업가능3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방화동 583-51 일대	9,551	8,997	554	-	222	-	-	-	-
A-4	사업가능4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방화동 593-57 일대	11,751	10,763	988	-	295	-	-	-	-
A-5	사업가능5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방화동 590-14 일대	7,280	6,925	355	-	225	-	-	-	-
A-6	사업가능6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방화동 596-28 일대	6,194	5,942	252	-	133	-	-	-	-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2) 통합 정비(안)

도면 표시	구 역 명	위 치	면적(㎡)			사 업 계 획					비고
			계	공동 주택 용지	정비 기반 시설	토지등 소유자	기준 호수	시행자	추진 단계	최초 결정일	
합 계			53,751	50,472	3,279	-	1,201	-	-	-	-
A-1	사업가능1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방화동 564-34 일대	16,990	15,995	995	-	326	-	-	-	-
A-2	사업가능2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방화동 583-51 일대	18,038	17,193	845	-	447	-	-	-	-
A-3	사업가능3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방화동 596-28 일대	18,723	17,284	1,439	-	428	-	-	-	-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바. 기타(건축협정)에 관한 계획(안)

1) 사업시행구역별 정비(안)

구분		위치	면적(㎡)	통합적용	완화적용
합계		-	51,509	-	-
A-1	사업가능1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방화동 564-34 일대	11,8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의 조경(제42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제44조), 지하층(제53조), 건폐율(제55조), 부설주차장의 설치 (주차장법 제19조)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의 조경(제42조), 건폐율(제55조), 용적률(제58 조), 건축물의 높이 제한(제60 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제61조)
A-2	사업가능2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방화동 583-38 일대	4,930		
A-3	사업가능3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방화동 583-51 일대	9,551		
A-4	사업가능4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방화동 593-57 일대	11,751		
A-5	사업가능5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방화동 590-14 일대	7,280		
A-6	사업가능6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방화동 596-28 일대	6,194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2) 통합 정비(안)

구분		위치	면적(㎡)	통합적용	완화적용
합계		-	53,751	-	-
A-1	사업가능1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방화동 564-34 일대	16,9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의 조경(제42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제44조), 지하층(제53조), 건폐율(제55조), 부설주차장의 설치 (주차장법 제19조)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의 조경(제42조), 건폐율(제55조), 용적률(제58 조), 건축물의 높이 제한(제60 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제61조)
A-2	사업가능2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방화동 583-51 일대	18,038		
A-3	사업가능3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방화동 596-28 일대	18,723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사.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물의 밀도 계획(안)

1) 사업시행구역별 정비(안)

구분	내용		비고
사업가능구역	건폐율	50%이하	A-1, A-2, A-3, A-4, A-5, A-6 (공동주택 용지)
	용적률	기준 250%이하 / 상한 300%이하	
	높이	「공향시설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높이규제 중 '수평표면구역' 적용	
사업추진구역	건폐율	60%이하	B-1 (서울빌라)
	용적률	기준 200%이하 / 상한 250%이하	
	높이	「공향시설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높이규제 중 '수평표면구역' 적용	
사업가능구역 외	건폐율	60%이하	D-1 (대지 등), D-3 (구립 해당어린이집)
	용적률	200%이하	
	높이	「공향시설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높이규제 중 '수평표면구역' 적용	

- 1) 법 제48조 및 제43조의4에 따라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 시에는 법적상한용적률을 초과하여 용적률을 정할 수 있음
- 2) 모이주택사업 시행시 건축물의 규모(높이, 밀도 등)는 향후 위원회 심의를 통해 조정 가능함
-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2) 통합 정비(안)

구분	내용		비고
사업가능구역	건폐율	50%이하	A-1, A-2, A-3 (공동주택 용지)
	용적률	기준 250%이하 / 상한 300%이하	
	높이	「공향시설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높이규제 중 '수평표면구역' 적용	
	건폐율	60%이하	C-1 (공공시설)
	용적률	200%이하	
	높이	「공향시설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높이규제 중 '수평표면구역' 적용	
사업추진구역	건폐율	60%이하	B-1 (서울빌라)
	용적률	기준 200%이하 / 상한 250%이하	
	높이	「공향시설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높이규제 중 '수평표면구역' 적용	

구분	내용		비고
사업가능구역 외	건폐율	60%이하	D-1 (대지 등)
	용적률	200%이하	
	높이	「공항공시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높이규제 중 '수평표면구역' 적용	

- 1) 법 제48조 및 제43조의4에 따라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 시에는 법정상한용적률을 초과하여 용적률을 정할 수 있음
- 2) 모아주택사업 시행시 건축물의 규모(높이, 밀도 등)는 향후 위원회 심의를 통해 조정 가능함
-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아. 건축물의 배치·형태·용도·건축선 등에 관한 계획(안)

1) 건축물의 용도

가) 사업시행구역별 정비(안)

구분	계획내용		비고
A-1, A-2, A-3, A-4, A-5, A-6	유형	•공동주택 용지	-
	허용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법」 제2조제13호, 제14호의 부대·복리시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5호의 공동이용시설	-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나) 통합 정비(안)

구분	계획내용		비고
A-1, A-2, A-3	유형	•공동주택 용지	-
	허용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법」 제2조제13호, 제14호의 부대·복리시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5호의 공동이용시설	-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2) 건축물의 배치·형태·건축선 등에 관한 계획(안)

구분	적용지역	계획내용	비고
건축한계선	A-1~A-6 (공동주택용지)	•대지경계로부터 3m	- 가로·보행환경 개선 및 보행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계획
	사업가능구역 외	•대지경계로부터 2m	- 사업가능구역 보도와의 연결성 및

구분	적용지역	계획내용	비고
	금남화로7길, 금남화로11길변		정합성을 위하여 지정
저층부 가로활성화 배치구간 (공동이용시설)	금남화로11길변	•금남화로11길에 면하여 가로활성화시설 배치	- 커뮤니티가로 활성화를 위한 개방형 공동이용시설 배치 유도 - 관리지역 내 부족한 생활SOC시설 을 고려하여, 모아주택 사업시행 구역 내 개방형 공동이용시설 조성
기타사항	A-1~A-6 (공동주택용지)	•주변 지형을 고려한 배치 및 가로 단절 방지를 위한 옹벽 최소화	- 지형순응형 배치를 통하여 옹벽을 최소 화하여 사업부지의 현황레벨에 맞는 배 치계획 수립 및 가로조성 - 지하주차장 및 지하층 주민공동 시설을 가로배치하여 옹벽 형성 최소화 - 주변 도로레벨을 고려하여 완만한 대지 를 조성하고, 보도와 대지 내 공지는 단차 없이 조성 - 건축한계선으로 조성된 대지 내 공지 에는 공작물, 담장, 계단 등 보행에 지 장을 주는 장치물을 설치 금지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자. 임대주택의 공급 및 인수계획 (안)

1) 사업시행구역별 정비(안)

구분		위치	전체세대	임대주택	임대주택 인수에정자	비고
도면 표시번호	사업구역					
합 계			1,389	204	-	14.7%
A-1	사업가능1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방화동 564-34 일대	276	17	-	6.2%
A-2	사업가능2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방화동 583-38 일대	126	21	-	16.7%
A-3	사업가능3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방화동 583-51 일대	291	67	-	23.0%

구분		위치	전체세대	임대주택	임대주택 인수에정자	비고
도면 표시번호	사업구역					
A-4	사업가능4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방화동 593-57 일대	299	34	-	11.4%
A-5	사업가능5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방화동 590-14 일대	230	44	-	19.1%
A-6	사업가능6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방화동 596-28 일대	167	21	-	12.6%

- 1) 상가의 세대수, 임대주택 공급 세대수 등은 예시로서, 사업 시행 과정에서 결정
 - 2) 임대주택 종류, 인수방법 등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인수예정자와 협의를 통하여 결정
 - 3) 개별 사업시행계획(안) 통합심의 시 세입자 보호대책 마련하여 제출(가로주택정비사업형에 한함)
-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2) 통합 정비(안)

구분		위치	전체세대	임대주택	임대주택 인수에정자	비고
도면 표시번호	사업구역					
합 계			1,460	197	-	13.5%
A-1	사업가능1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방화동 564-34 일대	426	45	-	10.6%
A-2	사업가능2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방화동 583-51 일대	507	68	-	13.4%
A-3	사업가능3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방화동 596-28 일대	527	84	-	15.9%

- 1) 상가의 세대수, 임대주택 공급 세대수 등은 예시로서, 사업 시행 과정에서 결정
 - 2) 임대주택 종류, 인수방법 등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인수예정자와 협의를 통하여 결정
 - 3) 개별 사업시행계획(안) 통합심의 시 세입자 보호대책 마련하여 제출(가로주택정비사업형에 한함)
-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차. 용도지역의 지정 및 변경 계획(안)

1) 사업시행구역별 정비(안)

구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66,975	-	66,975	100.0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63,131	감) 46,940	16,191	24.2	-
제2종일반주거지역	3,844	감) 1,506	2,338	3.5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증) 48,446	48,446	72.3	-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2) 통합 정비(안)

구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66,975	-	66,975	100.0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63,131	감) 48,966	14,136	21.1	-
제2종일반주거지역	3,844	감) 1,506	2,338	3.5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증) 50,472	50,472	75.4	-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카. 특별건축구역에 관한 계획(안)

1) 특별건축구역 지정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위치	적용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특별건축구역	방화동 592-1번지 일대	A-1~A-6 (공동주택용지)	-	증) 56,663	56,663	-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2) 특별건축구역 완화 사항

구분	내용	비고
건축법	대지의 조경(제42조), 건폐율(제55조), 용적률(제56조), 대지 안의 공지(제58조), 건축물의 높이 제한(제60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제61조) 등	-
주택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공동주택의 배치(제10조), 기준척도(제13조), 비상급수시설(제35조), 난방설비 등(제37조) 등	-
통합적용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의 설치	-

3. 관련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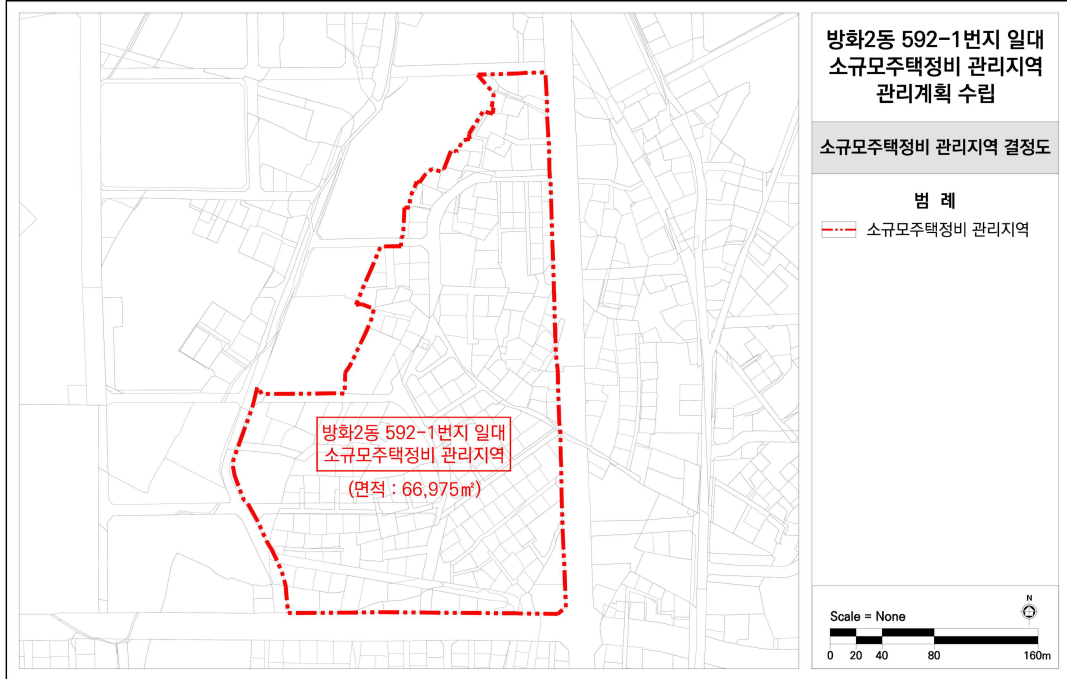
- 붙임 참조(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

4. 관계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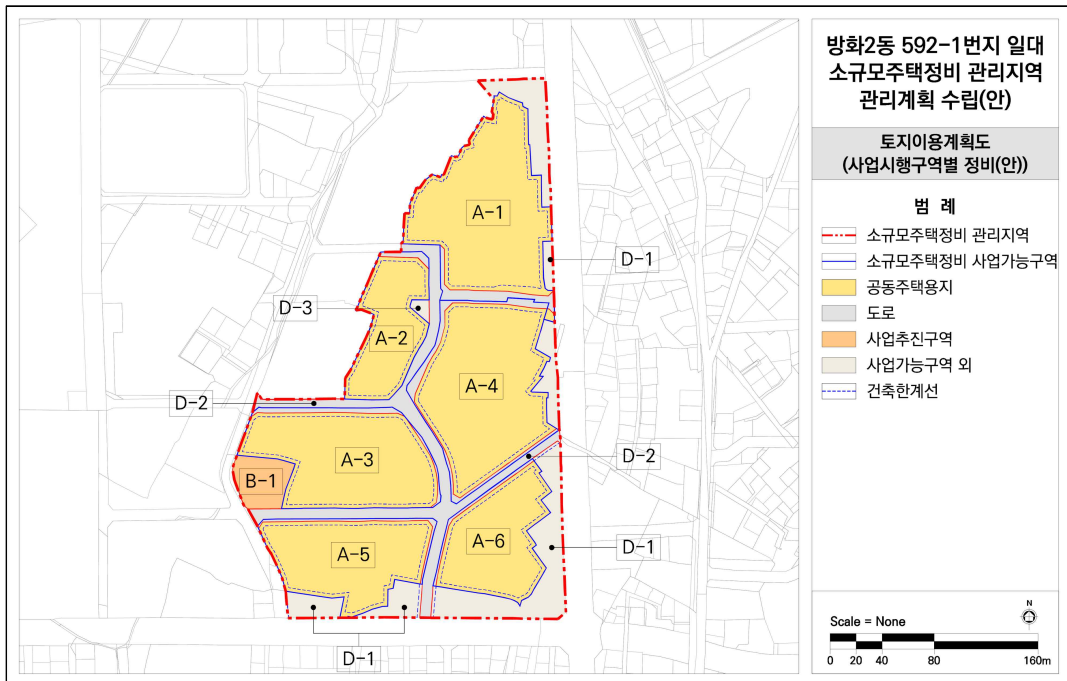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 전략주택공급과(☎ 02-2133-8234) 및 강서구 원도심활성화추진단(☎ 02-2600-6047)에 비치·열람하고 있습니다.
-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결정도서 참조
-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관리계획 및 관리지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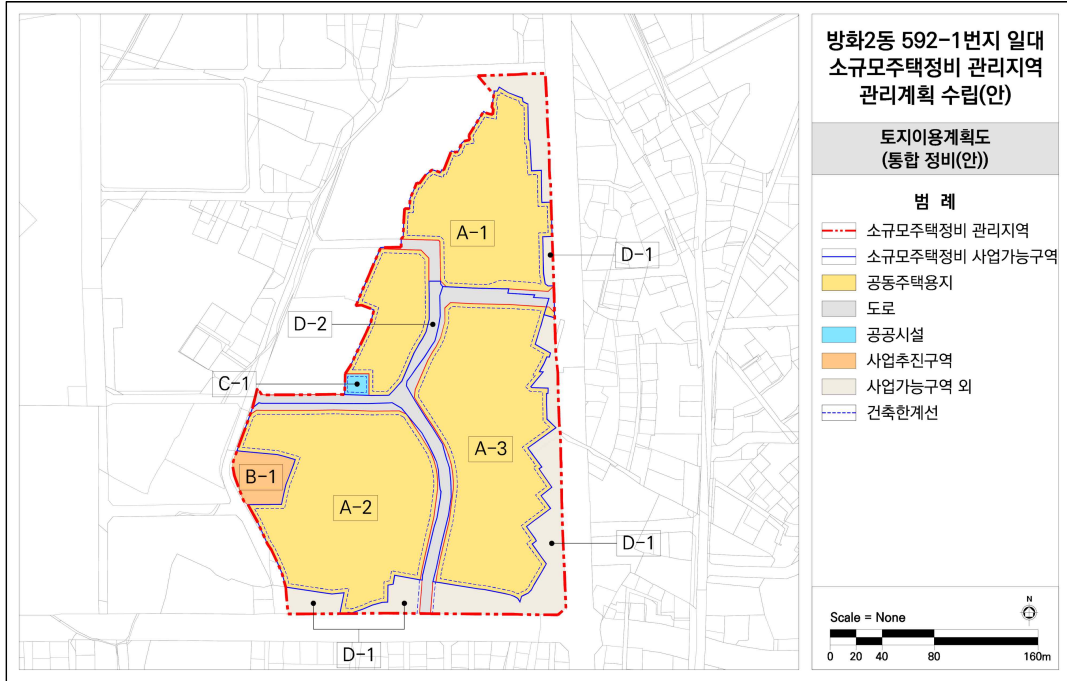
▪ 관리지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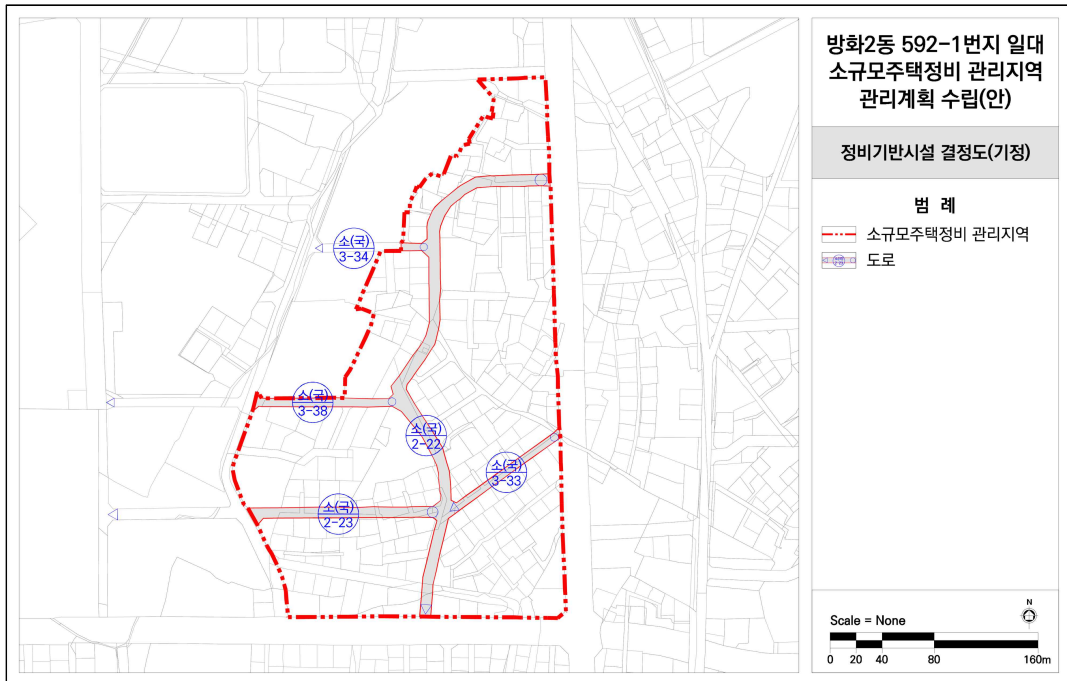
▪ 토지이용계획 - 사업시행구역별 정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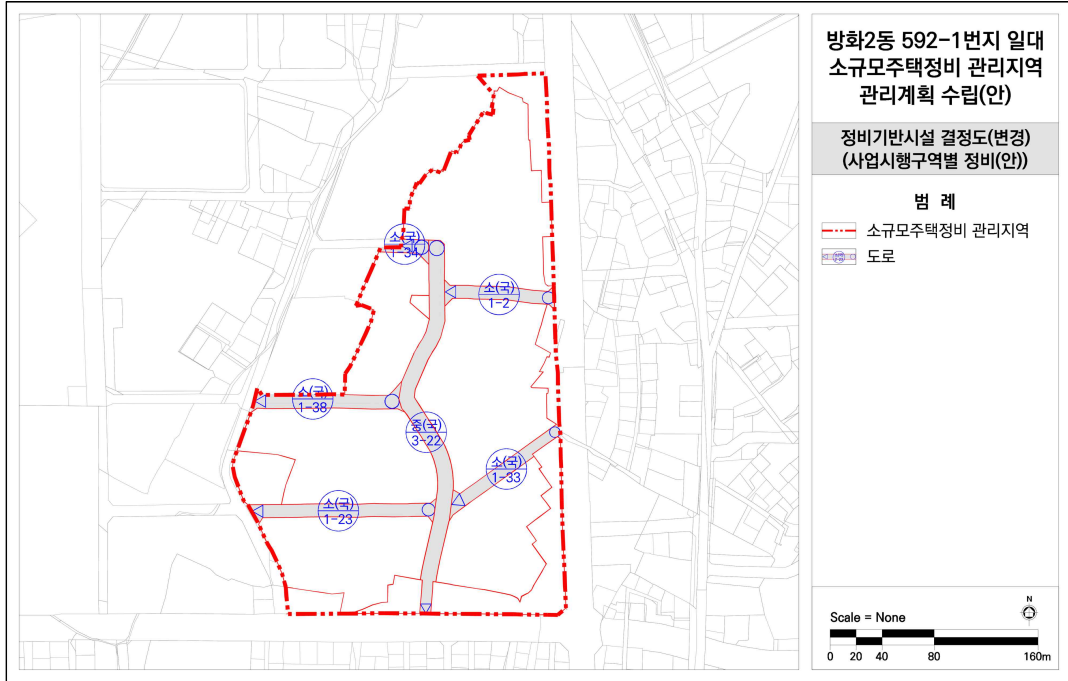
토지이용계획 - 통합 정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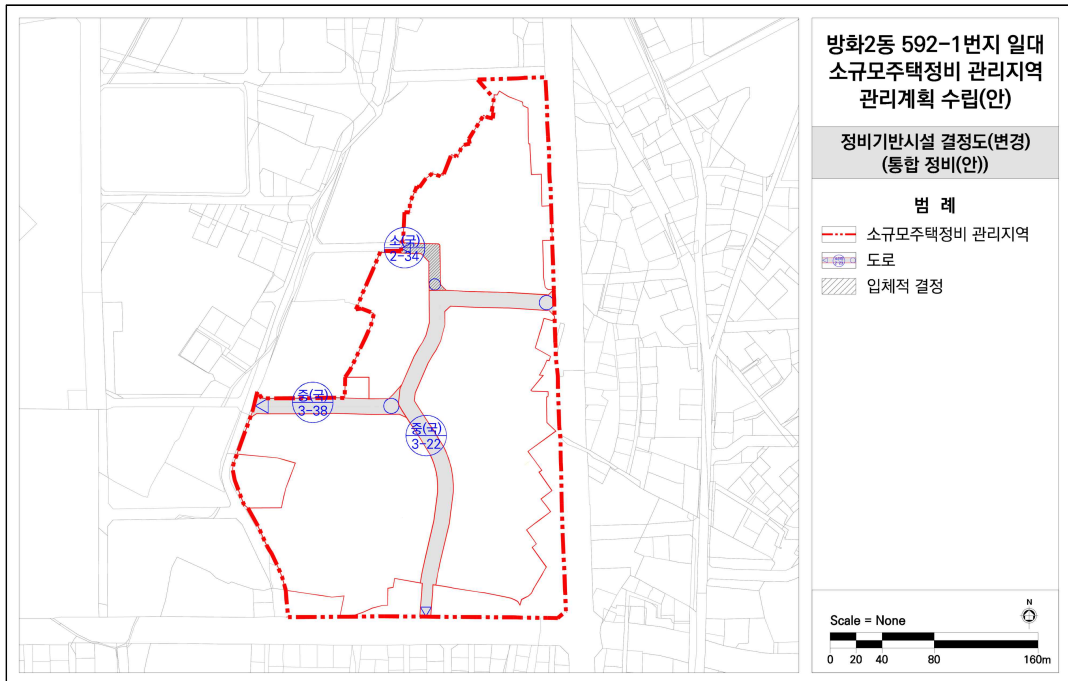
정비기반시설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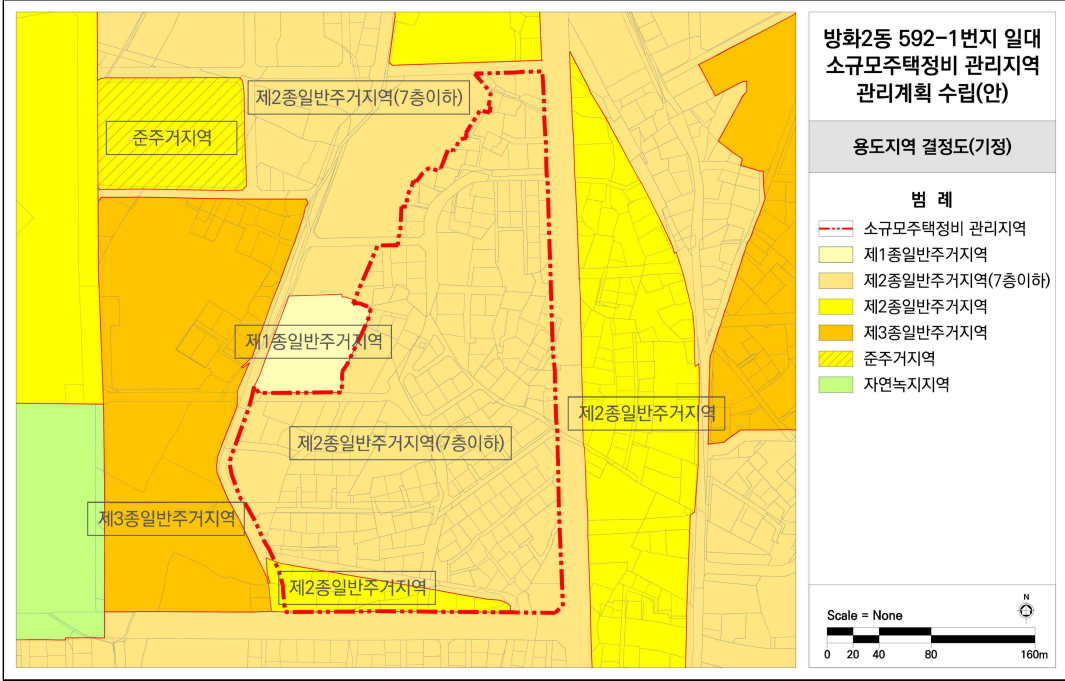
정비기반시설 결정도(변경) - 사업시행구역별 정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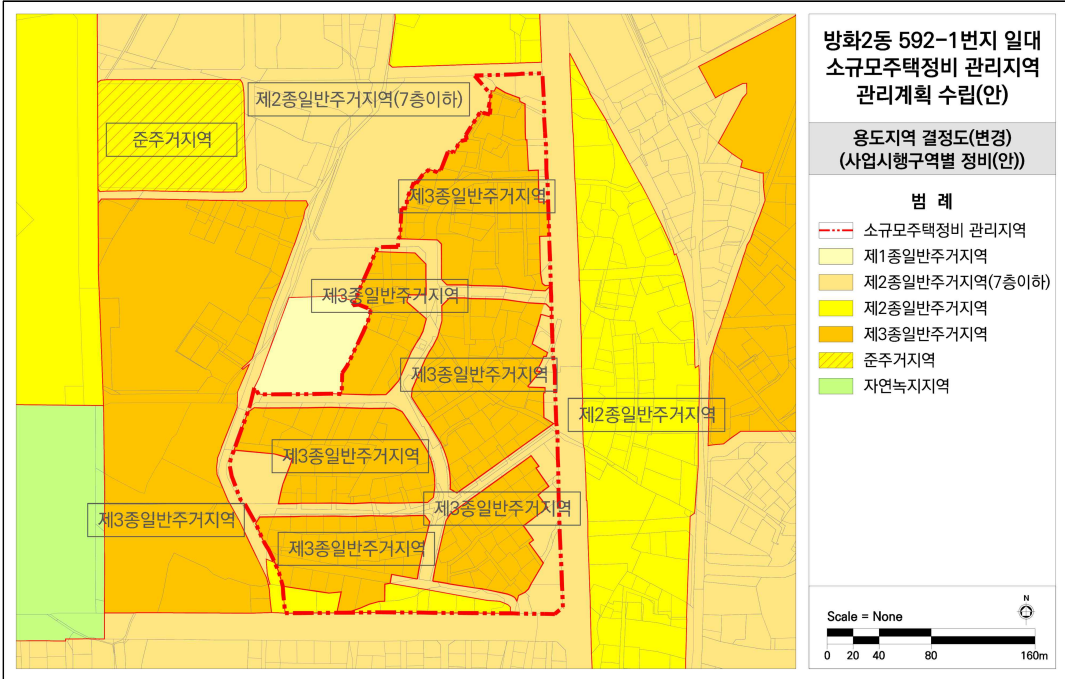
정비기반시설 결정도(변경) - 통합 정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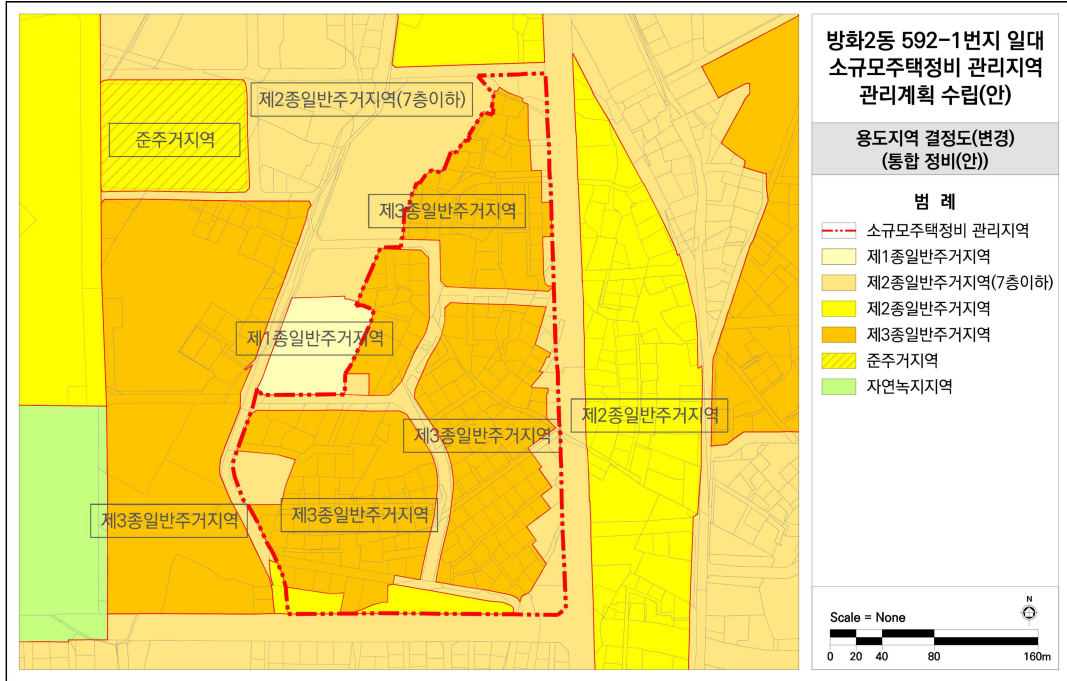
■ 용도지역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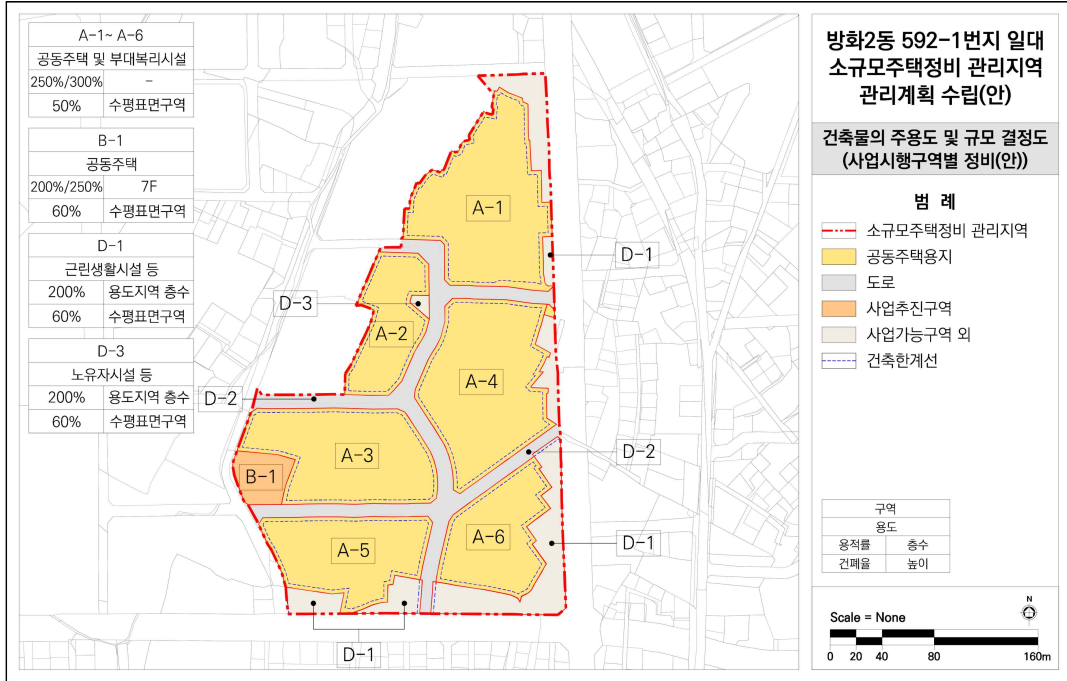
■ 용도지역 결정도(변경) - 사업시행구역별 정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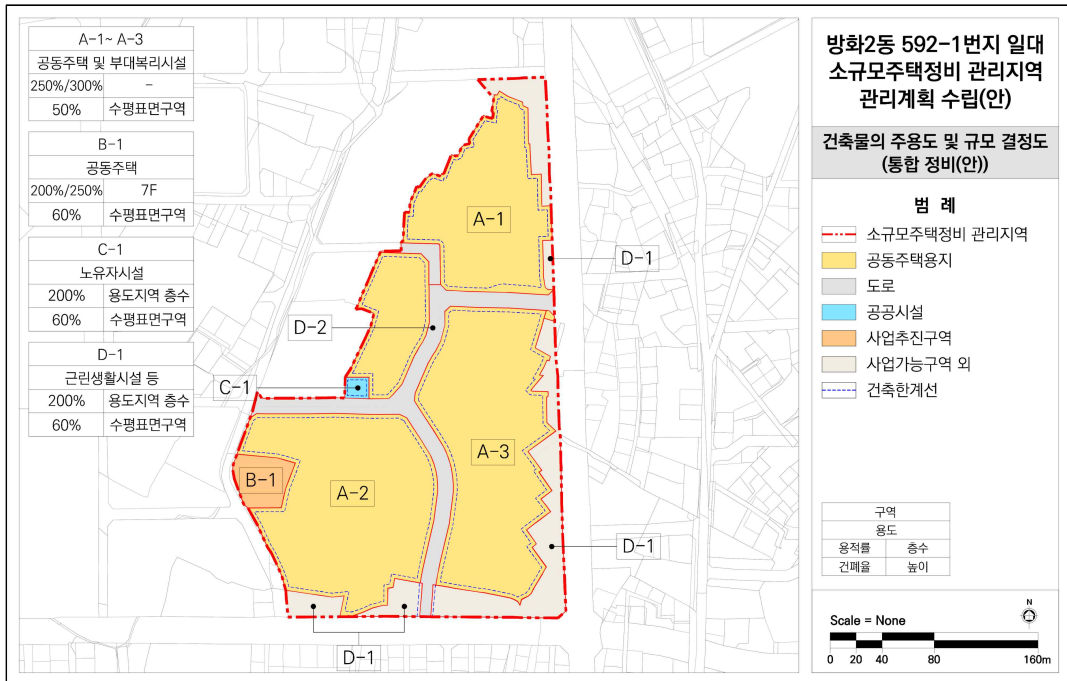
■ 용도지역 결정도(변경) - 통합 정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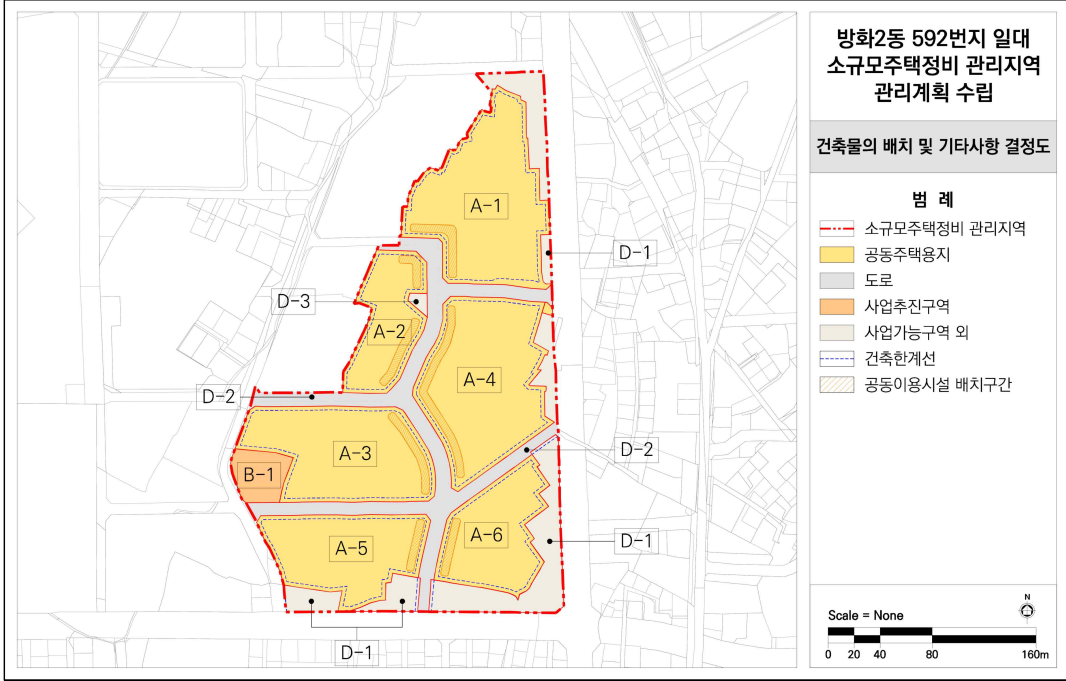
■ 건축물의 주용도 및 규모 결정도 - 사업시행구역별 정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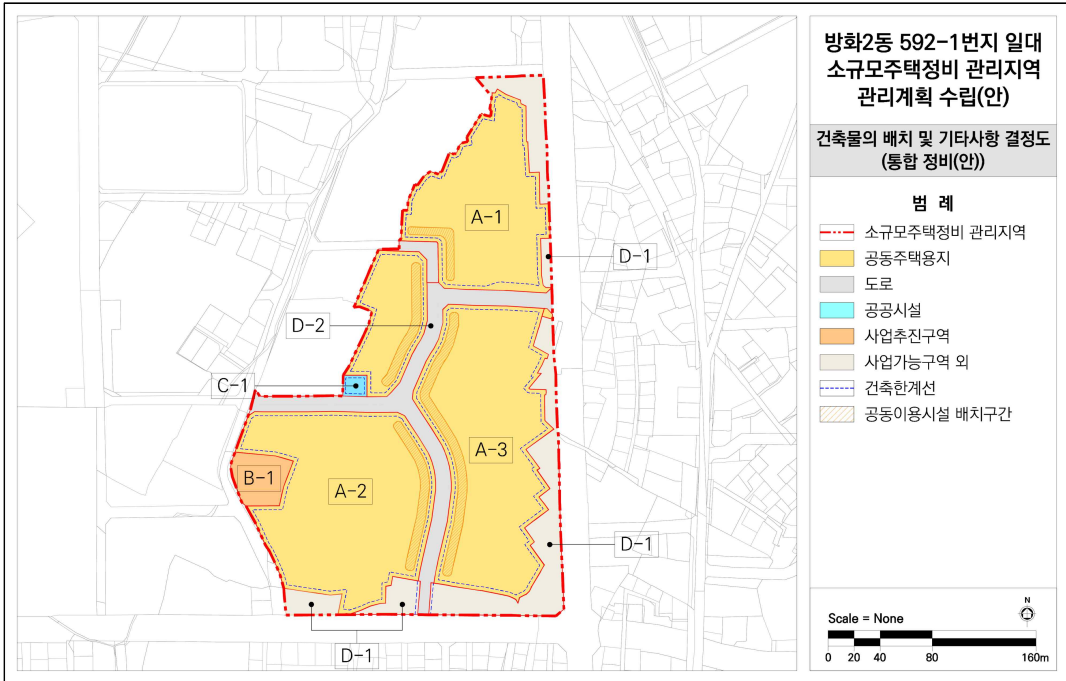
■ 건축물의 주용도 및 규모 결정도 - 통합 정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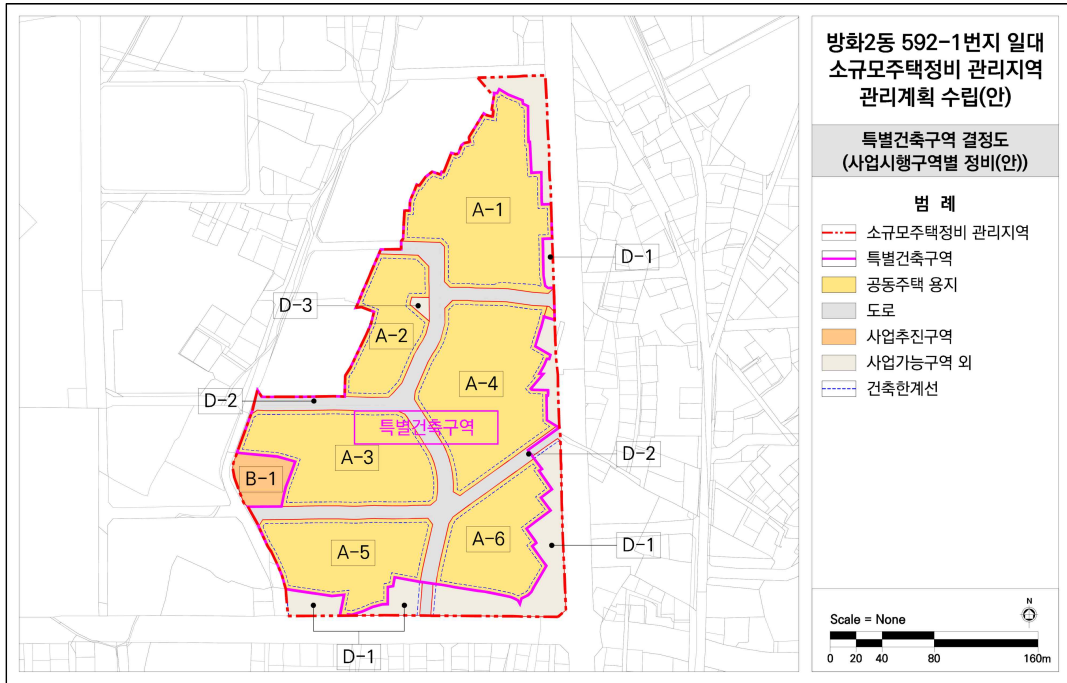
■ 건축물의 배치 및 기타사항 결정도 - 사업시행구역별 정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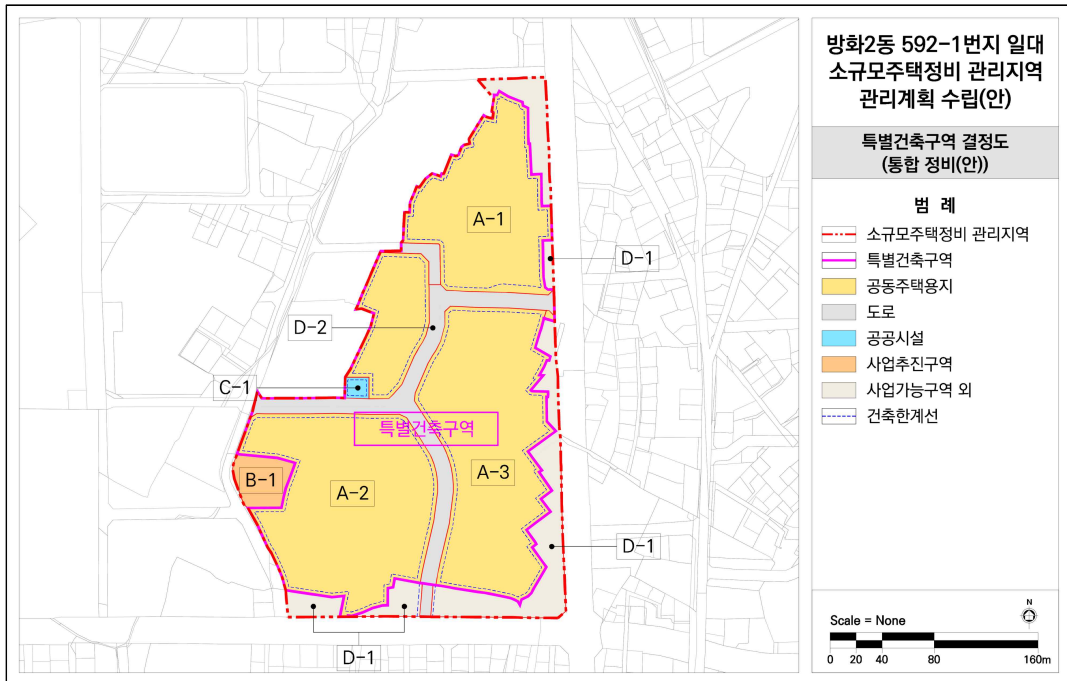
■ 건축물의 배치 및 기타사항 결정도 - 통합 정비(안)



■ 특별건축구역 결정도 - 사업시행구역별 정비(안)



■ 특별건축구역 결정도 - 통합 정비(안)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267호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및
자양동 695일대 (자양한양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95호(2006.3.2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주택재건축사업)’ 상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광진구 자양동 695번지 일대 재건축사업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6조에 따라 2023년 제20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2023.12.20.)를 거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0조에 따라 ‘자양동 695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5월 30일
서울특별시

I.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구분	동명	지번	면적(ha)	계획용적률	건폐율	층수	추진 단계	주택 유형	비고
기정	자양동	695	4.2	190%	60%	평균 15층	1	공동	자양한양 아파트
변경	자양동	695	4.0	190%	50%	-	1	공동	자양한양 아파트

II.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1.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40,179.20	-	40,179.20	100.0	
주거 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40,179.20	감) 38,089.84	2,089.36	5.2	
	제3종 일반주거지역	-	증) 38,089.84	38,089.84	94.8	

■ 용도지역 변경 사유서

구역명	용도지역		면적(㎡)	변경사유
	기정	변경		
자양한양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38,089.84	기존 한양아파트의 밀도 및 대상지 주변 용도지역을 고려해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세분

나.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세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	경관지구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강변북로 일대	22,500.0 (1,344.8)	서고 438 (1980.12.31)	()구역 내면적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1) 용도지역 결정(기정)도
- 2) 용도지역 결정(변경)도

※ 도면 별첨

Ⅲ. 자양한양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정비사업의 명칭 : 자양한양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2. 정비구역 결정 조서

구 분	명 칭	위 치	면 적(㎡)	비고
신 규	자양한양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자양동 695번지 일대	40,179.2	

3. 정비계획 결정(변경)

가.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구 분		면적(㎡)	비율(%)	비 고
합 계		40,179.20	100.0	-
정비기 반시설 용지	소 계	2,089.36	5.2	-
	도로	963.90	2.4	-
	공공청사	1,125.46	2.8	-
획지	소 계	38,089.84	94.8	-
	획지1	12,075.40	30.1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획지2	26,014.44	64.7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나.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추정 비례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정비례율 산정방식 : (총 수입 - 총 지출) / 총자산 총액 × 100% · 추정비례율 : 110.11% = (총수입 추정 1,360,221,405천원 - 총지출 추정 514,282,805천원) / 종전자산총액 추정 768,220,990천원 × 100%
개별 종전 자산 추정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주택 소유자 = 실거래가 × 보정률(1.5) (공동주택의 경우, 토지평가액 포함) · 단독주택, 상가 소유자 = 토지가액 + 건물가액
추정 분담금 산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정분담금 산정방식 = 관리자 분양가 추정액 - (종전자산 추정액 × 추정비례율)

권리자 분양가 추정액(a)		추정 권리가액(b)	추정분담금(a-b)
59㎡(25평형)	13.0억	개별 종전자산 추정액 × 추정비례율 (110.11%)	권리자 분양가 추정액 - 추정 권리가액 (+ : 부담 / - : 환급)
74㎡(31평형)	15.7억		
84㎡(35평형)	17.2억		
114㎡(45평형)	21.9억		
139㎡(55평형)	25.5억		

- ※ 대상 단지의 거래사례 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의 격차율을 감안하여 대상 단지내 공동주택공시가격에 적용할 보정률을 150%로 결정
- ※ 추정분담금은 현 시세 등을 반영하여 산출한 추정값으로 경제 사정이나 정책 변경 또는 감정평가 결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 관리처분계획인가 시 개별 물건에 대한 종전자산 감정평가 및 분양가격 확정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은 정비계획 결정도서 참조

다. 도시·군계획시설(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1) 교통시설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2	(1)	8	국지 도로	118	자양동 724-6	자양동 725	일반 도로	-	-	-

※ 연장 내 ()는 구역 내 해당사항임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	소로 2-1	도시계획시설 신설 - 도로 B = 8m	주택재건축사업으로 인한 도시계획도로 신설

2) 공공청사

가) 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	공공청사	주거안심종합 센터	자양동 695-1번지 일대	-	증) 1,125.46	1,125.46	-	-

■ 공공청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공공청사	신설 - A=1,125.46㎡	주거안심종합센터 조성으로 인한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 도모

■ 건축물의 규모

구분	주용도	건폐율(%)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법적상한용적률(%)	높이	비고
신설	주거안심 종합센터	60		200		-	-

라.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1) 기본방향

구분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공동 이용 시설	합 계	획지	-	증) 5,510.0	5,510.0	
	경로당		-	증) 330.0	330.0	공공개방
	다함께 돌봄센터		-	증) 100.0	100.0	공공개방
	어린이집		-	증) 535.0	535.0	공공개방
	맘스스테이션		-	증) 115.0	115.0	-
	주민운동시설		-	증) 800.0	800.0	옥외시설
	어린이놀이터		-	증) 800.0	800.0	옥외시설
	실내형 어린이놀이터 /청소년문화센터		-	증) 640.0	640.0	공공개방
	작은도서관		-	증) 440.0	440.0	-
	주민공동시설		-	증) 1,750.0	1,750.0	-

※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 및 사업시행인가시 변경될 수 있으며,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건축법」 등 관련법령 기준 적용

마.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구역 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등)					비고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자양한양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40,179.2	광진구 자양동 695번지 일대	8	-	-	8	-	-

바.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관한 계획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정비구역 지정·고시의 효력 등) 정비구역의 지정·고시가 있는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봄

사. 건축물에 관한 계획

1) 획지 및 주택규모 등에 관한 계획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건축계획	상한																																			
신설	자양한양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40,179.2	획지1	12,075.40	자양동 695-1번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50% 이하	241.42% 이하	293.77% 이하	121m이하 (해발146m), 최고 40층이하																																		
			획지2	26,014.44	자양동 695번지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설규모 및 비율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구분 (전용면적)</th> <th colspan="3">세대수(세대)</th> <th rowspan="2">비율 (%)</th> <th rowspan="2">비고</th> </tr> <tr> <th>합계</th> <th>분양</th> <th>공공</th> </tr> </thead> <tbody> <tr> <td>합계</td> <td>859</td> <td>652</td> <td>207</td> <td>100.0%</td> <td></td> </tr> <tr> <td>60㎡이하</td> <td>142</td> <td>93</td> <td>49</td> <td>16.5%</td> <td></td> </tr> <tr> <td>60㎡~85㎡이하</td> <td>427</td> <td>269</td> <td>158</td> <td>49.7%</td> <td></td> </tr> <tr> <td>85㎡초과</td> <td>290</td> <td>290</td> <td>-</td> <td>33.8%</td> <td></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용 85㎡이하 규모의 주택이 전체 면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 : 66.2% 									구분 (전용면적)	세대수(세대)			비율 (%)	비고	합계	분양	공공	합계	859	652	207	100.0%		60㎡이하	142	93	49	16.5%		60㎡~85㎡이하	427	269	158	49.7%		85㎡초과	290	290	-	33.8%	
			구분 (전용면적)	세대수(세대)			비율 (%)	비고																																				
합계	분양	공공																																										
합계	859	652	207	100.0%																																								
60㎡이하	142	93	49	16.5%																																								
60㎡~85㎡이하	427	269	158	49.7%																																								
85㎡초과	290	290	-	33.8%																																								
심의완화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적상한용적률 완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 정비계획용적률(241.42%) → 예정법적상한용적률(293.77%) 																																									
높이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고높이 40층(해발 146m) 한강 연접 첫 주동 12층 이하, 두 번째 주동 18층 이하, 동측 주동 25층 이하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지 내부도로변 : 5m(보도부속형 전면공지) 대상지 서측도로변 : 5m(보도, 차도부속형 전면공지) 대상지 동측도로변 : 5m(전면공지), 고층부 벽면한계선 8m(11층이상) 대상지 북측도로변 : 5m(보도, 차도부속형 전면공지) 대상지 남측도로변 : 5m(보도부속형 전면공지) 																																									

※ 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사항은 도시·동일 하게 공개추첨 방법으로 선정함
 ※ 보도 및 차도부속형 전면공지 설치시 구분지상권 설정
 ※ 건축물에 관한 계획은 건축설계 시 변경될 수 있음

■ 용적률 산정

구 분	산정내용						
	계 (구역면적)	획지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등			계획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대지(획지)내 용도폐지 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
소계			정비기반시설 등	현금·건축물 (기부채납)			
토지이용계획	40,179.2㎡	38,089.84	8,790.28	6,563.41	2,226.87	963.9	-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순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등 제공면적 -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 획지 내 용도폐지 되는 정비기반시설 국공유지 = 8,790.28㎡ - 963.9㎡ = 7,826.38㎡ (구역면적의 19.48%) 						
공공시설등 부지(토지)면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563.41㎡ = (도로) 963.90㎡ + (공공청사) 1,125.46㎡ + (주차장) 438.96㎡ + (임대주택) 4,035.08㎡ 						
공공시설 설치에 대한 환산부지면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26.87㎡ (건축물 기부채납 환산부지 면적 = 공공청사 + 주차장 + 임대주택) = (공공청사) 654.10㎡ + (주차장) 128.73㎡ + (임대주택) 1,444.04㎡ <p>① 공공청사 환산부지 면적 = 654.10㎡(면적 2,650.0㎡)</p> <p>- ㉠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원) ÷ ㉡ 용적률 완화받고자 하는 부지가액(원/㎡)</p> <p>* ㉠ : 건축면적 × 설치비용 기준(주1) = 2,650.0㎡ × 3,252,727원 = 8,619,727,273원</p> <p>* ㉡ : 공시지가(주3) × 2 = 6,589,000원 × 2 = 13,178,000원</p> <p>② 주차장 환산부지 면적 = 128.73㎡</p> <p>- ㉠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원) ÷ ㉡ 용적률 완화받고자 하는 부지가액(원/㎡)</p> <p>* ㉠ : 건축면적 × 설치비용 기준(주2) = 2,000.0㎡ × 848,182원 = 1,696,363,636원</p> <p>* ㉡ : 공시지가(주3) × 2 = 6,589,000원 × 2 = 13,178,000원</p> <p>③ 임대주택 환산부지 면적 : 1,444.04㎡</p> <p>- (건축비 상한가격(주4) x 원단위 x 계약면적 x 세대수) ÷ (공시지가(주3) x 부지가액 가중치)</p> <p>= (1,139,200 / 1.1 x 129.4882x 34) + (1,138,400 / 1.1 x 161.5441 x 36) + (1,138,400 / 1.1 x 181.4758 x 45) / (6,589,000원/㎡x 2)</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주1) 2022년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복합청사) : 3,578,000원</p> <p>주2) 2023년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지하층건축비 : 933,000원</p> <p>주3) 대상지 개별공시지가 평균(2023년 기준)</p> <p>주4) 2023년 공공건설임대주택표준건축비(국토부고시제2023-64호)</p> </div>						
계획(기준)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계획용적률 190% 						
상한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 × [1 + (1.3 × 가중치 × a(토지))] + (0.7 × a(건축물)) = 200% × [1 + (1.3 × 0.8696 × 0.1470 + 0.7 × 0.0585)] = 241.42% ⇒ 정비계획 용적률 241.42% 이하 						

구 분	산정내용
	※ 가중치 : 공공시설 등 부지의 해당 용적률 / 사업부지용적률 = 200% / 230% = 0.8696 ※ a(토지) : 공공시설 등 부지(토지)제공면적 / 공공시설등 부지(토지)제공 후 부지면적 = 5,599.51㎡ / 38,089.84㎡ = 0.1470 ※ a(건축물) : 공공시설 등 부지(건축물 환산부지) / 공공시설등 제공 후 부지면적 = 2,226.87㎡ / 38,089.84㎡ = 0.0585
법적상한용적률	• 300.0%(건축계획 용적률 293.77%)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사항

구 분	인센티브량	적용	비고	
열린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지 외곽 개방, 담장 미설치, 연도형상가 등 열린 단지 조성 (지형도면고시) 기준 : 개방공간, 열린 단지 조성기준 준수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 개방되는 부분은 결정도면에 표시(준공후에도 유지) 	5%p	5%	단차·장애물 없이 보행을 통해 단지 내부로 접근
돌봄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에 필요한 놀이·돌봄시설* 설치 및 제공(무상임대) 기준: 놀이·돌봄시설을 전체 주민공동시설(의무면적)의 1/5이상 설치 ※ 국공립어린이집, 서울형키즈카페, 우리동네키움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실내어린이놀이터 등 	5%p	5%	돌봄시설 740.0㎡ 확보 (의무면적 563.87㎡)
합 계	최대 10%p 이내			10% 적용

아. 공공주택(법적상한용적률 완화) 건설에 관한 계획

- 모든 공공주택은 원칙적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주택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해당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공공주택 등은 도시저소득 주민의 입주 기회 확대 등 공공목적의 공공주택 용도로 정하며, 서울시에 매각(처분)하여야 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 이상을 공공주택(법적상한용적률 완화)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 공공주택 배치계획

- 공공주택은 분양주택과 차별없이 외관, 마감 등을 동일하게 계획(동별·동내 혼합과 층별 혼합)하고, 전체 주택을 대상으로 동·호수 배정도 조합원과 서울특별시(공공주택)가 동일·동시에 공개추첨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추첨 시 서울특별시가 필수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에 반영할 것

■ 법적상한용적률에 따른 공공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구분	산정내용				
계획기준	•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이상				
법적상한용적률	• 300.0%(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최종 결정)				
상한용적률(정비계획)	• 241.42%				
초과용적률의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93.77\% - 241.42\%) \times 50\% = 26.17\%$ • $38,089.84\text{m}^2 \times 26.17\% = 9,968.89\text{m}^2$ 이상 				
공공주택 확보계획 (법적상한용적률 완화)	전용면적	공급면적	세대수	연면적	비고 소셜믹스
	59.98㎡	83.04㎡	15	1,245.6㎡	
	74.98㎡	103.48㎡	13	1,345.24㎡	
	84.99㎡	115.66㎡	64	7,402.24㎡	
	합계		92	9,993.08㎡	>9,968.89㎡ (공공주택 연면적 기준)

자. 환경보전,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및 환경성 검토 결과

■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분	계 획 내 용		비 고
환경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지형을 최대한 고려 실시계획 수립시 절성토 균형이 되도록 계획하여 외부유출, 내부유입을 최소화 • 주차장의 지하화를 통해 지상부의 오픈스페이스, 녹지공간 등을 최대한 확보 • 도시생태계 회복을 위해 주변 자연환경과 어울리는 수목 식재 • 공사 및 운영시 오염원에 대한 저감대책 수립하여 환경오염 최소화 		-
재난방지	화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주택 부지 내에 소방차가 진입, 진압활동을 벌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토록 의무화 • 인화성 건축내장재 사용을 규제하고 사업완료 후 지속적으로 관리 	-
	수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토양유지 및 공원 등 녹지,조경 면적의 확대로 토양포장율을 억제하고 불가피할 경우 가급적 투수포장재를 사용하여 우수유출량을 최대한 억제 	
	교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입로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문제에 대한 처리방안 계획 	

■ 환경성 검토결과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에의 반영사항	비고
자연 환경	생태면적율	30%	○	• 계획대상지 내 6개 공간유형별 확보율 35.02%계획	• 자연지반녹지, 인공지반녹지, 수공간, 틈새투수 포장 등 적용	
	녹지 네트워크	주변녹지와 연계	○	• 녹지면적 Ⅲ, 녹지모양 Ⅲ, 내부연결성 Ⅰ, 외부연결성 Ⅲ로써, 녹지평가지표 1등급을 만족	• 녹지계획에 반영함	
	지형변동	절성토비율 20%미만	○	• 응벽 발생 안함	• 지형에 순응한 계획 수립	
		지형변동 비율30%미만	○	• 절토 및 성토고 발생 안함	• 지형에 순응한 계획 수립	
	비오름	3등급	○	• 비오름유형평가 4등급, 개별비오름 평가제외 등급으로 조사됨	• 어린이공원 등의 조정공간의 확보	
생활 환경	일조	연속 2시간 확보	○	• 북측방향으로 주택지 위치	• 수인한도 만족하도록 건물배치 및 층수조절	
	바람 및 미기후	바람길 확보	○	• 주변지역에 대한 바람 흐름의 차단	• 바람의 진행방향을 고려한 건물배치	
	에너지	에너지절약계획 수립	○	• 향후 에너지사용량 추정 • 에너지원 변경가능여부조사	• 에너지절약형 설비기기 도입	
		신재생에너지 사용	×	-	-	
	경관	Skyline보전	○	• 주변시설물과의 조화	• 건물배치, 높이설정에 반영	
		조망권 확보	○	• 주변 주거지역의 조망권 보호 필요	• 정확한 조망점 설정과 시물레이션을 통해 조망권 보호	
		가로녹시율 35%	○	• 도로 및 보행자도로의 녹시율 35%이상 확보계획	• 가로수 식재, 조정공간 조성	
	휴식 및 여가공간	휴식여가공간 최대확보	○	• 주변에 휴식여가공간 부족 • 당해 대상지에 조성 필요	• 조정공간 조성	
	보행 친화공간	보행자전용도로 계획수립	×	• 보행자의 안전과 보행동선을 고려한 편의시설물 설치	-	
		자전거전용도로 계획수립	×	• 대지면적이 협소하여, 자전거도로 확보에 한계가 있음.	-	
자전거보관소 15대/100unit		×	• 교통분담을 위한 자전거 이용	• 자전거 주차면 법정주차대수의 20.0%이상 설치		
추가	대기질	-	• 비산먼지발생에 의한 영향 • 난방 및 이용차량에 따른 배가스발생	• 방진망 설치, 공사장 살수계획 • 계획대상지내 녹지공간 조성계획으로 영향 최소화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에의 반영사항	비고
	물 순환(수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시 오수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시 하수관로에 연계처리 	
	폐기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시 생활분뇨폐기물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리수거 및 재활용을 통한 쓰레기 감량화 	
	소음 및 진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시 투입장비에 의한 소음발생 • 운영시 교통소음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설방음판넬설치 • 녹지공간조성 	

차. 정비사업 시행계획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고
주택재건축	구역지정 후 4년 이내	자양한양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	현황 : 444세대 중 415세대 계획 : 859세대	-

카.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정비구역 주변 현황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비고
성동초등학교 양남초등학교 광진중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사업시행인가)에 의거 정비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 • 추후, 동법 제30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의거 사업시행계획서 작성시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협의하여 반영 	-

타.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계획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계획			비고
착공전	착공 ~ 공사완료	범죄예방설계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펜스 설치 및 유지·관리 • 1일 오전·오후 1회 우범지역 순찰 • 방범용 CCTV 설치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규정 준수 안전 시공 •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공사비 계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범용 CCTV는 사각지대 1개소 이상 설치 • 수목의 식재로 사각지대나 고립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수목의 간격을 적정하게 유지하여 계획 	-

IV.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정비사업 명칭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규	자양한양아파트 재건축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자양동 695번지 일대	-	증)40,179.2	40,179.2	-

2.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결정

가.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

구분	면적(㎡)			비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40,179.20	-	40,179.20	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	40,179.20	감) 38,089.84	2,089.36	5.2	
제3종일반주거지역	-	증) 38,089.84	38,089.84	94.8	

■ 용도지역 변경 사유서

구분	위치	결정내용	변경사유
획지1,2	자양동 724-6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 정비사업에 따른 토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해 용도지역 변경

나.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변경사항에 한함)

가)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신설	소로	2	(1)	8	국지 도로	118	자양동 724-6	자양동 725	일반 도로	-	-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소로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계획시설 신설 - 도로 B = 8m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재건축사업으로 인한 도시계획도로 신설

2) 공공청사

가) 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	공공청사	주거 안심 종합 센터	자양동 695-1번지 일대	-	증) 1,125.46	1,125.46	-	-

■ 공공청사 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	위 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	자양동 695-1번지 일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설 - A=1,125.4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거안심종합센터 조성으로 인한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 도모

3. 건축계획에 관한 결정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 조서

가구	면적	획지 번호	획지		비고
			위치	면적	
-	39,215.3	1	자양동 695-1번지 일대	12,075.40	획지1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	자양동 695번지 일대	26,014.44	획지2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3	자양동 695번지 일대	1,125.46	공공청사

2)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조서

■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가구	용도	비고
신설	허용용도	획지1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허용용도 외의 용도는 불허
		획지2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허용용도 외의 용도는 불허
		획지3	공공청사(주거안심종합센터)	허용용도 외의 용도는 불허

■ 건폐율 계획

구분	지역	건폐율	비고
신설	획지1	50% 이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획지2	50% 이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획지3	60% 이하	공공청사(주거안심종합센터)

■ 용적률 계획

구분	지역	용적률				비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상한용적률	예정법적 상한용적률	
신설	획지1	190%이하	200%이하	241.42%이하	293.77%이하	-

구 분	지 역	용 적 륵				비 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상한용적률	예정법적 상한용적률	
	획지2	190%이하	200%이하	241.42%이하	293.77%이하	-
	획지3	200%이하				공공청사

■ 허용용적률 완화 사항

구 분	인센티브				비 고
	방재안전	돌봄시설	감성디자인	지역맞춤형	
신설	-	5%	5% (열린단지)	-	총 : 10% (최대 20%이내)

■ 상한용적률 완화 사항

구 분	용적률 완화		비 고
	공공시설등 기부채납 (상한용적률)	국민주택규모 주택건설 (법적상한용적률)	
신설	41.42%	52.35%	총 : 93.77%

■ 높이 계획

구 분	지 역	높이 기준	비 고
신설	획지1	121m이하 (40층 이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획지2	121m이하 (40층 이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획지3	-	공공청사

* 한강 연접 첫 주동 12층 이하, 두 번째 주동 18층 이하, 동측 주동 25층 이하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구분	적용 위치	계획내용
신설	대상지 내부도로변	• 5m(보도부속형 전면공지)
	대상지 서측도로변	• 5m(보도,차도부속형 전면공지)
	대상지 동측도로변	• 5m(전면공지), 고층부 벽면한계선 8m(11층이상)
	대상지 북측도로변	• 5m(보도,차도부속형 전면공지)
	대상지 남측도로변	• 5m(보도부속형 전면공지)

4.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가. 환경관리계획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에의 반영사항	비고
자연 환경	생태면적율	30%	○	• 계획대상지 내 6개 공간유형별 확보로 35.02%계획	• 자연지반녹지, 인공지반녹지, 수공간, 틈새투수 포장 등 적용	
	녹지 네트워크	주변녹지와 연계	○	• 녹지면적 III, 녹지모양 III, 내부연결성 I, 외부연결성 III로써, 녹지평가지표 I등급을 만족	• 녹지계획에 반영함	
	지형변동	절성토비율 20%미만	○	• 옹벽 발생 안함	• 지형에 순응한 계획 수립	
		지형변동 비율30%미만	○	• 절토 및 성토고 발생 안함	• 지형에 순응한 계획 수립	
비오름	3등급	○	• 비오름유형평가 4등급, 개별비오름 평가제의 등급으로 조사됨	• 어린이공원 등의 조정공간의 확보		
생활 환경	일조	연속 2시간 확보	○	• 북측방향으로 주택지 위치	• 수인한도 만족하도록 건물배치 및 층수조절	
	바람 및 미기후	바람길 확보	○	• 주변지역에 대한 바람 흐름의 차단	• 바람의 진행방향을 고려한 건물배치	
	에너지	에너지절약계획 수립	○	• 향후 에너지사용량 추정 • 에너지원 변경가능여부조사	• 에너지절약형 설비기기 도입	
		신재생에너지 사용	×	-	-	
	경관	Skyline보전	○	• 주변시설물과의 조화	• 건물배치, 높이설정에 반영	
		조망권 확보	○	• 주변 주거지역의 조망권 보호 필요	• 정확한 조망점 설정과 시뮬레이션을 통해 조망권 보호	
		가로녹시를 35%	○	• 도로 및 보행자도로의 녹시를 35%이상 확보계획	• 가로수 식재, 조정공간 조성	
	휴식 및 여가공간	휴식여가공간 최대확보	○	• 주변에 휴식여가공간 부족 • 당해 대상지에 조성 필요	• 조정공간 조성	
	보행 친화공간	보행자전용도로 계획수립	×	• 보행자의 안전과 보행동선을 고려한 편의시설물 설치	-	
		자전거전용도로 계획수립	×	• 대지면적이 협소하여, 자전거도로 확보에 한계가 있음.	-	
자전거보관소 15대/100unit		×	• 교통분담을 위한 자전거 이용	• 자전거 주차면 법정주차대수의 20.0%이상 설치		
추가	대기질	-	• 비산먼지발생에 의한 영향 • 난방 및 이용차량에 따른 배가스발생	• 방진망 설치, 공사장 살수계획 • 계획대상지내 녹지공간 조성계획으로 영향 최소화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에의 반영사항	비고
	물 순환(수질)	-	• 운영시 오수발생	• 기존 시 하수관로에 연계처리	
	폐기물	-	• 운영시 생활분뇨폐기물 발생	• 분리수거 및 재활용을 통한 쓰레기 감량화	
	소음 및 진동	-	• 공사시 투입장비에 의한 소음발생 • 운영시 교통소음발생	• 가설방음판넬설치 • 녹지공간조성	

나. 공공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 모든 공공주택은 원칙적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주택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해당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공공주택 등은 도시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 확대 등 공공목적의 공공주택 용도로 정하며, 서울시에 매각(처분)하여야 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 이상을 공공주택(법적상한용적률 완화)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 공공주택 배치계획

- 공공주택은 분양주택과 차별없이 외관, 마감 등을 동일하게 계획(동별·동내 혼합과 층별 혼합)하고, 전체 주택을 대상으로 동·호수 배정도 조합원과 서울특별시(공공주택)가 동일·동시에 공개추첨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추첨 시 서울특별시가 필수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에 반영할 것

다. 법적상한용적률에 따른 공공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구분	산정내용				
계획기준	•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이상				
법적상한용적률	• 300.0%(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최종 결정)				
상한용적률(정비계획)	• 241.42%				
초과용적률의 50%	• $(293.77\% - 241.42\%) \times 50\% = 26.17\%$ • $38,089.84\text{m}^2 \times 26.17\% = 9,968.89\text{m}^2\text{ 이상}$				
공공주택 확보계획 (법적상한용적률 완화)	전용면적	공급면적	세대수	연면적	비고 소셜믹스
	59.98㎡	83.04㎡	15	1,245.6㎡	
	74.98㎡	103.48㎡	13	1,345.24㎡	
	84.99㎡	115.66㎡	64	7,402.24㎡	
	합계			92	9,993.08㎡

라. 공공주택 혼합계획

건립규모	전체 세대수	비율(%)	조합원 및 일반분양	공공주택	공공주택 비율(%)	
					전체 세대수 대비	전체비율
합계	859	100.0	652	207	24.1	100.0
60㎡이하	142	16.5	93	49	34.5	23.7
60㎡초과 ~85㎡이하	378	44.0	269	158	41.8	76.3
85㎡초과	290	33.8	290	-	-	-

V. 2023년 제20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2023.12.20.) 심의결과 : 수정가결

구분	수정가결의견	조치계획	비고
	<p><수정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역계 : 40,179.2㎡ - 용도지역 : 제3종 - 38,089.84㎡, 제2종 - 2,089.36㎡ - 용적률 : 기준 190%, 허용 200%, 상한 241.42%, 법적상한 293.77% ※ 허용 : 열린단지 5%, 돌봄시설 5% - 공공기여 : 7,826.38㎡ ※ 도로(기준) 963.9㎡, 공공청사 1,779.56㎡(토지 1,125.46㎡) 공영주차장 567.69㎡(토지지분 438.96㎡) 임대주택 5,479.13㎡(토지지분 4,035.08㎡) - 높이계획 : 121m 이하 (최고 40층) ※ 수변연접 첫 주동 : 25층 이하 (12층~25층) - 세대수 : 전체 859세대 (임대 207세대) ※ 임대 : 소형임대 92세대, 기부채납 115세대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시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위해 창의적인 디자인(안)을 제시할 것. (예 : 창의적 입면디자인, 저층부 가로활성화계획, 통경축 확보 등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시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위해 창의적인 디자인(안)을 제시하겠음. 	추후반영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도형 및 차도형 전면공지계획은 향후 유지관리 담보 측면에서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도형 및 차도형 전면공지계획은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겠음. 	반영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강 연접 첫 주동은 한강변 경관상 부영향 최소화 측면에서 수변 경계로부터 이격거리를 감안하여 12층, 18층, 25층으로 결정한 바, 향후 이 사항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비계획 도서 내 높이계획 상 한강 연접 첫 주동 12층, 18층, 25층에 대하여 명시하겠음. 	반영

IV. 관련도면 : 붙임 참조

1. 정비구역 결정도
2. 용도지역·지구 결정도(기정, 변경)
3. 도시계획시설 결정도(기정, 변경)
4. 정비계획 결정도
5.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6.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도(기정, 변경)
7.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도(기정, 변경)
8.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10. 건축계획(배치도)(예시도)

※ 첨부된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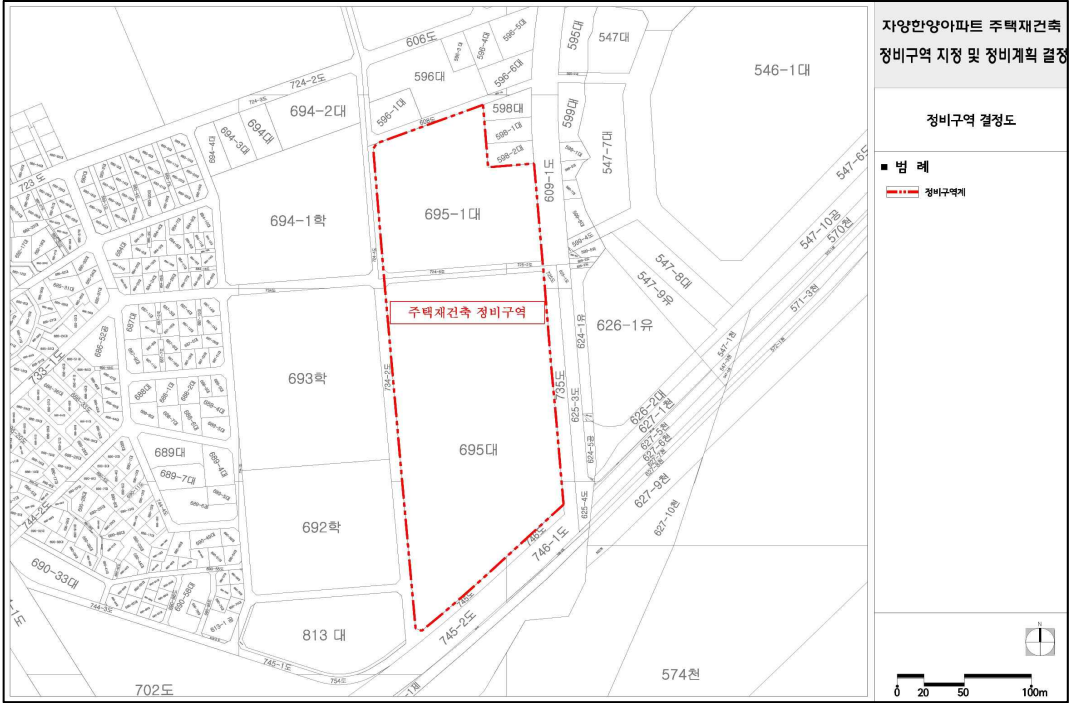
V. 정비계획 수립 도서 : 생략

VI. 열람장소 :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동주택지원과(☎02-2133-7139), 광진구 도시계획과(☎02-450-7684)에 관계 서류를 비치 및 열람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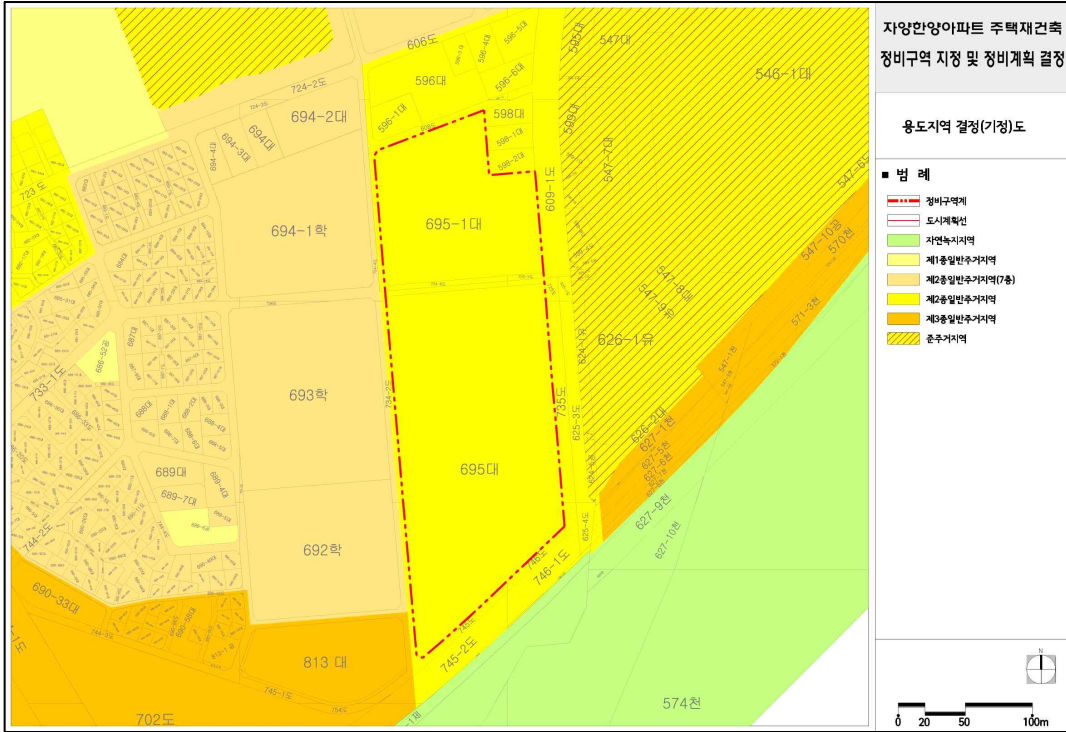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www.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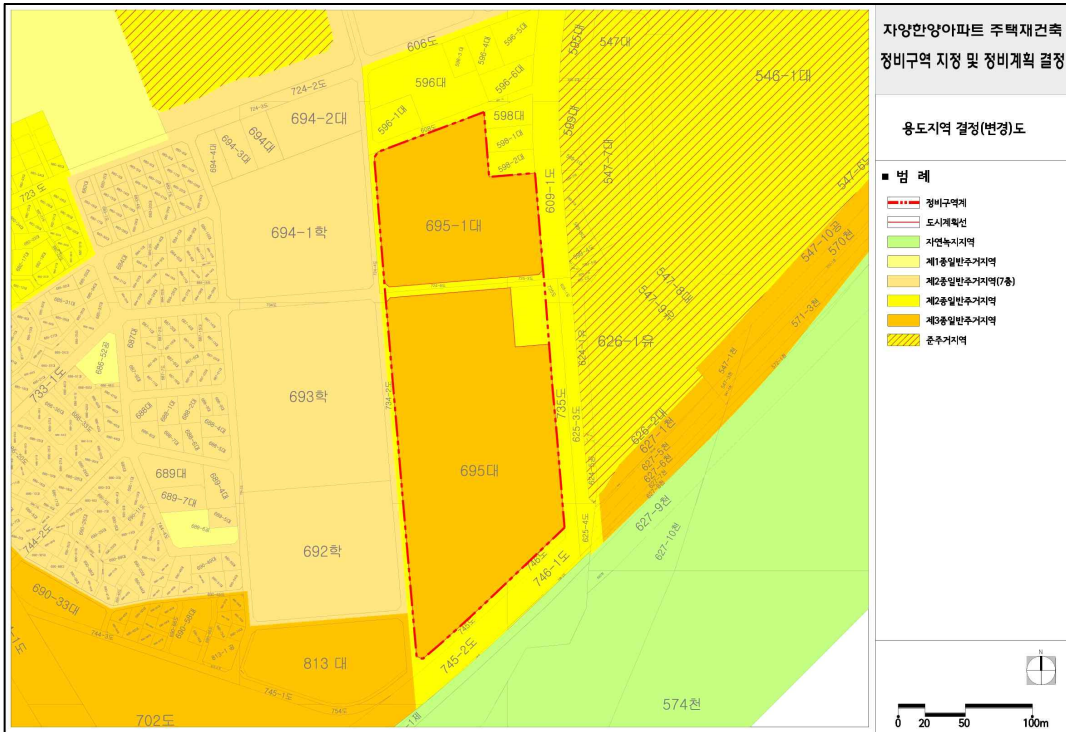
정비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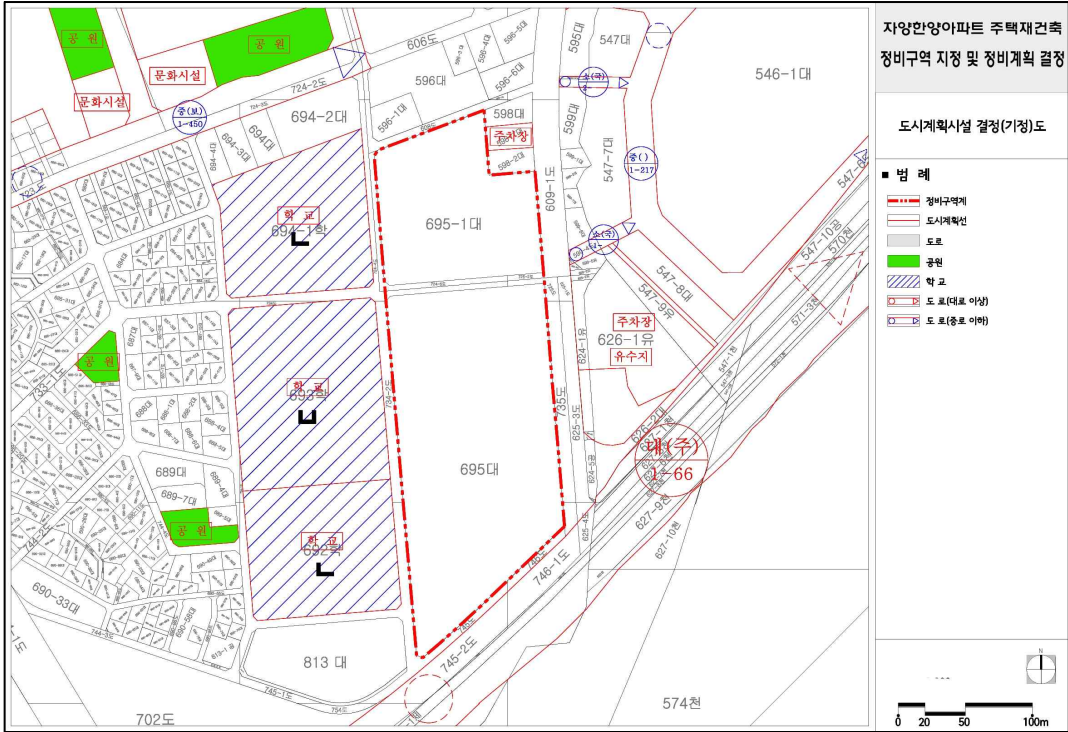
■ 용도지역·지구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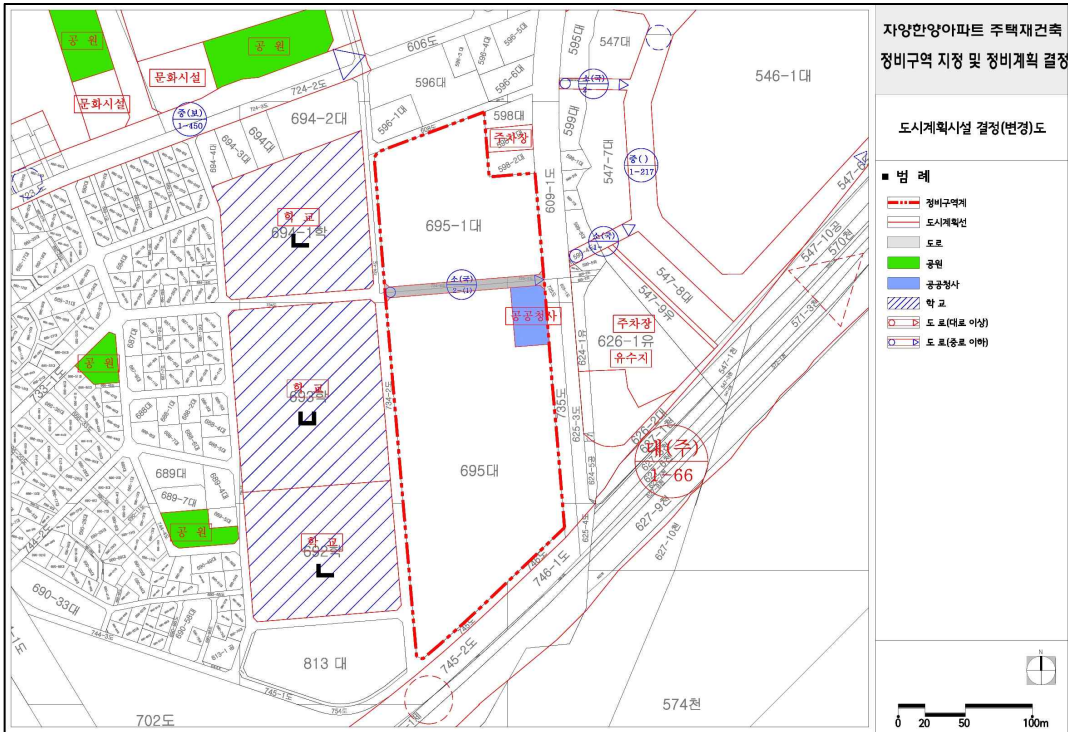
■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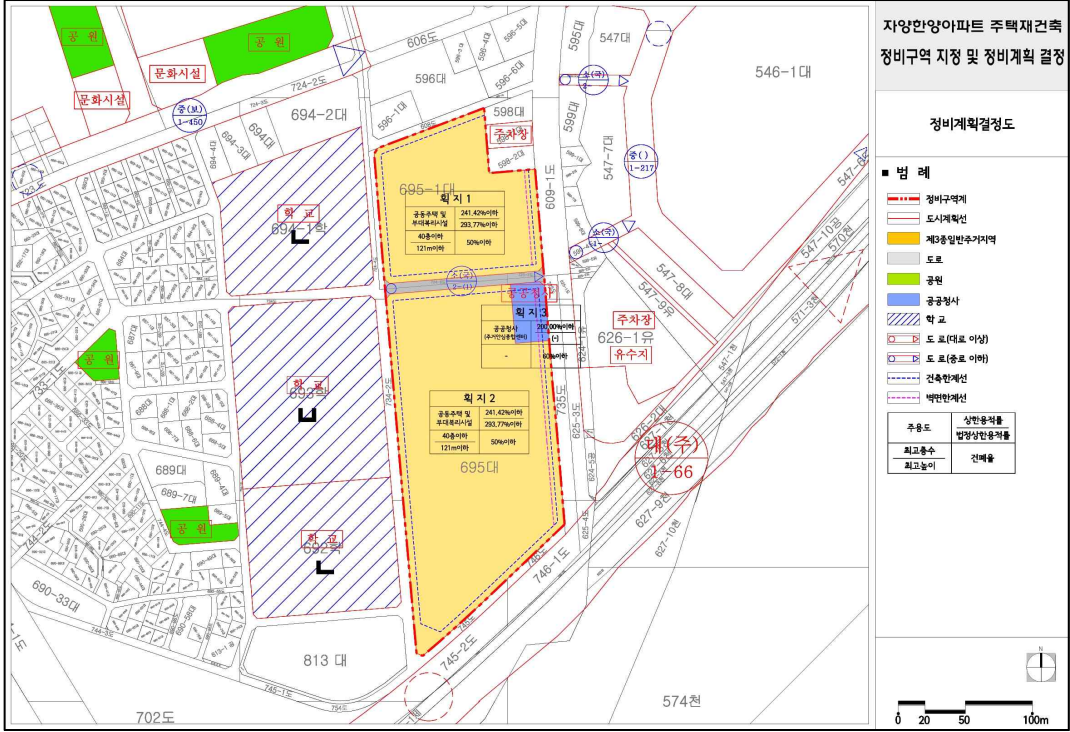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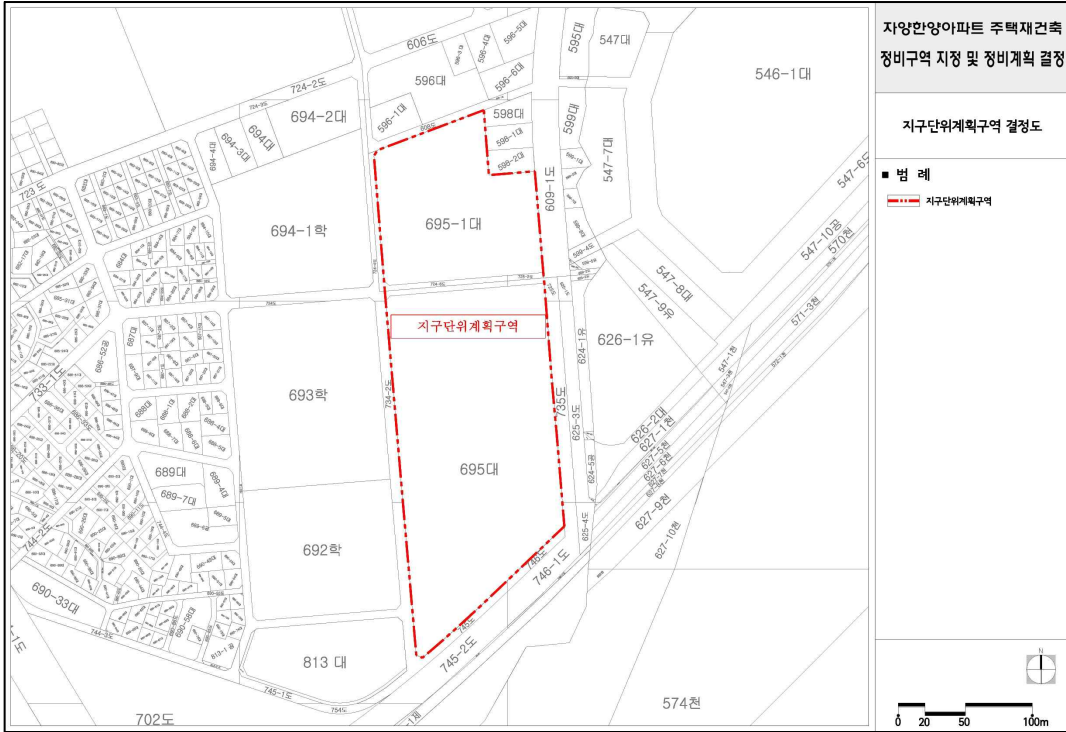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정비계획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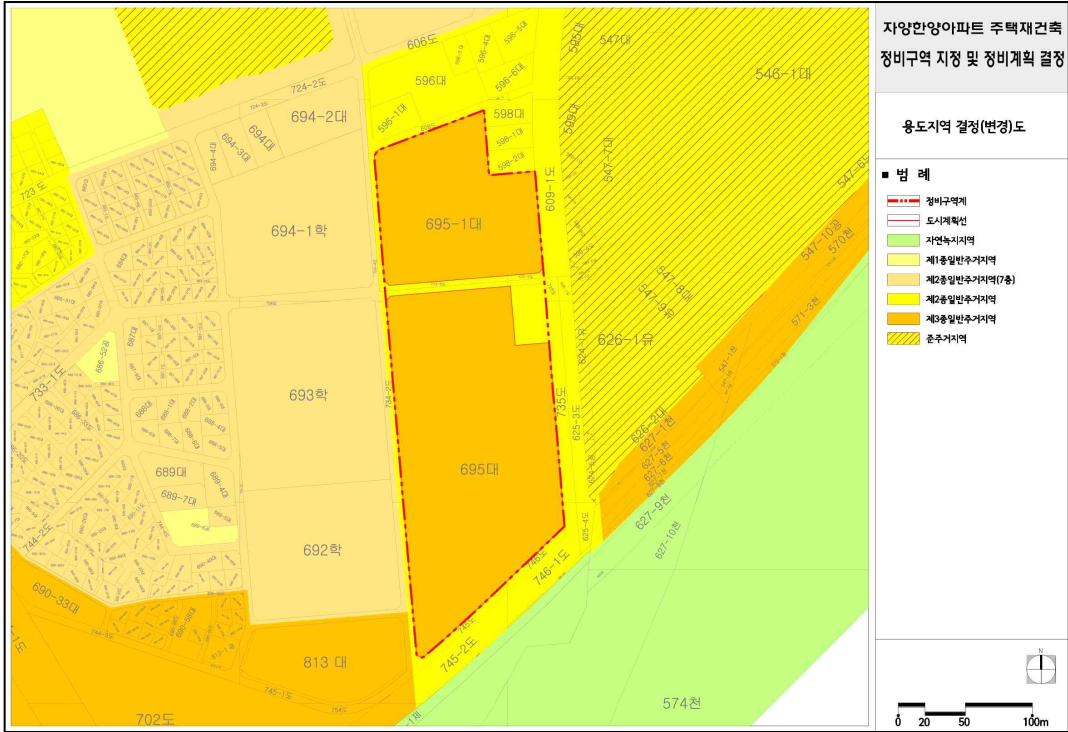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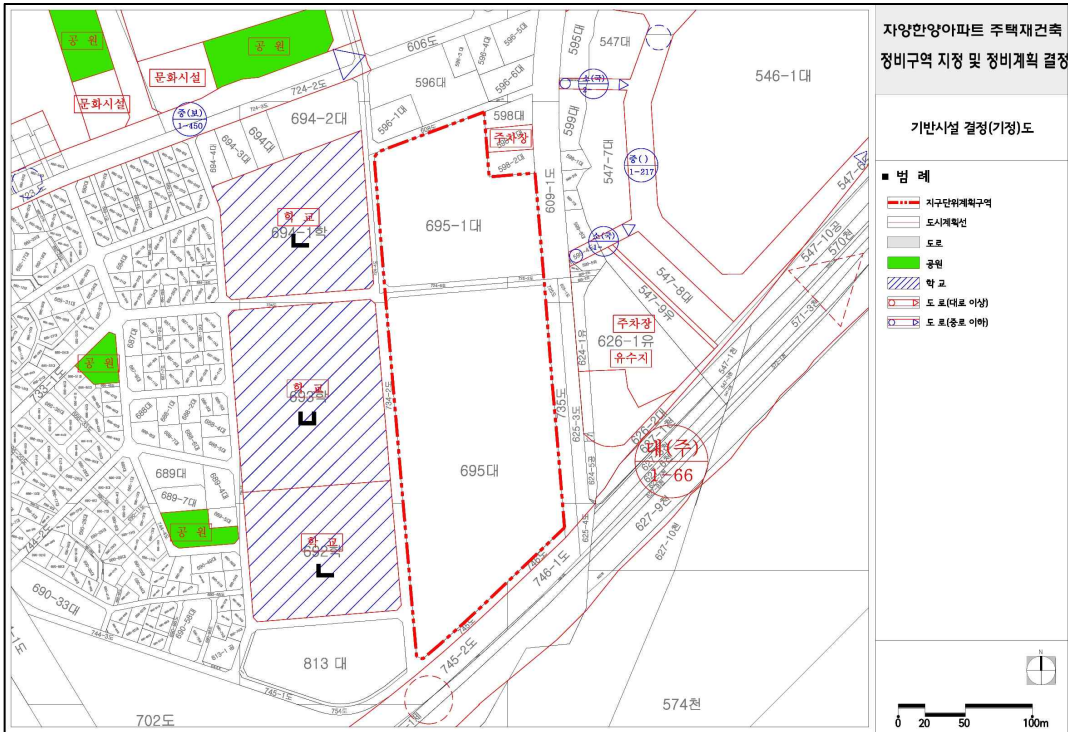
■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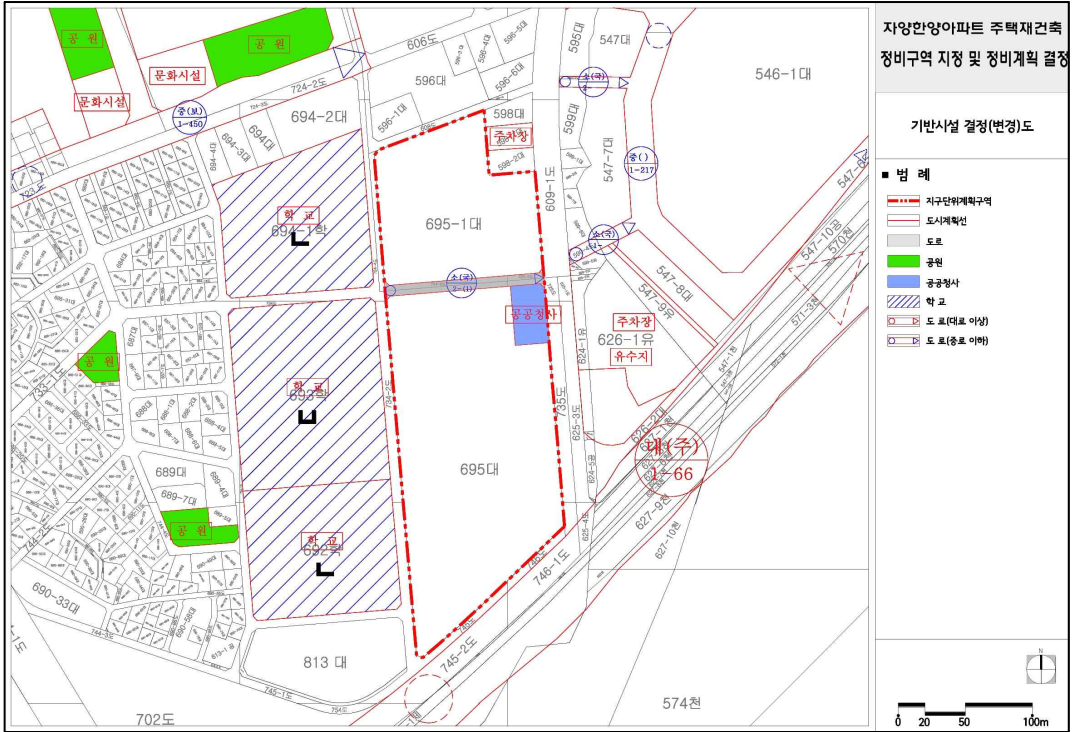
■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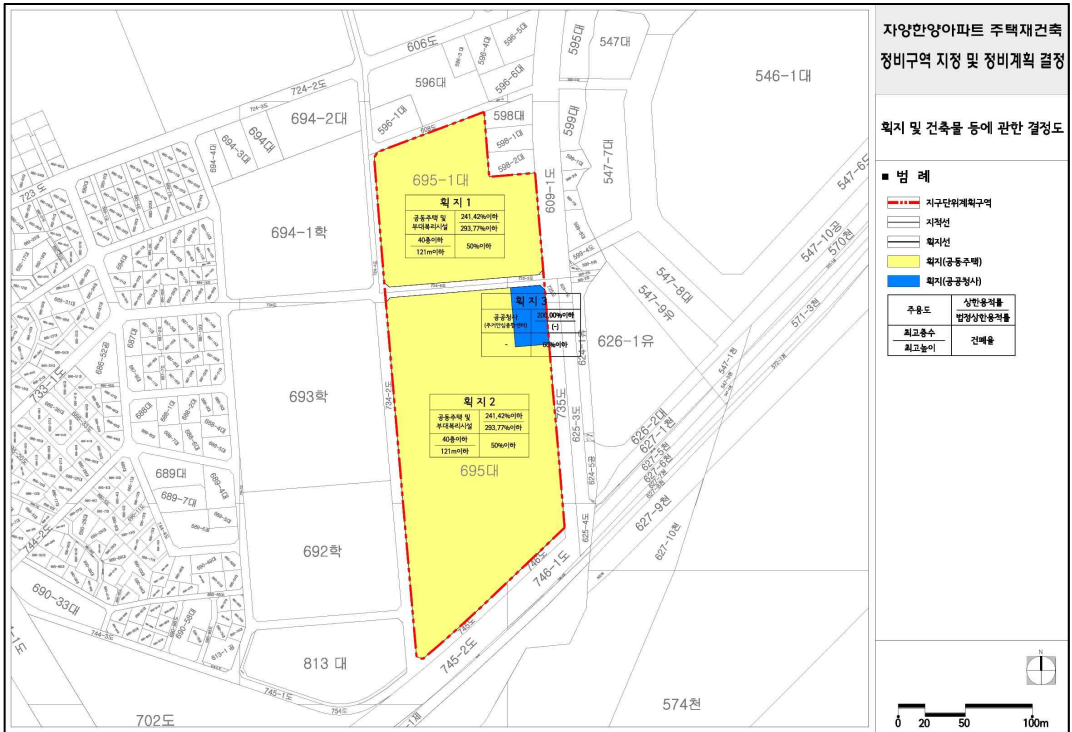
■ 기반시설에 관한 결정(기정)도



■ 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268호

제3차 서울특별시 건축기본계획 고시

「건축기본법」 제12조 및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건을 청취하고, 서울특별시 건축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3차 서울특별시 건축기본계획」을 확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5월 30일
서울특별시 장

1. 제3차 건축기본계획 수립 배경

- 지역 현황 및 경제·문화·사회 변화 등 미래사회에 대응하는 서울특별시 도시·건축 정책의 비전과 기본 방향 설정
- 향후 5년간 실행가능한 건축 관련 사업을 구상하기 위해 도시·건축에 관한 정책 발굴

2. 건축기본계획의 범위

- 시간적 범위 : [단기] 2023~2027년 [장기] 2028~2032년
- 공간적 범위 : 서울특별시 전역(개별 건축물과 주변 공간환경)

3. 주요 내용

가. 건축기본계획의 비전 및 목표

「품격을 높이는 도시건축,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도시 서울」이라는 비전 아래 ‘미래 서울을 준비하는 새로운 도시건축’, ‘시민 행복을 지원하는 도시건축’, ‘모두가 만드는 열린 건축문화’를 목표로 함

나. 6개 추진전략 및 17개 실천과제

계획의 비전 및 목표 달성을 위해 6개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17개 실천과제를 선정함

- 1) 추진전략 1은 ‘저탄소·미래 도시공간 기반 마련’으로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한 제도 마련과 건축정보 고도화 및 빅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시스템 구축 및 혁신건축산업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을 실천과제로 제시함
- 2) 추진전략 2는 ‘서울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으로 건축디자인 혁신 기반 마련, 도시건축 입체적·통합적 계획 활성화와 건축 관련 심의의 합리적 개편을 실천과제로 제시함
- 3) 추진전략 3은 ‘일상적 거주환경 개선’으로 미래 주거모델 개발 및 기존 주택 품질 제고, 일상 생활환경의 질 개선과 재난대응 및 안전관리 강화를 실천과제로 제시함

- 4) 추진전략 4는 ‘공공건축 품질 개선 및 최적 활용’으로 자산(asset)으로서 공공건축 관리·활용 체계화 및 공공건축 품질 향상을 위한 생산 프로세스 개선과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학교 건축 시범사업 추진을 실천과제로 제시함
- 5) 추진전략 5는 ‘서울 건축문화 플랫폼 고도화’로 서울건축문화 역량 결집 및 사업 내실화와 K-건축 중심지로서 글로벌 건축문화 네트워크 강화, 도시건축 관련 전문가 및 시민 협력체계 확대를 실천과제로 제시함
- 6) 추진전략 6은 ‘대시민 행정 서비스 강화’로 건축행정·디지털 대응 역량 강화와 서울시 건축정책 홍보 및 실행력 강화를 실천과제로 제시함

4. 관련자료 열람

「제3차 서울특별시 건축기본계획」에 대한 세부 사항은 우리시 홈페이지(<https://www.seoul.go.kr>) 공고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건축기획과 ☎ 02-2133-7100)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269호

장안평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고시

서울특별시공고 제2015-2189호(2015.12.10.)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28호(2016.8.4.)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동구 용답동, 동대문구 장안동·답십리동 일대 『장안평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9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변경 고시합니다.

2024년 5월 30일
서울특별시

-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개요
 - 가. 지역의 명칭 : 변경없음
 - 나. 지역의 개요 : 변경없음

지역명	유형	위치	면적(㎡)	비고
장안평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근린재생 중심시가지형	서울특별시 성동구 용답동, 동대문구 장안동·답십리동 일대	508,390㎡	

다. 사업기간(마중물사업) : (기정)2017년 ~ 2020년 → (변경)2017년 ~ 2021년

- 2.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내용
 - 가. 계획명칭 : 변경없음
 - 나. 계획의 비전 및 목표 : 변경없음
 - 다.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의 계획 및 파급효과
 - 1) 도시재생활성화사업 및 재원조달계획
 - 마중물사업 : 총사업비(기정) 196.4억원 → (변경) 166.8억원

(단위: 억원)

사업		주관부서	사업비(사비)			
			기정	변경	증감	
지역산업 지원시설 조성	자동차산업 종합정보센터 조성	균형발전본부	44.0	58.0	증14.0	
	자동차부품 재제조 혁신센터 조성	균형발전본부				
지역산업 현대화	지역산업 거점시설 현대화	매매센터 정비사업	15.0	17.3	증2.3	
		부품상가 정비사업				균형발전본부
		민간개발부지 정비사업				균형발전본부
	인적자원 및 시스템 현대화	중고차 유통구조 개선	균형발전본부			

사 업		주관부서	사업비(시비)			
			기정	변경	증감	
		시스템 개선	균형발전본부			
수출활성화 지원	지역산업 인증브랜드 운영	지역브랜드 제작 및 운영	균형발전본부	22.0	4.0	감18.0
		산업공동브랜드 제작 및 운영	균형발전본부			
	지역산업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인프라 구축	균형발전본부			
		홈페이지 등 제작	균형발전본부			
지역이미지 개선	가로환경 정비	중고부품거리 환경정비	동대문구청	93.6	62.7	감30.9
		부품상가 이면가로 환경정비(폐지)	동대문구청			
		학교가는8/ 길 조성	동대문구청			
		음식문화거리 조성	동대문구청			
		자동차상징거리 조성	동대문구청/성동구청			
		중고차매매거리 조성(신설)	성동구청			
	지역문화기능 강화	정크아트거리 조성	성동구청			
		지역문화 축제 개최	균형발전본부			
기타 지원사업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균형발전본부	16.8	20.7	증3.9
	도시관리계획 수립					
	자동차산업 재생방안 수립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주민공모사업		균형발전본부	5.0	4.1	감0.9	
사업비 예산 총계			196.4	166.8	감29.6	

* 민간재원 사업비 제외, 국비 없음

2) 파급효과 : 변경없음

라.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에 관한 계획 : 해당 없음

마. 예산집행계획

(단위: 억원)

구분	계	단계별 재원투입					
		2016년이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기정	196.4	38.8	32.3	70.7	33.3	21.3	-
변경	166.8	17.0	41.8	19.4	29.7	11.3	47.6

* 민간재원 사업비 제외, 국비 없음

바. 행위제한이 적용되는 지역 : 해당 없음

3. 관련서류 열람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균형발전본부 도시정비과(☎02-2133-8643)에 관련
 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270호

**공덕7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115-97번지 일대(이하 ‘공덕7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6조에 따라 2024년 제 2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2024.03.06) 심의(수정가결)를 거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5월 30일
서울특별시

I.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분	정비사업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 설	공덕7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마포구 공덕동 115-97번지 일대	-	증) 29,972.0	29,972.0	-

2. 토지이용계획

구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총 계		29,972.0	100.0	-
정비기반시설 등	소 계	3,358.6	11.2	-
	도로	1,027.6	3.4	-
	공공청사1	1,531.0	5.1	복합청사
	공공청사2	800.0	2.7	119안전센터
획 지	소 계	26,613.4	88.8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획지1	26,613.4	88.8	

3.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계획(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적(㎡)			비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29,972.0	-	29,972.0	100.0	-
제2종일반주거지역	29,155.1	증) 816.9	29,972.0	100.0	-
일반상업지역	816.9	감) 816.9	-	-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변경사유
		기정	변경		
-	공덕동 108-78번지 일원	일반상업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 역	136.3	• 구역내 용도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일원화
	공덕동 115-62번지 일원			26.6	
	공덕동 115-20번지 일원			654.0	

나. 용도지구 결정 조서 : 해당사항 없음

1.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산출근거 (토지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은 정미구역 지정도서 참조)

가. 추정 비례율 산출근거

구분	항목			금액(천원)
수입	소계			694,841,080
	분양주택	조합원 (보류지 5포함)	351세대	360,928,000
		일반	246세대	255,858,000
	임대주택	재개발임대주택	106세대	43,614,000
		국민주택규모주택	-	-
	기타시설	판매시설	소유자	21,600,194
			일반	13,335,168
	매출부가세			-494,282
지출	소계			390,094,251
	공사비			244,776,555
	보상비			79,063,599

구분	항목	금액(천원)
	관리비	3,437,553
	설계비	3,764,470
	감리비	5,034,952
	기타사업비	16,116,238
	각종 부(분)담금	3,529,181
	제세공과금	6,830,862
	금융비용	10,517,487
	예비비	17,023,354
총전자산 추산액		295,093,101
추정비례율	103.27% = [총수입(694,841,080천원) - 총지출(390,094,251천원) / 총전자산(295,093,101천원)]	

※ 관리처분계획인가 시 개별 물건에 대한 종전자산 감정평가 및 분양가격 확정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공사비 및 분양가 변동표

비례율 변화표	변동률		공사비				
			-10%	-5%	0%	5%	10%
변동률	평균단위단가 (천원/3.3㎡)	6,480	6,840	7,200	7,560	7,920	
분양가 (일반분양기준)	10%	43,780	131.97%	128.07%	124.17%	120.27%	116.37%
	5%	41,790	121.45%	117.55%	113.65%	109.75%	105.84%
	0% (기준)	39,800	111.07%	107.17%	103.27%	99.37%	95.47%
	-5%	37,810	100.46%	96.55%	92.65%	88.75%	84.85%
	-10%	35,820	90.10%	86.20%	82.30%	78.40%	74.50%

5.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위 치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점	종점				
기정	중로	2	2	15~ 19.5	국지 도로	297	공덕동 79-18	공덕동 89-5	일반 도로	-	서고 제2011-176호	변경없음
기정	중로	3	313	12	집산 도로	375	공덕동 116-12	공덕동 117-13	일반 도로	-	-	-
변경	중로	2	(가)	15	집산 도로	375	공덕동 116-12	공덕동 117-13	일반 도로	-	-	폭원확장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위치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점	종점				
기정	소로	3	314	6	국지 도로	128 (112)	공덕동 108-82	공덕동 21-1	일반 도로	-	-	-
변경	소로	3	314	6	국지 도로	118 (103)	공덕동 108-82	공덕동 112-7	일반 도로	-	-	선형변경
폐지	소로	3	-	4	국지 도로	-	공덕동 117-35	공덕동 113-34	일반 도로	-	-	-

※ ()는 구역 내 연장 및 임시번호임

○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3-314	소로3-3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변경 - 연장 : 128m → 118m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개발사업으로 인한 대상지 외부 지역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도로선형 변경
중로3-313	중로2-(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변경 - 폭원 : 12m → 15m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지내로 진출입이 편리하고 대상지 주변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폭원 확대
소로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폐지 - 연장 : - - 폭원 : 4m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구역 내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위하여 폐지

나. 복합청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1	공공청사	복합청사 (주민자치센터, 노인복지시설)	공덕동 117-24번지 일대	-	증) 1,531.0	1,531.0	-	마포구 기부채납

○ 건축범위 결정조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건폐율(%)	용적률(%)	높이(층)
1	공공청사	60% 이하	200% 이하	7층 / 21m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공공청사	· 신설 - 증) A = 1,531.0㎡	·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 공공서비스 지원을위하여 공공청사(주민자치센터, 노인복지시설) 이전 배치

다. 119안전센터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2	공공 청사	119안전센터	공덕동 29-6번지 일대	-	증) 800.0	800.0	-	마포소방서 기부채납

○ 건축범위 결정조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건폐율(%)	용적률(%)	높이(층)
2	공공청사	60% 이하	200% 이하	5층 / 15m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	공공청사	· 신설 - 증) A = 800.0㎡	· 기존 119안전센터 이용성과 활용성을 고려하여 이전배치

6.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법 정		계획면적(㎡)	비고		
			기 준	면적(㎡)				
신설	주민 공동 시설	획지1	소계	1,000세대 미만 (2.5㎡×703세대)×1.25	2,196.9 이상	4,862.3	-	
			경로당	500세대 ~ 1,000세대 미만	330 이상	337.4	지상	
			작은도서관		158 이상	181.2	지상	
			어린이집		330 이상	384.2	지상	
			입주자회의소		-	-	281.2	지하
			독서실		-	-	316.4	지하
			다함께돌봄센터		-	-	844.7	지상/지하
			주민운동시설		-	-	1,054.5	지하
			어린이놀이터		-	-	1,281.0	실외
	경비실	획지1	-	-	44.1	지하		

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법 정		계획면적(㎡)	비고
			기 준	면적(㎡)		
	관리사무소	획지1	50세대 이상 10㎡+[(703-50)×0.05㎡]	-	137.6	지하

- * 본 계획은 세부개발계획수립 및 건축계획시 조정될 수 있음.
- * 서울시 주택조례 제8조의4 및 별표1, 주택건설기준규정 제28조 및 제55조의2
- * 공동이용시설 설치 계획은 관련규정범위 내에서 건축심의 및 사업시행계획인가시 변경 될 수 있음.

7.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등)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신설	공덕제7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29,972.0	획지1	26,613.4	공덕동 115-97번지 일대	237	-	-	237	-	-

8. 건축시설계획

가. 획지 및 주택규모 등에 관한 계획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최고층수																	
	명칭	면적(㎡)	명칭	면적(㎡)																						
신설	공덕제7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29,972.0	획지1	26,613.4	공덕동 115-97번지 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60% 이하	234.94% 이하	85m 이하 (26층 이하)																	
<p>• 총세대수 : 703세대 (재개발일대 106세대, 일반분양 597세대)</p> <p>• 전체 건립규모(전용면적기준)</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건립규모</th> <th>세대수(세대)</th> <th>비율(%)</th> </tr> </thead> <tbody> <tr> <td>합 계</td> <td>703</td> <td>100.0</td> </tr> <tr> <td rowspan="2">60㎡ 이하</td> <td>40㎡ 이하</td> <td>14.8</td> </tr> <tr> <td>50㎡ 초과 ~ 60㎡ 이하</td> <td>39.7</td> </tr> <tr> <td colspan="2">60㎡ 초과 ~ 85㎡ 이하</td> <td>45.2</td> </tr> <tr> <td colspan="2">85㎡ 초과</td> <td>0.3</td> </tr> </tbody> </table> <p>• 85㎡이하 규모의 주택이 전체세대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 99.7%</p> <p>• 임대주택 건설 : 주택 전체 세대수의 15% 이상 또는 전체 연면적의 10% 이상</p> <p>•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30% 이상 또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 이상 : 40㎡ 이하</p> <p>※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은 관련규정범위 내에서 건축심의 및 사업시행계획인가시 조정될 수 있음</p> <p>※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와 주택 전체 세대수 산정 시, 초과용적률에 따라 공급되는 (임대)주택 세대수 제외</p>										건립규모	세대수(세대)	비율(%)	합 계	703	100.0	60㎡ 이하	40㎡ 이하	14.8	50㎡ 초과 ~ 60㎡ 이하	39.7	60㎡ 초과 ~ 85㎡ 이하		45.2	85㎡ 초과		0.3
건립규모	세대수(세대)	비율(%)																								
합 계	703	100.0																								
60㎡ 이하	40㎡ 이하	14.8																								
	50㎡ 초과 ~ 60㎡ 이하	39.7																								
60㎡ 초과 ~ 85㎡ 이하		45.2																								
85㎡ 초과		0.3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최고층수
	명칭	면적(㎡)	명칭	면적(㎡)					
심의완화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용적률 10%완화 (공공보행통로 5%, 돌봄시설 5%)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한계선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측도로 및 남측도로변 : 3m 						
기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도형상가 배치구간 : 만리재옛길변 가로활성화를 위해 배치 및 개방공간 조성 공공보행통로 : 폭원 6m 이상 보차혼용도로 : 폭원 4m, 연장 24m 						

나. 용적률 계획

구분	산정내용								
토지이용 계획	구역면적	대지면적	신설 정비기반시설 면적	신설 정비기반시설내 국·공유지	대지내 용도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 ※ 유상매입 국·공유지 (725.9㎡) 제외	정비기반시설 외 신설 공공시설 등 면적			
	29,972.0㎡	26,613.4㎡	1,027.6㎡	11.0㎡	1,016.6㎡	소계	토지	건축물 환산부지면적	
공공시설 부지 제공면적 (순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순부담면적 = 신설 정비기반시설 - 신설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면적 - 대지내 용도 폐지되는 국공유지 + 정비기반시설 외 신설 공공시설등 면적 = 1,027.6㎡ - 11.0㎡ - 1,016.6㎡ + 3,533.96㎡ = 3,533.96㎡ 								
신설 정비기반시설 + 공공시설등	복합청사 환산부지면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복합청사 환산부지면적 = 표준건축비(원/㎡) × 시설 연면적(㎡) / 부지가액(원/㎡) = 3,457,000 × 10/11 × 3,700 / 11,892,884 = 977.70㎡ 							
		표준건축비	3,457,000원/㎡	▶ 2022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기준					
	시설연면적	3,700㎡	▶ 전체연면적						
	부지가액	11,892,884원/㎡	▶ 구역내 토지 평균공시지가(5,946,442원/㎡, 2023년 기준) × 2						
	※ 환산부지면적 산정시 표준건축비는 부가세 제외하여 산정								
	119 안전센터 환산부지면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119안전센터 환산부지면적 = 표준건축비(원/㎡) × 시설 연면적(㎡) / 부지가액(원/㎡) = 2,947,000 × 10/11 × 1,000 / 11,892,884 = 225.26㎡ 							
표준건축비		2,947,000원/㎡	▶ 2022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기준						
시설연면적		1,000㎡	▶ 전체연면적						
부지가액		11,892,884원/㎡	▶ 구역내 토지 평균공시지가(5,946,442원/㎡, 2023년 기준) × 2						

구 분		산 정 내 용	
		※ 환산부지면적 산정시 표준건축비는 부가세 제외하여 산정	
계획 (기준 및 허용) 용적률	기준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0% - 정비기본계획상 기준용적률 190% 	
	허용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10% 적용 ⇒ 190% + 10% = 200% 	
정비계획 (상한)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4.94% = 허용용적률 × (1 + (1.3 × α토지 × 가중치) + (0.7 × α건축물)) = 200.0% × {1 + (1.3 × 1.25675 × 0.08758) + (0.7 × 0.04520)} = 234.94%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중치 : 공공시설 등 부지 용적률 / 사업부지 용적률 = 251.35% / 200% = 1.25675 ▶ α : 공공시설 부지 제공면적 / 공공시설 부지제공 후 면적 - α토지 : 0.08758 = (3,358.6 - 1,027.6) / (29,972.0 - 3,358.6) - α건축물 : 0.04520 = (977.70 + 225.26) / (29,972.0 - 3,358.6)
법적 상한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0% 이하 		향후 서울특별시 건축심의에서 최종 확정

① 기준용적률	항 목	인센티브	적용 여부	③ 허용용적률 (①+②)
190%	공공보행통로(지역권* 설정) * 지역권 : 통행 등 일정목적으로 타인토지를 자기토지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등기로 설정)	10%p	5%p	200%
	열린단지	5%p	-	
	공개공지	5%p	-	
	돌봄시설	5%p	5%p	
	방재안전	5%p	-	
	지역기반시설정비	5%p	-	
	지역특화	10%p	-	
②인센티브 적용 계		10%p		최대 10%p이내

다. 임대주택 및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 모든 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공공임대주택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해당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의무임대주택 등은 세입자 주거대책 및 도시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 확대 등 공공목적의 공공임대주택 용도로 정하며, 서울시에 매각(처분)하여야 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 이상을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국민주택규모 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 공동주택 단지 내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은 동일(유사)한 규모와 적절한 비율로 혼합하여 특정 동·층 및 라인에 집중되지 않고 분산 되도록 건설하고, 임대주택의 선정은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구역의 특성에 따라 해당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그에 따른다.

1) 임대주택 건설 계획

계획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주택 건설 : 주택 전체 세대수의 15%이상 또는 연면적의 10% •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30% 이상 또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 이상 : 전용면적 40㎡이하 ※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와 주택 전체 세대수 산정 시, 초과용적률에 따라 공급되는 (임대)주택 세대수 제외 		
산출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세대수 : 703세대 • 재개발임대주택 건설계획 : 106세대 - 상한용적률에 해당하는 계획세대수(703세대)의 15%이상 : 703세대 × 15% = 105.45세대 ∴ 106세대 계획 > 105.45세대 •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30%이상 40㎡이하 규모의 주택 건설 - 106세대 × 30% = 31.8세대 ∴ 47세대 계획 > 31.8세대 		
건립 규모	세대수	전체 비율	임대주택 비율
합 계	106세대	15.1%	100.0%
40㎡이하	47세대	6.7%	44.3%
40㎡초과~50㎡이하	30세대	4.3%	28.3%
50㎡초과~60㎡이하	29세대	4.1%	27.4%

9. 환경보전,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및 환경성 검토결과
 가.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분	계 획 내 용	비고
환경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생태계 유지 및 환경보호를 위한 풍부한 조경녹지설치 및 에너지절약형 단지계획 기법 채택 • 자연환경: 빗물의 지하침투율이 최대가 되도록 조경면적 최대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단지와 도로 Level에 맞게 계획 - 녹지면적증가, 지구내 녹지공간조성 및 오픈스페이스 확보 • 생활환경: 스카이라인등을 고려한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정연료(LNG) 사용, 환경정화수증 식재 - 시행후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포장면적의 축소 • 도시계획시행 중 예상되는 환경영향 저감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비 분산투입, 작업장내 차속제한, 저소음·저진동 공사장비 투입, 야간작업 지양 	-
재난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 수해 등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발생가능한 유형의 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에 의거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함 • 지반붕괴를 유발하거나 우수기능을 저해하는 무질서한 절성토의 규제 • 집중호우시를 대비하여 우·오수관로 개량 및 설치계획을 수립 • 단지내의 녹음시설을 통한 수해예방효과를 기대(우수의 침투 및 보수효과) • 건축법 및 주택법의 방화, 소방, 피난 등의 설치 기준을 준수 	-

나. 환경성 검토결과 “악취/전파장해/인구/주거/산업 : 해당없음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에 반영사항	비고	
자연환경	비오톱	비오톱보전 등급 향상	○	• 비오톱유형평가 5등급 및 개별비오톱 평가제외로 조사됨	• 조경녹지 등 녹지공간의 확보 및 비오톱 기능 향상	-
	생태 네트워크	녹지연결성 확보	○	• 일부 주거지역 내 식재 수목	• 조경계획을 반영하여 녹지 확보	-
생활환경	동·식물상	동·식물상보호	○	• 계획지구 및 주변 지역으로 보호할 만한 동·식물은 분포치 않음	• 조경계획을 통한 서식환경 조성	-
	자연환경자산	자연환경 보전	X	• 계획지구 주변 보호지역 없음	-	-
	토지이용	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	○	• 토지이용 및 용도지역 현황조사	• 종합적인 토지이용 및 건축계획 수립	-
	토양	토양오염방지	○	• 토양측정망 검토 결과 기준에 만족	• 공사시 저감대책 수립	-
	지형·지질	지형변화 최소화	○	• 기 조성부지로 지형변화 미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형을 고려한 계획 수립 • 발생 사토처리 계획 수립 • 인접지반 침하대책 수립 	-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에 반영사항	비고	
생활 환경	물순환, 수리·수문	생태면적률 30%	○	• 생태면적을 계획 확인 자연지반녹지, 인공지반녹지 확인	• 인공 및 자연지반 녹지 확보 등 생태면적을 증가 계획 수립	-
	수질	수질 등급 유지 및 오염 최소화	○	• 수질 상태 확인 • 오염원 및 처리시설 현황 확인 • 공사시 토사유출 및 오수 발생 • 운영시 오수발생 및 비점오염물질 유출 영향 예 상	• 수질 등급 유지 또는 오염 최소화도록 저 감방안 수립	-
	바람	바람길 확보	○	• 주풍향 고려 및 통풍축 확보	• 건축물 계획 시 주풍향 고려하여 계획	-
	열	열환경 영향 최소화	○	• 열환경 취약지역 조사	• 열섬효과 최소화 하는 친환경 도시계획기법 적용	-
	대기질 미세먼지	비산먼지 저감 대기오염 최소화	○	• 공사시 비산먼지 및 운영시 대기오염물질 발생 예상	• 비산먼지 및 대기오염물질 발생에 대한 저감 방안 수립	-
	온실가스	온실가스 저감	○	• 공사시 및 운영시 온실가스 발생 예상	• 녹지공간 확보를 통한 이산화탄소 저장, 흡 수가 가능토록 계획 및 신·재생에너지 확보	-
	에너지	에너지자립률 상향계획 수립	○	• 계획 특성상 과다한 에너지소비를 유발하지 않음	• 건축물 에너지수요 감축 및 녹색건축물 활성화 • 친환경 건축자재 선정	-
	친환경적 자원순환	폐기물발생량 최소화	○	• 공사시 및 운영시 폐기물 발생이 예상됨	• 마포구 폐기물 처리계획에 의거하여 적정 처 리	-
	소음 및 진동	규제기준 만족	○	• 공사시 소음·진동 영향 예상	• 공사시 가설방음판넬 설치 • 민원발생 최소화 대책 수립	-
	경관	Skyline 보전	○	• 고층 건물 입지에 의한 스카이라인 변화 예상	• 주변지역과 연계한 스카이라인 계획 수립	-
	휴식 및 여가공간	휴식·여가공간 최대확보	○	• 계획지구 주변 휴식·여가공간 현황	• 휴식 및 여가공간을 확보·계획	-
	일조	일조 침해 최소화	○	• 계획지구: 제2종일반주거지역 • 계획지구 인근: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 • 일부 일조영향 예상	• 관련규정(건축법, 서울시 조례)을 준수한 건 물 배치계획 수립	-
보행 친화공간	보행공간 계획수립	○	• 보행자 위한 공간 확보 계획	• 공공보행통로 설치를 통해 주변지역과의 보행연결성 강화	-	

10. 정비사업 시행계획

구분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기존	증·감	계획
신설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는 날부터 4년 이내	조합	453세대	증 250세대	703세대

11.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 해당사항 없음

12.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계획

구분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계획 내용	비고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지 및 주변 지역에 방법이 취약할 것으로 우려되는 장소에 방범 등 CCTV 설치 CCTV 및 방범 등의 설치 위치는 주민 요청 및 현장조사를 반영하여 선정 	-

II. 지구단위계획 결정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 설	공덕7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마포구 공덕동 115-97번지 일대	-	증 29,972.0	29,972.0	-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 적(㎡)			비율(%)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29,972.0	-	29,972.0	100.0	-
제2종일반주거지역	29,155.1	증) 816.9	29,972.0	100.0	-
일반상업지역	816.9	감) 816.9	-	-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변경사유
		기정	변경		
-	공덕동 108-78번지 일원	일반상업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 역	136.3	• 구역내 용도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일원화
	공덕동 115-62번지 일원			26.6	
	공덕동 115-20번지 일원			654.0	

나. 용도지구 결정 조서 : 해당사항 없음

다. 기반시설 결정(변경) 조서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위 치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점	종점				
기정	중로	2	2	15~ 19.5	국지 도로	297	공덕동 79-18	공덕동 89-5	일반 도로	-	서고 제2011-176호	변경없음
기정	중로	3	313	12	집산 도로	375	공덕동 116-12	공덕동 117-13	일반 도로	-	-	-
변경	중로	2	(가)	15	집산 도로	375	공덕동 116-12	공덕동 117-13	일반 도로	-	-	폭원확장
기정	소로	3	314	6	국지 도로	128 (112)	공덕동 108-82	공덕동 21-1	일반 도로	-	-	-
변경	소로	3	314	6	국지 도로	118 (103)	공덕동 108-82	공덕동 112-7	일반 도로	-	-	선형변경
폐지	소로	3	-	4	국지 도로	-	공덕동 117-35	공덕동 113-34	일반 도로	-	-	-

※ () 는 구역 내 연장임

○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3-314	소로3-314	• 변경 - 연장 : 128m → 118m	• 재개발사업으로 인한 대상지 외부 지역의 원활한 교통소 통을 위해 도로선형 변경
중로3-313	중로2-(가)	• 변경 - 폭원 : 12m → 15m	• 대상지내로 진출입이 편리하고 대상지 주변과 원활한 교 통 소통을 위해 폭원 확대
소로3-	-	• 폐지 - 연장 : - - 폭원 : 4m	• 사업구역 내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위하여 폐지

다. 복합청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	공공청사	복합청사 (주민자치센터, 노인복지시설)	공덕동 117-24번지 일대	-	증) 1,531.0	1,531.0	-	마포구 기부채납

○ 건축범위 결정조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건폐율(%)	용적률(%)	높이(층)
1	공공청사	60% 이하	200% 이하	7층 / 21m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공공청사	• 신설 - 증) A = 1,531.0㎡	•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 공공서비스 지원을위하여 공공청사 이전 배치

라. 119안전센터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2	공공청사	119안전센터	공덕동 29-6번지 일대	-	증) 800.0	800.0	-	마포소방서 기부채납

○ 건축범위 결정조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건폐율(%)	용적률(%)	높이(층)
2	공공청사	60% 이하	200% 이하	5층 / 15m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	공공청사	• 신설 - 증) A = 800.0㎡	• 기존 119안전센터 이용성과 활용성을 고려하여 이전배치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가구	면적(㎡)	획지			비고
			명칭	위치	면적(㎡)	
획지	획지1	29,972.0	획지1	마포구 공덕동 115-97번지 일대	26,613.4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나.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조서

1)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가구	용도	비고
신설	허용용도 획지1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법」 제2조 제9호,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6조 단지안의 부대시설·복리시설 	허용용도는 주원용도임

2) 건축물 개발밀도(건폐율, 용적률, 높이)

가) 건폐율 계획

구분	가구	지역	건폐율	비고
신설	획지1	2종일반주거지역	60% 이하	-

나) 용적률 계획

구분	가구	용적률				비고
		기준	허용	상한	법적상한	
신설	획지1	190%	200%	234.94% 이하	250% 이하	-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사항

구분	인센티브	인센티브량(적용)
공공보행통로	▶주변 가로망 연계를 위한 공공보행통로 등 조성(지역권* 설정) - 기준 : 기준용적률 × (조성면적/대지면적) × α ※ α = 1이하 *지역권 : 통행 등 일정목적으로 타인토지를 자기토지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등기로 설정)	10%p이내 (5%)
돌봄시설	▶지역에 필요한 놀이·돌봄시설 설치 및 제공(무상임대) - 기준 : 놀이·돌봄시설을 전체 주민공동시설(의무면적)의 1/5이상 설치 *국공립어린이집, 서울형키즈카페, 우리동네키움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실내어린이놀이터 등	5%p (5%)

○ 허용용적률 완화 사항

구 분	위 치	인센티브			비 고
		돌봄시설	감성디자인		
			공공보행통로	열린단지	
신설	획지1	5%	5%	-	총 : 10% (최대10%이내)

○ 상한용적률 완화 사항

구 분	용적률완화		비 고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신설	34.94%		-

다) 높이 계획

구 분	가 구	지 역	높이기준	비 고
신설	획지1	제2종일반주거지역	최고 85m이하, 26층이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다. 건축물 건축선에 관한 계획

구 분	계획항목	적용위치	계획내용	비 고
신설	건축한계선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건축한계선 : 3m	-

라. 건축계획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1) 건축물의 배치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적용위치	계획내용	비 고
스카이라인	획지1	• 주변과 조화를 이룬 스카이라인 형성	-
연도형상가	획지1	• 하정로변 가로 활성화를 위한 연도형상가 배치구간 폭 20m 지정	-

2)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에 관한 계획

구 분	적용위치	계획내용	비 고
건축물 외부형태	획지1	• 도시경관을 고려한 층수, 평면 및 단면 등을 다양화한 주동의 형태계획	-
입면계획	획지1	• 건축물의 저층부 및 고층부는 주변과의 연계된 디자인으로 계획	-
기 타	획지1	• 일조가 확보되는 곳은 벽면일체형 태양광패널(BIPV) 설치	-

마. 기타 사항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1) 대지내 공지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적용위치	계획내용	비 고
오픈스페이스	획지1	• 대상지 주진입부 근처에 오픈스페이스를 계획해 보행안전도모	-

2) 교통처리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적용위치	계획내용	비 고
차량출입 불허구간	획지1	• 차량진출입구를 제외한 도로변에서의 직접적인 차량진출입 불허	-
차량출입구	획지1	• 주진입로 1개소, 비상차량출입구 2개소 계획	-
공공보행통로	획지1	• 단지 중앙부 인근 개발현황 등과 연계한 동서방향 공공보행통로 계획 (폭 6m) ※ 공공보행통로에 대해서는 공공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권 설정(지역권자 : 마포구청장)	-
보차혼용통로	획지1	• 단지 동측 인접대지에 보차혼용통로 1개소 계획 (폭 4m, 연장 24m)	-

4) 환경관리계획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에 반영사항	비고
자연 환경	비오름	비오름보전 등급 향상	○	• 비오름유형평가 5등급 및 개별비오름 평가제외로 조사됨	• 조경녹지 등 녹지공간의 확보 및 비오름 기능 향상	-
	생태 네트워크	녹지연결성 확보	○	• 일부 주거지역 내 식재 수목	• 조경계획을 반영하여 녹지 확보	-
생활 환경	동·식물상	동·식물상보호	○	• 계획지구 및 주변 지역으로 보호할 만한 동·식물은 분포치 않음	• 조경계획을 통한 서식환경 조성	-
	자연환경자산	자연환경 보전	X	• 계획지구 주변 보호지역 없음	-	-
	토지이용	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	○	• 토지이용 및 용도지역 현황조사	• 종합적인 토지이용 및 건축계획 수립	-
	토양	토양오염방지	○	• 토양측정망 검토 결과 기준에 만족	• 공사시 저감대책 수립	-
	지형·지질	지형변화 최소화	○	• 기 조성부지로 지형변화 미미	• 현지형을 고려한 계획 수립 • 발생 사도처리 계획 수립 • 인접지반 침하대책 수립	-
	물순환, 수리·수문	생태면적률 30%	○	• 생태면적률 계획 확인 자연지반녹지, 인공지반녹지 확인	• 인공 및 자연지반 녹지 확보 등 생태면적률 증가 계획 수립	-

검토향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에 반영사항	비고	
생활 환경	수질	수질 등급 유지 및 오염 최소화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질 상태 확인 오염원 및 처리시설 현황 확인 공사시 토사유출 및 오수 발생 운영시 오수발생 및 비점오염물질 유출 영향 예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질 등급 유지 또는 오염 최소화도록 저감방안 수립 	-
	바람	바람길 확보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풍향 고려 및 통풍축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 계획 시 주풍향 고려하여 계획 	-
	열	열환경 영향 최소화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열환경 취약지역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열섬효과 최소화 하는 친환경 도시계획기법 적용 	-
	대기질 미세먼지	비산먼지 저감 대기오염 최소화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시 비산먼지 및 운영시 대기오염물질 발생 예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산먼지 및 대기오염물질 발생에 대한 저감방안 수립 	-
	온실가스	온실가스 저감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시 및 운영시 온실가스 발생 예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녹지공간 확보를 통한 이산화탄소 저장, 흡수가 가능토록 계획 및 신·재생에너지 확보 	-
	에너지	에너지자립률 상향계획 수립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획 특성상 과다한 에너지소비를 유발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 에너지수요 감축 및 녹색건축물 활성화 친환경 건축자재 선정 	-
	친환경적 자원순환	폐기물발생량 최소화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시 및 운영시 폐기물 발생이 예상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포구 폐기물 처리계획에 의거하여 적정 처리 	-
	소음 및 진동	규제기준 만족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시 소음·진동 영향 예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시 가설방음판넬 설치 민원발생 최소화 대책 수립 	-
	경관	Skyline 보전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층 건물 입지에 의한 스카이라인 변화 예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변지역과 연계한 스카이라인 계획 수립 	-
	휴식 및 여가공간	휴식·여가공간 최대확보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획지구 주변 휴식·여가공간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휴식 및 여가공간을 확보·계획 	-
	일조	일조 침해 최소화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획지구: 제2종일반주거지역 계획지구 인근: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일부 일조영향 예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련규정(건축법, 서울시 조례)을 준수한 건물 배치계획 수립 	-
	보행 친화공간	보행공간 계획수립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행자 위한 공간 확보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보행통로 설치를 통해 주변지역과의 보행연결성 강화 	-

- 5) 임대주택 및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에 관한 결정조서
- 모든 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공공임대주택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해당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의무임대주택 등은 세입자 주거대책 및 도시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 확대 등 공공목적의 공공임대주택 용도로 정하며 서울시에 매각(처분)하여야 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 이상을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국민주택규모 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 공동주택 단지 내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은 동일(유사)한 규모와 적절한 비율로 혼합하여 특정 동·층 및 라인에 집중되지 않고 분산 되도록 건설하고, 임대주택의 선정은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구역의 특성에 따라 해당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그에 따른다.
 - 주택의 규모별 비율(정비계획)

건립규모	전체 세대수	전체 비율(%)	공공임대주택 세대수			공공임대주택 비율(%)		
			계	재개발임대	국민주택규모 임대	전체세대수 대비	전체비율	공공임대중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합 계	703	100.0	106	106	-	15.1	100.0	-
전용 36㎡	104	14.8	47	47	-	6.7	44.3	-
전용 46㎡	77	11.0	30	30	-	4.3	28.3	-
전용 59㎡	202	28.7	29	29	-	4.1	27.4	-
전용 74㎡	132	18.8	-	-	-	-	-	-
전용 84㎡	186	26.4	-	-	-	-	-	-
전용 114㎡	2	0.3	-	-	-	-	-	-

□ 2024년 제2차(‘24.03.06.)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원회 심의결과 : ‘수정가결’

구 분	심의 결과	심의의견	반영계획	비고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등 수권분과위원회	수정 가결	•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 29,972㎡	•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 29,972㎡	반영
		• 용적률 : 기준 190%, 허용 200%, 상한 234.94% ※ 허용 : 공공보행통로 : 5%, 돌봄시설 5%	• 용적률 : 기준 190%, 허용 200%, 상한 234.94% ※ 허용 : 공공보행통로 : 5%, 돌봄시설 5%	반영
		• 공공기여 : 3,533.96㎡ ※ 공공청사(복합청사) 2,508.7㎡, 공공청사(119) 1,025.26㎡ ※ 「도시정비법」 제97조에 정함되도록 무상양도 대상 국공유지 면적 산정	• 공공기여 : 3,533.96㎡ ※ 공공청사(복합청사) 2,508.7㎡, 공공청사(119) 1,025.26㎡ ※ 무상양도 대상 국공유지 면적은 「도시정비법」 제97조에 정함되도록 정비기반시설(도로) 면적 1,027.6㎡으로 산정하였음	반영

구 분	심의 결과	심의의견	반영계획	비고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등 수권분과위원회	수정 가결	높이계획 : 85m 이하 (최고 26층)	높이계획 : 85m 이하 (최고 26층)	반영
		세대수 : 전체 703세대 (임대 106세대) ※ 임대 : 재개발의무 106세대	세대수 : 전체 703세대 (임대 106세대) ※ 임대 : 재개발의무 106세대	반영
		보차혼용통로(1개소) : 폭원 4m, 연장 24m	보차혼용통로(1개소) : 폭원 4m, 연장 24m	반영
		돌봄시설은 추후 지역 돌봄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시설(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등)을 도입할 수 있도록 면적을 추가 확보하고, 추가 돌봄시설은 복합청사와 지역도로(마포대로14길)에서 접근이 용이하도록 복합청사와 연결하여 배치할 것	돌봄시설 면적 400㎡를 추가확보 추가 돌봄시설의 위치는 복합청사와 남측도로에서 접근이 용이하도록 복합청사와 인접하여 배치	반영
		대상지 남서측 공공청사(복합청사) 연접부 차량진출입불허구간은 주민공람안을 유지할 것	대상지 남서측 공공청사(복합청사) 연접부 차량진출입불허구간은 주민공람안 유지	반영

III. 관련도면 : 붙임 참조

1. 정비구역 결정도(신설)
2. 정비계획 결정도(신설)
3. 용도지역·지구 결정도(기정/변경)
4. 도시계획시설 결정도(기정/변경)
5.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신설)

※ 첨부된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 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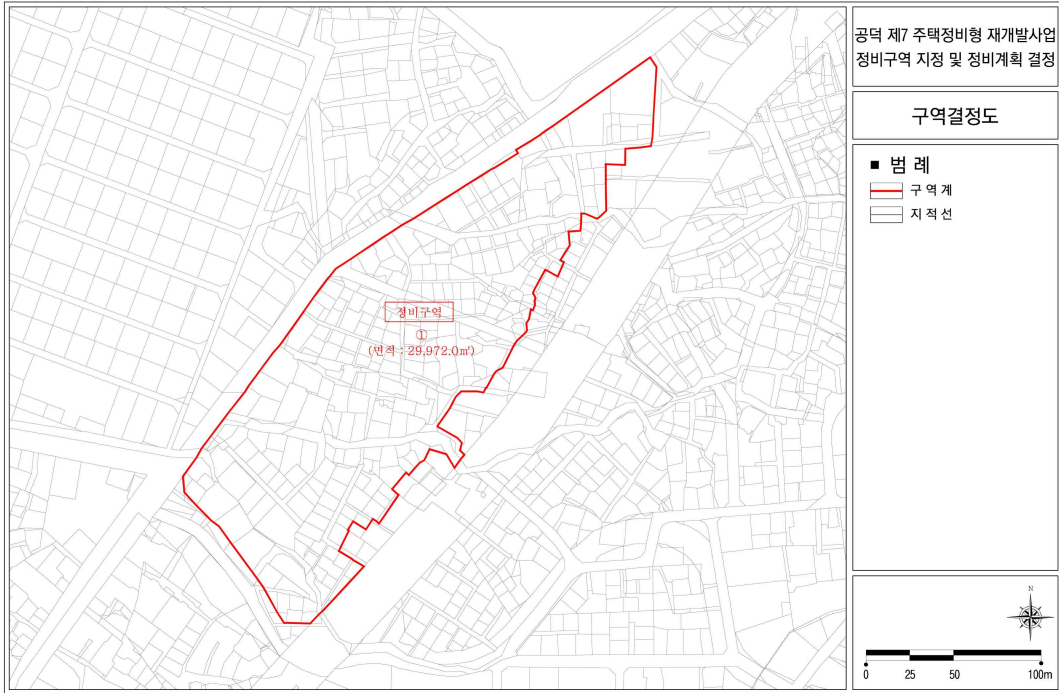
IV.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결정 도서 : 생략

V. 열람장소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02-2133-7208), 마포구 주택상생과(☎02-3153-9333)에 관계서류를 비치 및 열람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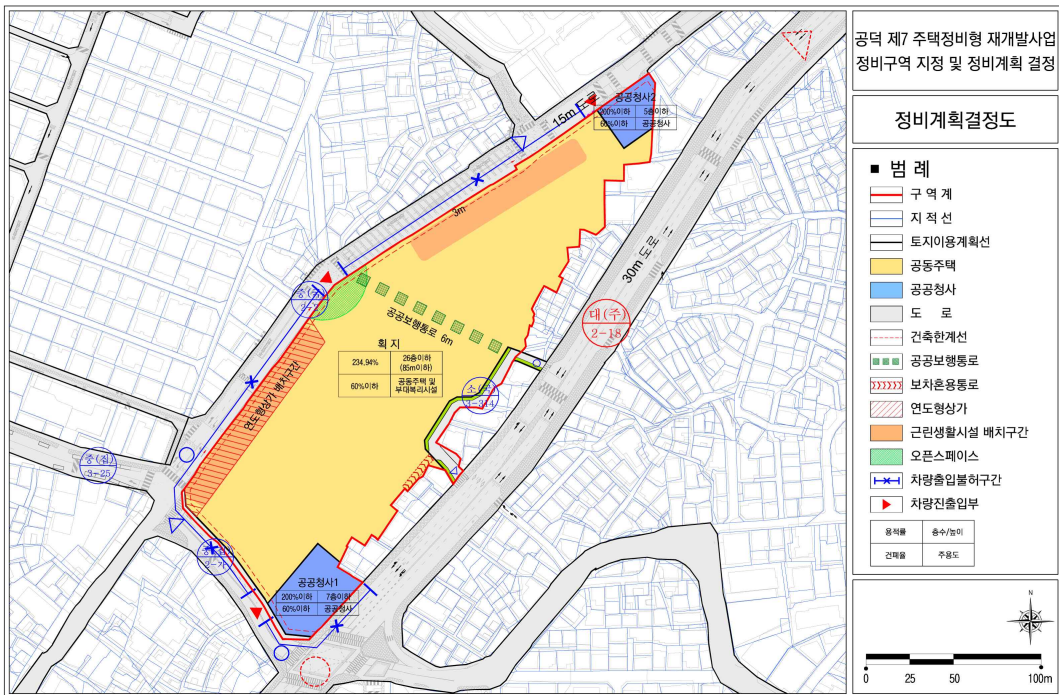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s://www.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VI.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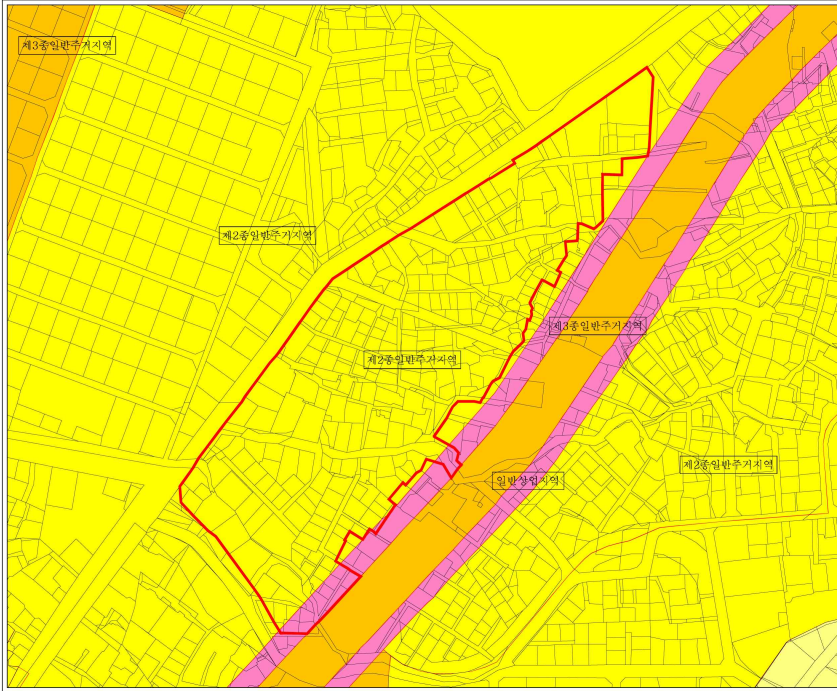
■ 정비구역 결정도(신설)



■ 정비계획 결정도(신설)



■ 용도지역·지구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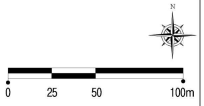


공덕 제7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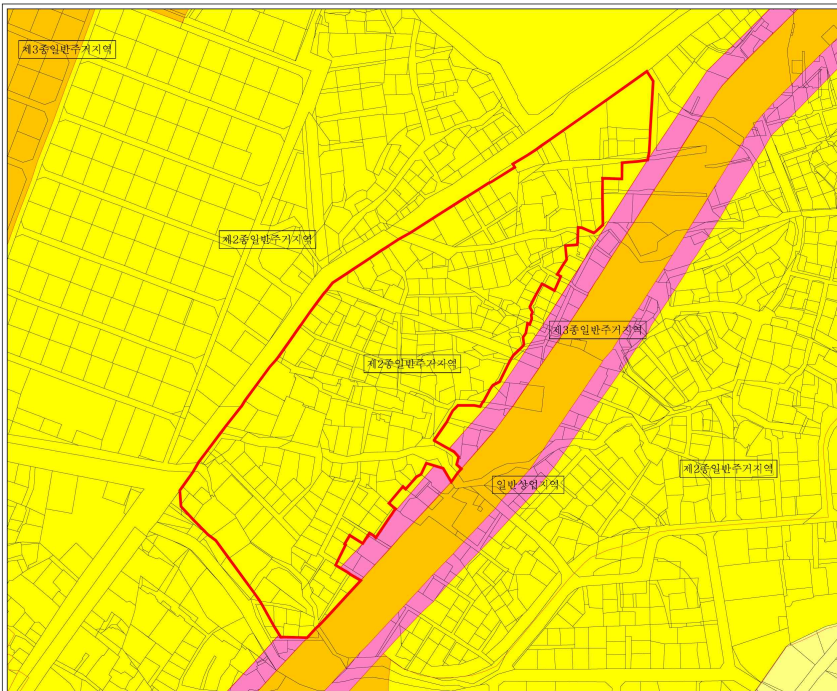
용도지역결정도(기정)

■ 범례

- 구역 계
- 지적 선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



■ 용도지역·지구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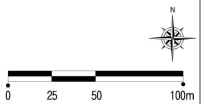


공덕 제7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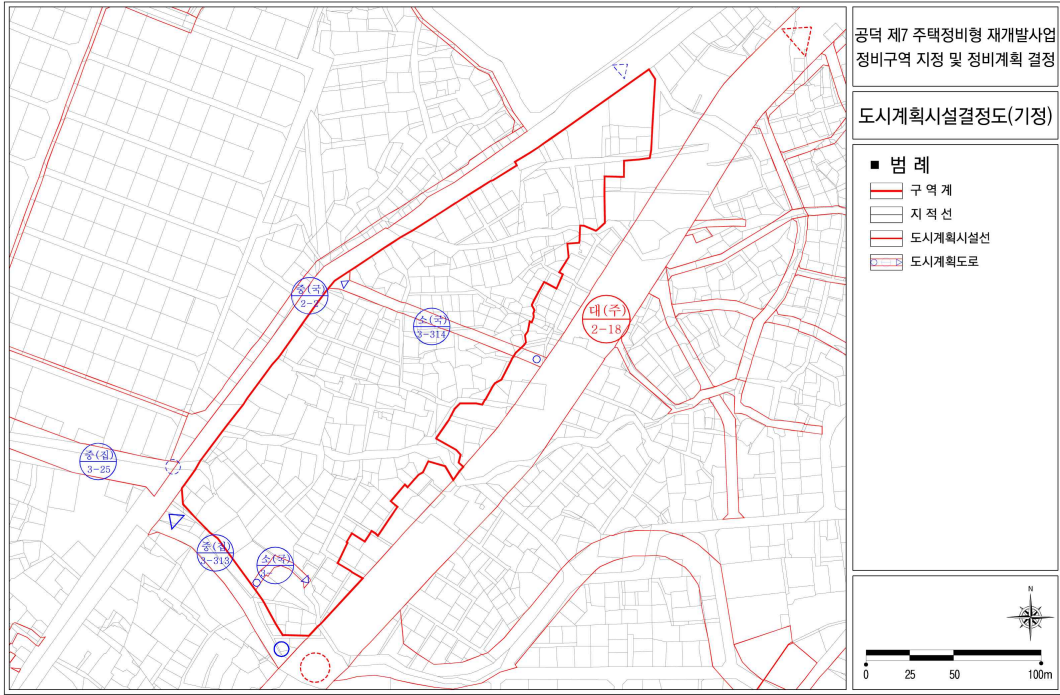
용도지역결정도(변경)

■ 범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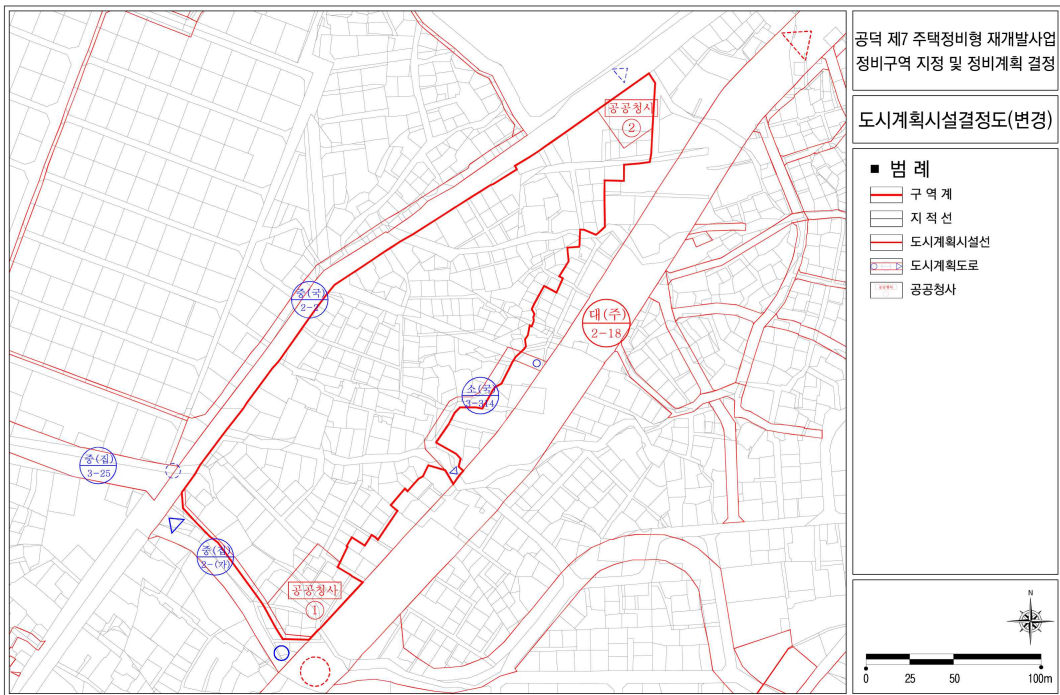
- 구역 계
- 지적 선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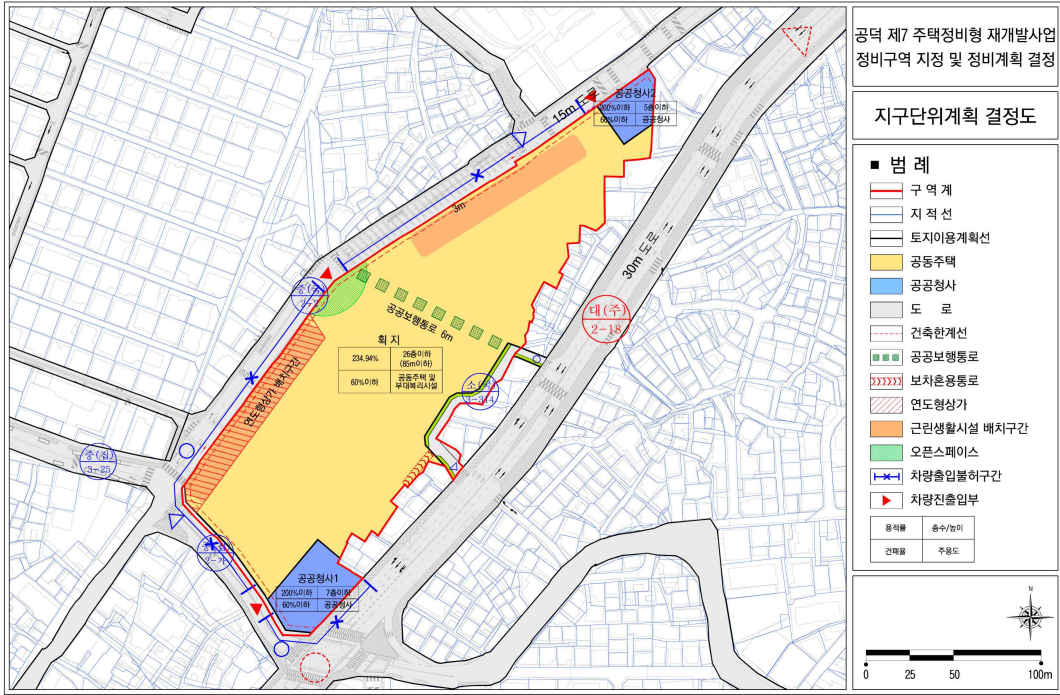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기정)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변경)



■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신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273호

특별건축구역 지정 고시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빙고동 60번지 일대 한남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하여 「건축법」 제71조에 따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고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5월 30일
서울특별시장

1. 지정의 목적

- 가. 남산과 한강의 관계 정립을 통한 서울의 주요 조망축 확보
- 나. 기존 도시조직(보호수 등) 및 흔적을 다양한 길로 재구성하여 가로 중심의 열린 공동체 회복
- 다. 경사지 지형에 순응하고, 한강변 다채로운 주거단지 조성

2. 특별건축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구역명	위 치	면 적(㎡)
한남5재정비촉진구역	서울시 용산구 동빙고동 60번지 일대	141,186

※ 추후 측량결과에 따라 면적 변경될 수 있음

3.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등에 관한 주요 사항

가.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구역명	용 도	최고층수	비 고
한남5재정비촉진구역 (5-36BL, 5-37BL, 5-39BL, 5-41BL, 5-42BL)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23층	오피스텔은 비주거 용도에서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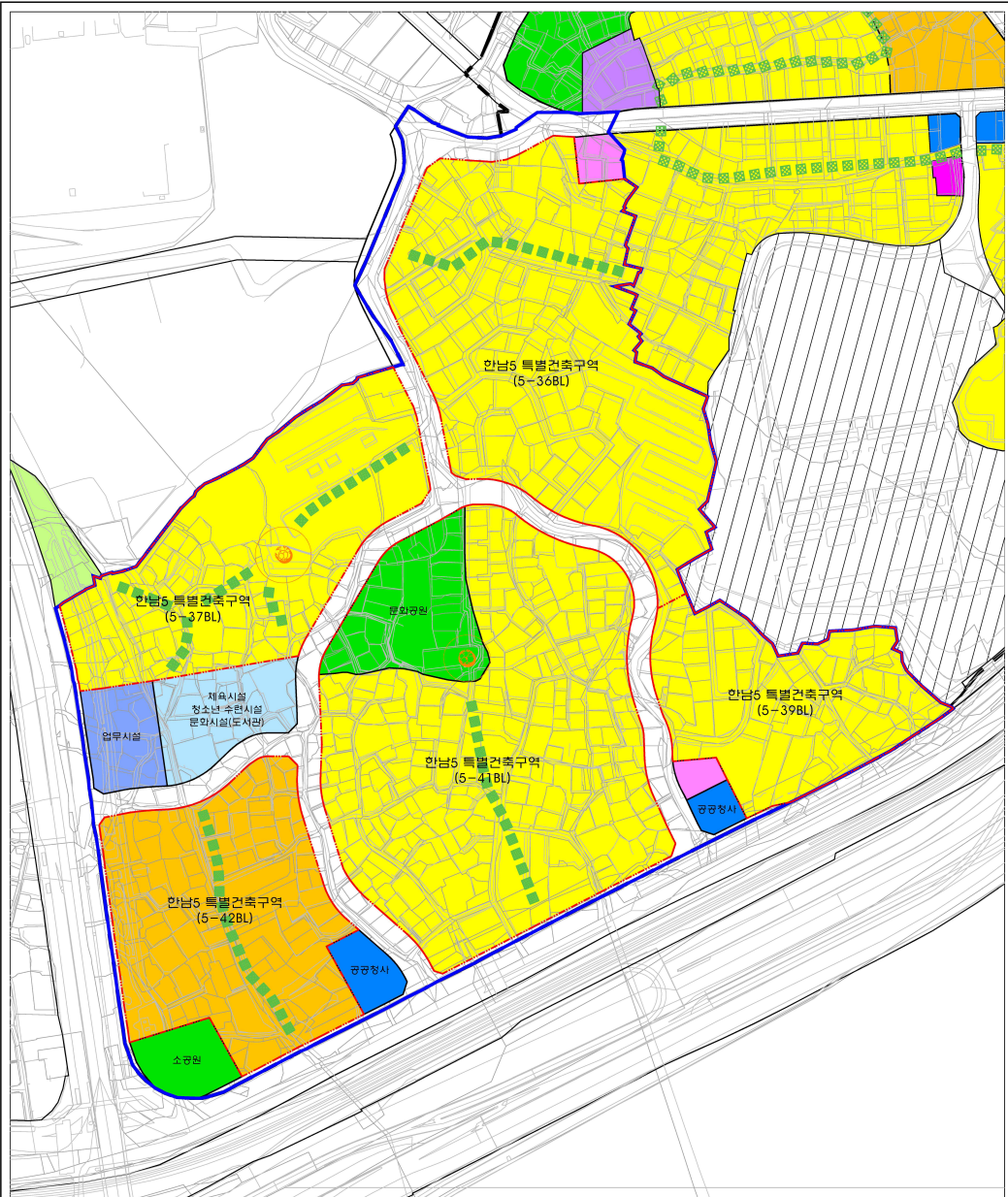
※ 5개 BL 중 주택용지에 한함

나. 특례적용사항

구역명	특례적용사항	적용 취지
한남5 특별건축구역	「건축법」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적용 배제	• 해발고도(90.00m) 제한구역으로서 남산 조망 경관의 공공성 확보와 한강변 수변경관 창출을 위한 중저층을 배치하여 새로운 주거공간과 주동 형태를 구현하기 위함.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2조 (유치원) : 적용배제	• 저출생에 따른 유치원 이용수요 감소로 유보체계를 통합하여 원아 수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특화 어린이집 계획으로 미래수요에 대처 하고자 함.

- 4. 건축물의 설계, 공사감리 및 건축시공 등 발주방법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5. 도시계획시설의 신설·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변경 등에 관한 사항 : 변경사항 없음
- 6. 기타사항
 - 특별건축구역 지정과 관련한 서류는 서울시 재정비촉진사업과(☎02-2133-7218) 및 용산구 재정비사업과(☎02-2199-7452)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특별건축구역 결정도



한남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한남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특별건축구역 결정도

■ Index

- 한남5 재정비촉진지구 구역계
- 한남5 특별건축구역

Scale=1:2,400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546호

중합건설사업자 행정처분(영업정지)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영업정지)하고, 이 사실을 법인의 본점 소재지 및 대표이사 자택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2024년 5월 30일
서울특별시장

1. 공고기간 : 2024. 5. 30.~2024. 6. 13.(14일간)

2. 처분 사전통지 사항

업 체 명 (대표자)	업종 및 등록번호	소 재 지	위반내용	위반 법규	처분내용	처분 근거
(주)아이렉스건설 최진규	건축공사업 01-3760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44길 68 2층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기술능력)	법 제10조 제1호	영업정지 5개월 (2024. 6. 15. ~ 2024. 11. 14.)	법 제83조 제3호

3. 위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문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처분을 행한 행정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문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그리고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하여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05로 문의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572호

도시계획시설(철도)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 1. 서울시고시 제1993-77호('93.03.24.)로 최초결정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철도)에 대해 승강편의시설 설치에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거 관계 서류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 2. 관계 서류는 서울특별시청 도시철도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며, 열람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기간 내 열람 장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5월 30일
서울특별시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111-44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류 : 도시계획시설(철도) 설치사업
- 2) 명칭 : 7호선 청담역 5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다.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1) 명칭 : 서울교통공사
- 2)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346

라. 사업의 규모 : 108.0㎡

마. 준공예정일

- 1) 준공예정일 : '29.07.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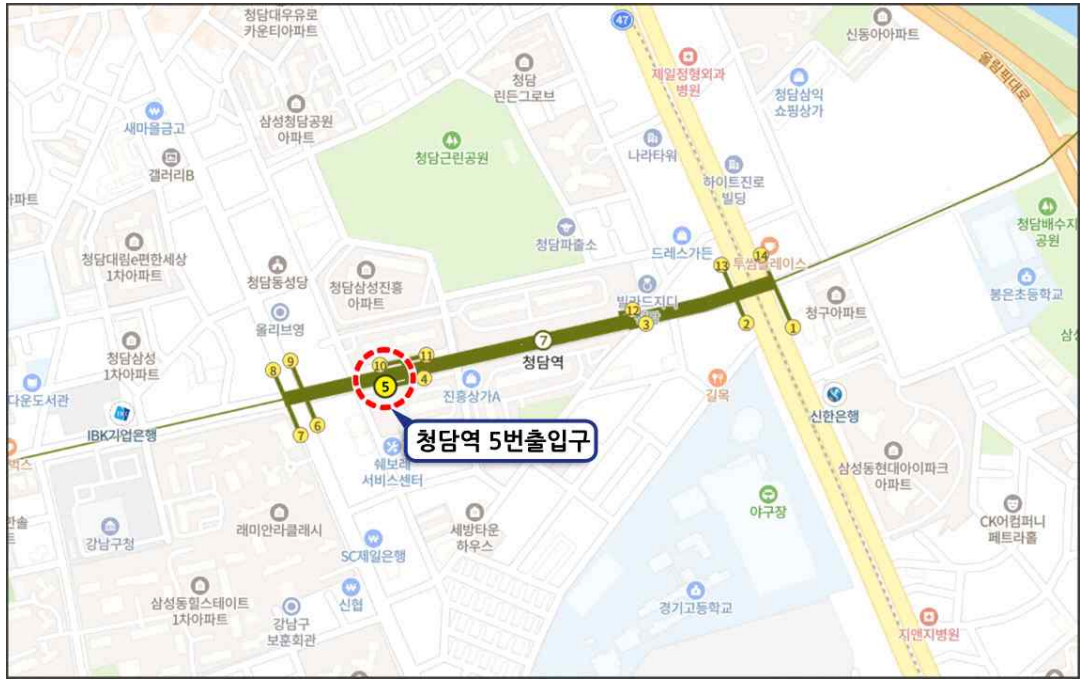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물건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 명세 및 그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 주소 : 열람도서 참조

사. 열람기간 : 2024. 5. 30. ~ 2024. 6.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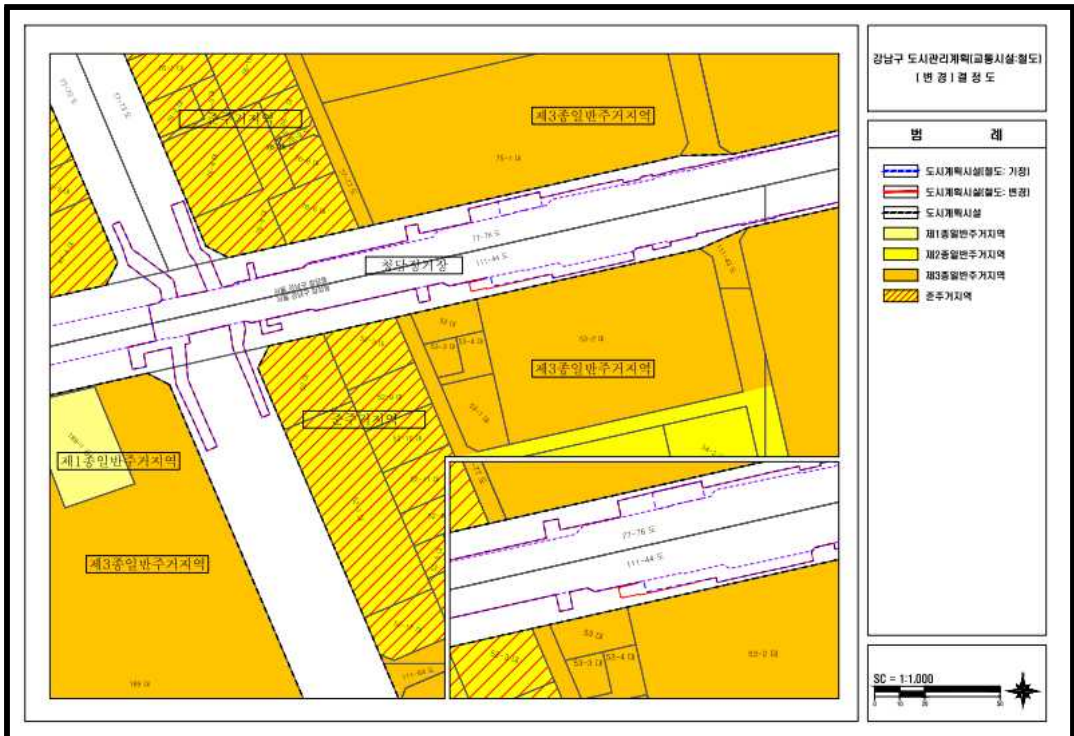
아.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청 도시철도과(중구 덕수궁길 15, 6층)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청 도시철도과(☎2133-435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치도



□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안)도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574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통지 공시송달 공고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9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의거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부동산)압류통지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인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30일
서울특별시

1. 공고기간 : 2024. 5. 30. ~ 2024. 6. 12.

2. 공시송달 내역

가.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고객번호	급수설비 소재지	납 기			
		과 목	납 기	횟수	금 액(원)
023444289	영등포구 대림로41길 8-11, (지하)(대림동)	상하수도요금	22.02~24.02	13	53,280

나. 압류 내역

압류구분	압류물건	물건 소유자		압류금액(원)	압류일
		성 명	주 소		
부동산 (건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로41길 8-11, (지하)(대림동)	황태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로41길 8-1 (대림동)	53,280	'24.4.15.

3.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남부 수도사업소 요금과 전지호(☎02-3146-4510)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589호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부과고지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자들에게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7조, 「지방세징수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고지서 및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고 대상자와 연락도 되지 않아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30일
서울특별시

1. 건 명: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부과고지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2. 근 거: 「도로법」 제77조, 제1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5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7조, 「지방세징수법」 제32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가.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부과고지

대 상 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성명	주 소		
정*윤	충청북도 충주시 중앙탑면 원양4길 **, ***동 ***호(중앙탑면)	일시: 2024-03-21 12:43 장소: 서부간선지하도로(하행) 내용: 운행제한 높이 0.16m 초과	처분일: 2024. 5. 2. 과태료: 30만 원 납기일: 2024. 6. 30.
김*기	경기도 시흥시 계수로 **, ***동 ****호(대야동)	일시: 2024-03-28 18:49 장소: 화곡로 내용: 운행제한 폭 0.28m 초과	처분일: 2024. 5. 2. 과태료: 30만 원 납기일: 2024. 6. 30.
김*완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28길 ***-**, ***호(삼전동)	일시: 2024-03-25 09:50 장소: 봉천동 635-430 공사 현장 내용: 도로법 제77조 제2항 임차인 등의 관리 의무 소홀	처분일: 2024. 5. 2. 과태료: 50만 원 납기일: 2024. 6. 30.

나.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독촉고지

대 상 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성명	주 소		
이*호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말구리길 **~**	일시: 2024-01-19 13:59 장소: 신림동 537-32 공사 현장 내용: 도로법 제77조 제2항 임차인 등의 관리 의무 소홀	처분일: 2024. 2. 26. 과태료: 50만 원 납기일: 2024. 4. 30.
안*용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각골동로 **~**호(본오동)	일시: 2024-01-30 14:17 장소: 안양천로 내용: 운행제한 폭 0.28m 초과	처분일: 2024. 2. 26. 과태료: 30만 원 납기일: 2024. 4. 30.
강*훈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월평하원로 ***~*(하원동)	일시: 2024-01-15 05:52 장소: 안양천로 내용: 운행제한 폭 0.28m 초과	처분일: 2024. 2. 26. 과태료: 30만 원 납기일: 2024. 4. 30.
오*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동현로 ****~**, *동 ***호(교양동)	일시: 2024-01-18 14:19 장소: 신수동 지역주택조합 공사현장 내용: 도로법 제77조 제2항 임차인 등의 관리 의무 소홀	처분일: 2024. 2. 26. 과태료: 50만 원 납기일: 2024. 4. 30.

4. 공고기간: 2024. 5. 30.~2024. 6. 12.

5. 납부기한: 2024. 6. 30.

6.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가. 강서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로부터 고지서를 받아 시중 은행 본·지점(한국은행 제외), 농협 및 수협중앙회 본·지점,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etax.seoul.go.kr)에 접속하여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또한 전용계좌에 입금함으로써 편리하게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나.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최고 75% 가산금이 부과되며 재산압류,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7.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안내

가. 이의제기 기한: 공고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

나. 이의제기 기한 내에 서면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청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기한 내에 이의제기서가 도달하지 않은 경우 이의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다. 접수된 이의제기서는 관할법원에 통보되어 해당 사건에 대한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라. 과태료 부과 처분청(이의제기서 제출처)

-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237(마곡동) 강서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 전화번호: 02-2657-7922, 팩스번호: 02-2657-7950
- 전자우편: skyblue7@seoul.go.kr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590호

철도안전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철도안전법」 제47조(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또는 제49조(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 준수)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동법 제82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었으나, 수취인 불명, 주소불명, 수취거절, 기타 등의 사유로 반송된 사전통지서 송달 불능분을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5월 30일
서울특별시

1. 건 명: 철도안전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근 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별첨
4. 공고기간 : 2024. 5. 30. ~ 2024. 6. 12.(14일간)
 - 공시송달 대상자는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단속되었기에 「철도안전법」 제82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과태료 부과에 의견이 있으실 경우 의견제출 기한 내에 아래의 안내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됩니다.
5. 의견제출 안내
 -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메일: yka1303@seoul.go.kr
 - 팩스: 02-2133-1076
 - 우편: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 도시철도과
 - 방문: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6층 도시철도과
 - 의견제출기한 : 2024. 6. 12. ~ 2024. 6. 26. (15일간)
6. 문의처
 -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청 도시철도과(☎02-2133-43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로붙임 : 1.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2. 의견 제출서 1부. 끝.

철도안전법위반 과태료 2024년 2월 위반자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건

순번	등기번호	반송사유	반송일시	수취인주민번호	수취인명	발송지 주소	위반장소	위반일시
1	1078833141701	이사불명	2024-05-10 14:02	5304**-*****	김*직	경기도 광명시 소하로 55	열차	2024-02-14 13:55
2	1078833141702	이사불명	2024-05-10 14:02	5304**-*****	김*직	경기도 광명시 소하로 55	열차	2024-02-23 13:53
3	1078833141703	기타	2024-05-17 13:00	4204**-*****	김*업	서울시 성동구 사근동10가길	열차	2024-02-22 16:53
4	1078833141704	기타	2024-05-17 09:30	4406**-*****	김*욱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15	열차	2024-02-12 14:37
5	1078833141705	기타	2024-05-17 09:30	4406**-*****	김*욱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15	열차	2024-02-03 12:08
6	1078833141706	기타	2024-05-17 09:30	4406**-*****	김*욱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15	열차	2024-02-04 11:14
7	1078833141707	기타	2024-05-17 09:30	4406**-*****	김*욱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15	열차	2024-02-04 12:39
8	1078833141708	기타	2024-05-17 09:30	4406**-*****	김*욱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15	열차	2024-02-23 13:26
9	1078833141709	기타	2024-05-17 09:30	4406**-*****	김*욱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15	열차	2024-02-03 10:38
10	1078833141710	기타	2024-05-17 09:30	4406**-*****	김*욱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15	열차	2024-02-05 11:38
11	1078833141711	기타	2024-05-17 09:30	4406**-*****	김*욱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15	열차	2024-02-12 10:45
12	1078833141712	기타	2024-05-17 09:30	4406**-*****	김*욱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15	열차	2024-02-21 10:50
13	1078833141713	기타	2024-05-17 09:30	4406**-*****	김*욱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15	열차	2024-02-27 10:57
14	1078833141714	기타	2024-05-17 09:30	4406**-*****	김*욱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15	열차	2024-02-28 10:45
15	1078833141715	기타	2024-05-17 09:30	4406**-*****	김*욱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15	열차	2024-02-08 13:59
16	1078833141716	기타	2024-05-17 09:30	4406**-*****	김*욱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15	열차	2024-02-22 11:40
17	1078833141717	기타	2024-05-17 09:30	4406**-*****	김*욱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15	열차	2024-02-22 13:25
18	1078833141718	기타	2024-05-17 09:30	4406**-*****	김*욱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15	열차	2024-02-29 13:10
19	1078833141719	기타	2024-05-16 18:30	4811**-*****	김*록	서울시 노원구 덕릉로 662	열차	2024-02-07 10:56
20	1078833141720	기타	2024-05-16 18:30	4811**-*****	김*록	서울시 노원구 덕릉로 662	열차	2024-02-27 10:40
21	1078833141746	기타	2024-05-17 10:32	6102**-*****	박*선	서울시 영등포구 도선로 51길	열차	2024-02-03 10:52
22	1078833141747	기타	2024-05-17 10:32	6102**-*****	박*선	서울시 영등포구 도선로 51길	열차	2024-02-17 11:17
23	1078833141750	기타	2024-05-17 10:32	7304**-*****	백*현	서울시 영등포구 영신로1길	열차	2024-02-01 12:15
24	1078833141754	주소불명	2024-05-10 15:04	4711**-*****	서*석	서울시 중구 청구로 71	열차	2024-02-05 12:12
25	1078833141751	주소불명	2024-05-10 15:04	4711**-*****	서*석	서울시 중구 청구로 71	열차	2024-02-04 11:04
26	1078833141752	주소불명	2024-05-10 15:04	4711**-*****	서*석	서울시 중구 청구로 71	열차	2024-02-21 14:14

순번	등기번호	반송사유	반송일시	수취인주민번호	수취인명	발송지 주소	위반장소	위반일시
27	1078833141753	주소불명	2024-05-10 15:04	4711*-*****	서*석	서울시 중구 청구로 71	열차	2024-02-02 11:48
28	1078833141755	주소불명	2024-05-10 15:04	4711*-*****	서*석	서울시 중구 청구로 71	열차	2024-02-07 11:11
29	1078833141757	수취인 불명	2024-05-10 14:07	7511*-*****	연*성	서울시 성동구 한림말 3길 22	열차	2024-02-17 11:51
30	1078833141758	수취인 불명	2024-05-10 12:00	7008*-*****	이*일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647	열차	2024-02-08 12:06
31	1078833141768	폐문부재	2024-05-17 13:08	5409*-*****	이*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2길 25	열차	2024-02-01 11:06
32	1078833141769	폐문부재	2024-05-17 13:08	5409*-*****	이*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2길 25	열차	2024-02-01 13:05
33	1078833141770	폐문부재	2024-05-17 13:08	5409*-*****	이*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2길 25	열차	2024-02-02 11:11
34	1078833141771	폐문부재	2024-05-17 13:08	5409*-*****	이*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2길 25	열차	2024-02-02 13:45
35	1078833141772	폐문부재	2024-05-17 13:08	5409*-*****	이*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2길 25	열차	2024-02-07 11:27
36	1078833141773	폐문부재	2024-05-17 13:08	5409*-*****	이*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2길 25	열차	2024-02-07 13:34
37	1078833141774	폐문부재	2024-05-17 13:08	5409*-*****	이*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2길 25	열차	2024-02-09 11:16
38	1078833141775	폐문부재	2024-05-17 13:08	5409*-*****	이*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2길 25	열차	2024-02-13 13:56
39	1078833141776	폐문부재	2024-05-17 13:08	5409*-*****	이*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2길 25	열차	2024-02-14 10:58
40	1078833141777	폐문부재	2024-05-17 13:08	5409*-*****	이*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2길 25	열차	2024-02-19 11:28
41	1078833141778	폐문부재	2024-05-17 13:08	5409*-*****	이*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2길 25	열차	2024-02-20 11:08
42	1078833141779	폐문부재	2024-05-17 13:08	5409*-*****	이*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2길 25	열차	2024-02-20 11:20
43	1078833141780	폐문부재	2024-05-17 13:08	5409*-*****	이*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2길 25	열차	2024-02-20 14:44
44	1078833141781	폐문부재	2024-05-17 13:08	5409*-*****	이*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2길 25	열차	2024-02-26 11:11
45	1078833141782	폐문부재	2024-05-17 13:08	5409*-*****	이*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2길 25	열차	2024-02-27 11:10
46	1078833141783	폐문부재	2024-05-17 13:08	5409*-*****	이*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2길 25	열차	2024-02-27 11:39
47	1078833141784	폐문부재	2024-05-17 13:08	5409*-*****	이*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2길 25	열차	2024-02-27 12:22
48	1078833141785	폐문부재	2024-05-17 13:08	5409*-*****	이*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2길 25	열차	2024-02-27 13:57
49	1078833141786	폐문부재	2024-05-17 13:08	5409*-*****	이*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2길 25	열차	2024-02-29 11:59
50	1078833141787	폐문부재	2024-05-17 13:08	5409*-*****	이*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2길 25	열차	2024-02-29 12:00
51	1078833141791	기타	2024-05-17 14:15	4810*-*****	정*복	인천시 남동구 석산로 169번길 52	열차	2024-02-21 10:33
52	1078833141790	주소불명	2024-05-13 12:10	5610*-*****	전*애	서울시 서초구 동광로 21	열차	2024-02-24 10:19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철도안전법 위반 과태료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4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m²(재활용품)]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591호

철도안전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철도안전법」 제47조(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또는 제49조(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 준수)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동법 제82조(과태료)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7조, 「지방세징수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주소불명, 수취거절, 기타 등의 사유로 반송된 과태료 독촉고지 송달 불능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30일
서울특별시

1. 건 명: 철도안전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근 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별첨
4. 공고기간 : 2024. 5. 30. ~ 2024. 6. 12. (14일간)
 - 과태료 납부지연에 따라 가산금 3%가 부과되었으며, 증가산금 1.2%씩(최대 75%)이 매월 부과됩니다.
 - 「지방세기본법」의 관련 조항에 근거하여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5. 문의처
 -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청 도시철도과(☎02-2133-43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로붙임: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끝.

철도안전법위반과태료 2024년 5월 독촉통지 반송건

순번	등기번호	반송사유	반송일시	수취인주민번호	수취인명	발송지 주소	물건명	항목3
1	1078833132529	기타	2024-05-13 08:00	5410**-*****	홍*목	서울시 구로구 개봉로17길	이동상인	2023-10-19 11:11
2	1078833132530	기타	2024-05-13 08:00	5410**-*****	홍*목	서울시 구로구 개봉로17길	이동상인	2023-10-03 11:02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592호

철도안전법 위반 과태료 수시분 부과 공시송달 공고

「철도안전법」 제47조(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또는 제49조(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 준수)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동법 제82조(과태료)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주소불명, 수취거절, 기타 등의 사유로 반송된 과태료 수시분 부과처분 송달 불능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30일
서울특별시

1. 건 명: 철도안전법 위반 과태료 수시분 부과처분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근 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별첨
4. 공고기간 : 2024. 5. 30. ~ 2024. 6. 17. (14일간)
 - 공시송달 대상자는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단속되었기에 「철도안전법」 제82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아래의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3%의 가산금과 매월 1.2%의 증가산금이 최대 6개월까지 부과될 예정입니다. 만약 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아래의 안내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부기한: 2024. 6. 18. ~ 2024. 7. 1.
 - ※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3항에 의거 공고기간 종료일부터 14일
 - 이의제기 기한: 2024. 6. 18. ~ 2024. 8. 16.(60일간)
 - ※ 기한 내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합니다.
5. 이의제기 안내
 - 이의제기를 하고자 할 경우 서면으로 이의제기 기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장소: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 도시철도과
F A X: 02-2133-1076
6. 문의처
 -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청 도시철도과(☎02-2133-43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로붙임: 1.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2. 이의신청서 1부. 끝.

철도안전법위반과태료

부과일자 2024-05-01 / 납기일자 2024-06-30

순번	등기번호	반송사유	수취인주민번호	수취인명	발송지 주소	물건명	과세금액	항목3
1	1078833124983	주소불명	4711*-*****	사*석	서울시 강북구 도해로 33길 28-5	이동상인	150,000	2023-09-23 12:01
2	1078833124984	주소불명	4711*-*****	사*석	서울시 양북구 도해로 33길 28-5	이동상인	150,000	2023-09-21 13:25
3	1078833124985	주소불명	4711*-*****	사*석	서울시 강북구 도해로 33길 28-5	이동상인	150,000	2023-09-22 11:20
4	1078833124986	기타	5207*-*****	사*범	서울시 도봉구 도봉로 110 나길 71	이동상인	150,000	2023-09-08 10:45
5	1078833124991	수취인불명	7511*-*****	연*성	서울 성동구 함림마을길 22	철도중사자 지시위반	3,000,000	2023-09-06 10:22
6	1078833124992	기타	6209*-*****	유*화	서울시 구로구 고척로 31-4	연설권유	150,000	2023-09-15 09:08
7	1078833125107	기타	4408*-*****	경*수	서울시 도봉구 노해로69길 21-15	기부요청	150,000	2023-10-05 13:26
8	1078833124987	기타	5207*-*****	사*범	서울시 도봉구 도봉로 110 나길 71	이동상인	150,000	2023-09-05 10:43
9	1078833124988	기타	6104*-*****	신*문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로 37길	연설권유	150,000	2023-09-23 14:38
10	1078833124989	폐문부재	6905*-*****	신*식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 724번길 20	이동상인	150,000	2023-09-22 11:27
11	1078833124990	폐문부재	6905*-*****	신*식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 724번길 20	이동상인	150,000	2023-09-06 12:02
12	1078833124993	기타	6202*-*****	이*실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84길	기부요청	150,000	2023-09-16 09:05
13	1078833124994	기타	8107*-*****	이*현	서울시 동작구 징송배기로27길	기부요청	150,000	2023-09-21 18:30
14	1078833124995	기타	4812*-*****	이*희	경기도 시흥시 함송로35 102동	이동상인	150,000	2023-09-06 10:16
15	1078833124996	기타	4812*-*****	이*희	경기도 시흥시 함송로35 102동	이동상인	150,000	2023-09-10 11:50
16	1078833125108	기타	5903*-*****	한*수	서울시 동작구 매봉로 134 8동	연설권유	150,000	2023-10-11 07:01

순번	등기번호	반송사유	수취인주민번호	수취인명	발송지 주소	물건명	과세금액	항목3
17	1078833124997	기타	4812*~*****	이*희	경기도 시흥시 함송로35 102동	이동상인	150,000	2023-09-22 10:23
18	1078833124998	기타	4812*~*****	이*희	경기도 시흥시 함송로35 102동	이동상인	150,000	2023-09-22 10:37
19	1078833124999	폐문부재	5409*~*****	이*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로2길 25	이동상인	150,000	2023-09-11 11:16
20	1078833125000	폐문부재	5409*~*****	이*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로2길 25	이동상인	150,000	2023-09-14 11:14
21	1078833125146	기타	5606*~*****	김*희	서울 송파구 양신로 8길 24	연결권유	150,000	2024-01-19 12:34
22	1078833125046	기타	6102*~*****	박*선	서울시 영등포구 도신로 51길	이동상인	150,000	2023-10-07 11:33
23	1078833125047	기타	4706*~*****	배*대	인천시 부평구 부흥북로 35번길15, 나동	연결권유	150,000	2023-10-18 12:23
24	1078833125001	폐문부재	5409*~*****	이*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로2길 25	이동상인	150,000	2023-09-14 12:10
25	1078833125002	폐문부재	5409*~*****	이*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로2길 25	이동상인	150,000	2023-09-16 10:35
26	1078833125003	폐문부재	5409*~*****	이*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로2길 25	이동상인	150,000	2023-09-01 12:13
27	1078833125004	폐문부재	5409*~*****	이*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로2길 25	이동상인	150,000	2023-09-02 10:25
28	1078833125210	폐문부재	6905*~*****	신*식	경기도 군포시 교신로 724번길 20	이동상인	150,000	2023-11-07 09:59
29	1078833125211	폐문부재	6905*~*****	신*식	경기도 군포시 교신로 724번길 20	이동상인	150,000	2023-11-14 11:01
30	1078833125212	폐문부재	6905*~*****	신*식	경기도 군포시 교신로 724번길 20	이동상인	150,000	2023-11-14 11:27
31	1078833125050	주소불명	4711*~*****	서*석	서울시 강북구 도해로 33길 28-5	이동상인	150,000	2023-10-04 10:31
32	1078833125051	주소불명	4711*~*****	서*석	서울시 강북구 도해로 33길 28-5	이동상인	150,000	2023-10-17 10:33
33	1078833125052	주소불명	4711*~*****	서*석	서울시 강북구 도해로 33길 28-5	이동상인	150,000	2023-10-19 10:30
34	1078833125005	폐문부재	5409*~*****	이*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로2길 25	이동상인	150,000	2023-09-02 13:52

순번	등기번호	반송사유	수취인주민번호	수취인명	발송지 주소	물건명	과세금액	항목3
35	1078833125006	폐문부재	5409**-----	이*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로2길 25	이동상인	150,000	2023-09-05 14:10
36	1078833125007	폐문부재	5409**-----	이*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로2길 25	이동상인	150,000	2023-09-05 14:50
37	1078833125008	폐문부재	5409**-----	이*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로2길 25	이동상인	150,000	2023-09-08 13:12
38	1078833125053	주소불명	4711**-----	사*석	서울시 강북구 노해로 33길 28-5	이동상인	150,000	2023-10-19 13:35
39	1078833125054	주소불명	4711**-----	사*석	서울시 강북구 노해로 33길 28-5	이동상인	150,000	2023-10-24 10:27
40	1078833125055	주소불명	4711**-----	사*석	서울시 강북구 노해로 33길 28-5	이동상인	150,000	2023-10-20 10:49
41	1078833125056	주소불명	4711**-----	사*석	서울시 강북구 노해로 33길 28-5	이동상인	150,000	2023-10-24 11:17
42	1078833125057	주소불명	4711**-----	사*석	서울시 강북구 노해로 33길 28-5	이동상인	150,000	2023-10-24 12:33
43	1078833125009	폐문부재	5409**-----	이*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로2길 25	이동상인	150,000	2023-09-27 11:21
44	1078833125058	주소불명	4711**-----	사*석	서울시 강북구 노해로 33길 28-5	이동상인	150,000	2023-10-04 13:15
45	1078833125059	주소불명	4711**-----	사*석	서울시 강북구 노해로 33길 28-5	이동상인	150,000	2023-10-04 14:12
46	1078833125060	주소불명	4711**-----	사*석	서울시 강북구 노해로 33길 28-5	이동상인	150,000	2023-10-07 10:55
47	1078833125061	주소불명	4711**-----	사*석	서울시 강북구 노해로 33길 28-5	이동상인	150,000	2023-10-12 13:41
48	1078833125062	주소불명	4711**-----	사*석	서울시 강북구 노해로 33길 28-5	이동상인	150,000	2023-10-13 10:38
49	1078833125224	기타	5602**-----	최*숙	서울시 구로구 개봉로17길	이동상인	150,000	2023-11-08 11:31
50	1078833125063	주소불명	4711**-----	사*석	서울시 강북구 노해로 33길 28-5	이동상인	150,000	2023-10-13 13:30
51	1078833125064	주소불명	4711**-----	사*석	서울시 강북구 노해로 33길 28-5	이동상인	150,000	2023-10-15 10:44
52	1078833125065	주소불명	4711**-----	사*석	서울시 강북구 노해로 33길 28-5	이동상인	150,000	2023-10-18 10:44

순번	등기번호	반송사유	수취인주민번호	수취인명	발송지 주소	물건명	과세금액	항목3
53	1078833125066	주소불명	4711*-*****	서*석	서울시 강북구 노혜로 33길 28-5	이동상인	150,000	2023-10-21 10:56
54	1078833125067	폐문부재	6905*-*****	신*식	경기도 군포시 고신로 724번길 20	이동상인	150,000	2023-10-10 11:15
55	1078833125134	폐문부재	6905*-*****	신*식	경기도 군포시 고신로 724번길 20	이동상인	150,000	2023-12-06 10:37
56	1078833125135	폐문부재	6905*-*****	신*식	경기도 군포시 고신로 724번길 20	이동상인	150,000	2023-12-09 12:43
57	1078833125018	주소불명	6602*-*****	조*도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1542-38	기부요청	150,000	2023-09-21 20:46
58	1078833125019	주소불명	6804*-*****	홍*식	경기도 군포시 곡란로 26-1408동	이동상인	150,000	2023-09-05 11:30
59	1078833125020	기타	5304*-*****	김*직	경기도 광명시 소하로 55, 404동	이동상인	150,000	2023-10-23 15:36
60	1078833125021	기타	4204*-*****	김*업	서울시 성동구 마조로 16길	기부요청	150,000	2023-10-30 15:13
61	1078833125022	기타	4406*-*****	김*옥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이동상인	150,000	2023-10-03 13:59
62	1078833125068	폐문부재	6905*-*****	신*식	경기도 군포시 고신로 724번길 20	이동상인	150,000	2023-10-11 13:08
63	1078833125069	폐문부재	6905*-*****	신*식	경기도 군포시 고신로 724번길 20	이동상인	150,000	2023-10-14 10:18
64	1078833125070	폐문부재	6905*-*****	신*식	경기도 군포시 고신로 724번길 20	이동상인	150,000	2023-10-14 12:31
65	1078833125071	폐문부재	6905*-*****	신*식	경기도 군포시 고신로 724번길 20	이동상인	150,000	2023-10-20 10:26
66	1078833124706	기타	4509*-*****	최*희	경기도 부천시 경인로 324번길 38, 102동	연설관유	150,000	2023-08-21 14:13
67	1078833124707	기타	5304*-*****	김*직	경기도 광명시 소하로 55, 404동	이동상인	150,000	2023-09-05 10:37
68	1078833124708	기타	5304*-*****	김*직	경기도 광명시 소하로 55, 404동	이동상인	150,000	2023-09-08 11:24
69	1078833124709	기타	5304*-*****	김*직	경기도 광명시 소하로 55, 404동	이동상인	150,000	2023-09-12 13:51
70	1078833125023	기타	4406*-*****	김*옥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이동상인	150,000	2023-10-06 10:48

순번	등기번호	반송사유	수취인주민번호	수취인명	발송지 주소	물건명	과세금액	항목3
71	1078833125024	기타	4406**-*****	김*옥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이동상인	150,000	2023-10-26 11:25
72	1078833125025	기타	4406**-*****	김*옥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이동상인	150,000	2023-10-30 11:10
73	1078833125026	기타	4406**-*****	김*옥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이동상인	150,000	2023-10-06 11:50
74	1078833125027	기타	4406**-*****	김*옥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이동상인	150,000	2023-10-30 12:21
75	1078833125072	폐문부재	6905**-*****	신*식	경기도 군포시 고신로 724번길 20	이동상인	150,000	2023-10-21 11:04
76	1078833125073	폐문부재	6905**-*****	신*식	경기도 군포시 고신로 724번길 20	이동상인	150,000	2023-10-25 12:30
77	1078833125074	수취인불명	7511**-*****	연*성	경기도 군포시 고신로 724번길 20	철도공사차 지시위반	3,000,000	2023-10-14 16:53
78	1078833125075	기타	6202**-*****	이*실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84길	기부요청	150,000	2023-10-12 08:40
79	1078833124710	기타	5304**-*****	김*직	경기도 광명시 소하로 55, 404동	이동상인	150,000	2023-09-21 09:57
80	1078833124711	기타	5304**-*****	김*직	경기도 광명시 소하로 55, 404동	이동상인	150,000	2023-09-22 10:58
81	1078833124712	기타	4204**-*****	김*엽	서울시 성동구 마조로 16길	기부요청	150,000	2023-09-30 09:02
82	1078833124713	기타	4204**-*****	김*엽	서울시 성동구 마조로 16길	기부요청	150,000	2023-09-30 16:00
83	1078833124714	기타	4406**-*****	김*옥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이동상인	150,000	2023-09-07 10:38
84	1078833125028	기타	4406**-*****	김*옥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이동상인	150,000	2023-10-31 11:05
85	1078833125029	기타	4406**-*****	김*옥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이동상인	150,000	2023-10-03 12:10
86	1078833125030	기타	4406**-*****	김*옥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이동상인	150,000	2023-10-08 11:25
87	1078833125031	기타	4406**-*****	김*옥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이동상인	150,000	2023-10-09 11:34
88	1078833125032	기타	4406**-*****	김*옥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이동상인	150,000	2023-10-11 13:38

순번	등기번호	반송사유	수취인주민번호	수취인명	발송지 주소	물건명	과세금액	항목3
89	1078833125169	폐문부재	6905**-----	신*식	경기도 군포시 고신로 724번길 20	이동상인	150,000	2024-01-04 11:13
90	1078833125076	기타	8107**-----	이*현	서울시 동작구 정승배기로27길	기부요청	150,000	2023-10-02 16:01
91	1078833125077	기타	8107**-----	이*현	서울시 동작구 정승배기로27길	기부요청	150,000	2023-10-03 11:57
92	1078833125078	기타	8107**-----	이*현	서울시 동작구 정승배기로27길	기부요청	150,000	2023-10-09 14:38
93	1078833125079	기타	8107**-----	이*현	서울시 동작구 정승배기로27길	기부요청	150,000	2023-10-12 18:23
94	1078833124955	기타	4406**-----	김*옥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이동상인	150,000	2023-09-08 13:37
95	1078833124956	기타	4406**-----	김*옥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이동상인	150,000	2023-09-25 10:53
96	1078833124957	기타	4406**-----	김*옥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이동상인	150,000	2023-09-27 14:04
97	1078833124958	기타	4406**-----	김*옥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이동상인	150,000	2023-09-05 12:17
98	1078833124959	기타	4406**-----	김*옥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이동상인	150,000	2023-09-08 12:11
99	1078833125033	기타	4406**-----	김*옥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이동상인	150,000	2023-10-18 10:52
100	1078833125034	기타	4406**-----	김*옥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이동상인	150,000	2023-10-25 13:47
101	1078833125035	기타	4811**-----	김*록	서울시 노원구 덕릉로 662, 301동	이동상인	150,000	2023-10-08 12:30
102	1078833125036	기타	6610**-----	김*기	서울시 성북구 종암로 16길	이동상인	150,000	2023-10-17 11:23
103	1078833125037	기타	6610**-----	김*기	서울시 성북구 종암로 16길	이동상인	150,000	2023-10-19 13:47
104	1078833125170	폐문부재	6905**-----	신*식	경기도 군포시 고신로 724번길 20	이동상인	150,000	2024-01-18 11:33
105	1078833125171	폐문부재	6905**-----	신*식	경기도 군포시 고신로 724번길 20	이동상인	150,000	2024-01-13 11:01
106	1078833125080	기타	4812**-----	이*희	경기도 시흥시 함송로 35,102동	이동상인	150,000	2023-10-04 10:27

순번	등기번호	반송사유	수취인주민번호	수취인명	발송지 주소	물건명	과세금액	항목3
107	1078833125081	기타	4812*~*****	이*희	경기도 시흥시 함송로 35,102동	이동상인	150,000	2023-10-06 10:16
108	1078833125082	기타	4812*~*****	이*희	경기도 시흥시 함송로 35,102동	이동상인	150,000	2023-10-16 10:21
109	1078833125083	기타	4812*~*****	이*희	경기도 시흥시 함송로 35,102동	이동상인	150,000	2023-10-18 10:18
110	1078833124960	기타	4406*~*****	김*옥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이동상인	150,000	2023-09-26 12:06
111	1078833124961	기타	4406*~*****	김*옥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이동상인	150,000	2023-09-26 13:05
112	1078833124962	기타	4406*~*****	김*옥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이동상인	150,000	2023-09-04 11:21
113	1078833124963	기타	4406*~*****	김*옥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이동상인	150,000	2023-09-04 13:34
114	1078833124964	기타	4406*~*****	김*옥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이동상인	150,000	2023-09-09 11:15
115	1078833125038	기타	5206*~*****	김*호	서울시 외대역동로 12가 길	이동상인	150,000	2023-10-05 12:32
116	1078833125084	폐문부재	5409*~*****	이*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2길 25,102동	이동상인	150,000	2023-10-10 11:27
117	1078833125085	폐문부재	5409*~*****	이*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2길 25,102동	이동상인	150,000	2023-10-10 11:50
118	1078833125086	폐문부재	5409*~*****	이*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2길 25,102동	이동상인	150,000	2023-10-12 14:31
119	1078833125087	폐문부재	5409*~*****	이*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2길 25,102동	이동상인	150,000	2023-10-14 11:08
120	1078833124965	기타	4406*~*****	김*옥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이동상인	150,000	2023-09-14 13:07
121	1078833124966	기타	4406*~*****	김*옥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이동상인	150,000	2023-09-19 10:56
122	1078833124967	기타	4406*~*****	김*옥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이동상인	150,000	2023-09-21 10:25
123	1078833124968	기타	4406*~*****	김*옥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이동상인	150,000	2023-09-21 10:52
124	1078833124969	기타	4406*~*****	김*옥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이동상인	150,000	2023-09-23 12:22

순번	등기번호	반송사유	수취인주민번호	수취인명	발송지 주소	물건명	과세금액	항목3
125	1078833125045	기타	7707**-----	박*석	경기도 광명시 연서로 16번길	이동상인	150,000	2023-10-23 13:50
126	1078833125180	기타	5410**-----	홍*목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로17길	이동상인	150,000	2024-01-04 11:28
127	1078833125181	기타	5410**-----	홍*목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로17길	이동상인	150,000	2024-01-19 10:30
128	1078833125088	폐문부재	5409**-----	이*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2길 25	이동상인	150,000	2023-10-14 13:32
129	1078833125089	폐문부재	5409**-----	이*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2길 25	이동상인	150,000	2023-10-17 11:16
130	1078833125090	폐문부재	5409**-----	이*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2길 25	이동상인	150,000	2023-10-17 11:40
131	1078833125091	폐문부재	5409**-----	이*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2길 25	이동상인	150,000	2023-10-18 11:17
132	1078833124970	기타	4406**-----	김*옥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이동상인	150,000	2023-09-25 14:03
133	1078833124971	기타	4811**-----	김*록	서울특별시 노원구 덕릉로 662	이동상인	150,000	2023-09-02 10:57
134	1078833124972	기타	4811**-----	김*록	서울특별시 노원구 덕릉로 662	이동상인	150,000	2023-09-12 10:26
135	1078833124973	기타	4811**-----	김*록	서울특별시 노원구 덕릉로 662	이동상인	150,000	2023-09-15 13:08
136	1078833125092	폐문부재	5409**-----	이*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2길 25	이동상인	150,000	2023-10-18 14:13
137	1078833125093	폐문부재	5409**-----	이*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2길 25	이동상인	150,000	2023-10-02 11:45
138	1078833125094	폐문부재	5409**-----	이*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2길 25	이동상인	150,000	2023-10-04 10:48
139	1078833125095	폐문부재	5409**-----	이*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2길 25	이동상인	150,000	2023-10-30 10:41
140	1078833124974	기타	5206**-----	김*호	서울시 동대문구 외대역동로 127길	이동상인	150,000	2023-09-23 10:04
141	1078833124975	기타	5206**-----	김*호	서울시 동대문구 외대역동로 127길	이동상인	150,000	2023-09-05 13:30
142	1078833124976	수취인불명	6409**-----	노*수	경기도 부천시 원미로 13번길	기부요청	150,000	2023-09-30 08:33

순번	등기번호	반송사유	수취인주민번호	수취인명	발송지 주소	물건명	과세금액	항목3
143	1078833124977	수취인불명	6409**-----	노*수	경기도 부천시 원미로 13번길	기부요청	150,000	2023-09-30 08:51
144	1078833125096	폐문부재	5409**-----	이*하	전라북도 전주시 원신구 덕적로2길 25	이동상인	150,000	2023-10-30 11:51
145	1078833125097	폐문부재	5409**-----	이*하	전라북도 전주시 원신구 덕적로2길 25	이동상인	150,000	2023-10-30 13:50
146	1078833125098	폐문부재	5409**-----	이*하	전라북도 전주시 원신구 덕적로2길 25	이동상인	150,000	2023-10-31 13:36
147	1078833124979	기타	6102**-----	박*선	서울시 영등포구 도신로 51길	이동상인	150,000	2023-09-23 10:27
148	1078833124980	기타	6102**-----	박*선	서울시 영등포구 도신로 51길	이동상인	150,000	2023-09-23 13:06
149	1078833124981	주소불명	4711**-----	서*석	서울시 강북구 노해로 33길	이동상인	150,000	2023-09-25 10:33
150	1078833124982	주소불명	4711**-----	서*석	서울시 강북구 노해로 33길	이동상인	150,000	2023-09-23 10:58

<서식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과 태 료 처분내역	위반일시		위반장소	
	부과관청		부과일자	
	부과번호		부과금액	
이의내용				
<p>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어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2</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인)</p> <p>서울시장 귀하</p>				

※ 문의전화 : 02-2133-4350 FAX : 02-2133-1076

☞ 팩스(FAX)로 접수하신 민원인께서는 반드시 접수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597호

정보통신공사업 신규 등록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의 신규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30일
서울특별시

1. 정보통신공사업의 신규 등록 내역

연번	등록번호	등록일자	상 호 대 표 자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1	203987	24. 5. 20.	주식회사 넥스 조현희 110111-6201498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78길 44, 813호(광장동, 크레스코빌딩)
2	203988	24. 5. 20.	주식회사 코어코드시스템 (CoreCode system Co., Ltd.) 강윤식 110111-5413515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416, 6층 622호, 623호, 624호(등촌동, 가양역더스카이밸리5차 지식산업센터)
3	203989	24. 5. 20.	주식회사 이코어 임경빈 110111-58502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 149, 608호(양평동5가)
4	203990	24. 5. 20.	주식회사 이엑티브 이정훈, 김영태 110111-233031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 157, 1407호, 1408호, 1409호, 1410호, 1411호 (양평동5가, 선유도 웨니퍼스트밸리)

2. 근거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공사업의 등록 등),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공사업등록의 신청 등)

3. 내용문의 : 서울특별시 정보통신보안담당관 02)2133-1867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598호

**「건설기술 진흥법」 위반(건설기술인 교육·훈련 미이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미이수한 건설기술인에게 동법 제91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5월 30일
서울특별시장

1. 건명 : 「건설기술 진흥법」 위반(건설기술인 교육·훈련 미이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항, 동법 제91조 제3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24. 5. 30. ~ 2024. 6. 13.(15일간)
5. 의견제출 안내
 - 가. 의견제출기간 : 2024. 6. 14. ~ 2024. 6. 27.
 - 나. 의견제출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별첨 서식), 의견제출 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기술심사담당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간 내에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됩니다.
 - 다. 의견제출처 :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124 씨티스퀘어 7층 기술심사담당관
(☎02-2133-8554, E-mail : kys82@seoul.go.kr)
 - 라. 의견제출방법 : 우편, 전자메일(kys82@seoul.go.kr)
6. 과태료 자진 납부 :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할 수 있습니다.
 - 가. 납부기한 : 2024. 6. 27.
 - 나. 납부방법
 - 고지서 : 공고대상자는 서울특별시청 기술심사담당관에서 고지서(가상계좌)를 발부받아 은행(인터넷뱅킹 포함),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CD/ATM기) 등으로 납부
 - 인터넷 : <https://etax.seoul.go.kr> (*공인인증서 필요, 신용카드 납부가능)

7. 유의사항

- 가. 의견제출기한 내 과태료를 자진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서울특별시청 기술심사담당관에서 사전통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사전통지서에 고지된 과태료 금액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부과될 과태료에서 100분의 20이 감경된 금액입니다.
- 다. 공고기간 만료일부터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청 기술심사담당관(☎02-2133-855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2. 의견제출서 작성 서식 1부.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이수기한 내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내역

순번	위반자		위반사항	과태료 금 액	반 송 내 역		반송물 구 분
	성명	주소			반송사유	반송일자	
1	최*형	서울특별시 구로구 새말로 31, 110동 501호	건설기술인 교육 이수기한 내 미이수(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 위반)	200,000원 (자진납부금액)	폐문부재	2024-05-20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600호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환수금 체납에 따른 납부 독촉 공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4조 및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8조, 제29조, 제31조에 근거하여 행위금지사항을 위반한 화물운수사업자에게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금 고지서 및 독촉공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 시보에 공시송달(공고)을 아래와 같이 의뢰하고자 합니다.

2024년 5월 30일
서울특별시 장

- 1. 공고기간 : 2024. 5. 30. ~ 2024. 6. 13.(공고일로부터 14일간)
- 2. 공시송달 공고사항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위반에 대한 환수금 납부 독촉 독촉이후에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유가보조금 환수시스템에 등록되어, 향후 지급될 유가보조금이 부정수급 금액만큼 차감되어 지급되지 않으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4조 제3항 및 「지방세법」 체납처분 규정에 따라, 재산이 압류될 수 있음을 명시함.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5항을 준용하여 송달받을 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차량번호는 마스킹 처리.

당사자	명칭(성명)	이*수
	차량번호	서울87*2226
	주 소	경기도 하남시 신장로204번길 7-* 2층(덕풍동)
환수금내역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환수, 택시물류과-871(2020.1.7)에 따른 38,489,740원
등기우편송달내역		등기번호 : 1078833070716 반송사유 : 폐문부재

- 3.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고지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고, 「같은 법」 제31조 제2항에 “고지서가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도달한 경우에는 고지서가 도달한 날” 을 납부기한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송달의 효력 발생일(2024.06.13.)이 납부기한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601호

시유재산 변상금 체납고지 공시송달 공고

공유재산 무단점유자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및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89조에 의거 변상금 체납(독촉)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4년 5월 30일
서울특별시

- 가. 건 명 : 시유재산 변상금 체납 고지서 공시송달
- 나. 공고기간 : 2024. 5. 30. ~ 6. 14.(15일간)
- 다.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대상자	①성명	정 ○ 심		②생년월일	1942.○.○.	
	③주소	중구 퇴계로 30길 35-3(예장동)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107, 105동 603호		④전화번호	010-○○○○-○○ ○○	
⑤부과내용						
재 산 의 표 시			점유면적 (㎡)	부과기간	변상금 (원)	비 고
소 재 지	지 목	지 적(㎡)				
중구 예장동 1-79	대	178.5	6.7	'23.1.1. ~ 12.31.	205,020	주거용
중구 예장동 1-97	대	52.9	52.9	'23.1.1. ~ 12.31.	2,046,590	주거용

라. 기타 문의사항은 중부공원여가센터 공원운영과(☎02-3783-592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제2항 및 제6항에 의거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고자 개략적인 사항을 기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607호

서울특별시 문화유산 지정 계획 예고

서울특별시 문화유산 지정을 위한 각계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7조(시지정유산) 및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시행규칙」 제8조(지정 문화재의 지정절차)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서울특별시 문화유산 지정 계획을 예고합니다.

2024년 5월 30일
서울특별시

1. 서울특별시 문화유산 지정 계획
가. 지정 개요

지정 예정 종별	지정 예정 명칭	수량	규격(cm)	조성연대	소재지 (소유자)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유 산	백자 청화 운룡문 호 (白磁靑畫雲龍文壺)	1점	높이 59, 입지름 16, 굽지름 18.3	조선 후기	마포구 (금성문화재단)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유 산	태교신기 (胎敎新記)	1책	25.4×17.0	1821년 (순조 21) 序	종로구 (성균관대학교)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유 산	낙촌선생문집 목판, 귀암선생문집 목판, 정재선생문집 목판 (洛村先生文集木板, 歸巖先生文集木板, 靜齋先生文集木板)	498장	27.6×53.7×3.5	1937년	종로구 (서울특별시)

※ 「국가유산기본법」 및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에 따라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는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유산’ 으로 명칭을 변경함.

나. 예고 사유

: 아래와 같은 사유로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하고자, 이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예고함.

■ 유형문화유산

【백자 청화 운룡문 호】

조사대상은 구연부가 낮은 원통형으로 직립하며 어깨가 곡선으로 벌어졌다가 동체 중단에서 좁아들어 저부로 연결되는 입호(立壺)이다. 항아리의 동체에는 청화기법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되는 오조(五爪)의 용 두 마리가 장식되었으며, 두 마리의 용 사이에는 영기(靈氣)가 피어오르는 여의주를 비롯하여 만자형(卍字形)과 영지형(靈芝形)의 구름이 시문되었다. 어깨에는 뾰족한 끝부분이 위쪽을 향하는 여의두문이 배치되었으며, 하부에는 규문(圭文), 규형(圭形) 연판문(蓮瓣文), 산문(山文) 등으로 불리는 보조 문양이 자리한다. 하부의 보조 문양은 청색과 백색으로 내외부를 교차로 채색하였다.

조사대상은 높이 59cm에 달하는 크기의 입호(立壺)로, 오조(五爪)의 용문이 장식되었다. 이러한 사례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며 문화유산 가치 또한 높다고 평가한다. 형태와 문양의 세부 표현 및 구성, 유색과 번조 방식 등을 감안할 때, 조선 후기 관요(官窯)에서 제작한 이후 왕실의 의례에 활용된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조사대상은 서울시 문화유산으로 지정해 보호·관리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다.

【태교신기】

『태교신기(胎敎新記)』는 태교(胎敎)에 관하여 저자가 경험한 사실을 체계적으로 기술한 저작이다. 임신부였던 사주당 이씨가 태아를 교육하는 태교를 학문적으로 체계화한 최초의 저술로써 학술적 가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사주당 이씨(師朱堂李氏, 1739~1821)가 태교에 관하여 한문으로 1800년에 저술하였고, 그 아들 유희(柳僖)가 1801년에 한글로 번역하고 발문을 붙였다. 그리고 1821년에는 신작(申綽)이 서문을 붙이고, 1930년에는 현손 근영(近永)이 쓴 발문과 1936년 정인보(鄭寅普)의 음의서략(音義序略)이 각자의 필체로 들어가 있는 원본 자료라 할 수 있다.

성균관대학교 존경각본 『태교신기』는 상태가 깨끗하고, 조선 순조 때 사주당 이씨가 1800년에 쓴 한문 원본에 아들 유희가 언해한 필사본 원본이다. 『태교신기』는 조선 후기 여성학자의 실학적 저술로서 그 학문적 가치가 높다. 또한 어머니가 쓴 한문 원문을 아들인 유희가 1년 뒤인 1801년에 언해하였고, 신작과 유근영, 정인보 등 당대 저명한 학자들이 친필로 쓴 서문과 발문이 남아 있어 자료의 전래 과정 역시 분명하여 자료적 가치 역시 높다고 하겠다. 따라서 서울시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하여 보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낙촌선생문집 목판, 귀암선생문집 목판, 정재선생문집 목판】

본 유물은 이도장(李道長, 1603~1644), 이원정(李元禎, 1622~1680), 이담명(李聃命, 1646~1701) 3대의 문집 『낙촌집(洛村集)』, 『귀암집(歸巖集)』, 『정재집(靜齋集)』의 목판이다. 세 문집은 17세기 영남 남인의 문집이다. 이원정은 1680년 경신대출척으로 투옥되었다가 옥사하였으며, 사후 1689년 관작을 회복하고 증직되었다. 그러나 1694년 갑술환국으로 관직이 추탈되고, 1712년 복관되었다. 1871년에 와서야 뒤늦게 시호를 받았다. 이담명 역시 1694년 갑술환국으로 유배되었다가 5년 만에 풀려나 직첩을 빼앗긴 채로 사망하였으며, 사후 1706년 직첩을 돌려받았다.

이 3대의 문집은 저자 사후 곧바로 간행되지 못하였다. 만년에 당쟁으로 고초를 겪은 저자들의

신원(伸冤)이 우선이었기 때문이다. 복권과 위상 제고를 위한 후손의 노력이 계속되어 20세기에 와서야 비로소 문집이 간행되었다. 이 유물은 20세기 이후의 것이지만, 전통적인 제작 방식으로 만들어졌고, 보관 상태도 양호한 편이다. 특히 비슷한 시기에 제작된 3대의 문집 판목이 온전히 남아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한편, ‘한국의 유교책판’이라는 제목으로 문집 등을 인쇄한 책판들이 2015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서울시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충분할 것으로 판단한다.

2. 의견 제출 방법 안내

- 제출기간 : 예고일로부터 30일간
- 제출장소 : 서울특별시 문화재정책과
 - ① 전화 : (02) 2133-2630
 - ② 우편 :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태평로1가, 한국프레스센터) 4층
- 제출방법 : 방문 제출 또는 우편 제출
- 기재사항
 - 의견 제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붙임> 조사보고서에 대한 의견 및 입증자료
 - 문화유산 지정에 대한 찬반 의견 및 그 사유 등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문화재정책과(☎ 02-2133-26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서울특별시 문화유산 지정을 위한 조사보고서

【백자 청화 운룡문 호】

검토종별	서울시 유형문화유산	명 칭	백자 청화 운룡문 호 (白磁靑畫雲龍文壺)
수 량	1건 1점	규 격 (cm)	높이 59, 입지름 16, 굽지름 18.3
재 료	자기(磁器)	소유자	재단법인 금성문화재단
시 대	조선 후기	소재지	서울시 마포구 만리재옛길23

1. 문화유산 현황

조사대상은 구연부가 낮은 원통형으로 직립하며 어깨가 곡선으로 벌어졌다가 동체 중단에서 좁아들어 저부로 연결되는 입호(立壺)이다(도1, 2). 항아리의 동체에는 청화기법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되는 오조(五爪)의 용 두 마리가 장식되었으며, 두 마리의 용 사이에는 영기(靈氣)가 피어오르는 여의주를 비롯하여 만자형(卍字形)과 영지형(靈芝形)의 구름이 시문되었다. 어깨에는 뾰족한 끝부분이 위쪽을 향하는 여의두문이 배치되었으며, 하부에는 규문(圭文), 규형(圭形) 연관문(蓮瓣文), 산문(山文) 등으로 불리는 보조 문양이 자리한다. 하부의 보조 문양은 청색과 백색으로 내외부를 교차로 채색하였다.

조사 내용



(도1) 조사대상 정면_1



(도2) 조사대상 정면_2



(도3) 조사대상 굽 상세



(도4) 조사대상 하부 병렬
모습



(도5) 조사대상 구연부 수리
상태

조사대상 향아리의 굽은 접지면 안쪽을 파내는 방식으로 마련된 안다리굽으로, 굽 내부의 태두리가 부분적으로 갈라져 있다(도3). 저부에는 향아리 전체를 시유한 다음 접지면에 모래를 받쳐 번조한 흔적이 남아있다. 굽 안쪽에는 일부 유약이 시유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 번조시에 부착된 모래도 일부 자리한다. 향아리는 전반적으로 유약이 고르게 시유된 편으로 일부 유약이 뭉친 곳을 중심으로 청색이 감도는 곳이 있다. 그 외 향아리의 하부를 중심으로 병렬이 나타나는 구간이 있다(도4). 조사대상 향아리의 동체에는 별다른 수리 및 복원의 흔적이 없으나, 구연부의 일부에 수리된 흔적이 남아있다(도5).

2. 내용 및 특징

용이 장식된 청화백자 향아리는 조선 왕실의 권위를 드러내는 기물이다. 운룡문 향아리 역시 여러 국가 의례에 활용되었으며, 의례의 성격과 향아리의 기능에 따라 크기와 세부 문양이 달랐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조사대상은 동체에 두 마리의 오조룡(五爪龍)이 장식되었으며, 높이가 59cm에 이른다. 이러한 대형의 청화백자 입호(立壺)는 관요(官窯)에서 제작되었으며 주로 왕실의 의례에 활용되었다. 조사대상 향아리처럼 높이가 50cm 이상이며, 오조룡이 장식된 사례는 대체로 하부에 규문 등으로 지칭되는 보조 문양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다(도7, 8, 9, 10). 조사대상 향아리의 문양은 구연부 외면에 당초문을 제외하면 정조(正祖, 재위 1776~1800)가 1795년(정조 19)에 어머니 혜경궁(惠慶宮)을 모시고 장헌세자(莊獻世子)의 무덤인 현릉원(顯隆園)에 행차한 뒤 편찬한 『원행을묘정리의궤(園幸乙卯整理儀軌)』에 기록된 화준(花樽)과 유사하다(도6). 반면, 동체에 사조(四爪)의 용이 여의두문과만 함께 장식된 향아리들은 대체로 높이가 40cm 내외이거나 그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도11). 이처럼 운룡문 향아리에 장식된 용의 발톱 숫자와 보조 문양의 구성이 다른 것은 용도 및 위격의 차이에 따른 구분으로 해석할 수 있다.



(도6) 『원행을묘정리의궤』
중 화준



(도7)
<백자청화운룡문항아리>
조선 후기, 높이 56.9cm,
호림박물관 소장



(도8)
<백자청화운룡문항아리>
조선 후기, 높이 58.5cm,
고려대학교박물관 소장



(도9)
<백자청화운룡문항아리>
조선 후기, 높이 53.4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도10)
<백자청화운룡문항아리>
조선 후기, 높이 56.5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도11)
<백자청화운룡문항아리>
조선 후기, 높이 41.5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조선시대 문헌에 화룡준(畫龍樽)으로 언급된 운룡문 항아리는 각종 의례에 꽃을 꽂아 장식하는 화준과 술을 담는 주준(酒樽)으로 활용되었다. 운룡문 항아리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등으로 중국에서 청화 안료를 들여오기 힘든 시절에 일부 칠화백자로도 제작되었던 것을 제외하자면 조선 초기 이래로 계속해서 청화백자로 제작되었다. 영조(英祖, 재위 1724~1776) 시절 만연했던 사치풍조를 단속하고자 청화백자의 제작을 금지했을 때도 운룡문 항아리는 예외였다. 또한 조선시대 운룡문 항아리는 왕실에서 주로 활용했지만, 일부 사가(私家)에도 제공되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조선 후기에 제작된 청화백자 운룡문 항아

	<p>리들은 현재 여러 점이 남아있다. 그러나 조사대상 향아리처럼 높이가 60cm에 가깝고, 발톱이 다섯 개인 용이 장식된 사례는 희소한 편이다.</p> <p>조선 후기에 제작된 운룡문 향아리들은 정확한 제작 시기나 용도를 정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반면, 조사대상 향아리는 『원행을묘정리의례(園幸乙卯整理儀軌)』에 기록된 화준(花樽)과의 비교를 통해 제작 시기를 유추해 볼 수 있다. 조사대상 향아리의 문양은 구연부를 제외하면 1795년(정조 19) 왕실의 의례에 활용된 운룡문 향아리와 대체로 동일하다. 이러한 특징으로 볼 때, 조사대상 향아리 또한 18세기말 무렵에 제작된 화준으로 판단된다.</p>
<p>조사 결과</p>	<p>3. 서울시 지정문화유산 지정 여부 : 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대상은 높이 59cm에 달하는 크기의 입호(立壺)로, 오조(五爪)의 용문이 장식되었다. 이러한 사례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며 문화유산 가치 또한 높다고 평가한다. - 조사대상은 형태와 문양의 세부 표현 및 구성, 유색과 번조 방식 등을 감안할 때, 조선 후기 관요(官窯)에서 제작한 이후 왕실의 의례에 활용된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 이와 같은 사실을 종합할 때, 조사대상은 서울시 문화유산으로 지정해 보호·관리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다. - 단, 조사대상의 명칭은 소장처가 제시한 <백자 청화 쌍룡문 대호> 대신에 <백자 청화 운룡문 호>로 정리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태교신기】

검토종별	서울시 유형문화유산	명 칭	태교신기 (胎敎新記)
수 량	1권 1책	규 격 (cm)	25.4×17.0
재 료	종이(楮紙)	소 유 자	성균관대학교
시 대	1821(순조 21)년 序	소 재 지	서울시 종로구 성균관로25-2 성균관대학교 존경각

조사 내용

1. 문화유산 현황

- 『태교신기(胎敎新記)』는 태교(胎敎)에 관하여 저자가 경험한 사실을 체계적으로 기술한 저작이다. 곧 임신부였던 사주당이씨가 태아를 교육하는 태교(胎敎)를 학문적으로 체계화한 최초의 저술로써 학술적 가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 사주당이씨(師朱堂李氏, 1739~1821)는 태교에 관하여 한문으로 1800년에 저술하였고, 국어학자인 아들 유희(柳僖, 1773~1837)가 1801년에 한글로 번역하고 발문을 붙였다. 그리고 1821년에는 신작(申綽)이 서문을 붙이고, 1930년에는 현손 근영(近永)이 쓴 발문과 1936년에는 정인보(鄭寅普)의 음의서략(音義序略)이 각자의 필체로 들어가 있는 원본자료라 할 수 있다.
- 사주당 이씨는 조선후기에 유학의 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태교에 관하여 기술함으로써 실학을 바탕으로 태교의 의미와 함께 여성의 학문 활동이 자유롭지 못한 환경에서 새로운 학문영역을 창조하였고, 이 책은 빙허각 이씨의 『규합총서(閨閣叢書)』와 함께 조선후기 여성실학자의 매우 드문 저술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를 지닌다.
- 성균관대학교 존경각 소장 『태교신기(胎敎新記)』의 판식 특징을 살펴보면, 수고본(手稿本) 1책의 완질본(81장)이다. 표지는 30년대 이후에 개장한 표지가 있고, 이어서 비단표지로 된 표지에 서명을 ‘胎敎新記’라 하고 ‘師朱堂著/方便子釋’가 우측 하단에 묵서되어 있다. 방편자(方便子)는 유희의 호이다. 그리고 만자문(卍字文) 능화판 원표지가 붙어 있는데 ‘胎敎新記 師朱堂著/方便子釋’이라 묵서되어 있다. 또한 1821년에 쓴 신작(申綽, 1760~1828)의 서문(2張)이 실려 있는데, 신작(申綽)의 외조부는 양명학의 대가인 정제두로 양명학을 공부하고 후에 실학으로 절충한 노장학자이다. 본문으로 권수제는 ‘胎敎新記章句大全’이고 줄을 바꿔 저자인 ‘旴州柳氏婦完山李氏撰’ 그 아래에 ‘子男傲釋音義’라 쓰여 있다(26張). 따라서 저자는 사주당 이씨로 이창식(李昌植)의 여식을 말하고, 언해한 사람은 사주당의 아들인 유희로 경(敬)은 초명이다. 유희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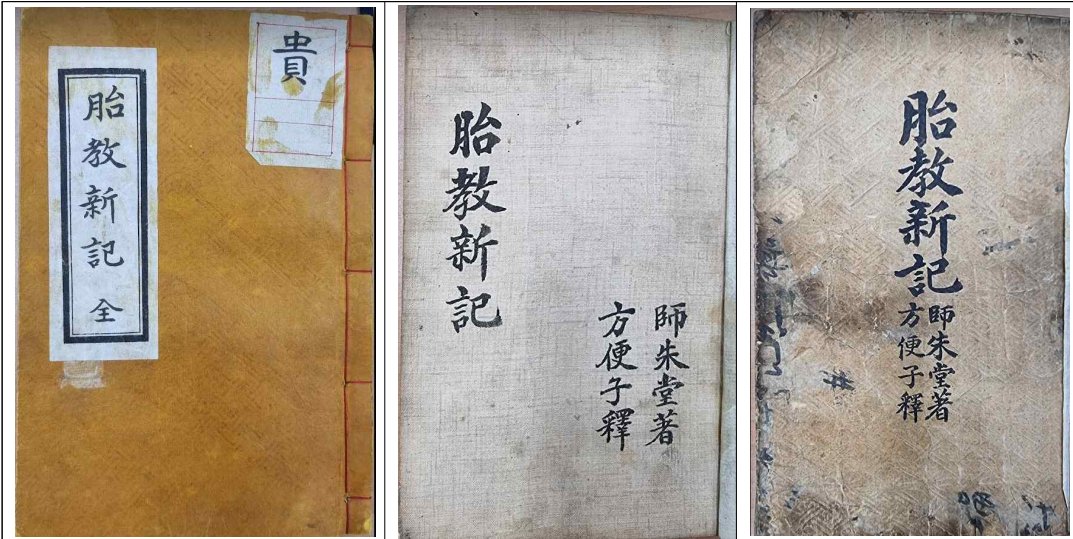
- 조선후기 음운학자이자 국어학자라 할 수 있다.
- 이어서 1801년 어머니의 글을 전하고자 언해하고 후세에 전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유희의 지문(識文, 2張)이 나온다. 그 다음에 ‘胎敎新記諺解=ㅌ | 교신기언ㅎ |’ 라는 제목으로 유희가 쓴 언해(43張)가 이어진다. 이어서 현손 근영(近永)이 쓴 발문(1930, 2張)이 나오는데, 글씨체로 보아서는 한문과 언해는 유희 자신이 직접 쓴 것으로 추정된다. 마지막 부분에 정인보(鄭寅普)가 불펜으로 직접 쓴 ‘胎敎新記音義序略’ (1936, 6張)이 이어진다.
 - 성균관대학교 소장 『태교신기(胎敎新記)』는 이를 모본으로 『胎敎新記章句大奎』이라는 제목으로 1938년 예천군(醴泉郡)에서 석판본으로 발행한 것이 유일하며 다른 판종은 없다. 이 자료는 저자의 아들인 유희가 원본을 소장한 가장본으로 발문과 신작의 서문이 친필로 쓰여 있고 현손인 유근영의 1930년에 쓴 발문이 있다. 또한 일제강점기 최고의 학자인 위당 정인보가 1936년에 불펜 글씨로 쓴 소개 글이 있다. 서예가로 유명한 검여(劍如) 유희강(柳熙綱, 1911~1976)의 장서에 포함되었다가 성균관대학교 존경각에 기증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타기관 소장 태교신기 조사표>

표제 및 역자	판본	발행사항	소장기관
胎敎新記 章句大奎	石版 本	禮泉 : 蔡漢作方, 1938	국립중앙도서관, 한국국학진흥원, 전북대학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계명대학교, 서울대학교, 서강대학교, 소수박물관 등
胎敎新記 / 李演載 譯註	-	서울 : 문덕사, 1991	국립중앙도서관 등 다수 기관 소장
태교신기	21세기 이후 한국문화사, 보광출판사, 다운샘, 안티쿠스 등 다수 출판사에서 발행		

- 성균관대학교 소장 『태교신기(胎敎新記)』 원본과 비교할 수 있는 필사본은 존재하지 않으며, 1938년 석판본으로 간행한 도서들이 존재할 뿐이다. 석판본 역시 성균관대 소장본을 모본으로 발행한 도서이며 이후에 출간되는 도서들은 역주본들이다.

	<p>2. 원형 유지 정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책 안에 오래 붙인 자국이 있는가 하면 붓으로 그어 버린 흔적, 그리고 볼펜 필기 등이 남아 있으나 전체적인 보존 상태는 양호하다.
<p>조사 결과</p>	<p>3. 서울시 지정문화유산 지정 여부 : 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균관대학교 소장 『태교신기(胎敎新記)』는 상태가 깨끗하고, 조선 순조 때 사주당 이씨가 1800년에 쓴 한문 원본에 아들 유희가 언해한 필사본 원본이다. - 『태교신기(胎敎新記)』는 조선 후기 여성학자의 실학적 저술로서 그 학문적 가치가 높다. 또한 어머니가 쓴 한문 원본을 아들인 유희가 1년 뒤인 1801년에 언해 하였고, 신작과 유근영, 정인보 등 당대 저명한 학자들이 친필로 쓴 서문과 발문이 남아 있어 자료의 전래 과정 역시 분명하여 자료적 가치가 높다고 하겠다. 따라서 서울시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하여 보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표지 사진(1, 2, 3)

胎教新記序
夫三陰搭精碎魄未分四大成形聖凡之判是以端莊之化可以毓明聖之德勤華之導不能愛均朱之惡蓋未分則教可從心之判則習不移性也胎教之所以重也柳夫人李氏完山世族春秋八子者三幼而好書深明經訓幼嘗載籍奇意高秀以為世之才難胎教之不行也乃採綴典訓遠言近意先告凡妊婦

서문

胎教新記章句大全
晉柳氏婦山李氏撰
子男做釋音義
女範曰上古賢明之女有娠胎教之方必慎能氏所著別今考之諸書其法莫有詳焉自意求之蓋或可知矣余以所嘗試於數四娠育者錄為一編以示諸女非敢擅自著述夸耀人自然猶可備內則之遺闕也故名之曰胎教新記
人生之性本於天氣質成於父母氣質偏勝馴至于
病而子病母安而子安性情才德隨其動靜甫吸冷暖為其氣血未施斧落飛鳳之章聞就事同誕值瑚璉之器先表崇育生知教不煩所用是道也故曰賢師十年之訓亦若母氏十月之教賢以善者誠能昭布景訓於珮玕媛庶史金環載爾無非弟訓而三國克生蓋為思皇若廿一年辛巳重陽後日平州申倬謹序

서문과 권수면

胎教新記의 謹記 胎教도 必한
 女의 範疇 婦人의 範疇의 中에 在하여
 니던니오기이시되 胎教의 功을 專한
 上보다 女의 功을 專한 功을 專한
 을 傳전한 功을 專한 功을 專한
 或은 可가 功을 專한 功을 專한
 是 胎教의 功을 專한 功을 專한
 是 胎教의 功을 專한 功을 專한

我父 毋蓄無獲也
 元年 辛酉 三月 二十七日 癸卯 不肖 微 謹識

언해면

婦人之德矣而況於此書之簡重正肅而足可
 仲於內訓女範之間乎自古惟奴淫妾之外
 此胎教之法者無幾而況乎是夫人踐履之
 至子焉乎 夫人一生所著不無多也而際於
 命之日女輩不繫於世也皆懷之此一甚則
 一家後使婦女輩鑑者為類此書之猶存於
 者是也 書僅存而已今吾後孫輩不肖無
 一人無尊慕此書而又無留念於傳世者此
 此則何日可念此日此書何人能傳而可
 來世之物執耶悲而悚哉歲庚午夏閏六月
 念二不肖玄孫近永謹識

지문

墓誌中記
 余以先君子簡一和木川公性理空閑一和自寫聖學要義一通藏諸
 氣質不離本然之性心不在道心之外
 胎教新記樹聖善之實坊啓末末之華曾著世間胎之必達乎
 卷面
 李小陵昌頭姜洗馬必孝當歸人轉達賢厥文身疑李上曾題討
 李山秋亮測升堂而拜自手親友
 經曾歸夫人古女括儒園收道授聖物執教分編欲筆未起
 氣澤延津合光氣景
 胎教新記音義為 卷四 鄭國書者
 始富善賜 西波柳先生信所著書日有曰
 胎教新記音義其為中夜坦周家胎教之
 吉而未知為誰作而先生釋之後讀先生之錄
 考知行如先生勿志淑人遠徑漸確先生是
 考木川君其學受自淑人淑人既老著胎教

정인보 친필

近永志刊先生書有書是書 寅 寅
 為弟其略如云 丙子十二月

정인보 친필 및 후배표지

【낙촌선생문집 목판, 귀암선생문집 목판, 정재선생문집 목판】

검토종별	서울시 유형문화유산	명 칭	낙촌선생문집 목판, 귀암선생문집 목판, 정재선생문집 목판 (洛村先生文集木板, 歸巖先生文集木板, 靜齋先生文集木板)
수 량	498장	규 격 (cm)	27.6×53.7×3.5
재 료	나무	소유자	서울특별시
시 대	1937년	소재지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55 서울역사박물관

조사 내용

1. 문화유산 현황

- 본 유물은 이도장(李道長, 1603~1644), 이원정(李元禎, 1622~1680), 이담명(李聃命, 1646~1701) 3대의 문집 『낙촌집(洛村集)』, 『귀암집(歸巖集)』, 『정재집(靜齋集)』의 목판이다.
- 이도장은 정구(鄭逵)의 문인으로 1630년 문과에 급제하여 합천 군수를 역임하였다. 이원정은 1652년 문과에 급제하여 이조 판서를 역임하였다. 이담명은 허목(許穆)의 문인으로 1670년 문과에 급제하여 이조 참판을 역임하였다.
- 『낙촌집』은 3권 1책으로 1938년 간행된 초간본, 『귀암집』은 12권 6책으로 1937년 간행된 중간본, 『정재집』은 8권 4책으로 역시 1937년 간행된 중간본이다. 모두 경북 칠곡에서 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 『낙촌집』은 권1에 시(詩), 소(疏), 전(箋), 정문(正文), 서(序), 권2에 기(記), 축문(祝文), 제문(祭文), 묘지(墓誌), 비음(碑陰), 행장(行狀)이 수록되어 있고, 권3은 부록이다. 모든 목판에 각수(刻手)의 이름이 표기되어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각수는 총 11인이다.
- 『귀암집』은 권1에 시(詩), 권2~3에 소(疏), 권4에 차(筭), 계사(啓辭), 공사(供辭), 함사(緘辭), 권5에 헌의(獻議), 유서(諭書), 전(箋), 정문(正文), 서(書), 잡저(雜著), 권6에 서(序), 기(記), 발(跋), 권7에 축문(祝文), 제문(祭文), 권8에 제문, 비명(碑銘), 묘지명(墓誌銘), 묘갈명(墓碣銘), 음기(陰記), 권9~10에 행장(行狀)이 수록되어 있고, 권11~12는 부록이다.
- 『정재집』은 권1에 시(詩), 소(疏), 권2~3에 소, 차(筭), 권4에 계사(啓辭), 함사(緘辭), 유서(諭書), 장(狀), 서(書) 권5에 잡저(雜著), 축문(祝文), 제문(祭文), 권6에 제문(祭文), 묘지(墓誌), 묘갈음기(墓碣陰記), 행장(行狀)이 수록되어 있고, 권7~8은 부록이다.
- 『낙촌집』, 『귀암집』, 『정재집』 목판 현황은 다음과 같다.

유물번호	명칭	완본(면)	보유(면)	결락(면)	기타	수량(점)
서15532	낙촌집	98	96	2	4(빈면2, 추가면2)	50
서15530	귀암집	540	536	4	2(간기1, 빈면1)	269
서15531	정재집	362	358	4		1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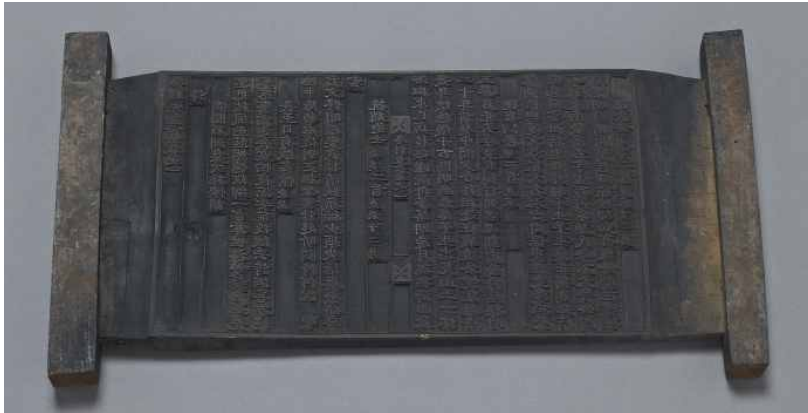
2. 원형유지정도

- 『낙촌집』 일부 목판에 뒤틀림과 갈라짐이 있다. 『귀암집』 과 『정재집』 역시 일부 목판에 손상이 있으나 상태는 대체로 양호하며, 일부 목판은 결락되었으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 문집 목판은 단면을 활용하여 판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정재집』의 경우 양면을 모두 활용하여 판각한 목판도 있다. 이로 인해 순서가 다소 복잡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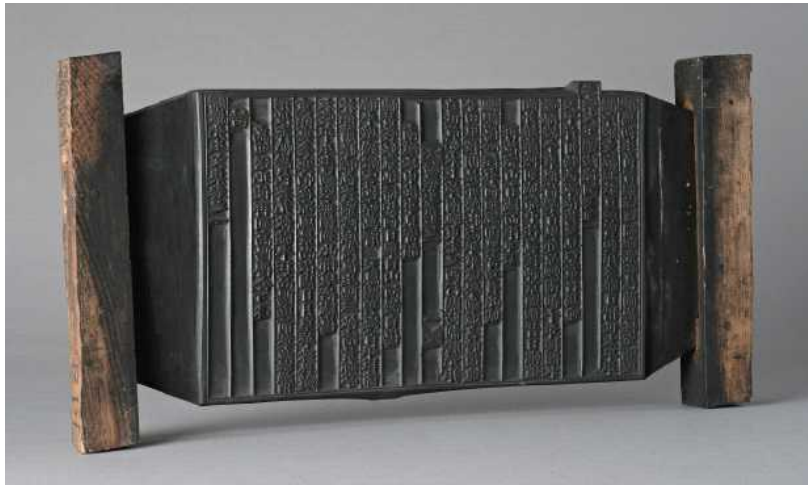
조사 결과

3. 서울시 지정문화유산 지정 여부 : 가

- 『낙촌집』, 『귀암집』, 『정재집』은 17세기 영남 남인의 문집이다. 이원정은 1680년 경신대출척으로 투옥되었다가 옥사하였으며, 사후 1689년 관작을 회복하고 증직되었다. 그러나 1694년 갑술환국으로 관직이 추탈되고, 1712년 복관되었다. 1871년에 와서야 뒤늦게 시호를 받았다. 이담명 역시 1694년 갑술환국으로 유배되었다가 5년 만에 풀려나 직첩을 빼앗긴 채로 사망하였으며, 사후 1706년 직첩을 돌려받았다.
- 이 3대의 문집은 저자 사후 곧바로 간행되지 못하였다. 만년에 당쟁으로 고초를 겪은 저자들의 신원(伸冤)이 우선이었기 때문이다. 복권과 위상 제고를 위한 후손의 노력이 계속되어 20세기에 와서야 비로소 문집이 간행되었다.
- 이 유물은 20세기 이후의 것이지만, 전통적인 제작 방식으로 만들어졌고, 보관 상태도 양호한 편이다. 특히 비슷한 시기에 제작된 3대의 문집 판목이 온전히 남아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한편, ‘한국의 유교책판’이라는 제목으로 문집 등을 인쇄한 책판들이 2015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서울시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충분할 것으로 판단한다.



낙촌선생문집 목판



귀암선생문집 목판



정재선생문집 목판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611호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부과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차량의운행제한) 위반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지방세기본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30일
서울특별시

- 1. 건 명 :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부과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 2. 근 거 : 「도로법」 제11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5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7조, 「지방세기본법」 제32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가.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부과고지

대 상 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성명	주 소		
용권순	인천광역시 서구 봉오재3로 14 304동 11**호 (가정동)	위반일시: 2024-03-11 21:19 위반장소: 서대문구 홍은동 217-17 홍제교 위반내용: 차량의 총중량 초과(실측값: 36.6t, 초과값: 4.6t,006가622*)	과태료: 50만원 부과 처분일: 2024-04-26 납기일: 2024-06-30
박희준	인천광역시 연수구 먼우금로 299 2동 21*호 (연수동)	위반일시: 2024-03-23 09:20 위반장소: 서대문구 북아현동 135-4 총정교 위반내용: 차량의 총중량 초과(실측값: 36.05t, 초과값: 4.05t,서울06하733*)	과태료: 50만원 부과 처분일: 2024-04-26 납기일: 2024-06-30
정성욱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 326 11동 22*호 (원곡동)	위반일시: 2024-04-03 05:59 위반장소: 서대문구 북가좌동 488 위반내용: 차량의 길이 초과(실측값: 19.9m, 초과값: 3.2m,충남99서685*)	과태료: 50만원 부과 처분일: 2024-04-26 납기일: 2024-06-30

나.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독촉고지

대 상 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성명	주 소		
황지연	대전광역시 대덕구 송촌남로45번길 17 B동 *호 (송촌동)	위반일시: 2024-01-24 06:22 위반장소: 용산구 한남동 726-166 한남제2고가 위반내용: 차량의 총중량 초과(실측값: 40.1t, 초과값: 20.1t, 총남94사170*)	과태료: 120만원 부과 처분일: 2024-02-26 납기일: 2024-04-30
김승조	인천광역시 서구 독정로25번길 26-6 103동 6**호 (당하동)	위반일시: 2024-02-03 16:15 위반장소: 덕양구 덕은동 425-28 위반내용: 차량의 폭 초과(실측값: 2.85m, 초과값: 0.35m, 007나755*)	과태료: 50만원 부과 처분일: 2024-02-26 납기일: 2024-04-30

4.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가. 서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로부터 고지서를 받아 시중 은행 본·지점(한국은행 제외), 농협 및 수협중앙회 본·지점,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etax.seoul.go.kr)에 접속하여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또한 전용계좌에 입금함으로써 편리하게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나.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최고 75%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재산압류,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6.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안내

가. 이의제기 기한 : 공고기간 만료일 다음날로부터 60일

나. 이의제기 기한 내에 서면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청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기한 내에 이의제기서가 도달하지 않은 경우 이의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다. 접수된 이의제기서는 관할법원에 통보되어 해당 사건에 대한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과태료 부과 행정청(이의제기 및 기타 세부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 주 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양대로 203 서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 전화번호 : 02-300-8347, 팩스번호: 02-300-8337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618호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 등록변경 신고사항 공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및 제3항, 제29조 제3항에 따라 다단계[후원방문] 판매업 등록변경 신고를 처리하고,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30일
서울특별시

■ 다단계[후원방문] 판매업 등록변경 신고사항

신 고 인					변 경 내 역		
연번	상 호	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구분 (변경일)	변경전	변경후
1	더 미성 (THE MISUNG)	서울 후 제1926호	김미성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18길 11, 102동 3202호(현석동, 래미안헬스트림)	소재지 (24.5.9)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리랑로 75,103동 1403호(돈암동, 돈암코오롱하늘채 아파트)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18길 11, 102동 3202호(현석동, 래미안헬스트림)
2	인셀덤 대치점	서울 후 제1131호	이은희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69길 16, 102호(대치동)	소재지 (24.5.14)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340, 107호 (대치동, 대치 EM 프라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69길 16, 102호(대치동)
3	인셀덤 별하한남점	서울 후 제1463호	정미선	서울특별시 용산구 대사관로24길 9-4, 1층(한남동)	소재지 (24.5.21)	서울특별시 용산구 대사관로34길 46-6(한남동)	서울특별시 용산구 대사관로24길 9-4, 1층(한남동)
4	목동 인셀덤	서울 후 제1197호	신순자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1길 19, 402호(목동,남광쉐르빌)	폐업 (24.5.16)		
5	라헨스 뷰티인셀덤 5호점	서울 후 제1656호	박선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6나길 5-19, 1동 308호(구로동,우성타운)	폐업 (24.5.17)		
6	인셀덤	서울 후 제1183호	정희숙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19길 42, 203호(방배동)	폐업 (24.5.17)		
7	퀵&킹 인셀덤	서울 후 제1669호	안계영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동시장로9나길 25 (제기동)	폐업 (24.5.21)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민원담당관(☎ 02-2133-7917) 또는 공정경제담당관(☎ 02-2133-536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620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고도지구,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결정(변경)(안)
주민 재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1986호(2023.07.06.) 및 제2024-583호(2024.02.29.)로 주민(재)열람공고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고도지구,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2024년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수정가결) 등에 따라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주민 의견을 재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3.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5월 30일
서울특별시

가.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고도지구) 결정(변경)(안)

■ 고도지구 총괄표

지구명	면적(m ²)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8,462,299	감) 1,822,143	6,640,156	-
남산 주변	2,977,229	감) 167,401	2,809,828	-
북한산 주변	3,557,000	감) 1,204,502	2,352,498	-
구가평창	480,290	감) 48,731	431,559	-
경복궁 주변	1,189,800	감) 193,679	996,121	-
배봉산 주변	50,150	-	50,150	-
오류	94,130	감) 94,130	-	폐지
서초동 법원단지 주변	113,700	감) 113,700	-	폐지

※ ‘국회의사당 주변 고도지구’ 는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추진 예정(제6차 도시계획위원회 수정가결 사항)

■ 고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 시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고도제한 내용	면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p>■ 남산 주변 고도지구</p>								
기정	1	남산 주변	고도지구	용산구 소월로 일대	도로면 -1.5m이하	135,000	' 72.5.8. (건설부고시 제174호)	-
변경	1	남산 주변	고도지구	용산구 소월로 일대	도로면 이하	135,000	"	건축물 높이산정 기준 별도참조
기정	2	남산 주변	고도지구	중구 남창동, 회현동1가 일대	도로면 이하	14,400	"	-
변경	2	남산 주변	고도지구	중구 남창동, 회현동1가 일대	도로면 이하	14,400	"	건축물 높이산정 기준 별도참조
기정	3	남산 주변	고도지구	중구 신당동 일대	도로면 +4m이하	22,500	"	-
변경	3	남산 주변	고도지구	중구 신당동 일대	도로면 +4m이하	22,500	"	건축물 높이산정 기준 별도참조
기정	4	남산 주변	고도지구	중구 회현동 1·2가, 예장동, 남산동2·3가, 필동2·3가, 장충동2가, 신당동 일대 용산구 후암동, 이태원동, 용산2가동, 한남동 일대	12m이하 (완화시 16m이하)	1,020,972	"	① 건축물 높이산정 기준 별도참조 ② <완화시 기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 (별도참조)
변경	4	남산 주변	고도지구	용산구 용산동2가31, 5-1488 일대	12m이하 (완화시 20m이하)	188,886	"	① 건축물 높이산정 기준 별도참조 ② <완화시 기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 (별도참조)
	중구 회현동1가 146-1, 신당동 432-24, 용산구 이태원동 193-6, 한남동 741-20 일대			16m이하 (완화시 20m이하)	340,666	"	"	
	중구 남산동2가 49-49, 예장동 1-1, 용산구 후암동 402-3 일대			20m이하	343,461	"	"	
기정	5	남산 주변	고도지구	중구 남창동, 회현동1·2·3가, 남산동1·2가, 주자동, 남학동, 목정동, 필동2·3가, 장충동2가, 신당동일대 용산구 후암동, 이태원동, 용산2가동, 한남동 일대	20m이하 (완화시 28m이하)	1,434,427	"	① 건축물 높이산정 기준 별도참조 ② <완화시 기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 (별도참조)

구분	도면표 시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고도제한 내용	면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변경	5	남산 주변	고도지구	용산구 후암동 443-1일대	20m이하 (완화시 28m이하)	53,311	"	① 건축물 높이산정 기준 별도참조 ② <완화시 기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완화 (별도참조)
	21			중구 회현동1가 164, 신당동 432-1979, 432-1632 일대, 용산구 이태원동 204-3, 한남동 일대	24m이하 (완화시 28m이하)	282,589	"	① 건축물 높이산정 기준 별도참조 ② <완화시 기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완화 (별도참조)
	16			중구 회현동1가 143-4, 남산동2가 32-3, 필동2가 85-1, 신당동 432-106 일대, 용산구 후암동 244-79, 이태원동 729, 한남동 일대	28m이하	1,021,831	"	"
	17			중구 신당동 355-7 일대	32m이하	19,109	"	건축물 높이산정 기준 별도참조
	18			중구 신당동 369-7 일대	40m이하	14,673	"	"
	19			중구 회현동1가 86-3 일대	36m이하	23,724	"	① 건축물 높이산정 기준 별도참조 ② <완화시 기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완화 (별도참조)
기정	6	남산 주변	고도지구	용산구 한남동 810, 4-13 일대	18m이하	49,882	"	① 건축물 높이산정 기준 별도참조 ② 지반고를 6m범위 내에서 건축심의를 받아 낮출 수 있음
변경	6	남산 주변	고도지구	용산구 한남동 810, 4-13 일대	18m이하	49,630	"	"
기정	7	남산 주변	고도지구	용산구 한남동 810 일대	30m이하	29,224	"	"
기정	8	남산 주변	고도지구	용산구 한남동 810 일대	36m이하	15,074	"	"
기정	9	남산 주변	고도지구	용산구 한남동 829 일대	18m이하	36,020	"	건축물 높이산정 기준 별도참조

구분	도면표 시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고도제한 내용	면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10	남산 주변	고도지구	용산구 한남동 829 일대	30m이하	27,080	"	"
기정	11	남산 주변	고도지구	용산구 이태원동 57-35, 56-13, 124-7, 136-6, 한남동 736-42, 685-2일대	20m이하	120,800	"	"
기정	12	남산 주변	고도지구	용산구 이태원동 123-15, 127-7, 141-11 일대	28m이하	19,496	"	"
기정	13	남산 주변	고도지구	용산구 이태원동 57-1, 72-16, 132-8, 한남동 737-57 일대	15m이하	51,113	"	"
기정	14	남산 주변	고도지구	용산구 이태원동 137-23 일대	23m이하	1,241	"	"

■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기정	-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강북구 미아1·2동, 수유1·4·5·6동 일대 도봉구 도봉1동, 방학2·3동, 쌍문1동 일대	20m이하 (완화시 28m)	3,557,000	' 90.12.10. (서울특별시 고시 제404호)	<완화시 기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 (별도참조)
변경	1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강북구 우이동, 인수동, 수유1동, 삼양동 일대 도봉구 도봉1동, 방학2·3동, 쌍문1동 일대	20m 이하 (완화시 28m이하)	248,450	"	①건축물 높이산정기준 별도참조 ②<완화시 기준> 도시계획 관련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완화 (별도참조)
								①건축물 높이산정기준 별도참조 ②<완화시 기준> 도시계획 관련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완화 (별도참조)
	2			강북구 우이동, 인수동, 수유1동, 삼양동 일대 도봉구 도봉1동, 방학2·3동, 쌍문1동 일대	28m 이하	2,104,048	"	①건축물 높이산정기준 별도참조 ②<완화시 기준> 도시계획 관련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완화 (별도참조)

■ 구기·평창 고도지구

기정	-	구기·	고도지구	종로구 평창동, 구기동,	20m 이하	480,290	' 93.4.26.	건축물 높이산정
----	---	-----	------	---------------	--------	---------	------------	----------

구분	도면표 시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고도제한 내용	면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평창		신영동, 부암동, 홍지동 일대			(서울특별시 고시 제122호)	기준 별도참조
변경	-	구기· 평창	고도지구	종로구 평창동, 구기동, 신영동, 부암동, 홍지동 일대	24m 이하 (완화시 28m이하)	431,559	"	① <완화시 기준> 도시계획 관련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완화 (별도참조) ② 건축물 높이산정기준 별도참조
<p>■ 경복궁 주변 고도지구</p>								
기정	1	경복궁 주변	고도지구	종로구 효자, 창성, 통의, 적선동 일대	15m이하 (단, 국·공유지는 12m이하로 함)	10,080	' 77.5.9. (서울특별시 고시 제139호)	건축물 높이산정 기준 별도참조
기정	2	경복궁 주변	고도지구	종로구 적선, 통의, 창성, 효자, 궁정, 청운, 중학, 사간, 송현, 안국, 재, 소격, 화, 가회, 팔판, 삼청동 일대, 재동 83 일대, 소격동 165 일대	16m이하	743,040	"	건축물 높이산정 기준 별도참조
변경	2	경복궁 주변	고도지구	종로구 중학, 사간, 송현, 안국, 재, 소격, 화, 가회, 팔판, 삼청동 일대	16m이하	430,655	"	"
기정	3	경복궁 주변	고도지구	종로구 적선, 통의, 창성, 효자, 궁정동 일대	18m이하	20,880	"	건축물 높이산정 기준 별도참조
변경	3	경복궁 주변	고도지구	종로구 적선, 통의, 창성, 효자, 궁정동 일대	18m이하	141,667	"	"
기정	4	경복궁 주변	고도지구	종로구 청운, 통의, 누상, 누하, 필운, 효자, 체부, 옥인, 창성, 궁정, 통인동 일대	20m이하	415,800	"	건축물 높이산정 기준 별도참조
변경	4	경복궁 주변	고도지구	종로구 청운, 누상, 누하, 필운, 옥인, 궁정, 통인, 신교, 사직동 일대	20m이하	332,972	"	"
변경	5	경복궁 주변	고도지구	종로구 통의, 누하, 필운, 체부, 옥인, 창성, 통인동 일대	24m이하	80,747	"	"
<p>■ 배봉산 주변 고도지구</p>								
기정	-	배봉산 주변	고도지구	동대문구 휘경동 43번지 일대	조망선 높이 이하 (해발 44.0~62.6m)	50,150	' 06.1.5.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4호)	① 지표면(건축법령 적용)으로부터 건물 최상단까지의 높이(단, 필로티부분은

구분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세분	위 치	고도제한내용	면적(㎡)	최초결정일	비 고
								높이에 포함하되,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면적 범위내 높이 3m이내의 계단탑 및 엘리베이터탑은 제외) ②조망선:조망점과 봉우리의 7부능선(산 정상 해발 높이의 70%) 지점을 연결하는 선 (높이계획 결정도 참조)
변경	-	배봉산 주변	고도지구	동대문구 회경동 43번지 일대	조망선 높이 이하 (해발 44.0~62.6m)	50,150	'06.1.5.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4호)	①건축물 높이산정기준 별도참조 ②조망선:조망점과 봉우리의 7부능선(산 정상 해발 높이의 70%) 지점을 연결하는 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253호 참조)

■ 오류 고도지구

폐지	-	오류	고도지구	구로구 온수동 100-64 일대	20m이하 (단, 아파트형공장에 한하여 30m이하)	94,130	'90.12.1. (서울특별시 고시 제390호)	건축물 높이산정 기준 별도참조
----	---	----	------	-------------------	------------------------------	--------	-------------------------------	------------------

■ 서초동 법원단지 주변 고도지구

폐지	-	서초동 법원단지 주변	고도지구	서초구 서초동 1702일대	28m이하	113,700	'80.12.31. (서울특별시 고시 제437호)	건축물 높이산정 기준 별도참조
----	---	-------------	------	----------------	-------	---------	--------------------------------	------------------

[참조]

■ 건축물 높이산정 기준(변경) : 전체 고도지구 일괄 변경 적용

<기정>

- 지표면(건축법령적용)으로부터 건물 최상단까지의 높이(단, 필로티부분은 높이에 포함하되,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면적 범위내 높이 3m 이내의 계단탑 및 엘리베이터탑은 제외)

<변경>

- 지표면으로부터 건물 최상단까지의 높이[단, 지표면 산정방법은 건축법령을 따르되, 건물 옥상돌출부, 옥상돌출물 및 필로티는 높이에 포함하며, 옥상에 설치되는 높이 3m 이내의 승강기탑-계단탑 및 난간벽(투시형 또는 그 벽면적의 2분의1 이상이 공간으로 되고 높이 1.5m 미만인 것에 한정)은 제외]

구분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세분	위 치	고도제한내용	면적(m ²)	최초결정일	비 고
<p>■ 고도지구 완화기준(변경)</p> <p><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형차에 의한 높이완화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대상 : 북한산 주변, 남산 주변 고도지구 - 완화범위 : 12m지역 → 16m이하까지 완화, 20m지역 → 28m이하까지 완화 (인접건축물의 높이연장선 : 가상높이 12m 또는 20m) <p><변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형차에 의한 높이완화기준(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대상 : 북한산 주변, 남산 주변, 구기·평창 고도지구 - 완화범위: 대상지가 인접대지보다 낮은 지역에 대해 완화 (12m, 16m지역 → 최대20m이하까지 완화 / 20m, 24m지역→최대28m이하까지)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도시의 경관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완화 • 정비사업 등 추진 시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을 통한 높이완화기준(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대상 : 북한산 주변, 남산 주변, 구기·평창 고도지구 - 완화범위 : 정비사업 등 추진 시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市 도시계획 관련 위원회 심의(자문)를 거쳐 최대 45m 범위 등 내에서 완화 가능 ※ 완화적용 방법, 세부운영기준 등 북한산 주변, 남산 주변, 구기·평창 고도지구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은 서울특별시장이 별도로 정함 • 높이 초과 아파트(공동주택)에 대해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추진 시 높이기준 완화 가능(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대상 : 북한산 주변, 남산 주변, 구기·평창 고도지구 • 고도지구 지정 이전 건축으로 높이초과된 관광숙박시설(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1항2호 가,다목에 따른 호텔업에 한함)의 경우 기존높이까지 완화 가능(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대상 : 남산 주변 고도지구 								

- 이 하 여 백 -

■ 고도지구 결정(변경) 사유서

지구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남산 주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적 변경 - 2,977,229㎡ → 2,809,828㎡ 감)167,401㎡ • 높이기준 변경 - 소월로일대 : 도로면-1.5m이하 → 도로면이하 - 12m(완화시16m)이하 → 12m(완화시20m)/16m(완화시20m)/20m이하 - 20m(완화시28m)이하 → 20m(완화시28m)/24m(완화시28m)/28m/ 32m/36m/40m이하 • 건축물 높이산정 기준 변경 • 고도지구 완화기준 변경 - 정비사업 등 추진 시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市 도시계획 관련 위원회 심의(자문)를 거쳐 최대 45m 범위 내에서 완화 가능 1. 소월로·소파로 인근 지역 : 도로면 이하 부감 범위 내 완화 가능 2. 성곽길 인근 지역 : 도로면 +4m 이하 부감범위 내 완화 가능 3. 사업대상지가 역세권(지구중심 이상 중심지 범위 내 지하철역 승강장 경계 250m)인 지역에 위치한 경우 완화 가능 *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은 서울시장이 별도로 정함 - 주택법에 의한 리모델링 추진시 높이기준 완화 가능 - 고도지구 지정 이전 건축으로 높이초과된 관광숙박시설(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1항 2호 가,다목에 따른 호텔업에 한함)의 경우 기존높이까지 완화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경관지구 등 지정 목적 및 유사기능의 도시관리수단이 중첩된 일부지역에 대해 고도지구 폐지 • 경관보전 범위 내 지형, 지역여건 변화 및 노후 주거환경 개선 등을 고려 높이기준 조정 및 지형차에 의한 높이 완화기준 변경 • 건축물 높이산정 기준 구체화 및 옥상 이용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옥상 설치 난간(투시형)을 높이산정에서 제외 • 정비사업, 리모델링 등 여건변화를 고려한 완화기준 신설 - 정비사업 등 추진시 높이완화 기준 신설 - 높이초과 아파트 리모델링을 고려, 주택법상 허용범위 내에서 층수완화 기준 신설 - 고도지구 지정 이전 건축으로 높이초과된 관광숙박시설의 경우 기존높이까지 완화 기준 신설
북한산 주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적 변경 - 3,557,000㎡ → 2,352,498㎡ 감)1,204,502㎡ • 높이기준 변경 - 20m이하(완화시 28m) →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m 이하(완화시 28m)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상: 28m 이하 • 건축물 높이산정 기준 변경 • 고도지구 완화기준 변경 - 정비사업 등 추진 시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市 도시계획 관련 위원회 심의(자문)를 거쳐 완화 가능 1. 최대 45m 범위 내에서 완화 가능 2. 사업대상지가 역세권(지구중심 이상 중심지 범위 내 지하철역 승강장 경계 250m)인 지역에 위치한 경우 평균 45m 범위 내에서 완화 가능 *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은 서울시장이 별도로 정함 - 고도지구 지정 이전에 건립된 높이 초과 아파트(공동주택)에 대해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추진 시 높이기준 완화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경관지구 등 지정 목적 및 유사기능의 도시관리수단이 중첩된 일부지역에 대해 고도지구 폐지 • 경관보전 범위 내 지형, 지역여건 변화 및 노후 주거환경 개선 등을 고려 높이기준 조정 • 건축물 높이산정 기준 구체화 및 옥상 이용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옥상 설치 난간(투시형)을 높이산정에서 제외 • 정비사업, 리모델링 등 여건변화를 고려한 완화기준 신설 - 정비사업 등 추진시 높이완화 기준 신설 - 높이초과 아파트 리모델링을 고려, 주택법상 허용범위 내에서 완화 기준 신설

지구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구기·평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적 변경 - 480,290㎡ → 431,559㎡ (감) 48,731㎡ • 높이기준 변경 - 20m이하 → 24m이하(완화시 28m이하) • 건축물 높이산정 기준 변경 • 고도지구 완화기준 변경 - 정비사업 등 추진 시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市 도시계획 관련 위원회 심의(자문)를 거쳐 최대 45m 범위 내에서 완화 가능 *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은 서울시장이 별도로 정함 - 고도지구 지정 이전에 건립된 높이 초과 아파트(공동주택)에 대해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추진 시 높이기준 완화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경관지구 등 지정 목적 및 유사기능의 도시관리수단이 중첩된 일부지역에 대해 고도지구 폐지 • 경관보전 범위 내 지형, 지역여건 변화 및 노후 주거환경 개선 등을 고려 높이기준 조정 및 지형차에 의한 높이 완화기준 신설 • 건축물 높이산정 기준 구체화 및 옥상 이용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옥상 설치 난간(투시형)을 높이산정에서 제외 • 정비사업, 리모델링 등 여건변화를 고려한 완화기준 신설 - 정비사업 등 추진시 높이완화 기준 신설 - 높이초과 아파트 리모델링을 고려, 주택법상 허용범위 내에서 완화 기준 신설
경복궁 주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적 변경 - 1,189,800㎡ → 996,121㎡ (감) 193,679㎡ • 높이기준 변경 - 15m, 16m, 18m, 20m이하 → 15m, 16m, 18m, 20m, 24m이하 • 건축물 높이산정 기준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경관지구 등 경관 보호 목적으로 도시관리수단이 중첩된 일부지역에 대해 고도지구 폐지 • 경관보전 범위 내 지형, 지역여건 변화 및 노후 주거환경 개선 등을 고려 높이기준 세분화 • 건축물 높이산정 기준 구체화 및 옥상 이용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옥상 설치 난간(투시형)을 높이산정에서 제외
배봉산 주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높이산정 기준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높이산정 기준 구체화 및 옥상 이용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옥상 설치 난간(투시형)을 높이산정에서 제외
오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지역 개발에 따른 고도지구 지정목적(도시 연담화 방지) 및 실효성 상실로 고도지구 폐지
서초동 법원단지 주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사시설에 대한 도시관리 일관성 및 토지이용 효율성을 고려하여 고도지구 폐지

- 이하 여백 -

나.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결정(변경)(안)

■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결정(변경) 조서

구분	지구의 세분	위 치	면적(㎡)	폭원(m)	최초결정일	비고
폐지	역사문화특화 경관지구	광진구 자양동 21 ~ 자양동109 (강변도로)	22,500	도로 양측 15	' 19.04.19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29호)	강변북로
폐지	역사문화특화 경관지구	마포구 상암동 1527~ 상암동 1566	82,800	도로 양측 12	'	
폐지	역사문화특화 경관지구	강변북로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559,200	도로 양측 12	'	올림픽대로
폐지	역사문화특화 경관지구	강남도로 (영등포구, 동작구, 강남구, 강서구, 강동구)	782,400	도로 양측 12	'	
기정	역사문화특화 경관지구	종로구 사간, 소격, 안국, 가회, 원서, 삼청, 계동, 제동 일대	780,735	집단	'	삼청동길, 을곡로, 사직로 (집단)
기정	역사문화특화 경관지구	중구 회현동~ 장충동 일대	700,000		'	남산공원길 (집단)

■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결정(변경) 사유서

용도지구	지구의 세분	면적(㎡)	변경내용	변경사유
경관 지구	역사문화특화 경관지구	2,927,635㎡ → 1,480,735㎡ 감)1,446,9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한강변) 폐지 (강변북로 및 올림픽대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한강변)의 지정목적, 범위 등 고려 실효성 상실로 폐지

다. 관계도서 : 게재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라. 열람기간 : 열람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2024.5.31.~2024.6.13.)

마.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 기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2133-8333), 종로구 종로미래도시추진단(☎2148-2423), 중구 도심재정비기획반(☎3396-5733), 용산구 도시계획과(☎2199-7394), 동대문구 도시계획과(☎2127-4582), 강북구 도시계획과(☎901-6843), 도봉구 도시계획과(☎2091-3593), 구로구 도시계획과(☎860-3326), 영등포구 도시계획과(☎2670-3523), 서초구 도시계획과(☎2155-6785), 성동구 도시계획과(☎2286-5554), 광진구 도시계획과(☎450-7673), 마포구 도시계획과(☎3153-9357), 강서구 도시계획과(☎2600-6692), 동작구 도시계획과(☎820-9596), 강남구 도시계획과(☎3423-6103), 송파구 도시계획과(☎2147-2995), 강동구 도시계획과(☎3425-6029)

※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서울소식→공고→도시관리계획안 열람공고에서도 확인 가능

바.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열람내용은 확정된 안이 아니므로 추후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 이행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2133-83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621호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제공람 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65호(2006.10.26.)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제2007-260호(2007.7.30.)로 1단계 구간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 제2009-107호(2009.3.19)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제2009-378호(2009.9.24.)로 재정비촉진계획(세운5구역)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119호(2014.3.27)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389호(2014.11.13.)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304호(2015.10.1.)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62호(2016.3.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03호(2016.4.7.)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1호(2017.1.26.)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94호(2017.11.9.)로 재정비촉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438호(2017.11.30.)로 재정비촉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177호(2018.6.7.) 재정비촉진계획[기반시설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86호(2019.3.7.)로 재정비촉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85호(2019.6.7.)로 재정비촉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211호(2019.7.4.)로 재정비촉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170호(2020.5.1.)로 재정비촉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419호(2020.10.15.)로 재정비촉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110호(2021.3.4.)로 재정비촉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564호(2021.10.14.)로 재정비촉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56호(2022.2.10.)로 재정비촉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479호(2022.12.8.)로 재정비촉진계획(세운3-4,5구역, 세운6-3-4구역)변경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471호(2023.10.26.) 재정비촉진계획(세운 5-1·3구역)변경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540호(2023.12.7.) 재정비촉진계획(세운 3-2·3구역, 세운 3-8·9·10구역, 세운 6-3-3구역)변경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59호(2024.1.25.) 재정비촉진계획(세운 6-4-22·23구역)변경 결정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한 변경(안)을 주민공람(2023.10.25.~2023.11.8.)하였으며 2024년 제1차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결과(2024.3.19.) 등을 반영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리고 관련 도서를 제공람합니다.
2. 본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공람기간 내에 아래 공람장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 5월 30일
서울특별시장

가. 공람기간 : 2024. 5. 30. ~ 2024. 6. 13.

나.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 도시공간본부 도시재창조과(☎02-2133-4645)
 종로구 미래도시국 도시개발과(☎02-2148-2694)
 중 구 도시관리국 도심정비과(☎02-3396-5752)

다. 공람내용 :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1) 세운재정비촉진계획 개요

지구명 (지구유형)	위치	면적 (㎡)			개발기간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중심지형)	종로구 종로3가동 175-4번지 일대	439,356.4	-	439,356.4	2006.10 ~2023.12	2006.10 ~2035.12

2) 세운재정비촉진계획(변경)

①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구분	기정		변경(안)			비고	
	면적(㎡)	비율(%)	면적(㎡)	비율(%)	증감(㎡)		
합계	439,356.4	100.0	439,356.4	100.0	-		
택지 (획지)	소계	283,647.5	64.6	281,928.8	64.2	증) 1,718.7	
	복합개발용지	256,944.0	58.5	265,367.7	60.4	증) 8,423.7	
	남산자이	5,216.5	1.2	5,216.5	1.2	-	
	국도호텔	1,620.5	0.4	1,620.5	0.4	-	
	중앙대코플라자	1,060.6	0.2	-	-	감) 1,060.6	존치정비구역 전환
	명보아트홀	1,256.5	0.3	-	-	감) 1,256.5	존치정비구역 전환
	매일경제신문	1,778.4	0.4	-	-	감) 1,778.4	존치정비구역 전환
	세운상가군	15,771.0	3.6	9,724.1	2.2	감) 6,046.9	삼풍상가, PJ호텔:공원 결정 인현상가:공공용지 결정 세운가동, 청계, 대림, 진양상가:존치정비구역 전환
기반 시설 등	소계	155,708.9	36.0	157,427.6	35.8	감) 1,718.7	-
	공공청사	7,600.0	1.7	7,600.0	1.7	-	중구청
	학교시설	13,055.1	3.0	13,055.1	3.0	-	덕수중학교
	하천	8,423.4	1.9	8,423.4	1.9	-	청계천
	공원	10,115.2	2.3	32,248.4	7.3	증) 22,133.2	상가군 공원화 완료시 47,705.4㎡(10.8%)
	녹지	3,829.7	1.7	2,498.5	0.6	감) 1,331.2	3개소

주차장	1,198.7	0.3	1,198.7	0.3	-	1 개소
공공공지	1,168.3	-	1,328.4	0.3	증) 160.1	3 개소
공공용지	657.4	-	4,100.3	0.9	증) 3,432.9	4 개소
도 로	109,651.1	25.2	86,974.8	19.8	감) 22,676.3	-

- ※ 복합개발용지 면적은 사업완료구역 포함하여 산정
- ※ 공공공지 : 공공임대산업시설로 활용 후 필요시 유연한 용도 전환
- ※ 도로면적 : 청계천로, 을지로, 마른내로 포함

② 인구·주택수용계획

- 기정 9,900명, 4,950세대 → 변경 19,117명, 11,550세대
- ※ 목표인구 기준 : 완료구역 제외
- ※ 상기 인구 및 주택계획은 추후 구역별 건축계획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③ 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 : 생략(재공람도서와 같음)

④ 공원·녹지 조성 및 환경보전계획

- 공원계획
 - 소공원 1개소 유지 및 1개소 변경, 1개소 폐지
 - ▶ 6-3-4구역 내 소공원 1개소 유지, 3구역 공원 세분 변경(소공원→문화공원), 5구역 내 1개소 폐지
 - 문화공원 1개소 유지 및 1개소 변경, 6개소 신설
 - ▶ 시민에게 공연장, 문화시설 등 다양한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문화공원 결정(삼풍상가, PJ호텔)
 - ▶ 북악~종묘~남산을 잇는 남북녹지축 실현의 일환으로 기존의 세운광장(문화공원) 유지 및 상가 이전
- 부지 확보 방안에 따른 공원 4개소 신설(장기적으로 상가군 단계별 공원화 완료 목표)

구 분	기 정		변 경	
	개 소	면 적 (㎡)	개 소	면 적 (㎡)
합 계	4	10,112.9	9	32,248.4
소공원	3	6,364.6	1	1,316.4
문화공원	1	3,748.3	8	30,932.0

● 녹지계획

- 경관녹지 3개소 유지 : 조성 완료(6-3-4) 및 기추진 중인 구역(4구역) 내 경관녹지 유지
- 경관녹지 2개소 폐지 : 세운상가변 보행녹도 형태의 녹지 계획하였으나, 개방형녹지 대체에 따른 폐지

구분	기 정		변 경	
	개 소	면 적 (㎡)	개 소	면 적(㎡)
경관녹지	5	3,773.0	3	2,498.5

● 공공공지

- 2개소 유지, 1개소 신설 : 덕수중 후문 통학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공지 신설(6-3-6)

구분	기 정		변 경	
	개 소	면 적 (㎡)	개 소	면 적(㎡)
공공공지	2	1,168.3	3	1,328.4

⑤ 교통계획 : 생략(재공람도서와 같음)

⑥ 경관계획 : 생략(재공람도서와 같음)

⑦ 광고물관리계획, 폐기물처리에 관한 계획 등 기타계획 : 생략(재공람도서와 같음)

⑧ 기타계획 : 생략(재공람도서와 같음)

⑨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 촉진구역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사업의 종류	비 고
기정	계			318,030.5	-	171개 구역
변경	계			81,030.5	-	8개 구역 (147개 구역 해제)
기정	2구역	2-1~35구역	종로구 장사동 67번지 일대	38,962.6	도시환경정비사업	35개 구역
변경	2구역	-	-	-	-	(35개 구역 해제)
기정	3구역	3-1~10구역	중구 입정동 97-4번지 일대	41,326.0	도시환경정비사업	10개 구역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m ²)	사업의 종류	비 고
변경	3구역	3-2·3,3-6,3-7,3-8·9·10구역	중구 입정동 97-4번지 일대	29,609.1	재개발사업	4개 구역
기정	4구역		종로구 예지동 85번지 일대	32,223.7	도시환경정비사업	1개 구역
변경	4구역		종로구 예지동 85번지 일대	32,223.7	재개발사업	1개 구역
기정	5구역	5-1~11구역	중구 산림동 82-5번지 일대	38,628.5	도시환경정비사업	11개 구역
변경	5구역	5-1·3구역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대	7,672.4	재개발사업	1개 구역 (9개 구역 해제)
기정	6-1 구역	6-1-1~32구역	중구 초동 17-1 일대	44,390.2	도시환경정비사업	32개 구역
변경	6-1 구역	-	-	-	-	(32개 구역 해제)
기정	6-2 구역	6-2-1~50구역	중구 충무로4가 12-1번지 일대	63,197.6	도시환경정비사업	50개 구역
변경	6-2 구역	-	-	-	-	(47개 구역 해제)
기정	6-3 구역	6-3-1~9구역	중구 인현동2가 125-19번지 일대	29,301.6	도시환경정비사업	9개 구역
변경	6-3 구역	6-3-3구역	중구 을지로4가 310-2번지 일대	5,801.1	재개발사업	1개 구역 (5개 구역 해제)
기정	6-4 구역	6-4-1~23구역	중구 예관동 126번지 일대	30,459.7	도시환경정비사업	23개 구역
변경	6-4 구역	6-4-22·23구역	중구 예관동 122-3번지 일대	5,724.2	재개발사업	1개 구역 (19개 구역 해제)

⑩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건폐율 및 높이 등에 관한 건축계획

구분	구역명		용적률(%)			건폐율(%)	높이(m)		비 고
			기준	허용	상한		기준	최고	
기정	세운2-1~8, 25,28,29,32, 33,35구역	간선부	700 이하	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완화 적용	60이하 (5층이하 저층부 80이하)	60	70이하	소규모 구역	
		이면부				40	50이하		
	세운3-1,4,5	간선부	800 이하			80	90이하	중규모 구역	
	세운3-2·3구역		1,000 이하	기반시설제공, 공개공지 초과제공에 따른 완화 적용	50이하	90	개방형녹지, 공개공지 초과 제공, 도심거점특별 육성지구, 공익시설 충고 확보에 따른 완화 적용	통합 구역	
	세운3-6,7구역	이면부	800 이하	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완화 적용	60이하 (5층이하 저층부 80 이하)	60	70이하	중규모 구역	
	세운3-8·9·10구역		1,000 이하	기반시설제공, 공개공지 초과제공에 따른 완화 적용	50이하	90	개방형녹지, 공개공지 초과 제공, 도심거점특별 육성지구, 공익시설 충고 확보에 따른 완화 적용	통합 구역	
	세운4구역		700 이하			-	70이하	통합 구역	
	세운5-2,4~6 9~11구역	간선부	800 이하	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완화 적용	60이하 (5층이하 저층부 80이하)	80	90이하	중규모 구역	
	세운5-7,8, 구역	이면부				60	70이하		
	세운5-1·3구역		1,000 이하	기반시설제공,공개공지 초과제공에 따른 완화	50이하	90	개방형녹지, 공개공지 초과 제공 완화	통합 구역	
	세운6-1-1~4, 7~9,11,21,24, 29,32구역	간선부	700 이하	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완화 적용	60이하 (5층이하 저층부 80이하)	60	70이하	소규모 구역	
		이면부				40	50이하		
	세운6-2-1~5, 7~9,35,36,41, 47,48,50구역	간선부	700 이하			60	70이하	소규모 구역	
	세운6-2구역내 간선부 외 구역	이면부				40	50이하		
	세운6-3-1,2,4 구역	간선부	800 이하			80	90이하	중규모 구역	

구분	구역명		용적률(%)			건폐율(%)	높이(m)		비 고
			기준	허용	상한		기준	최고	
	세운6-3-3구역			1,000 이하	기본시설제공, 공개공지 초과제공에 따른 완화 적용	50이하	90	개방형녹지, 공개공지 초과 제공, 도심거점특별 육성지구, 공익시설 층고 확보에 따른 완화 적용	통합 구역
	세운6-3-5-9 구역	간선부		700 이하	기본시설 제공에 따른 완화 적용	60이하 (5층이하 저층부 80이하)	40	50이하	소규모 구역
	세운6-4-1,4,5, 18구역	간선부		700 이하			60	70이하	
	세운6-4구역내 간선부 외 구역	이면부		700 이하			40	50이하	
	세운 6-4-22·23구역			800 이하	기본시설제공, 공개공지 초과제공에 따른 완화적용	50이하	90	개방형녹지, 공개공지 초과제공에 따른 완화적용	통합 구역

구분	구역명	용적률			건폐율	높이		비고
		기준	허용	상한		기준	최고	
변경	세운 3-2·3구역	600% 이하	1,000% 이하	기반시설제공, 공개공지 초과제공에 따른 완화 적용	50%이하	90m	개방형녹지, 공개공지 초과 제공, 도심거점특별 육성지구, 공익시설 충고 확보에 따른 완화 적용	통합 구역
	세운 3-6구역	600% 이하	800% 이하	기반시설 제공완화	60%이하 (저층부 80% 이하)	60m	70m이하	중규모 구역
	세운 3-7구역	600% 이하	800% 이하	기반시설 제공완화	60%이하 (저층부 80% 이하)	60m	70m이하	중규모 구역
	세운 3-8·9·10 구역	600% 이하	1,000% 이하	기반시설제공, 공개공지 초과제공에 따른 완화 적용	50%이하	90m	개방형녹지, 공개공지 초과 제공, 도심거점특별 육성지구, 공익시설 충고 확보에 따른 완화 적용	통합 구역
	세운4구역	600% 이하	700% 이하	기반시설 제공완화	60% 이하 (저층부 80% 이하)	-	70m이하 (문화재 심의 높이기준 적용)	통합 구역
	세운 5-1·3 구역	600% 이하	1,000% 이하	기반시설제공,공개 공지 초과제공에 따른 완화	50% 이하	90m	개방형녹지, 공개공지 초과 제공 완화	통합 구역
	세운 6-3-3구역	600% 이하	1,000% 이하	기반시설제공, 공개공지 초과제공에 따른 완화 적용	50% 이하	90m	개방형녹지, 공개공지 초과 제공, 도심거점특별 육성지구, 공익시설 충고 확보에 따른 완화 적용	-
	세운 6-4-22·23 구역	600% 이하	800% 이하	기반시설제공,공개 공지 초과제공에 따른 완화	50%이하	90m	개방형녹지, 공개공지 초과 제공 완화	통합 구역
	존치정비구역	600% 이하	800% 이하 (중심상업 지역 상향시 1,000% 이하)	기반시설 제공· 공개공지 초과조성 완화	50%이하 (심의 통해 제한적으로 완화 가능)	90m	개방형녹지, 공개공지 초과 제공, 도심거점특별 육성지구, 공익시설 충고 확보에 따른 완화 적용	통합 구역 ※공원 용지 제외

- ⑪ 기반시설 비용분담계획 : 생략(재공람도서와 같음)
- ⑫ 임대주택 건설 등 재정비촉진지구에 거주하는 세입자의 주거대책 : 생략(재공람도서와 같음)
- ⑬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 생략(재공람도서와 같음)
- ⑭ 촉진구역별 사업계획 : 생략(재공람도서와 같음)
- ⑮ 존치지역의 지정 및 관리계획
 - ㉠ 존치정비구역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1구역	1-1	종로구 장사동 116-4	-	증) 5,801.2	5,801.2	
	1-2	중구 산림동 207-1	-	증) 3,452.7	3,452.7	
	1-3	중구 산림동 207-2	-	증) 6,139.6	6,139.6	
	1-4	중구 인현동1가 310-68 일대	-	증) 5,662.5	5,662.5	
	1-5	중구 인현동1가 2-35	-	증) 5,759.9	5,759.9	
	1-6	중구 충무로4가 120-3	-	증) 13,752.8	13,752.8	
2구역		종로구 장사동 67일대	-	증) 38,892.2	38,892.2	
5구역	5-4	중구 주교동 123-1 일대	-	증) 15,807.2	15,807.2	
	5-5	중구 을지로4가 61 일대	-	증) 13,684.2	13,684.2	
6-1구역	6-1-1	중구 을지로3가 291-45 일대	-	증) 5,139.5	5,139.5	
	6-1-2	중구 을지로3가 272-4 일대	-	증) 9,208.1	9,208.1	
	6-1-3	중구 인현동1가 31 일대	-	증) 9,263.7	9,263.7	
	6-1-4	중구 초동 18-5 일대	-	증) 4,502.7	4,502.7	
	6-1-5	중구 인현동1가 101-3 일대	-	증) 18,592.8	18,592.8	
6-2구역	6-2-1	중구 인현동1가 111-6 일대	-	증) 6,271.7	6,271.7	
	6-2-2	중구 인현동2가 190-1 일대	-	증) 24,319.9	24,319.9	
	6-2-3	중구 충무로3가 33-1 일대	-	증) 2,939.8	2,939.8	
	6-2-4	중구 필동1가 51-5 일대	-	증) 14,828.7	14,828.7	
	6-2-5	중구 충무로4가 125-3 일대	-	증) 11,388.9	11,388.9	
6-3구역	6-3-5	중구 예관동 17-3 일대	-	증) 984.5	984.5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6-3-6	중구 예관동 43-1 일대	-	증) 1,308.7	1,308.7	
6-4구역	6-4-1	중구 인현동2가 181-22 일대	-	증) 23,598.3	23,598.3	
	6-4-2	중구 충무로4가 48-1 일대	-	증) 2,795.8	2,795.8	

- 이하여백 -

㉔ 존치관리구역 지정

■ 기정

- 기준1) 사업의 필요성이 적고, 사업에 지장이 없는 지역(하천, 도로, 공공청사, 학교 등 공공시설)
- 기준2) 세운녹지축 조성계획 변경 및 건축물이 양호하고, 역사적 가치가 있어 지속적인 활용이 가능한 건축물
- 기준3) 건립연한이 짧고, 건립용도가 주변지역 용도와 상이하어 정비 한계로 존치가 필요한 건축물

구분	제원	존치기준	존치지역 세분	관리 및 정비계획
세운상가군	- 위치 : 종로구 장사동, 중구 산림동, 을지로4가, 인현동1,2가, 충무로4가동 일원 - 면적 : 15,771.0㎡ - 존치대상 : 세운가동상가, 청계상가, 대림상가, 삼풍상가, PJ호텔, 신성상가, 진양상가	기준2	존치관리구역	공공의 지원 및 민간의 자발적 리모델링을 통한 입체적 복합문화산업공간으로 재생 추진
중앙대교 플라자	- 위치 : 중구 을지로3가 259-1외 4필지 - 면적 : 1,060.6㎡ - 건립연도 : 1995년 - 용도 : 판매, 영업, 오피스텔	기준3	존치관리구역	건립연한이 18년에 불과하고 판매, 영업, 오피스텔 기능 활성화로 주변구역과 정비 불필요
명보아트홀	- 위치 : 중구 초동 18-5번지 외 3필지 - 면적 : 1,256.5㎡ - 건립연도 : 1994년 - 용도 : 문화및집회시설	기준3	존치관리구역	문화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 주변구역과 정비 불필요
매일경제신문사	- 위치 : 중구 필동1가 51-9번지 외 2필지 - 면적 : 1,778.4㎡ - 건립연도 : 1995년 - 용도 : 매일경제신문사	기준3	존치관리구역	언론사 사옥으로 주변 구역과 정비 불필요
덕수중학교	- 위치 : 중구 인현동2가 3번지 일원 - 면적 : 13,055.1㎡	기준1	존치관리구역	초등학교 복합계획 폐지로 존치(구역경계 일부 조정)
중구청	- 위치 : 중구 예관동 83-10외 99필지 - 면적 : 7,600.0㎡	기준1	존치관리구역	중구청은 서울메이커스 사업 추진을 고려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구분	제원	존치기준	존치지역 세분	관리 및 정비계획
27-1구역 (국도호텔)	- 위치 : 중구 을지로4가 310번지 일원 - 면적 : 1,800.0㎡	기준3	존치관리구역	정비사업이 완료된 건축물로 존치
32구역 (남산센트럴 자이)	- 위치 : 중구 총무로 4가 79번지 일원 - 면적 : 5,216.5㎡	기준3	존치관리구역	정비사업이 완료된 건축물로 존치
청계천로, 을지로, 청계천	- 청계천로(청계천포함), 을지로, 마른내길	기준1	존치관리구역	기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로 존치

■ 변경

- 기준1) 공공청사, 학교 등 기존 기반시설
- 기준2) 비교적 최근에 준공되어 존치가 필요한 건축물
 - ※ 통합개발 및 주민의사 등을 고려하여 정비사업이 필요한 경우 존치관리구역에서 제외 가능
- 기준3) 지구지정 이전에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승인되어, 공사중이거나 완료된 지역

구분	제원	존치기준	존치지역 세분	비고
덕수중학교	- 위치 : 중구 인현동2가 3번지 일원 - 면적 : 13,055.1㎡	기준1	존치관리구역	도시계획시설
중구청	- 위치 : 중구 예관동 83-10외 99필지 - 면적 : 7,600.0㎡			중구청은 복합청사개발 추진을 고려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6-3-1·2구역 (을지트윈타워)	- 위치 : 중구 을지로4가 323번지 일원 - 면적 : 9,933.6㎡ - 건립연도 : 2019년	기준2	존치관리구역	정비사업 완료
6-2-8구역 (남산센트럴뷰 스위트)	- 위치 : 중구 인현동1가 158번지 일원 - 면적 : 1,308.4㎡ - 건립연도 : 2020년			
6-2-24구역 (더솔라고세운)	- 위치 : 중구 총무로4가 12-1번지 일원 - 면적 : 3,599.8㎡ - 건립연도 : 2023년			
6-4-21구역 (총무로 하늘N)	- 위치 : 중구 총무로4가 334번지 일원 - 면적 : 1,383.9㎡ - 건립연도 : 2021년			

구 분	제 원	존치기준	존치지역 세분	비고
3-1구역 (힐스테이트 세운 센트럴 1단지)	- 위치 : 중구 입정동 277번지 일원 - 면적 : 4,729.7㎡ - 건립연도 : 2023년			
3-4·5구역 (힐스테이트 세운 센트럴 2단지)	- 위치 : 중구 입정동 280번지 일원 - 면적 : 6,987.2㎡ - 건립연도 : 2023년			
6-3-4구역 (세운푸르지오 해리티지)	- 위치 : 6,500.0㎡ - 면적 : 중구 인현동2가 240번지 일원 - 건립연도 : 2023년			
5-2구역 (상생지식산업센터)	- 위치 : 1,449.0㎡ - 면적 : 중구 산림동 82-3 일원 - 건립연도 : 2023년			
27-1구역 (국도호텔)	- 위치 : 중구 을지로4가 310번지 일원 - 면적 : 1,615.2㎡ - 건립연도 : 2007년	기준3	존치관리구역	지구지정 이전에 정비사업으로 인해 공사 중이었던 구역
32구역 (남산센트럴자이)	- 위치 : 중구 충무로 4가 79번지 일원 - 면적 : 5,216.5㎡ - 건립연도 : 2009년			

㊤ 존치지역 관리계획 (신설)

구 분	내 용
존치정비구역 (세운상가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운상가군은 공원과 추진 정책에 따라 단계별 공원화 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4년 도심재개발기본계획 및 1997년 2011 서울도시기본계획 등 북악산~종묘~남산~용산~한강으로 이어지는 광역녹지축 연결 필요성 대두되어옴. - 최근 2040서울도시기본계획과 녹지생태도심 재창조전략 등 상위 및 관련계획에서 남북녹지축 확보, 도심활성화,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전략적 도시개발 추진 중임. - 지속적으로 남북녹지축 조성계획이 논의된 지역으로 세운재정비촉진사업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사업, 통합재개발, 매입기부채납 등 다양한 방식의 촉진계획을 통해 실현시키도록 함. [건축제한] · 세운상가군 단계별 공원화 추진을 위해 다음 행위에 해당하는 건축 제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 「재난안전관리기본법」 및 「자연재해대책법」 등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근거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법 제8조 (행위 등의 제한)]

	② 제12조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된 날부터 해당 재정비촉진지구에서는 재정비촉진계획의 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할 수 없다. 다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존치관리구역 (원료구역)	· 원료구역은 기 결정된 촉진계획 등에 따라 관리

⑩ 지구단위계획(변경)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m ²)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3-1 (힐스테이트 세운센트럴 1단지)	중구 입정동 189-1번지 일대	-	증) 3,711.9	3,711.9	
기정	3-2-3	중구 입정동 175-1번지 일대	10,575.1	-	10,575.1	
신설	3-4-5 (힐스테이트 세운센트럴 2단지)	중구 산림동 275-3번지 일대	-	증) 5,452.2	5,452.2	
신설	3-6	중구 입정동 97-4번지 일대	-	증) 3,851.0	3,851.0	
신설	3-7	중구 산림동 275-3번지 일대	-	증) 2,723.1	2,723.1	
기정	3-8-9-10	중구 을지로3가 227번지 일대	12,496.9	-	12,496.9	
기정	5-1-3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대	7,672.4	-	7,672.4	
신설	5-2	중구 산림동 82-3번지 일대	-	증) 1,449.0	1,449.0	
신설	6-2-8 (남산센트럴뷰스위트)	중구 인현동1가 158번지 일대	-	증) 1,392.7	1,392.7	
신설	6-2-24 (더솔라고세운)	중구 총무로4가 12-1번지 일대	-	증) 2,866.4	2,866.4	
신설	6-3-1-2 (을지트윈타워)	중구 을지로4가 323번지 일대	-	증) 9,933.6	9,933.6	
기정	6-3-3	중구 을지로4가 310-2번지 일대	5,801.1	-	5,801.1	
신설	6-3-4 (세운푸르지오해리시티)	중구 인현동2가 240번지 일대	-	증) 3,377.2	3,377.2	
신설	6-4-21 (총무로하늘N)	중구 총무로4가 55번지 일대	-	증) 1,383.9	1,383.9	
기정	6-4-22-23	중구 을지로4가 108-21번지 일대	5,724.2	-	5,724.2	
신설	중구청부지 (특별계획구역)	중구 예관동 120-1번지 일대	-	증) 7,600.0	7,600.0	

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 용도지역·지구 결정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 ㉡ 용도지역
-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439,356.4	-	439,356.4	100.0	
중심상업지역	29,629.8	-	29,629.8	6.7	
일반상업지역	409,726.6	-	409,726.6	93.3	

※ 을지로변 일대 등 용도지역 상향조건 충족시 중심상업지역 상향 가능

㉢ 용도지구

- ㉠ 방화지구
- 방화지구 결정조서

구분	지구명	위 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방화지구	서대문~종로~동대문간	65,977 (4,373.2)	건교부고시 727호(63.12.13)	종로
기정	방화지구	세종로~청계천~동대문간	42,609 (9,185.7)	건교부고시 727호(63.12.13)	청계천
기정	방화지구	시청앞~을지로6가간	41,400 (9,241.4)	건교부고시 727호(63.12.13)	을지로지구
기정	방화지구	서울역앞~광희동간	55,464 (5,209.8)	건교부고시 727호(63.12.13)	퇴계로
기정	방화지구	퇴계로가~돈화문간	36,944 (10,912.1)	건교부고시 727호(63.12.13)	돈화문로
기정	방화지구	퇴계로가~원남동로터리간	27,345 (7,890.5)	건교부고시 727호(63.12.13)	창경궁로

㉡ 개발진흥지구

- 개발진흥지구 결정조서

구분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종로 귀금속 특정개발진흥지구	특정 개발진흥지구	종로구 묘동 53번지 일대	57,600 (90,400)	서울시고시 제2010-21호 (10.1.28)	권장업종 (별도기재)
기정	중구 인쇄 특정개발진흥지구	특정 개발진흥지구	중구 충무로 3·4·5가, 인현동 1·2가, 을지로 3·4가 및 오장동 일대	303,240.59 (238,000)	서울시고시 제2017-245호 (17.7.13)	

※()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 면적임

■ 개발진흥지구 권장업종

지구명	권장업종
종로 귀금속 특정개발진흥지구	주업종 : 귀금속 및 관련제품 제조산업
	보조업종 : 귀금속 및 관련제품 판매·수리·도금업
중구 인쇄 특정개발진흥지구	주업종 : 인쇄 및 인쇄관련 산업, 디자인업
	보조업종 : 서적출판업, 신문·잡지 및 정기간행물 출판업, 광고대행업, 기타광고업, 종이·인쇄물 등

㉔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 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관련)

㉑ 교통시설

㉑ a 도로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광로	3	7	40~47 (3.5 ~6.5m)	주간선 도로	4,000 (432)	서대문광장 (종로3가 45-4)	동대문광장 (종로4가 50-10)	일반도로	-	총독부고시 722호 (36.12.26)	4구역변 3.5m 완화차로 및 공원 중복결정
기정	대로	2	3	30~33	주간선도 로	1,800 (464)	시청앞 광장	을지로6가	일반도로	-	총독부고시 722호 (36.12.26)	을지로 대림상가~삼풍상가 (을지로상부) 보행데크 보행자전용도로 결정 (폭6.0m~10.6m)
기정	대로	3	2	25	주간선도 로	1,600 (-)	연남동광장	충무로5가	일반도로	-	건설부고시 177호 (62.12.8)	-
변경	대로	3	2	25~28	주간선도 로	1,600 (200)	연남동광장	충무로5가	일반도로	-	건설부고시 177호 (62.12.8)	5구역변 3m 도로확폭
기정	중로	1	1	22~25 (-)	집산 도로	1,870 (-)	와룡동 5-14	필등1가 40	일반도로	-	서울시공고 제2001-646호 (2001.8.6)	-
변경	중로	1	1	22~25 (3m)	집산 도로	1,870 (982)	와룡동 5-14	필등1가 40	일반도로	-	서울시공고 제2001-646호 (2001.8.6)	2, 6-1, 6-2구역변 3m 도로확폭
기정	중로	1	29	20	집산 도로	1,450 (459)	저등1가	광희동 광장	일반도로	-	총독부고시 722호 (36.12.26)	마른내길 호텔PJ~신성상가 (마른내길상부) 보행데크 보행자전용도로 결정 (폭3.5m~44.2m)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2	126	4~23	집산 도로	850	종로3가 45-4	충무로4가 125	일반도로	-	서울시고시 제2014-119호 (14.03.27)	삼풍상가-진양상가 서측3층 보행데크 보행자전용도로 결정 (폭3.0m~15.0m)
변경	중로	2	126	15	집산 도로	345	종로3가 45-4	충무로4가 4-17	일반도로	-	서울시고시 제2014-119호 (14.03.27)	세운상가-대림상가 서측3층 보행데크 보행자전용도로 결정 (폭15.0m)
신설	중로	2	G	15	집산 도로	268	인현동2가 192-53	충무로4가 305-11	일반도로	-	서울시고시 제2014-119호 (14.03.27)	인현상가-진양상가 서측3층 보행데크 보행자전용도로 결정 (폭15.0m)
기정	중로	2	127	19	집산 도로	780	종로3가 32-8	충무로4가 116-2	일반도로	-	서울시고시 제2014-119호 (14.03.27)	삼풍상가-진양상가 동측 3층 보행데크 보행자전용도로 결정 (폭4.0m~15.0m)
변경	중로	2	127	19	집산 도로	346	종로3가 32-8	을지로4가 4-23	일반도로	-	서울시고시 제2014-119호 (14.03.27)	세운가동-대림상가 동측 3층 보행데크 보행자전용도로 결정 (폭15.0m)
신설	중로	2	H	15	집산 도로	250	인현동2가 192-30	충무로4가 120-26	일반도로	-	서울시고시 제2014-119호 (14.03.27)	인현상가-진양상가 동측 3층 보행데크 보행자전용도로 결정 (폭15.0m)
기정	중로	3	1	12~16.5	집산 도로	5,390 (471)	세종로 광장	고산자로	일반도로	-	서울시고시 제2003-130호 (03.05.26)	청계천변 도로 세운상가-대림상가3층 보행자전용도로 결정(폭15m)
기정	중로	3	1	12	국지 도로	187	을지로3가 164-4	입정동 139-4	일반도로	-	서울시고시 제2014-119호 (14.03.27)	3구역
기정	중로	3	2	12	국지 도로	197	을지로4가 30-2	주교동 145-6	일반도로	-	서울시고시 제2014-119호 (14.03.27)	5구역
변경	중로	3	2	12	국지 도로	192	을지로4가 30-2	주교동 145-6	일반도로	-	서울시고시 제2014-119호 (14.03.27)	5구역 (도로선형 및 연장 조정)
기정	중로	3	3	12	국지 도로	244	인현동2가 134-3	을지로4가 267-1	일반도로	-	서울시고시 제2014-119호 (14.03.27)	보행자전용도로 중복결정(A=55㎡)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변경	종로	3	3	12	국지 도로	244	인현동2가 134-3	을지로4가 267-1	일반도로	-	서울시고시 제2014-119호 (14.03.27)	6-3구역
기정	소로	1	1	10	국지 도로	150	충무로4가 66-3	충무로4가 38	일반도로	-	서울시고시 234호 (84.4.27)	6-4구역
기정	소로	1	2	12	국지 도로	116	산림동 250-1	입정동 122-2	일반도로	-	서울시고시 제2014-119호 (14.03.27)	3구역
폐지	소로	1	4	10	국지 도로	116	주교동 170-1	산림동 83-0	일반도로	-	서울시고시 제2014-119호 (14.03.27)	5구역
폐지	소로	1	5	10	국지 도로	132	주교동 184-2	산림동 52-2	일반도로	-	서울시고시 제2014-119호 (14.03.27)	5구역
기정	소로	1	6	10.5	집산 도로	56	종로	배오개길	일반도로	-	서울시고시 제2016-103호 (16.04.07)	4구역
신설	소로	1	A	10	국지 도로	168	장사동 182-2	종로3가 171	일반도로	-	-	2구역
신설	소로	1	B	10	국지 도로	113	산림동 12	산림동 56-8	일반도로	-	-	5구역
신설	소로	1	C	4-8	국지 도로	186	종로3가 45-4	충무로4가 125	일반도로	-	-	3구역
신설	소로	1	D	10	국지 도로	222	인현동2가 110-5	을지로4가 311-8	일반도로	-	-	6-1구역
기정	소로	1	E	10	국지 도로	54	충무로4가 86-3	충무로4가 47-3	일반도로	-	서울시고시 제2014-119호 (14.03.27)	6-4구역
신설	소로	1	F	10	국지 도로	270	충무로4가 125-3	인현동2가 135-55	일반도로	-	-	6-2구역
기정	소로	2	1	8	국지 도로	221	장사동 182-3	장사동 233-11	일반도로	-	서울시고시 제2014-119호 (14.03.27)	2구역
변경	종로	3	A	12	국지 도로	221	장사동 130-1	장사동 18-2	일반도로	-	서울시고시 제2014-119호	선형 정형화 및 도로 확폭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14.03.27)	
기정	소로	2	2	8	국지 도로	208	인현동1가 99-1	을지로3가 282-9	일반도로	-	서울시고시 제2014-119호 (14.03.27)	6-1구역
변경	중로	3	B	12	국지 도로	208	인현동1가 101-1	을지로3가 281-1	일반도로	-	서울시고시 제2014-119호 (14.03.27)	선형 정형화 및 도로 확폭
폐지	소로	2	3	8	국지 도로	230	인현동1가 94-3	을지로4가 314-6	일반도로	-	서울시고시 제2014-119호 (14.03.27)	6-1구역
폐지	소로	2	4	8	국지 도로	34	인현동2가198- 2	인현동2가 99-16	일반도로	-	서울시고시 제2014-119호 (14.03.27)	6-2구역
폐지	소로	2	5	8	국지 도로	65	인현동1가 136	초동 39-8	일반도로	-	서울시고시 제2014-119호 (14.03.27)	6-2구역
기정	소로	2	6	8	국지 도로	187	총무로3가 34-8	인현동1가 110-1	일반도로	-	서울시고시 제2014-119호 (14.03.27)	6-2구역
변경	소로	3	28	4	국지 도로	36	인현동1가 110-10	인현동1가 110-10	일반도로	-	서울시고시 제2014-119호 (14.03.27)	6-2구역
기정	소로	2	7	8	국지 도로	217	총무로4가 125-44	총무로3가 34-3	일반도로	-	서울시고시 제2014-119호 (14.03.27)	6-2구역
변경	중로	3	C	12	국지 도로	208	총무로4가 127-7	총무로3가 34-3	일반도로	-	서울시고시 제2014-119호 (14.03.27)	선형 정형화 및 도로 확폭
폐지	소로	2	8	8	국지 도로	140	필동2가 5-3	총무로4가 5-11	일반도로	-	서울시고시 제2014-119호 (14.03.27)	6-2구역
폐지	소로	2	9	8	국지 도로	115	필동2가 13-20	총무로4가 125-44	일반도로	-	서울시고시 제2014-119호 (14.03.27)	6-2구역
폐지	소로	2	10	8	국지 도로	70	총무로4가 125-54	총무로4가 129-1	일반도로	-	서울시고시 제2014-119호 (14.03.27)	6-2구역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2	11	8	국지 도로	119	예관동 1-17	을지로4가 293-1	일반도로	-	서울시고시 제2014-119호 (14.03.27)	6-3구역
폐지	소로	2	12	8	국지 도로	117	인현동2가 181-47	인현동2가 154-1	일반도로	-	서울시고시 제2014-119호 (14.03.27)	6-4구역
폐지	소로	2	13	8	국지 도로	73	충무로4가 38	인현동2가 181-10	일반도로	-	서울시고시 제2014-119호 (14.03.27)	6-4구역
폐지	소로	3	1	4	국지 도로	219	장사동 106-2	장사동 1	일반도로	-	서울시고시 제2014-119호 (14.03.27)	2구역
폐지	소로	3	2	6	국지 도로	19	종로3가 162-1	종로3가 45-4	일반도로	-	서울시고시 제2014-119호 (14.03.27)	2구역
폐지	소로	3	3	6	국지 도로	78	장사동 41-2	장사동 26-2	일반도로	-	서울시고시 제2014-119호 (14.03.27)	2구역
폐지	소로	3	4	6	국지 도로	79	장사동 47-5	장사동 57-1	일반도로	-	서울시고시 제2014-119호 (14.03.27)	2구역
폐지	소로	3	5	6	국지 도로	86	장사동 74	장사동 83-2	일반도로	-	서울시고시 제2014-119호 (14.03.27)	2구역
폐지	소로	3	6	6	국지 도로	70	장사동 221-3	장사동 212-1	일반도로	-	서울시고시 제2014-119호 (14.03.27)	2구역
폐지	소로	3	7	6	국지 도로	55	장사동 204-1	장사동 193	일반도로	-	서울시고시 제2014-119호 (14.03.27)	2구역
폐지	소로	3	8	6	국지 도로	74	산림동 112-5	산림동 181-1	일반도로	-	서울시고시 제2014-119호 (14.03.27)	5구역
폐지	소로	3	9	6	국지 도로	67	을지로3가 291-18	을지로3가 291-43	일반도로	-	서울시고시 제2014-119호 (14.03.27)	6-1구역
폐지	소로	3	10	4	국지 도로	122	을지로3가 285-3	을지로3가 271-2	일반도로	-	서울시고시 제2014-119호 (14.03.27)	6-1구역
폐지	소로	3	11	6	국지 도로	92	인현동1가 55-3	초동 2-1	일반도로	-	서울시고시 제2014-119호 (14.03.27)	6-1구역
폐지	소로	3	12	6	국지 도로	65	인현동1가 5-15	인현동1가 31-2	일반도로	-	서울시고시 제2014-119호 (14.03.27)	6-1구역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폐지	소로	3	13	6	국지 도로	35	초동 2-22	초동 2-22	일반도로	-	서울시고시 제2014-119호 (14.03.27)	6-1구역
폐지	소로	3	14	6	국지 도로	73	인현동1가 58-20	초동 2-22	일반도로	-	서울시고시 제2014-119호 (14.03.27)	6-1구역
폐지	소로	3	15	4	국지 도로	61	인현동1가 59-20	인현동1가 99-1	일반도로	-	서울시고시 제2014-119호 (14.03.27)	6-1구역
폐지	소로	3	16	6	국지 도로	85	인현동1가 5-10	인현동2가 95-13	일반도로	-	서울시고시 제2014-119호 (14.03.27)	6-1구역
폐지	소로	3	17	6	국지 도로	77	인현동2가 99-28	인현동1가 70-1	일반도로	-	서울시고시 제2014-119호 (14.03.27)	6-1구역
기정	소로	3	18	8	국지 도로	211	충무로4가 11-2	인현동1가 114-1	일반도로	-	서울시고시 제2014-119호 (14.03.27)	6-2구역
변경	소로	3	18	3	국지 도로	55	충무로4가 149-41	충무로4가 149-41	일반도로	-	서울시고시 제2014-119호 (14.03.27)	6-2구역
폐지	소로	3	19	6	국지 도로	73	인현동2가 192-20	인현동2가 206	일반도로	-	서울시고시 제2014-119호 (14.03.27)	6-2구역
폐지	소로	3	20	6	국지 도로	88	인현동2가 182-11	인현동2가 225	일반도로	-	서울시고시 제2014-119호 (14.03.27)	6-2구역
기정	소로	3	21	6	국지 도로	73	충무로4가 14	인현동1가 132-7	일반도로	-	서울시고시 제2014-119호 (14.03.27)	6-2구역
변경	소로	3	21	3	국지 도로	58	충무로4가 14	인현동1가 132-10	일반도로	-	서울시고시 제2014-119호 (14.03.27)	6-2구역
폐지	소로	3	22	6	국지 도로	82	충무로4가 6-24	인현동2가 189-2	일반도로	-	서울시고시 제2014-119호 (14.03.27)	6-2구역
폐지	소로	3	23	6	국지 도로	40	필동2가 6-13	필동2가 6-13	일반도로	-	서울시고시 제2014-119호 (14.03.27)	6-2구역
기정	소로	3	24	6	국지	45	인현동2가 3	인현동2가	일반도로	-	서울시고시	6-3구역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도로		151-1				제2014-119호 (14.03.27)	
폐지	소로	3	25	6	국지 도로	85	인현동2가 168-1	인현동2가 136-2	일반도로	-	서울시고시 제2014-119호 (14.03.27)	6-4구역
폐지	소로	3	26	4	국지 도로	76	인현동2가 168-1	인현동2가 181-80	일반도로	-	서울시고시 제2014-119호 (14.03.27)	6-4구역
기정	소로	3	27	6	국지 도로	179	총무로4가 55	인현동2가 181-80	일반도로	-	서울시고시 제2014-119호 (14.03.27)	6-4구역
변경	소로	3	27	6	국지 도로	55	인현동4가 56-3	총무로4가 334-1	일반도로	-	서울시고시 제2014-119호 (14.03.27)	6-4구역 획지 전환에 따른 연장 변경
기정	소로	3	A	4	국지 도로	52	을지로4가 310-14	을지로4가 310-5	일반도로	-	서울시고시 제2023-540호 (23.12.07)	-

■ 도로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대로 3-2	대로 3-2	• 변경 : 구역 내 도로 확폭	• 5구역 내 도로 3m 확폭을 통한 보도 확보
중로 1-1	중로 1-1	• 변경 : 구역 내 도로 확폭	• 2구역, 6-1구역, 6-2구역 내 도로 3m 확폭을 통한 보도 확보
중로 2-126	중로 2-126	• 변경 - 연장 변경 850m → 345m - 폭원 변경 4~23m → 15m - 보행자전용도로 중복결정 구간 변경	• 공원 결정에 따른 도로 연장 축소 • 기존 확폭계획에서 존치계획 변경에 따른 폭원 변경 • 세운상가~대림상가 3층 보행데크 반영
-	중로 2-G	• 신설 - 신규 노선 부여 - 보행자전용도로 구간 축소	• 중로 2-126 도로 분절에 따라 신규 노선 부여 • 보행자전용도로(인현상가~진양상가)3층 보행데크 반영
중로 2-127	중로 2-127	• 변경 - 연장 변경 780m → 346m - 보행자전용도로 중복결정 구간 변경	• 공원 결정에 따른 도로 연장 축소 • 세운상가~대림상가 3층 보행데크 반영
-	중로 2-H	• 신설 - 신규 노선 부여 - 보행자전용도로 구간 축소	• 중로 2-127 도로 분절에 따라 신규 노선 부여 • 보행자전용도로(인현상가~진양상가)3층 보행데크 반영
중로 3-2	중로 3-2	• 변경 - 도로 선형 조정 - 연장 변경 : 197m → 192m	• 도로 선형 조정에 따른 도로 연장 축소
중로 3-3	중로 3-3	• 보행자전용도로 중복결정 폐지	• 인접구역의 연결통로계획 변경으로 보행자전용도로 폐지
소로 1-4	-	• 도로폐지	• 5구역 통합개발 유도를 위한 획지 전환에 따른 도로 폐지
소로 1-5	-	• 도로폐지	
-	소로 1-A	• 도로신설	• 세운지구 남북축 기존 교통망을 고려하여 2구역 동측 도로 신설
-	소로 1-B	• 도로신설	• 5구역 통합개발 유도를 위한 획지 분할에 따른 도로 신설
-	소로 1-C	• 도로신설	• 3구역 통합개발 유도를 위한 획지 분할에 따른 도로 신설
-	소로 1-D	• 도로신설	• 세운지구 남북축 기존 교통망을 고려하여 6-1구역 동측 신설
-	소로 1-F	• 도로신설	• 세운지구 남북축 기존 교통망을 고려하여 6-2구역 동측 신설
소로 2-1	중로 3-A	• 변경 : 폭원 변경 8m → 12m	• 2구역 내 통과도로의 도로 정형화 및 확폭
소로 2-2	중로 3-B	• 변경 : 폭원 변경 8m → 12m	• 6-1구역 내 통과교통을 위한 도로 확폭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 내 용	변 경 사 유
소로 2-3	-	• 도로폐지	• 6-1구역의 통합개발 유도를 위한 획지 전환에 따른 도로 폐지
소로 2-4	-	• 도로폐지	
소로 2-5	-	• 도로폐지	
소로 2-6	소로 3-28	• 변경 : 폭원 변경 8m → 4m 연장 변경 187m → 36m	• 6-2구역 내 일부 준치정비구역 전환에 따른 도로폭원 축소 및 연장 변경
소로 2-7	중로 3-C	• 변경 : 폭원 변경 8m → 12m 연장 변경 217m → 208m	• 6-2구역 내 통과도로의 도로 정형화 및 확폭
소로 2-8	-	• 도로폐지	• 6-2구역 통합개발 유도를 위한 획지 전환에 따른 도로 폐지
소로 2-9	-	• 도로폐지	
소로 2-10	-	• 도로폐지	
소로 2-12	-	• 도로폐지	• 6-4구역 통합개발 유도를 위한 획지 전환에 따른 도로 폐지
소로 2-13	-	• 도로폐지	
소로 3-1	-	• 도로폐지	• 2구역 통합개발 유도를 위한 획지 전환에 따른 도로 폐지
소로 3-2	-	• 도로폐지	
소로 3-3	-	• 도로폐지	
소로 3-4	-	• 도로폐지	
소로 3-5	-	• 도로폐지	
소로 3-6	-	• 도로폐지	
소로 3-7	-	• 도로폐지	• 6-1구역 통합개발 유도를 위한 획지 전환에 따른 도로 폐지
소로 3-9	-	• 도로폐지	
소로 3-10	-	• 도로폐지	
소로 3-11	-	• 도로폐지	
소로 3-12	-	• 도로폐지	
소로 3-13	-	• 도로폐지	
소로 3-14	-	• 도로폐지	
소로 3-15	-	• 도로폐지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 내 용	변 경 사 유
소로 3-16	-	• 도로폐지	
소로 3-17	-	• 도로폐지	
소로 3-18	-	• 도로폐지	
소로 3-19	-	• 도로폐지	
소로 3-20	-	• 도로폐지	
소로 3-21	소로 3-21	• 변경 : 폭원 변경 6m → 3m 연장 변경 73m → 58m	• 6-2구역 통합개발 유도를 위한 획지 전환에 따른 도로 폐지
소로 3-22	-	• 도로폐지	• 6-2구역 통합개발 유도를 위한 획지 전환에 따른 도로 폐지
소로 3-23	-	• 도로폐지	
소로 3-25	-	• 도로폐지	
소로 3-26	-	• 도로폐지	• 6-4구역 통합개발 유도를 위한 획지 전환에 따른 도로 폐지
소로 3-27	소로 3-27	• 변경 : 연장 변경 179m → 55m	• 6-4구역 통합개발 유도를 위한 획지 전환에 따른 도로 연장 조정

■ 보행자전용도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3	28	6	특수 도로	8	산림동 233-1	산림동 233-1	보행자 전용도로	-	서울시고시 제2022-479호 (22.12.8)	중로2-126 중복결정 및 입체적결정 (L=4m)
기정	소로	3	29	6	특수 도로	17	인현동2가 239-6	인현동2가 159-4	보행자 전용도로	-	서울시고시 제2022-479호 (22.12.8)	경관녹지(4) 중복결정(L=1) 중로3-3 중복결정 및 입체적결정 (L=4m)
폐지	소로	3	36	4.6	특수 도로	12	을지로4가 323-1	을지로4가 323-1	보행자 전용도로	-	서울시고시 제2017-394호 (17.11.9)	중로3-3 중복결정 (L=12m)
기정	소로	3	37	4.3~ 10.5	특수 도로	50	을지로4가 310-5	을지로4가 310-13	보행자 전용도로	-	서울시고시 제2018-372호 (18.11.22)	6-3-3구역 공공공지(2) 내 지하도로 (지하연결통로)
기정	소로	3	38	2.5~5.5	특수 도로	47	인현동2가 239-6	인현동2가 239-6	보행자 전용도로	-	서울시고시 제2018-372호 (18.11.22)	6-3-1,2구역 경관녹지(4) 내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3	-	3~15	특수 도로	-	삼풍상가	진양상가	보행자 전용도로	-	서울시고시 제2018-177호 (18.6.7.)	삼풍상가~진양상가 서측 3층보행데크
변경	소로	3	B	3~15	특수 도로	880	세운상가	진양상가	보행자 전용도로	-	서울시고시 제2018-177호 (18.6.7.)	세운상가~진양상가 서측 3층보행데크
기정	소로	3	-	3~15	특수 도로	-	삼풍상가	진양상가	보행자 전용도로	-	서울시고시 제2018-177호 (18.6.7.)	삼풍상가~진양상가 동측 3층보행데크
변경	소로	3	C	3~15	특수 도로	880	세운상가	진양상가	보행자 전용도로	-	서울시고시 제2018-177호 (18.6.7.)	세운상가~진양상가 동측 3층보행데크

* 보행자전용도로의 길이, 폭, 높이, 면적은 구역 값으로 향후 측량 등으로 인해 변경될 수 있음.

■ 보행자전용도로(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 3-36	-	• 보행자전용도로 폐지	• 인접 구역의 연결통로계획 변경으로 보행자전용도로 불필요에 따른 폐지
소로 3-	소로 3-B	• 상가군 서측 보행자 전용도로 구간 변경 : 삼풍상가~진양상가 → 세운상가~진양상가	• 세운상가~대림상가 3층 보행데크 반영
소로 3-	소로 3-C	• 상가군 동측 보행자 전용도로 구간 변경 : 삼풍상가~진양상가 → 세운상가~진양상가	• 세운상가~대림상가 3층 보행데크 반영

■ 도로 입체적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구분	기정	변경	변경 후	최초결정일	비고	
폐지	-	보행자 전용도로 (연결통로)	을지로4가 310-2일대	면적(㎡)	162.99	감)	162.99	-	서울시고시 제2017-394호 (17.11.9)	6-3-1, 2구역 세운데크
				길이(m)	33.90	감)	33.90	-		
				폭(m)	3.00~6.15	감)	3.00~6.15	-		
				높이(m)	25.50~38.35	감)	25.50~38.35	-		
세부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체적 결정범위 • 삼풍상가 데크(계획) 연결통로 및 엘리베이터, 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상부(1F) A=110.61㎡ / H = 25.50 ~ 30.40m - 지상부(2F) A= 45.97㎡ / H=30.40 ~ 33.55m - 지상부(3F) A=6.41㎡ / H=33.55 ~ 38.35m 					
기정	-	소로 3-28	산림동 233-1	길이(m)	4	-	4	서울시고시 제2022-479호 (22.12.8)		
				폭(m)	6	-	6			
				높이 (m)	도시계획시설	지상5~10	-			지상5~10
					비도시계획시설	지상5미만 ~지상10초과	-			지상5미만 ~지상10초과
기정	-	소로 3-29	인현동2가	길이(m)	4	-	4	서울시고시 제2022-479호 (22.12.8)		
				폭(m)	6	-	6			
				높이 (m)	도시계획시설	지상4~9	-			지상4~9
					비도시계획시설	지상4미만 ~지상9초과	-			지상4미만 ~지상9초과

※ 산림동 233-1 소로 3-28은 지상 5m(평균해수면 기준 28.4m) ~ 지상 10m(평균해수면 기준 33.4m)를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며, 높이는 추후 측량성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인현동2가 159-4 평균해수면 기준 29.5m 기준 지상 4m(평균해수면 기준 33.5m) ~ 지상 9m(평균해수면 기준 38.5m)를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며, 평균해수면 높이는 추후 측량성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도로의 공간적 범위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구분	기정	변경	변경 후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2-126	집산도로	종로3가 32-3일대 (세운상가 서측)	면적(㎡)	5,193.4	-	5,193.4	건설부고시 제151호 (91.3.25)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97호	
				길이(m)	295.1	-	295.1		
				폭(m)	12.9 ~ 14.5	-	12.9 ~ 14.5		
				높이(m)	23.0 ~ 31.5	-	23.0 ~ 31.5		
기정	2-127	집산도로	을지로4가 250 일대 (세운상가 동측)	면적	5,257.3	-	5,257.3	건설부고시 제232호 (77.12.1)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97호	
				길이(m)	296.5	-	296.5		
				폭(m)	12.9 ~ 14.5	-	12.9 ~ 14.5		
				높이(m)	22.7 ~ 31.5	-	22.7 ~ 31.5		
세부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간적 범위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로 2-3, 종로 1-29, 1-126, 1-127 상부 - 세운상가군 상부데크 메이커스 큐브 설치 								

■ 지하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구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대로	3	-	4~22 (4~17)	특수 도로	2,780 (464)	시청역 (을지로 3가역)	동대문역사 문화공원역 (을지로4가역)	지하공공 보도시설	-	83.9.16	시청광장~을지로 지하상가 (을지스타몰 3구역)
변경	대로	3	A	4~26 (4~26)	특수 도로	2,780 (464)	시청역 (을지로 3가역)	동대문역사 문화공원역 (을지로4가역)	지하공공 보도시설	-	83.9.16	시청광장~을지로 지하상가 (을지스타몰 3구역) 대로2-3 중복결정 (A=8,034.3㎡) 종로3-1 중복결정 (A=83.7㎡) 입체적 결정(A=286.6㎡)

※ ()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 해당사항임

※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건설교통부령 제474호, '05.10.7.) 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시설설치 완료일을 최초결정일로 봄

■ 지하도로 입체적 결정(변경) 조서

구분	시설명	구분	기정	변경	변경후	비고
신설	대로 3-A	면적(㎡)	-	증) 286.6	286.6	평균 해수면 기준
		길이(m)	-	증) 44.1	44.1	
		폭(m)	-	증) 14.4	14.4	
		높이(m)	-	증) 11.7~28.8	11.7~28.8	
세부 사항	기정		변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을지3가 1번 출입구 입체적 결정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상부: A=70.3㎡, H=24.1m~28.8m - 지하부: A=218.1㎡, H=13.3m~24.1m • 을지3가 2번 출입구, 엘리베이터 입체적 결정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상부: A=49.0㎡, H=24.1m~28.8m - 지하부: A=49.0㎡, H=11.7m~24.1m 			

■ 지하도로 입체적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대로 3-	대로 3-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선번호 부여 및 시설범위 확대 • 입체적 결정 신설 (A : 286.6㎡, L : 44.1m, B : 14.4m, H : 11.7m~28.8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 설치된 시청광장~을지로 지하상가를 현행 도시계획시설 기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노선번호 부여 • 을지로 지하상가 중 을지스타몰3구역 지하상가 확장을 위해 축진지구 내 시설범위 확대 • 을지스타몰3구역 을지3가 1,2번 출입구 이설계획에 따라 3-8·9·10구역 획지 내 입체적 결정 신설

⑤ 철도(변경)

■ 철도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연장(m)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1	철도	고속철도	종로구 종로4가 32-8번지 일대	(80)	(1,397)	건교부고시 제695호 (90.10.19)	철도(지하부분) 일부구간 도로 및 녹지로 중복결정
기정	2	철도	고속철도	벽제~양재동간	40.7km (310)	(3,479)	건교부고시 제53호 (80.2.22)	3호선
기정	3	철도	도시철도(5호선) 을지로4가 정거장	주교동 122일대	-	6,259.4 (343.2)	건교부고시 제151호 (91.3.25)	일부구간 입체적 결정
기정	4	철도	도시철도(2호선) 을지로4가 정거장	을지로4가 261	205	5,998.5	건교부고시 제232호 (77.12.1)	일부구간 입체적 결정
기정	5	철도	도시철도 을지로3가 정거장	을지로3가 118번지 일대	-	4,728.7 (400.7)	서울시고시 제46호 (82.2.3)	일부구간 입체적 결정
변경	5	철도	도시철도 을지로3가 정거장	을지로3가 118번지 일대	206	5,893.4 (595.8)	서울시고시 제46호 (82.2.3)	일부구간 입체적 결정

※()는 지구내 면적임

■ 철도 입체적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구분	기정	변경	변경 후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3	철도	을지로4가 206-1 일대	면적(㎡)	69.7	-	69.7	서울시고시 제2014-389호 (14.11.13)	
				길이(m)	8.6	-	8.6		
				폭(m)	10.0	-	10.0		
				높이(m, 지하)	14.6 ~ 30.4	-	14.6 ~ 30.4		
세부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체적 결정범위 창경궁로 서측 환기구 일부 - 지상부 A=19.3㎡ / H=24.5 ~ 31.0m - 지하부 A=69.7㎡ (지상중복 19.3㎡) / H=14.6 ~ 24.5m 								
기정	4	철도	을지로4가 250 일대	면적(㎡)	728.5	-	728.5	서울시고시 제2014-389호 (14.11.13)	
				길이(m)	53.9	-	53.9		
				폭(m)	33.1	-	33.1		
				높이(m, 지하)	13.5 ~ 31.6	-	13.5 ~ 31.6		
세부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체적 결정범위 을지로4가 교차로 남서측 출입시설, 냉각탑 일부 - 지상부 A=292.6㎡ / H=24.5 ~ 31.6m - 지하부 A=637.6㎡ (지상중복 204.4㎡) / H=13.5 ~ 24.5m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구분	기정	변경	변경 후	최초결정일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엘지로 남측 환기구 일부 - 지하부 : A=2.7㎡ / H=15.4 ~ 22.8m 									
변경	5	철도	엘지로3가 118 일대	면적(㎡)	342.7	감) 13.1	329.6	서울시고시 제2023-540호 (23.12.7)	
				길이(m)	40.2	증) 3.1	43.3		
				폭(m)	19.4	감) 0.5	18.9		
				높이(m, 지하)	11.1 ~ 29.2	감)0.8~증)0.2	10.3~29.4		
세부 사항	기정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체적 결정범위 - 지상부 A=141.8㎡, H=24.7m~29.2m - 지하부 A=299.9㎡, H=11.1m~24.7m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체적 결정 범위(평균해수면 기준) - 지상부: A=152.0㎡, H=24.7m~29.4m - 지하부: A=219.4㎡, H=10.3m~24.7m 				

㉟ 주차장 : 변경없음

■ 주차장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 (㎡)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주차장	예관동 52-11번지 일원	1,198.7	-	1,198.7	서울시고시 제2022-479호 (22.12.08)	

■ 주차장 공간적 범위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공간적 범위				최초결정일	비고
				구분	기정	변경	변경 후		
기정	1	주차장	예관동 52-11번지 일원	면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차장 - 지상1층 40㎡ 이상 - 지하층 200㎡ 이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차장 - 지상1층 40㎡ 이상 - 지하층 200㎡ 이상 	서울시고시 제2022-479호 (22.12.08)	지하: 주차장 지상: 비도시계획시설 (산업영커시설)
				층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도시계획시설 - 주차장(지상1층 일 부, 지하층 일부)을 제외한 모든 구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도시계획시설 - 주차장(지상1층 일 부, 지하층 일부)을 제외한 모든 구간 		

㉞ 공간시설 : 변경

㉟ 공공공지 : 신설

■ 공공공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공공공지	산림동 90-4	240.9	-	240.9	서울시고시 제2023-471호	5구역
기정	2	공공공지	을지로4가 310-16	927.4	-	927.4	서울시고시 제2023-540호	6-3-3구역 국도호텔 보행자전용도로 중복 결정
신설	3	공공공지	인현동2가 1-1	-	증) 160.1	160.1	-	6-3-6구역

■ 공공공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3	공공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공지 신설 - 면적 : 160.1㎡ - 중구 인현동2가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덕수궁 후문 통학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공지 신설(6-3-6)

㉞ 녹지 : 변경

■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녹지	경관녹지	장사동 142	1,173.4	-	1,173.4	서울시고시 제2014-119호 (14.03.27)	-
기정	4	녹지	경관녹지	인현동2가 57-3	891.3	-	891.3	서울시고시 제2014-119호 (14.03.27)	-
폐지	5	녹지	경관녹지	인현동2가 135-48	517.2	감) 517.2	-	서울시고시 제2014-119호 (14.03.27)	-
폐지	6	녹지	경관녹지	인현동2가 181-31	757.3	감) 757.3	-	서울시고시 제2014-119호 (14.03.27)	-
기정	8	녹지	경관녹지	종로4가 32-8	433.8	-	433.8	서울시고시 제2016-103호 (16.04.07)	-

■ 녹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5	경관녹지	• 경관녹지 폐지	• 세운상가군변 보행녹도 형태의 경관녹지를 개방형녹지로 대체
6	경관녹지	• 경관녹지 폐지	• 세운상가군변 보행녹도 형태의 경관녹지를 개방형녹지로 대체

㉟ 공원 : 변경

■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1	공원	문화공원	종로3가 175-4	3,748.3	-	3,748.3	서고시 제2014-119호 (14.03.27)	
폐지	2	공원	소공원	산림동 56-5	2,409.6	감) 2,409.6	-	서고시 제2014-119호 (14.03.27)	5구역
신설	1-2	공원	문화공원	장사동 182-13	-	증) 2,365.3	2,365.3	-	2구역
변경	2	공원	문화공원	입정동 97-4	2,643.2	-	2,643.2	서고시 제2014-119호 (14.03.27)	3구역
기정	3	공원	소공원	예관동 53-4	1,316.4	-	1,316.4	서고시 제2014-119호 (14.03.27)	6-4구역
신설	1-3	공원	문화공원	을지로4가 26	-	증) 4,160.4	4,160.4	-	5구역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4	공원	문화공원	인현동1가 2-13	-	증) 5,662.5	5,662.5	-	(삼풍상가) 대림~인현상가 3층 연결부 보행자전용도로 결정(폭3.0~13.0m)
신설	1-5	공원	문화공원	인현동2가 95-9	-	증) 2,824.1	2,824.1	-	6-1구역
신설	1-6	공원	문화공원	인현동1가 2-35	-	증) 5,759.9	5,759.9	-	(PJ호텔) 대림~인현상가 3층 연결부 보행자전용도로 결정(폭3.0~13.0m)
신설	1-7	공원	문화공원	충무로4가 21-1	-	증) 3,768.3	3,768.3	-	6-2구역

※ 상기 면적은 캐드 구적상 면적으로 작성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1	문화공원	• 공원 번호 변경 - 1 → 1-1	• 공원도면번호 변경
2	소공원	• 공원 폐지	• 구역 분할에 따른 공원 폐지
1-2	문화공원	• 공원 신설	• 세운상가군 공원화계획과 연계한 공원 신설
2	문화공원	• 공원 세분 및 번호 변경 - 3 → 2 - 소공원 → 문화공원	• 세운상가군 공원화계획과 연계한 세분 변경
1-3	문화공원	• 공원 신설	• 세운상가군 공원화계획과 연계한 공원 신설
1-4	문화공원	• 공원 신설	• 세운상가군 공원화계획과 연계한 공원 신설
1-5	문화공원	• 공원 신설	• 세운상가군 공원화계획과 연계한 공원 신설
1-6	문화공원	• 공원 신설	• 세운상가군 공원화계획과 연계한 공원 신설
1-7	문화공원	• 공원 신설	• 세운상가군 공원화계획과 연계한 공원 신설

㉔ 공공·문화체육시설 : 변경없음

㉕ 학교 : 변경없음

■ 학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학교	중학교	중구 인현동2가 3번지 일원	13,055.1	-	13,055.1	서울시고시 제10호 (79.1.10)	덕수 중학교

㉞ 공공청사 : 변경없음

■ 공공청사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공공청사	공공청사	중구 예관동 83-10번지 일원	7,600.0	-	7,600.0	서울시고시 106호 (77.3.15)	중구청

㉟ 방재시설 : 변경없음

㉠ 하천 : 변경없음

■ 하천 결정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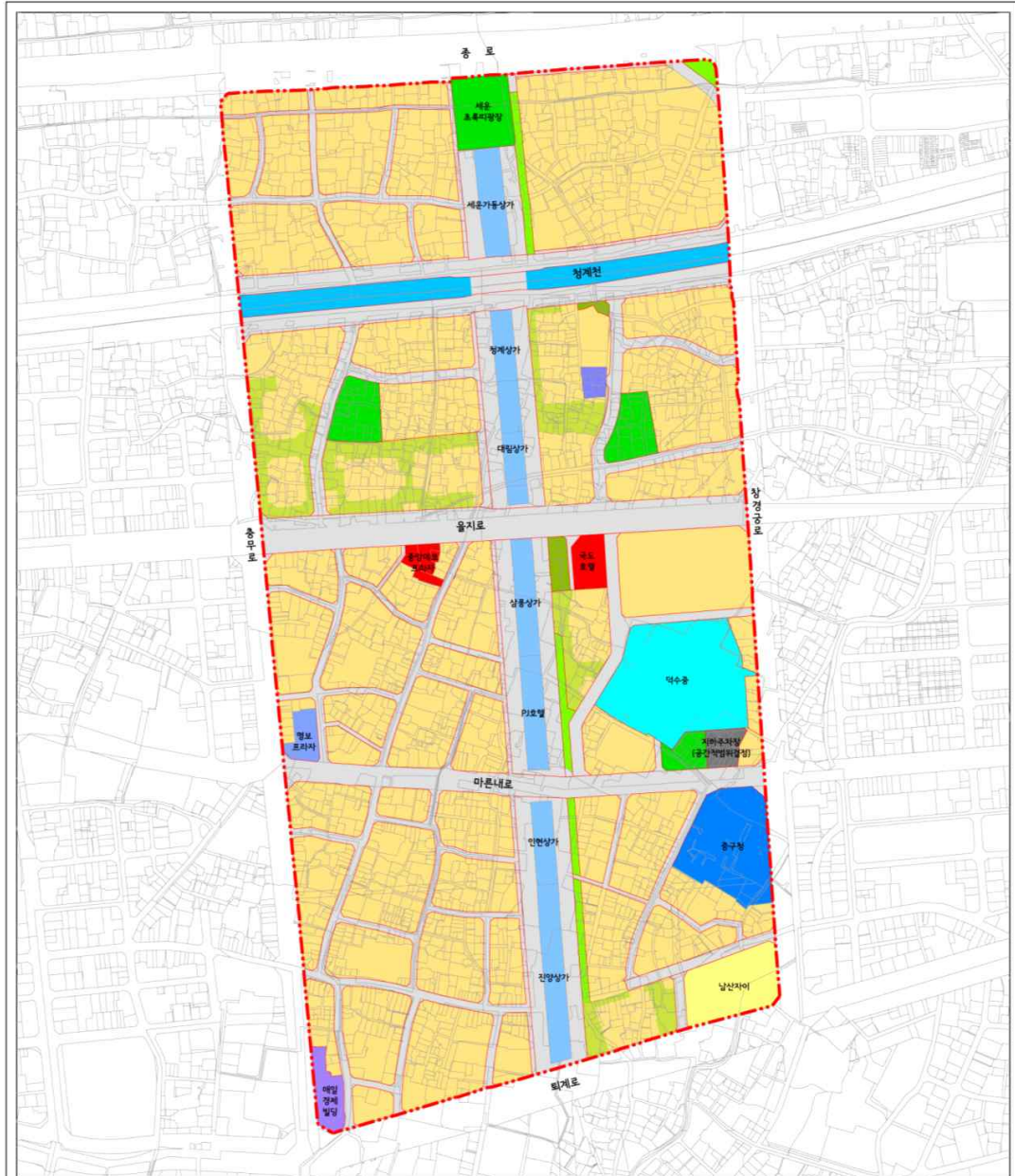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연장(km)	폭원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1	하천	지방1,2급 (지방2급)	종로구 서린동 148	성동구 마장동 신답철교	-	5.76km -지방1급 : 1.31km -지방2급 : 4.45km	19~113 (20~22)	-	서울시 고시 제2003-423호 (2003.12.26)	청계천

※ ()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 하천 폭원임

※ 기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관련 사항 : 생략(재공람도서와 같음)

라. 관계도서 : 기타 관계도서는 공람장소에 비치된 도서로 같음.

< 토지이용계획도(기정) >



범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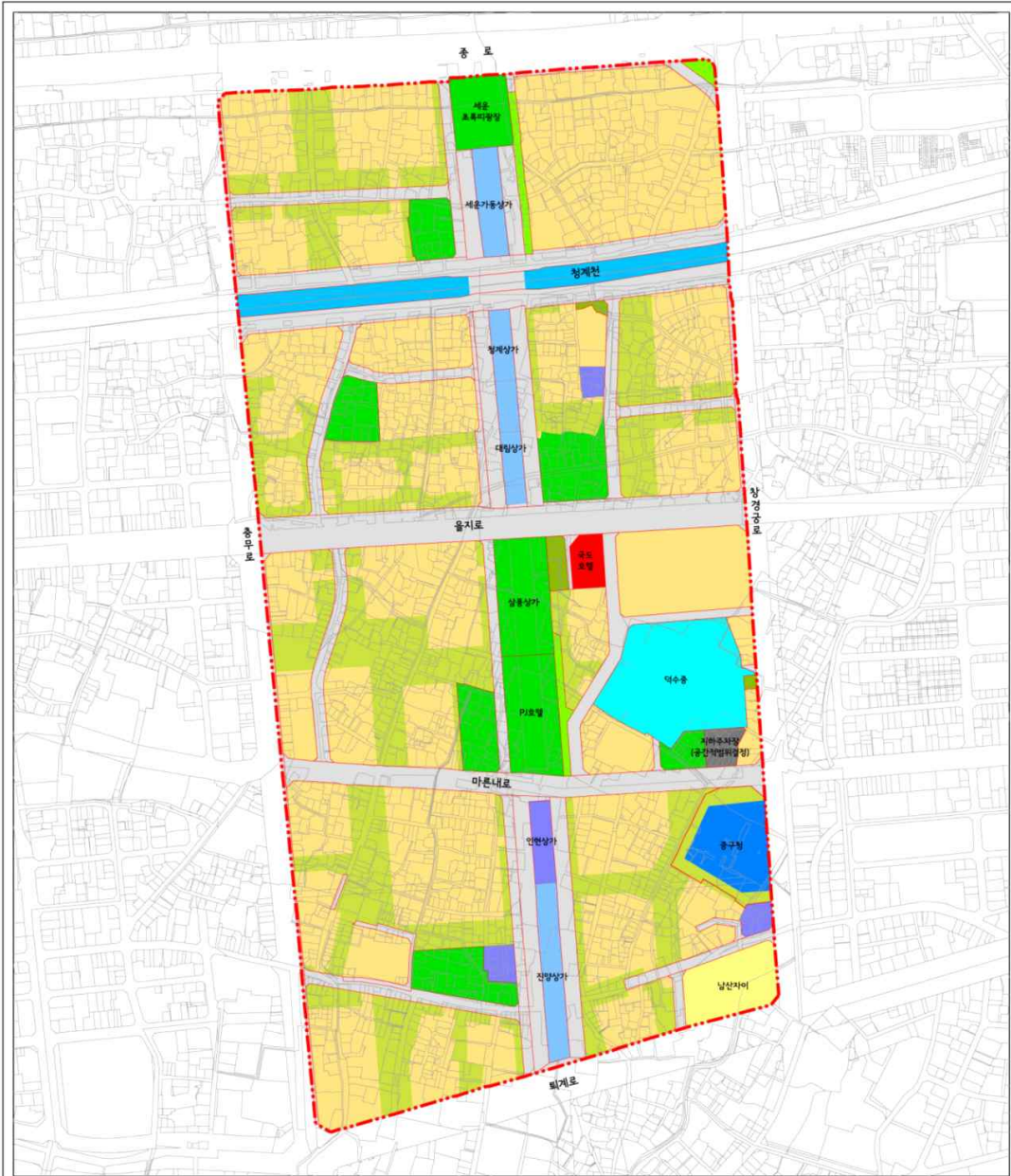
재정비촉진지구계	주차장	학교
복합개발용지	공원	하천
주거복합	녹지	공공용지
상업	개방형녹지	세운상가군
업무	공공공지	
도로	공공청사	

세운재정비촉진지구

토지이용계획도(기정)

Scale = A3 : 1:3,500
A2 : 1:2,500

< 토지이용계획도(변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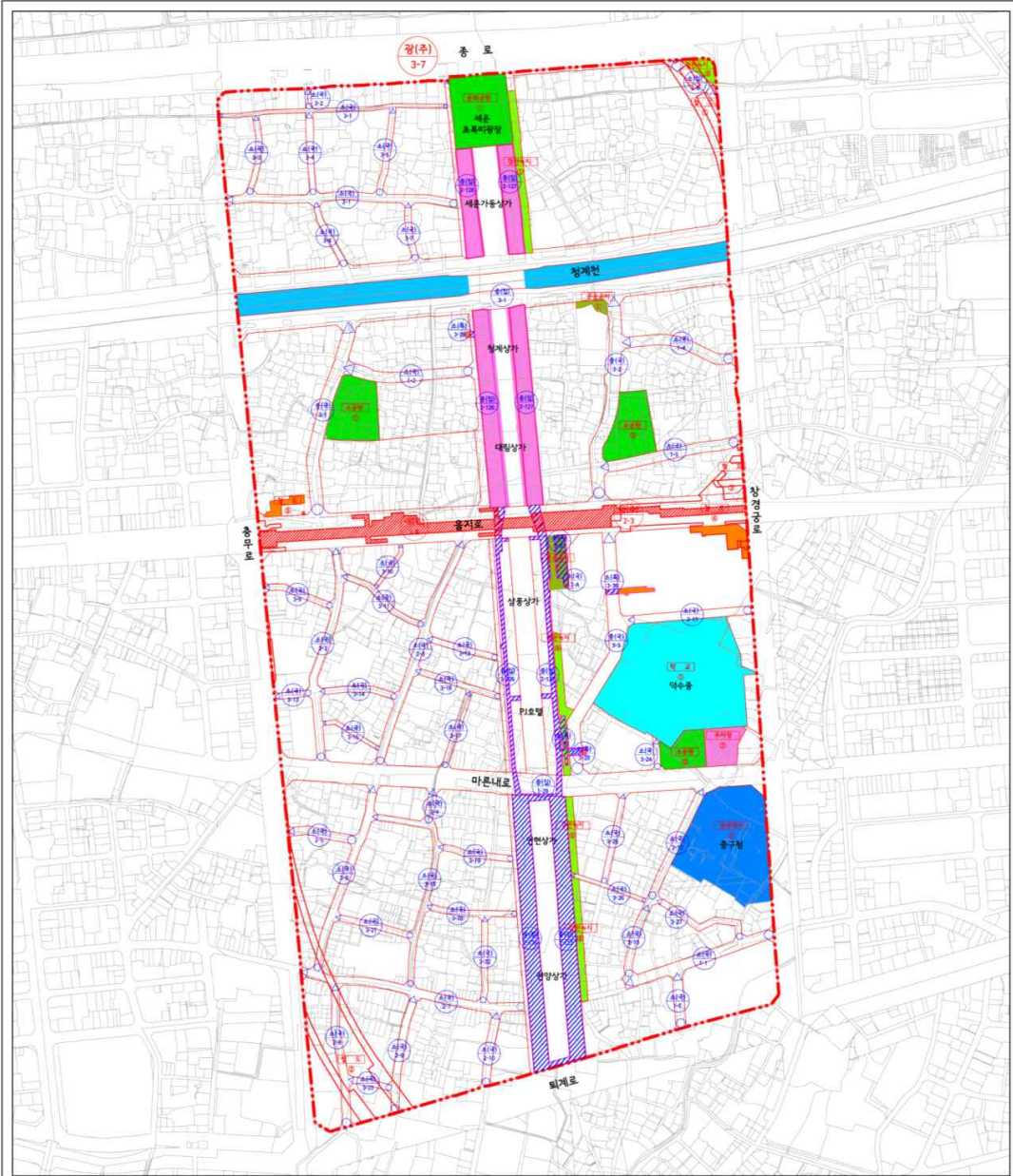
범례					
	재정비촉진지구계		주차장		학교
	지구단위계획구역계		공원		하천
	복합개발용지		녹지		공공용지
	주거복합		개방형녹지		세운상가군
	상업		공공공지		세운상가
	도로		공공청사		

세운재정비촉진지구

토지이용계획도(변경)

Scale = A3 : 1:3,500
A2 : 1:2,500

< 도시계획시설결정도(기정) >



범례

재정비촉진지구계	지하공공보도시설	공공공지
도시계획도로(대로)	학교	중복 결정
도시계획도로(중로)	공공청사	입체적 결정
도시계획도로(소로)	하천	공간적 범위 결정
보행자전용도로	공원	
철도	경관녹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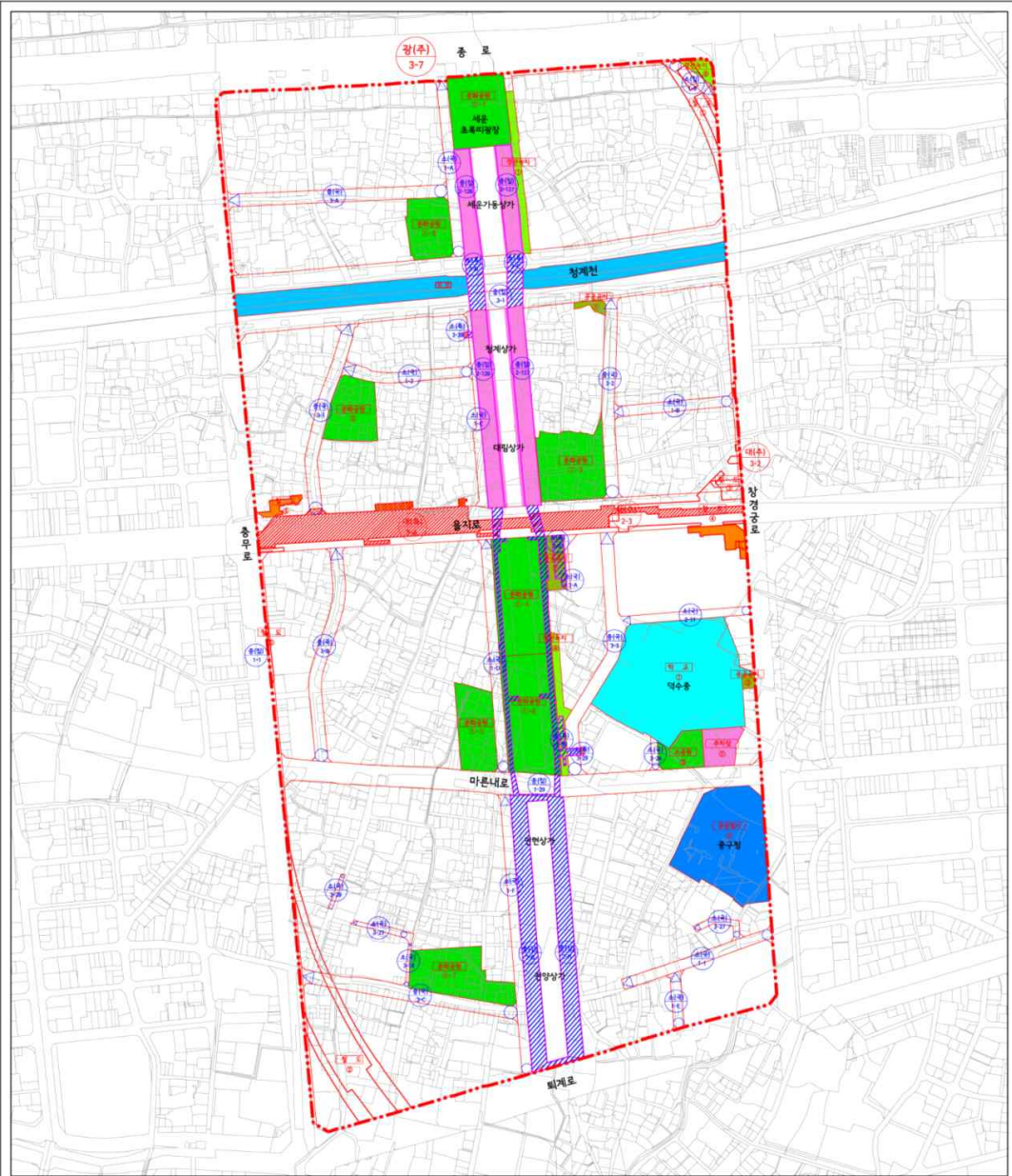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도시계획시설결정도(기정)

Scale = A3 : 1:3,500
A2 : 1:2,500

0 20 50 100 150 250m

< 도시계획시설결정도(변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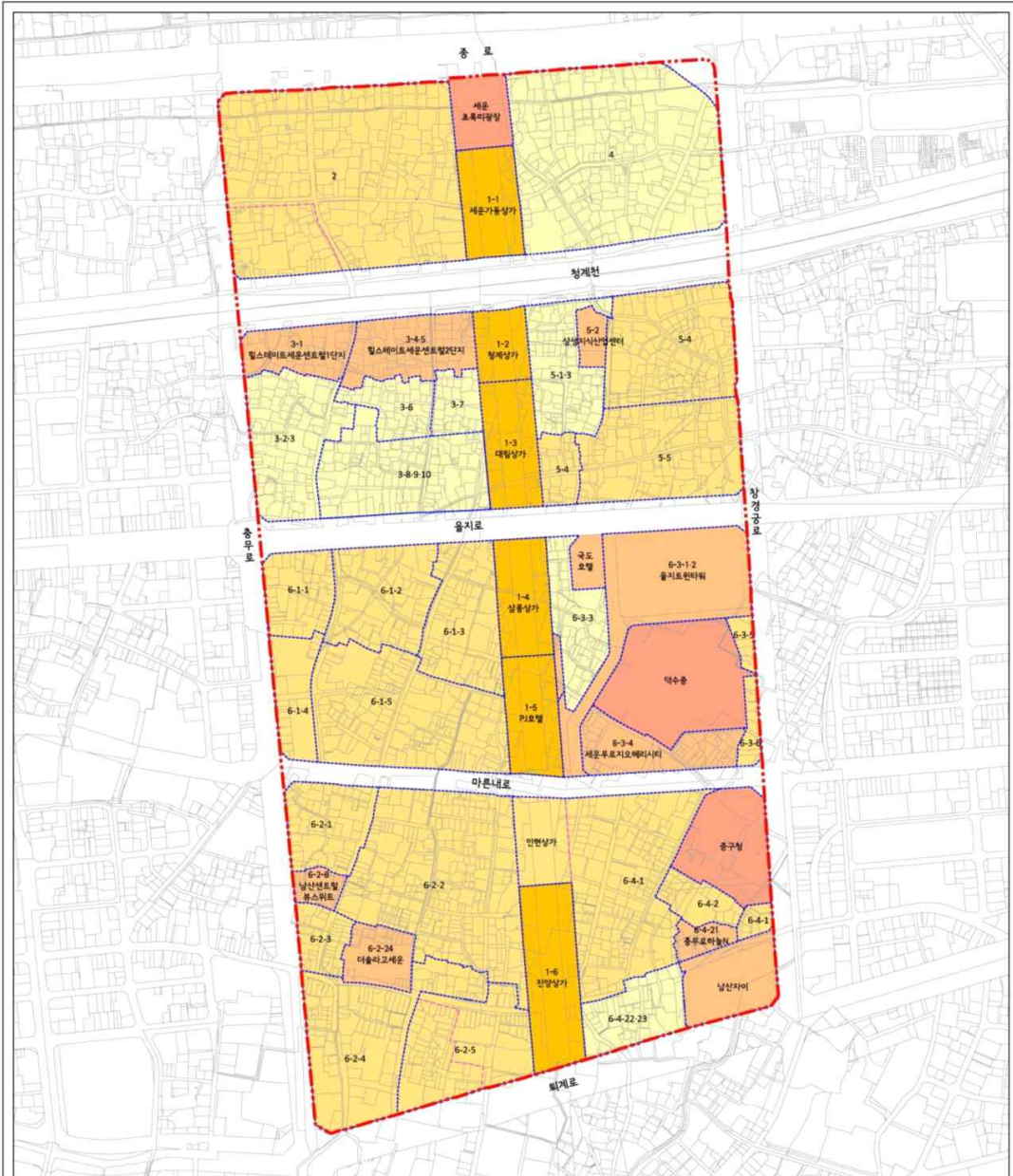
범례		
	재정비축진지구계	
	도시계획도로(대로)	
	도시계획도로(중로)	
	도시계획도로(소로)	
	보행자전용도로	
	철도	
	지하공공보도시설	
	학교	
	공공청사	
	하천	
	공원	
	경관녹지	
	공공공지	
	중복 결정	
	입체적 결정	
	공간적 범위 결정	

세운재정비축진지구

도시계획시설결정도(변경)

Scale = A3 : 1:3,500
A2 : 1:2,500

< 구역결정도(변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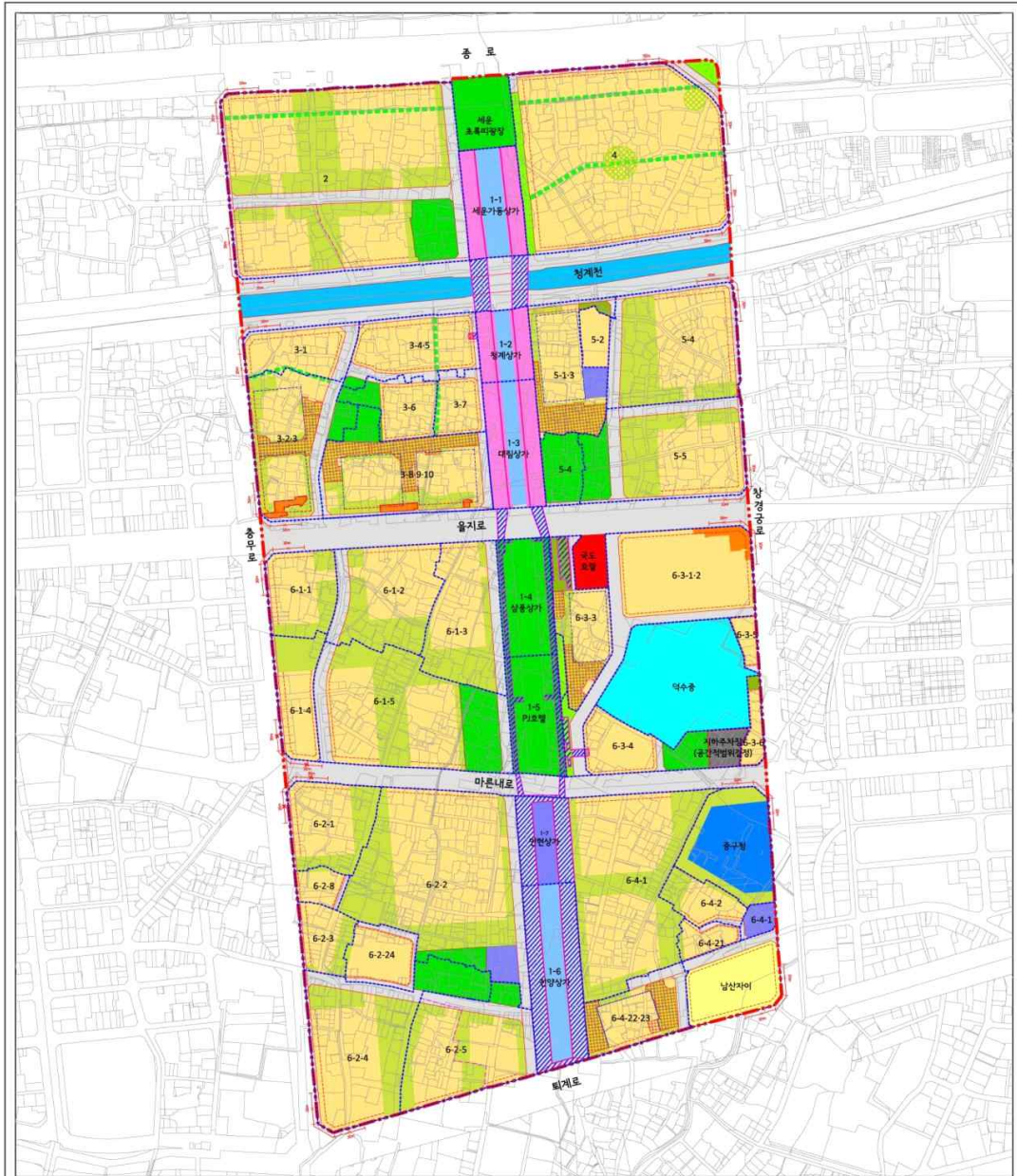
범례	
	재정비촉진지구계
	재정비촉진구역계
	대지분할가능선
	촉진구역(복합개발용지)
	준촉진구역(복합개발용지)
	준촉진구역(공원용지)
	준치관리구역(일반용지)
	준치관리구역(기반시설용지)

세운재정비촉진지구

구역결정도(변경)

Scale = A3 : 1:3,500
A2 : 1:2,500

< 촉진계획결정도(변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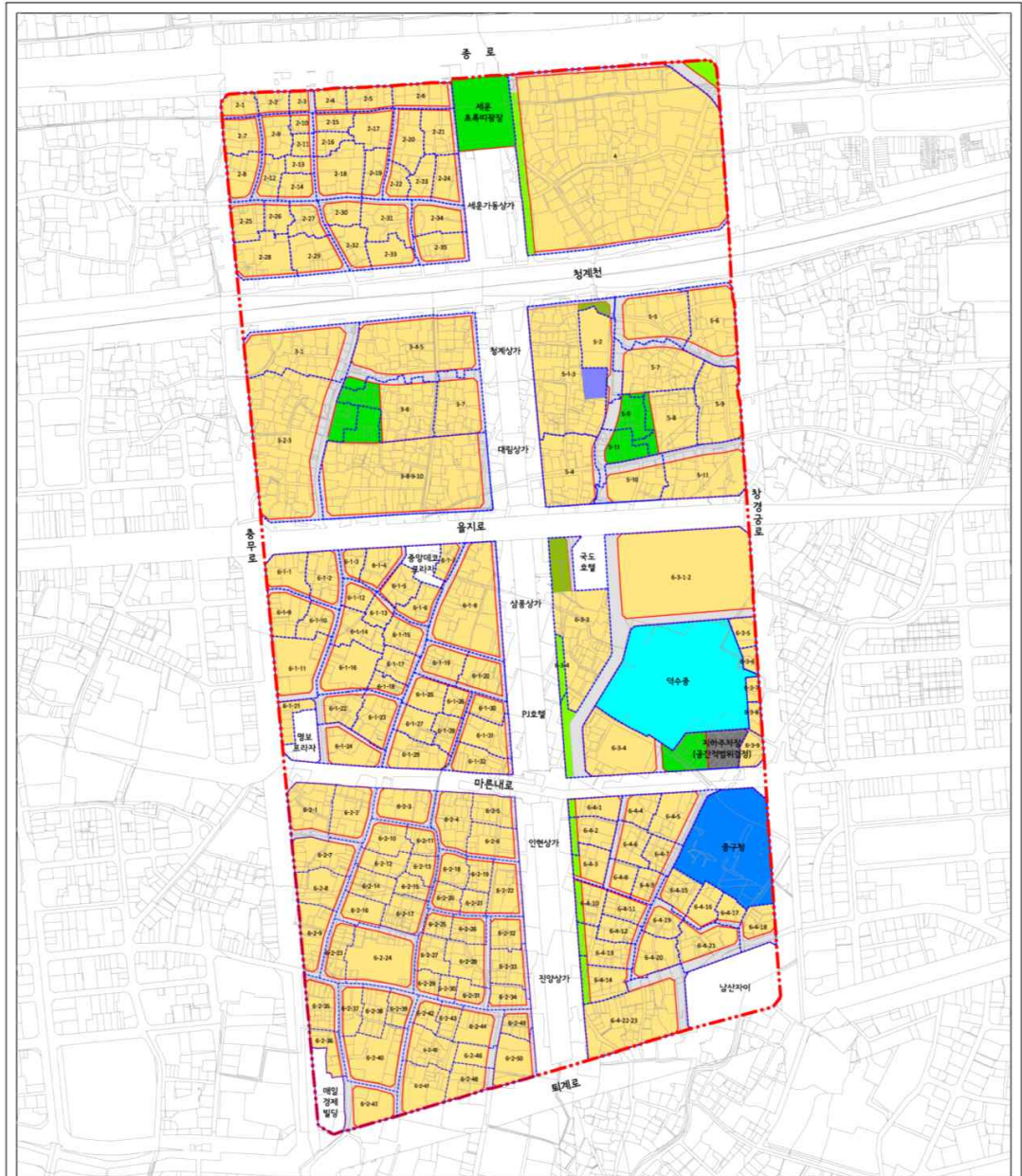
범례	
	재정비촉진지구계
	재정비촉진구역계
	대지분할가능선
	지구단위계획구역계
	복합개발용지
	주거복합
	상업
	도로
	주차장
	공원
	녹지
	공공청사
	학교
	하천
	공공용지
	세운상가군
	개방형녹지
	공개공지(위치지정)
	공개공지
	공간적 범위 결정
	입체적 결정
	중복결정
	건축한계선
	건축가능범위
	공공보행통로
	보행자전용도로
	차량출입불허구간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촉진계획결정도(변경)

Scale = A3 : 1:3,500
A2 : 1:2,500

< 기반시설부담계획도(기정) >



범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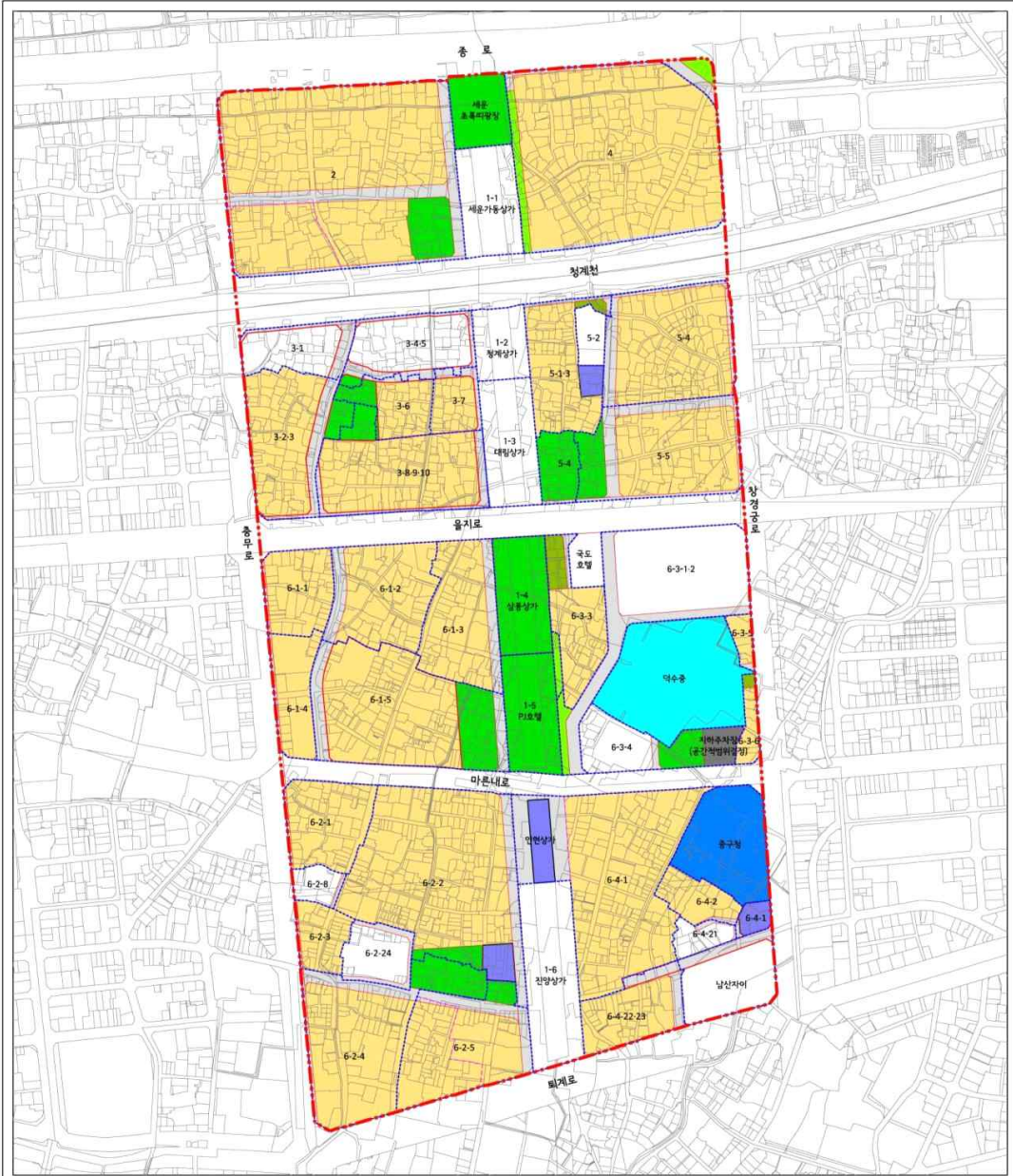
	재정비촉진지구계		경관녹지
	재정비촉진구역계		공공공지
	복합개발용지		공공용지
	도로		학교
	주차장		공공청사
	공원		

세운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부담계획도(기정)

Scale = A3 : 1:3,500
A2 : 1:2,500

< 기반시설부담계획도(변경) >



범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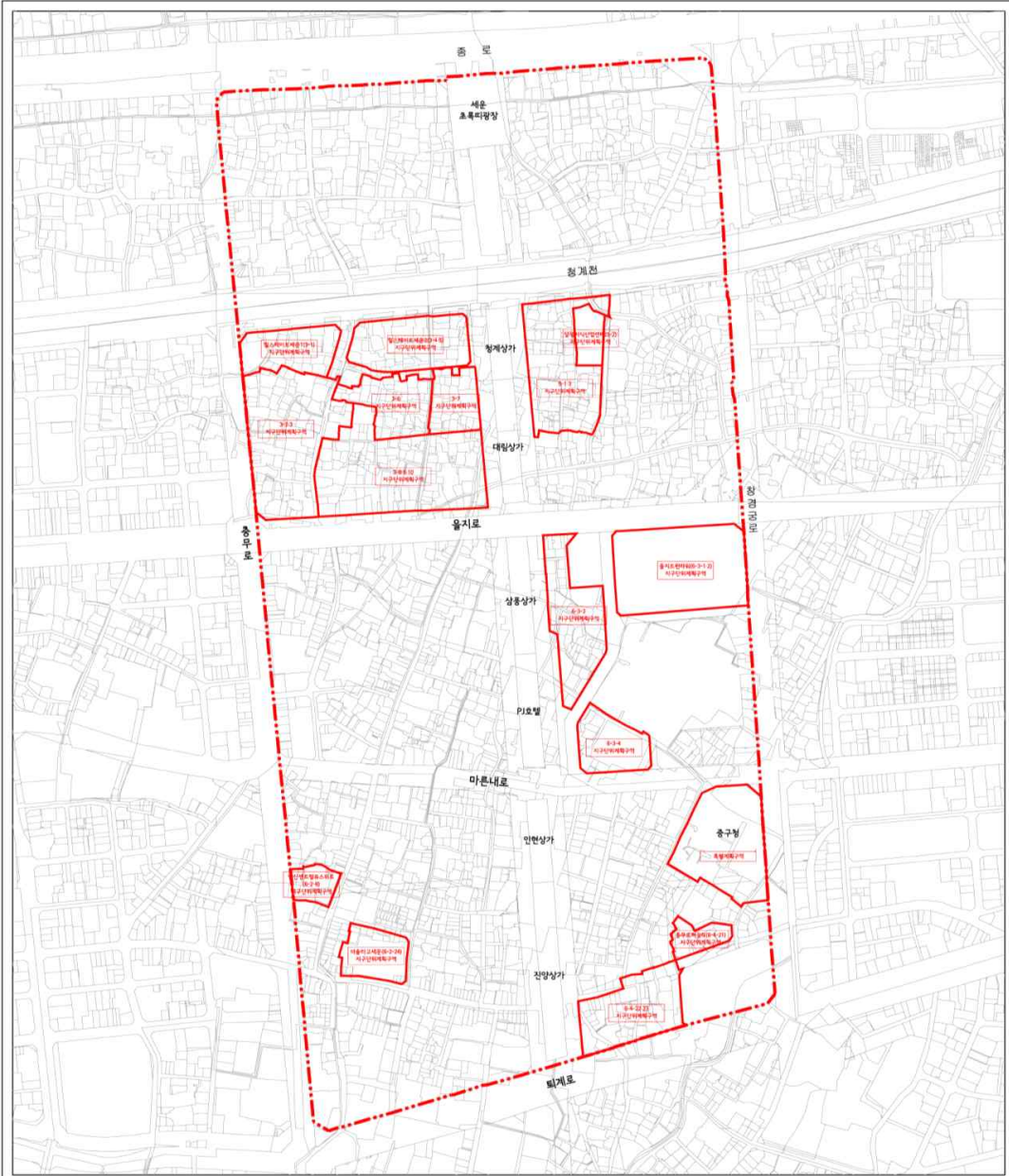
	재정비촉진지구계		공원
	재정비촉진구역계		경관녹지
	대지분할가능선		공공공지
	복합개발용지		공공용지
	도로		학교
	주차장		공공청사

세운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부담계획도(변경)

Scale = A3 : 1:3,500
A2 : 1:2,500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변경) >



범례

- 재정비촉진지구계
- 지구단위계획구역계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변경)

Scale = A3 : 1:3,500
A2 : 1:2,500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628호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서 제출 요청 공시송달 공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4조 및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8조, 제29조, 제31조에 근거하여 행위금지사항을 위반한 화물운수사업자에게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서 제출 요청을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따라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24년 5월 30일
서울특별시

1. 공고기간 : 2024. 5. 30. ~ 2024. 6. 13.(공고일로부터 14일간)
2. 공시송달 공고사항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서 제출 요청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5항을 준용하여 송달받을 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차량번호는 마스킹 처리.

당사자	명칭(성명)	정·영	
	차량번호	서울81*4152	
	주 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리수로93나길 88 803동 2**호	
처분의 원인이되는 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반사항 (거리 대비 주유시간 이상주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류구매카드에 등록된 자동차등록번호 이외의 차량에 주유 - 유류구매카드 타인 양도 ○ 처분근거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8조제1항제6호 유류구매카드에 표기된 자동차등록번호 이외의 차량에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거나 이에 공모 가담하는 행위 - 제28조제1항제13호 유류구매카드를 제3자에게 양도,대여하거나 위탁,보관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 위반내역 (주유소 간 거리 17km / 주유간격 1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03-01 11:50:46 / 40리터 / 6,094원 / 개*리주유소 (경기 하남시) - 2024-03-01 11:52:14 / 46.11리터 / 7,025원 / 우*주유소 (경기 남양주시) 	
처분하고자하는 내역		○ 유가보조금 환수 (13,110원)※1차 처분일(2024-03-27) 이전 주유건	
당초제출기간	2024년 5월 27일(월) 까지	등기우편송달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기번호 : 1091863836905 • 반송사유 : 폐문부재

당사자	명칭(성명)	함*석		
	차량번호	서울06*5766		
	주 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남부순환로105길 252-6 2층 20*호		
처분의 원인어되는 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반사항 (거리 대비 주유시간 이상주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류구매카드에 등록된 자동차등록번호 이외의 차량에 주유 - 유류구매카드 타인 양도 ○ 처분근거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8조제1항제6호 유류구매카드에 표기된 자동차등록번호 이외의 차량에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거나 이에 1공모 가담하는 행위 - 제28조제1항제13호 유류구매카드를 제3자에게 양도,대여하거나 위탁,보관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 위반내역 (주유소 간 거리 29km / 주유간격 11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04-13 21:20:10 / 30리터 / 4,571원 / 신*주유소 (서울 구로구) - 2024-04-13 21:31:37 / 47.17리터 / 7,187원 / 너*골주유소 (경기 고양시) 		
처분하고자하는 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가보조금 6개월 지급정지 ○ 유가보조금 환수 (11,750원) 		
당초제출기간	2024년 5월 27일(월) 까지	등기우편송달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기번호 : 1091863836908 • 반송사유 : 폐문부재 	

당사자	명칭(성명)	홍*욱		
	차량번호	서울84*6474		
	주 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80가길 32 101동 70*호		
처분의 원인어되는 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반사항 (거리 대비 주유시간 이상주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류구매카드에 등록된 자동차등록번호 이외의 차량에 주유 - 유류구매카드 타인 양도 ○ 처분근거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8조제1항제6호 유류구매카드에 표기된 자동차등록번호 이외의 차량에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거나 이에 1공모 가담하는 행위 - 제28조제1항제13호 유류구매카드를 제3자에게 양도,대여하거나 위탁,보관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 위반내역 (주유소 간 거리 9km / 주유간격 1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03-14 09:06:25 / 200리터 / 30,474원 / 고*휴게소(문산방향)주유소 (경기 고양시) - 2024-03-14 09:07:42 / 120리터 / 18,284원 / 고*휴게소(서울방향)주유소 (경기 고양시) 		
처분하고자하는 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가보조금 6개월 지급정지 ○ 유가보조금 환수 (48,750원) 		
당초제출기간	2024년 5월 27일(월) 까지	등기우편송달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기번호 : 1091863836909 • 반송사유 : 폐문부재 	

3. 처분근거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4조(보조금의 사용 등)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4조의2(보조금의 지급정지 등)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8조(행위금지사항)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9조(화물차주에 대한 행정상 제재)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31조(책임의 승계)

4.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4년 6월 13일(목) 18:00 까지
- 장 소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1동 13층
물류정책과 (팩스번호 02-768-8943)
- 담 당 자 : 신용현(02-2133-4097) globalhunter@seoul.go.kr

5. 유의사항

- 귀하께서는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제출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명칭)	차량번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견제출
내용

의견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4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658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조정 공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조정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30일
서울특별시

- 허가구역 지정지역 : 6개소(0.30km²)
 - 신속통합기획(재개발) 후보지 : 6개소(303,018m²)
 - 지정기간 : 2024년 6월 4일부터 2025년 8월 30일까지

대상지역			면적(m ²)	비 고
합 계			303,018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 81일대	64,316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동대문구	장안동 134-15일대	67,758	
	양천구	신월5동 72일대	29,665	
	성북구	정릉동 898-16일대	53,971	
	강북구	미아동 345-1일대	44,061	
	관악구	신림동 419일대	43,247	

- 허가구역 변경지역 : 1개소(0.09km²)
 - 공공재개발 후보지 : 1개소(90,346m²)
 - 지정기간 : 2024년 4월 4일부터 2025년 4월 3일까지

대상지역			면적(m ²)		비 고
			기정	변경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7동 941일대	90,346	98,295	공공재개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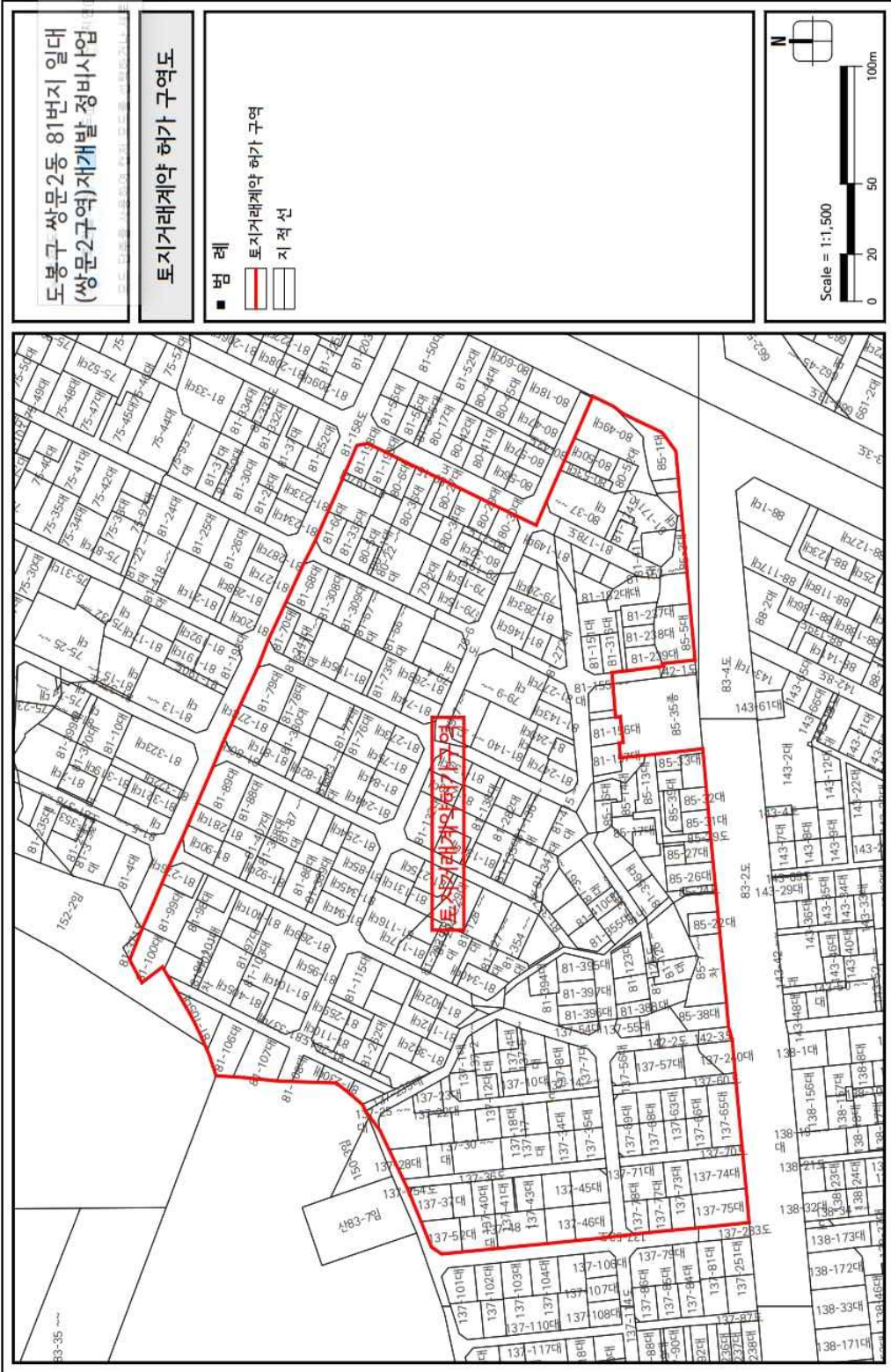
용도지역		면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6㎡ 초과
	상업지역	15㎡ 초과
	공업지역	15㎡ 초과
	녹지지역	20㎡ 초과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곳	6㎡ 초과

허가구역 지정 토지조서 : 붙임1 참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이동 및 등록사항정정 토지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최종조서는 허가구역 지정도면(구역 설정)을 기준

허가구역 지정 지형도 : 붙임2 참조

※ 토지e음(<http://www.eum.go.kr>)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세부정보를 확인



동대문구 장안동
134-15번지일대
주택재개발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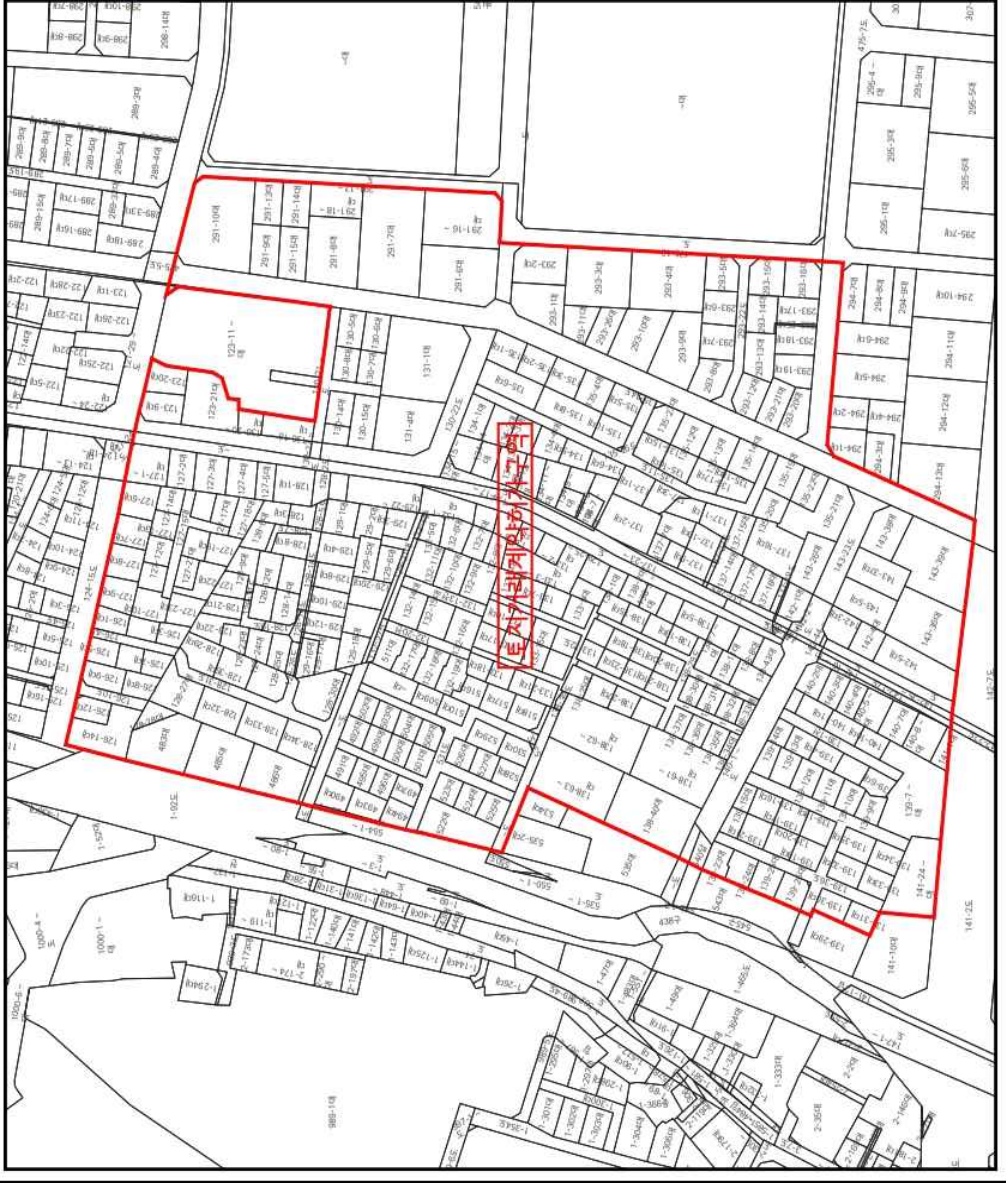
토지거래계약 허가 구역도

범례

- 토지거래계약 허가 구역
- 지적선

Scale = 1:1,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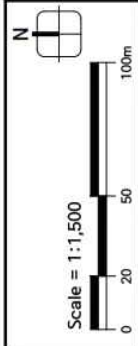
0 20 50 10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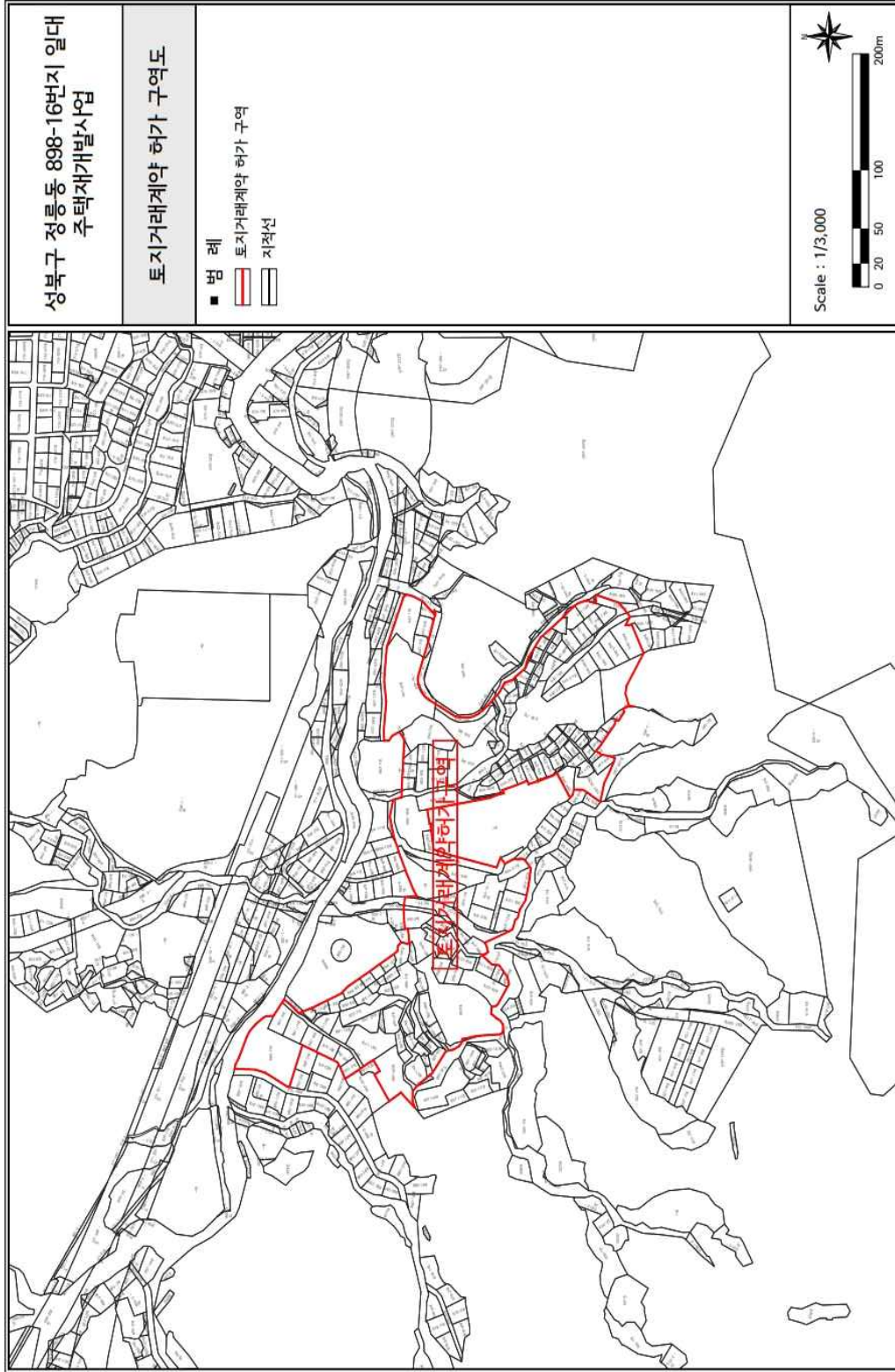


양천구 신월5동 72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사업

토지거래계약 허가 구역도

- 범례
- 토지거래계약 허가 구역
- 지적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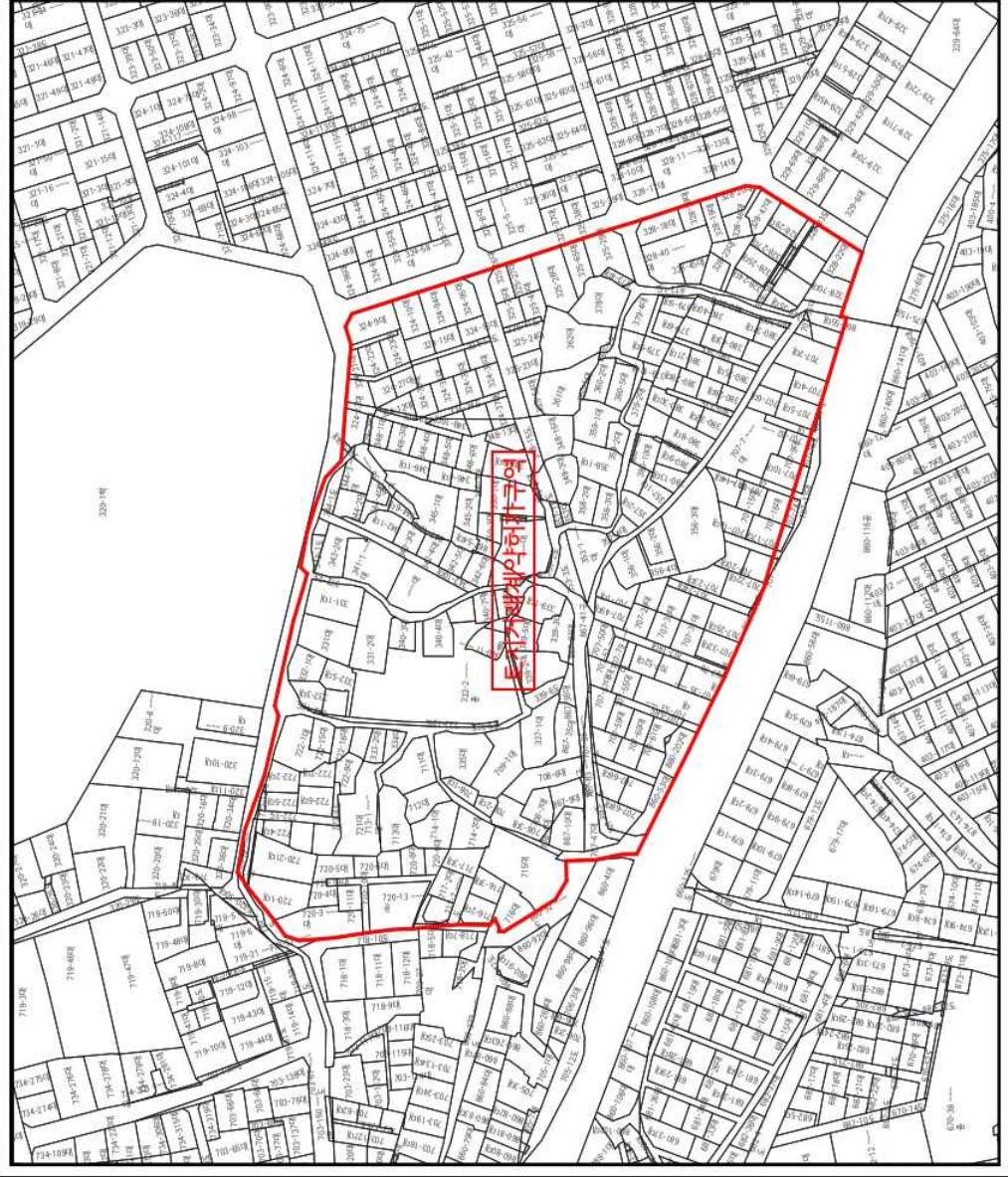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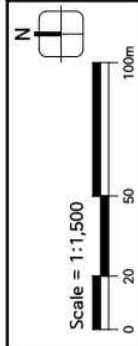


강북구 미아동 345-1일대
주택재개발사업

토지거래계약 허가 구역도

범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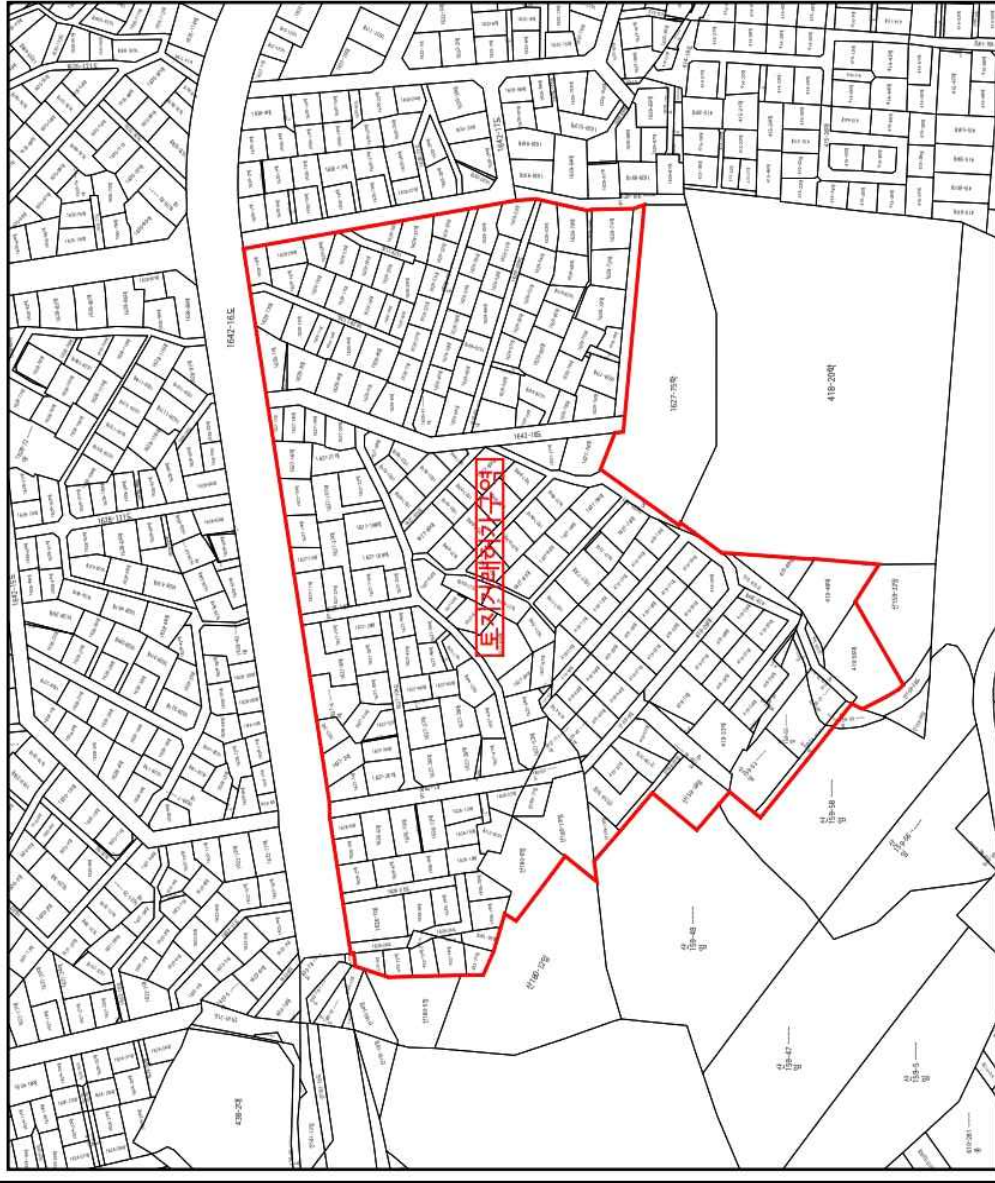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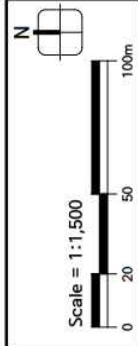
- 토지거래계약 허가 구역
- 지적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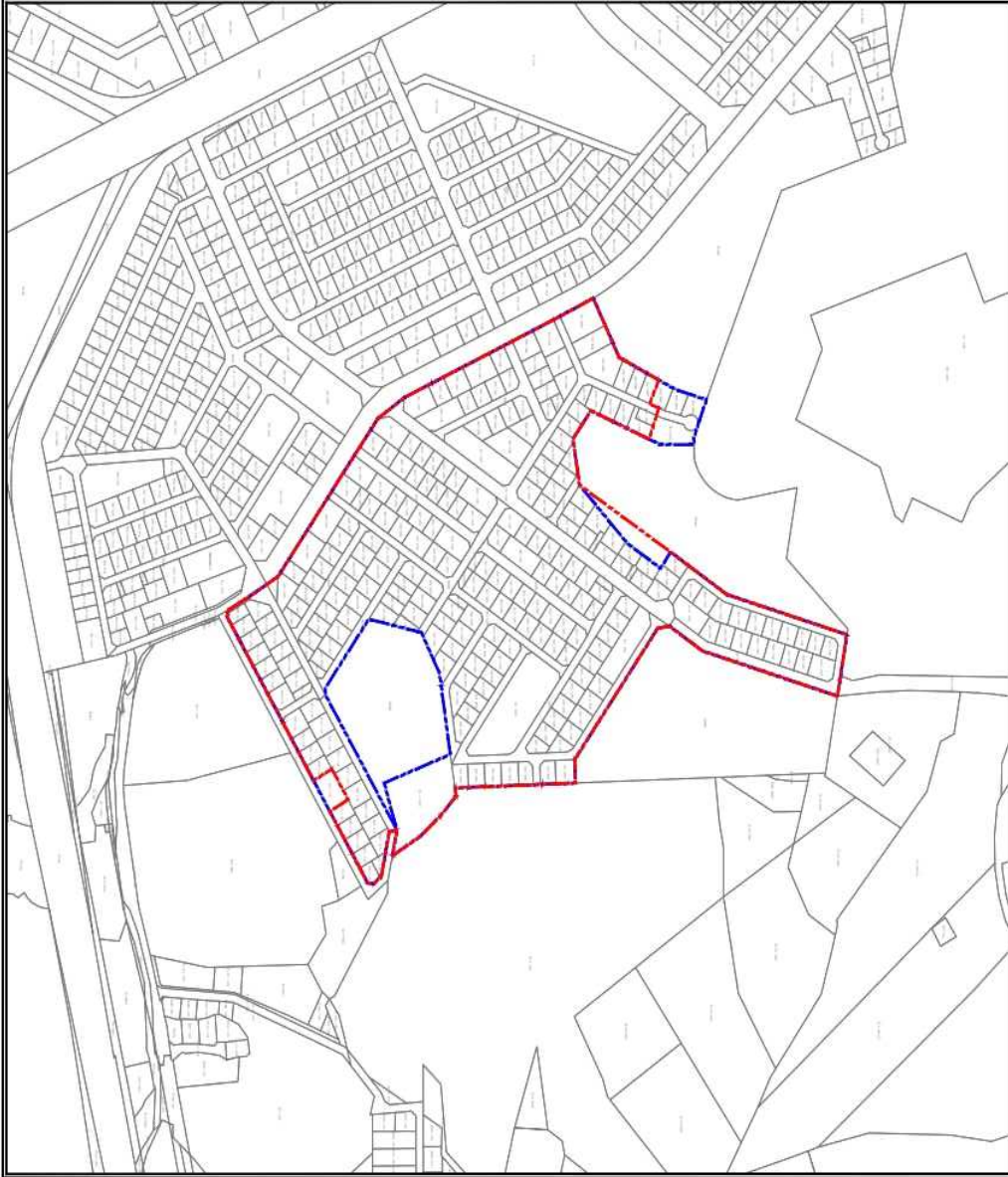
관악구 신림동 419번지 일대
(신림5-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토지거래계약 허가 구역도

- 범례
- 구역계
- 지적선



신월7동 2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토지거래계약 허가 구역도	범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기정)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변경) 지적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659호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안) 및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공람 공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안)」 및 「환경영향평가법」 제12조에 따른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를 마련하고, 주민에게 공람하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서를 아래 의견 제출처로 공람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5월 30일
서울특별시

1. 공람명칭 :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안) 및 약식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공람 공고
 ※ 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으로 구성됨
2. 공람기간 : 2024. 5. 30. ~ 2024. 6. 13.(14일간)
3. 공람장소 및 의견 제출처

구분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	재건축사업 부문	주거환경개선사업 부문
공람장소		서울특별시청 주거정비과 (주거정비정책팀)	서울특별시청 공동주택지원과 (재건축정책팀)	서울특별시청 주거환경개선과 (주거환경개선정책팀)
의견 제출처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3층 주거정비과 (주거정비정책팀)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3층 주거정비과 (재건축정책팀)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6층 주거정비과 (주거환경개선정책팀)
	이메일	ytyjh99@seoul.go.kr	iaah@seoul.go.kr	ryu0019@seoul.go.kr
	담당자	유태윤 주무관 (☎ 02-2133-7206)	박솔기 주무관 (☎ 02-2133-7137)	유성원 주무관 (☎ 02-2133-7250)

- ※ 기본계획 관련 도서(본보고서)는 각 자치구 정비사업 부서에서도 열람 가능함
- ※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요약서는 서울시청 홈페이지(고시공고),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전문은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에 게재

- 4. 의견 제출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 중 한가지 방법으로 제출
 - ※ 의견 제출 시 ‘의견서(붙임1)’ 에 의견 제출자의 인적사항(정확한 주소 및 성명 등)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 이메일 제출 시에는 스팸 보안 등의 사유로 확인이 안 되어 접수가 안 될 수 있으니, 이메일 송신 후 유선(재개발사업 부문 02-2133-7206, 재건축사업 부문 02-2133-7137, 주거환경개선사업 부문 02-2133-7250)으로 접수 여부 확인해 주시기 바람

5. 공람내용

-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 (안)
 - 기본계획 개요 및 2025 기본계획 평가
 - 서울시 주거지에 대한 기초현황조사
 - 2030 기본계획의 수립방향 및 주거지 관리계획
 - 주거환경정비사업 각 부문별계획 및 실행지침 등
-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6. 기본계획 관련 도서 및 평가서(초안) : 서울시 공람장소에 비치

(다만, 기본계획 본보고서는 각 자치구 정비사업 부서에서도 열람 가능)

- ※ 기본계획 관련 도서는 게재 생략, 평가서 관련 도서는 아래 사이트에 게재
 - ↳ 평가서(초안) 요약서는 서울시청 홈페이지(고시공고),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전문은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에 게재

- 붙임 1. 자치구 공람장소(본보고서에 한함) 1부.
 2. 의견서 양식(기본계획 관련) 1부.
 3. 의견서 양식(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관련) 1부. 끝.

<붙임1> 자치구 공람장소

※ 아래의 자치구 정비사업부서에서도 기본계획 관련 도서(본보고서) 열람 가능하나, 의견 제출은 공고문에 안내된 서울시 각 소관부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람장소		전화번호	공람장소	전화번호
서울시	주거정비과	02-2133-7206	종로구 도시개발과	02-2148-2682
	공동주택지원과	02-2133-7137		
	주거환경개선과	02-2133-7250		
중구 도심정비과		02-3396-5725	용산구 재정비사업과	02-2199-7465
성동구 주거정비과		02-2286-6567	광진구 주거사업과	02-450-9703
동대문구 주거정비과		02-2127-4294	중랑구 주택개발추진단	02-2094-6892
성북구 주거정비과		02-2241-2834	강북구 주거정비과	02-901-2557
도봉구 재건축재개발과		02-2091-3405	노원구 재건축사업과	02-2116-3916
은평구 정비사업신속추진단		02-351-7454	서대문구 신통개발과	02-330-1933
마포구 주택상생과		02-3153-9314	양천구 재건축사업과	02-2620-3443
강서구 도시재생과		02-2600-6747	구로구 주택과	02-860-2381
금천구 주거정비과		02-2627-1807	영등포구 주거사업과	02-2670-3803
동작구 도시정비1과		02-820-9266	관악구 주택과	02-879-6303
서초구 재건축사업과		02-2155-8791	강남구 재건축사업과	02-3423-6063
송파구 주택사업과		02-2147-2889	강동구 재건축재개발과	02-3425-5986

<붙임2> 의견서 제출양식(기본계획 관련)

※ 의견 제출 시 제출자의 인적사항(정확한 주소 및 성명 등)을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 (안)
공람에 따른 의견서

성 명	(인)	연락처	
거주지 주소			
유형구분 (해당란에 O표시)	공통(), 주택정비형재개발사업 부문(), 재건축사업 부문(), 주거환경개선사업 부문()		
의 견			
제출일	년 월 일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

◆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 제2024-3호

2024년 수시 재산변동사항 공고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4년 수시 재산변동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4년 5월 30일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

○ 정기변동(2023.12.31.)

소속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직위	의원	성명	조진희	
	재산의 종류	소제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증가액 (실거래가격)
▶ 토지(소계)			130,000	280,001	0	410,001	
본인	전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매성리 276번지 1,736.00㎡	130,000	0	0	130,000	변동없음
장녀	대지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171-30번지 32.00㎡ 중 12.80㎡ (총면적 32.00㎡ 증가, 지분면적 12.80㎡ 증가)	0	43,495 (43,495)	0	43,495	매입

(단위 : 천원)

장녀	대지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171-3번지 117.00㎡ 중 46.80㎡ (총면적 117.00㎡ 증가, 지분면적 46.80㎡ 증가)	0	159,030 (159,030)	0	159,030	0	159,030	매입
장녀	대지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171-4번지 57.00㎡ 중 22.80㎡ (총면적 57.00㎡ 증가, 지분면적 22.80㎡ 증가)	0	77,476 (77,476)	0	77,476	0	77,476	매입
▶ 건물(소계)			3,007,000	40,000	419,000	2,628,000			
본인	아파트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아파트 건물 84.97㎡	1,127,000	0	275,000	852,000		공시지가변동으로 인한 가액 감소	
본인	아파트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건물 59.48㎡ 중 29.74㎡	475,000	0	0	475,000		변동없음	
본인	아파트 (전세(임차)권)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건물 132.73㎡	735,000	0	0	735,000		변동없음	
장남	아파트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건물 84.70㎡	615,000	0	89,000	526,000		공시지가변동으로 인한 가액 감소	
장남	오피스텔 (전세(임차)권)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외우리 건물 0.00㎡ (건물 24.69㎡ 감소)	55,000	0	55,000	0		계약만으로 인한 전세(임차)권 상실	
장남	다세대주택 (전세(임차)권)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건물 60.90㎡ (건물 60.90㎡ 증가)	0	30,000	0	30,000		신규월세계약	
장녀	단독주택 (전세(임차)권)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건물 25.00㎡ (건물 25.00㎡ 증가)	0	10,000	0	10,000		신규월세계약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61,130	0	4,050	57,080
본인	자동차 2018년식 E300 4Matic 배기량(1,991cc)	35,430	0	0	35,430 변동없음
배우자	자동차 2020년식 렉스턴 스포츠 배기량(2,157cc)	23,440	0	1,790	21,650 감가상각으로 인한 기액 감소
장남	자동차 2004년식 NF 소나타 배기량(2,000cc) 감소	2,260	0	2,260	0 폐차로 인한 소유권 상실
▶ 현금(소계)		38,000	20,000	13,000	45,000
본인	현금 감소	38,000	0	13,000	25,000 그로스등 및 예적금소득 및 본인과 배우자의 현금 구분 등록으로 인한 감소
배우자	현금 증가	0	20,000	0	20,000 그로스등 및 본인과 배우자의 현금 구분 등록으로 인한 증가
▶ 예금(소계)		1,516,692	618,602	776,697	1,358,597
본인	(주)KB손해보험 20,800(3,840 증가), (주)키카오페이증권 1(1 증가), DB손해보험(주) 7,797(1,751 증가), 교보생명보험 25,200, 국민은행 67(190 감소), 농협생명보험 79,878(5,240 증가), 농협중앙회 50,075(4,517 감소), 삼성생명보험 60,000(3,300 증가), 삼성증권 1, 삼성화재해상보험 35,643, 새마을금고중앙회 158,197(10,022 증가),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부 7,209(1,475 증가), 신용협동조합중앙회 62,223(517 감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신용공제사업부 53,180(6,020 증가), 신한은행 511, 우리은행 69,478(98,713 감소),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7,674(3,263 증가), 현대해상화재보험 0(34,385 감소), 흥국화재해상보험(주) 45,194(1,711 증가)	784,827	209,211	310,910	683,128 예적금 만기 및 생활비 사용 등으로 인한 감소

배우자	국민은행 5,454(5,425 증가), 농협중앙회 9,694(4,403 증가), 세미은행고중앙회 6,647(308 증가), 스탠다드차타드은행 0(5 감소), 신한금융투자(주) 7, 우리은행 0(78 감소), 우체국 7(428 감소), 토스뱅크(주) 61(61 증가), 토스증권(주) 212(212 증가)	12,184	15,606	5,708	22,082	
장남	농협생명보험 63,873(2,400 증가), 농협중앙회 51,546(871 감소), 메리츠화재상보험(보험) 3,600(600 증가), 삼성생명보험 18,000, 세미은행고중앙회 115,298(3,385 증가), 세미은행고중앙회 공제사업부 4,967(1,034 증가), 신용협동조합중앙회 64,460(1,811 증가), 신한은행 1,255(1,046 증가), 우리은행 17,027(2,591 감소), 주식회사 키카오뱅크 12(64 감소), 케이뱅크 3,708(3,707 증가), 키움증권 10(1,923 감소), 한국투자증권 2,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76(76 증가)	335,224	215,268	206,658	343,834	
차남	국민은행 62, 우리은행 13,513(895 증가)	12,680	1,200	305	13,575	
장녀	(주)KEB하나은행 1, IBK연금보험주식회사 19,000, KB증권 75(27 증가), 국민은행 7,441(7,324 증가), 농협생명보험 25,800(2,400 증가), 농협손해보험 20,000, 농협은행 24, 농협중앙회 1,542(49,492 감소), 세미은행고중앙회 122,410(39,572 감소), 세미은행고중앙회 공제사업부 19,294(3,464 증가), 신용협동조합중앙회 64,461(1,811 증가), 신한은행 11(8 증가), 우리은행 15,828(1,860 감소),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91(91 증가)	371,777	177,317	253,116	295,978	예적금 만기 및 생활비 사용 등으로 인한 감소

▶ 증권(소계)		14,942	4,148	13,881	5,209	
배우자	상장주식 동진세미컴 30주(30주 증가), 삼성전자보통주 2주(2주 증가), 성평디벨롭먼트 47주(47주 증가), 아이온규 61주(61주 증가), 어보브반도체 5주(5주 증가), 코히리스비오사이언시스 22주(22주 증가), 웰리타스반도체 1주(1주 증가), 퍼스텍보통주 10주(10주 증가), 하이드로리튬 113주(113주 증가), 한국엔컴퍼니보통주 10주(10주 증가)	0	3,693	0	3,693	주가 변동 등으로 인한 가액 감소
장남	상장주식 SOFTECHNOLOGIESINC 2주, 대신증권보통주 0주(10주 감소), 카카오게임즈 0주(308주 감소)	13,892	14	13,881	25	
장녀	상장주식 삼성전자 19주	1,050	441	0	1,491	
▶ 채권(소계)		1,390,000	40,000	55,000	1,375,000	
본인	사인간채권	1,335,000	0	0	1,335,000	변동없음
장남	사인간채권 감소	55,000	30,000	55,000	30,000	계안만으로 인한 전세보증금 환수 및 신규월세계약
장녀	사인간채권 증가	0	10,000	0	10,000	신규월세계약
▶ 채무(소계)		2,000,664	47,008	250,664	1,797,008	
본인	사인간채무	500,000	0	0	500,000	변동없음
본인	건물임대채무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아파트 임대보증금 감소	900,000	0	150,000	750,000	전세계약 변동으로 인한 가액 감소

배우자	금융채무	KB캐피탈 0(664 감소), 토스뱅크(주) 12,019(12,019 증가)	664	12,019	664	12,019	사업자금 등의 금융채무
장남	금융채무	주식회사 카카오뱅크 1,989(1,989 증가)	0	1,989	0	1,989	사업자금 등의 금융채무
장남	건물임대채무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임대보증금 감소	600,000	0	100,000	500,000	전세계약 변동으로 인한 가액 감소
장녀	금융채무	국민은행 13,000(13,000 증가), 새마을금고중앙회 20,000(20,000 증가)	0	33,000	0	33,000	토지매입대출
		총 계	4,157,100	955,743	1,030,964	4,081,879	증감액: -75,221천원 (가액변동: -365,335천원)

○ 신 규 (2024.2.23.)

소속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직위	원장	성명	오관
본인과의 관계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기액 (실거래가액)		비고	
▶ 토지(소계)				33,365			
본인	임야	전라남도 여수시 남면 화태리 산 143번지 7,767.00㎡ 중 2,589.00㎡		5,644 (5,644)			
본인	임야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군내리 산 55번지 9,917.00㎡ 중 3,306.00㎡		10,778 (10,778)			
본인	임야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울림리 산 290번지 6,114.00㎡ 중 2,038.00㎡		8,376 (8,376)			
본인	임야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울림리 산 61번지 5,950.00㎡ 중 1,983.00㎡		8,567 (8,567)			
▶ 건물(소계)				867,676			
본인	아파트(전세(임차권))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동 건물 166.98㎡		630,000			
본인	아파트(분양권)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동 건물 84.98㎡		237,676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자전거·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25,460			
본인	자동차	2016년식 K7 배기량(2,398cc)		10,440 (10,440)			

본인	자동차	2020년식 XM3 배기량(1,299cc)		15,020 (15,020)	
▶ 예금(소계)				158,288	
본인		(주)카오페이증권 73, NH투자증권 28, SBI저축은행 70,015, 농협은행 17,863, 대신증권 3, 삼성화재해상보험 366, 신한은행 11, 키움증권 9, 한국포스증권(주) 1,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2,194		90,563	
배우자		(주)KEB하나은행 16, 국민은행 4, 농협중앙회 6, 메리츠화재해상보험(보험) 27,830, 미래에셋증권 18, 삼성생명보험 10,377, 신한은행 4,382, 한국투자증권 2		42,635	
차남		국민은행 22,028, 농협은행 3,020, 한국투자증권 42		25,090	
▶ 증권(소계)				24,867	
본인	상장주식	삼성전자보통주 300주		21,870	
배우자	상장주식	삼성전자 10주		729	
차남	상장주식	넥센타이어 1주, 삼성전자 31주		2,268	
▶ 채무(소계)				115,790	
본인	금융채무	농협중앙회 115,790		115,790	
▶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사항				-	
장남		고지거부		0	독립생계유지
총 계				993,866	

구 고 시

◆ 성북구고시 제2024-68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 작성 고시

1. 서울특별시 성북구고시 제1996-7호(1996.2. 10.)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성북구고시 제2020-95호(2020. 6. 25.)로 실시계획 작성 고시, 성북구고시 제2020-141호(2020.8.6.)로 실시계획 변경작성 고시, 성북구 고시 제2022-109호(2022.6.16.)로 실시계획 변경작성 고시 된 『월곡동 150~191간 도로확장공사』에 대하여 일부 변경 사항이 있어,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 작성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5월 30일
성 북 구 청 장

가.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나. 사업개요 (변경없음)

사업의 명칭	사업의 위치	사업의 규모	최초 결정고시	비고
월곡동 150 ~ 191간 도로확장공사	하월곡동 145 ~ 하월곡동 96-264	· B = 6m · L = 230m	성북구고시 제1996-7호 (1996.2.10.)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 1) 성 명 : 성북구청장
- 2) 주 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8

라.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변경)

- 1) 당초 : 실시계획작성 고시일로부터 4년
- 2) 변경 : 실시계획작성 고시일로부터 2024.12.31.까지

마.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변경없음)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북구청 도로과(☎02-2241-354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성북구고시 제2024-69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작성 고시

- 1. 서울특별시고시 제1990-332호(1990. 10. 12.)로 최초 결정고시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공고 제2020-691호(2020. 5. 21.)로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실시계획작성을 위한 열람공고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 청취 공고, 서울특별시 성북구고시 제2020-100호(2020. 6. 25.)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작성 고시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성북구공고 제2022-130호(2022. 7. 14.)로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실시계획(변경)작성을 위한 열람공고 된 「동소문동4가 271 ~ 278-1간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사업 준공예정일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어,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작성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5월 30일
성 북 구 청 장

가. 사업의 종류(변경없음)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나. 사업개요(변경없음)

사업의 명칭	사업의 위치	사업의 규모	최초 결정고시	비고
동소문동4가 271~278-1 간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동소문동4가 271 ~ 278-1	· B = 15m · L = 260m	서울특별시고시 제1990-332호 (1990. 10. 12.)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1) 성명 : 성북구청장
- 2) 주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8

라.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 1) 당초 : 실시계획작성 고시일로부터 2024. 6. 22.까지
- 2) 변경 : 실시계획작성 고시일로부터 2025. 12. 31.까지

마.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변경없음)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북구청 도로과(☎ 02-2241-354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대문구고시 제2024-73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3호(1969.01.18.)로 도시계획시설(도로) 신설 및 지적승인 고시되고 서대문구공고 제2020-595호(2020.05.28.)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청취 공고하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고시 제2020-119호(2020.06.29.)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되고, 서대문구고시 제2021-219호(2021.12.23.), 제2022-44호(2022.04.14.), 제2022-51호(2022.04.28.), 제2022-64호(2022.05.26.), 제2022-84호(2022.06.30.)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정정)인가 고시된 「홍은2동 203-2 ~ 188-9 간 도로개설」에 대하여 변경사항이 있어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3. 토지 및 건물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고시로 갈음합니다.
4. 관계서류는 서대문구청 안전건설국 도로과에 비치하여 토지 및 물건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여 드립니다.

2024년 5월 30일
서대문구청장

-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203-2 ~ 188-9(변경없음)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변경없음)
 - 명칭 : 홍은2동 203-2 ~ 188-9 간 도로개설(변경없음)
- 다. 사업의 규모 : 도로개설(폭 6m, 연장 572m)(변경없음)
- 라. 사업 시행자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변경없음)
- 마.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5년(변경없음)
- 바. 변경내용 및 사유 : 일부 편입토지 누락
-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관리자의 성명·주소 : 별첨
- 아.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의함
-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대문구청 안전건설국 도로과(전화 : 02-330-17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 지 조 서

○ 사업명 : 홍은2동 203-2 ~ 188-9 간 도로개설

연번	구분	소재지 (위치)		지목	공부 면적 (㎡)	권인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동	번지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 관리사항		
1	당초	홍은동	188-24	대지	5	5*25.5/306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가길 ** ***호	조*경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가길 ** ***호	주식회사 국민은행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6	근저당권	
						5/2*25.5/306	서울 마포구 등교동 ***-** ***호	김*수	서울 마포구 등교동 ***-** ***호				
						5/2*25.5/306	경기 의왕시 오전동 ** 수선화아파트 102-***	김*선	경기 의왕시 오전동 ** 수선화아파트 102-***				
						5*25.5/306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41길 ***-6 ***호	양*혜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41길 ***-6 ***호	주식회사 우민은행	서울 중구 회현동1가 203	근저당권	
						5*25.5/306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7가 ****-910	김*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7가 ****-910	주식회사 국민은행	서울 중구 남대문로2가 9-1	근저당권	
						5*25.5/306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41가길 ** ***호	김*래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41가길 ** ***호				
						5*25.5/306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38다길 ** 비**호	홍*영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38다길 ** 비**호	주식회사 국민은행	서울 중구 남대문로 84	근저당권	
						5*25.5/306	서울 중랑구 면목동 95-**	황*숙	서울 중랑구 면목동 95-**	주식회사 우민은행	서울 중구 회현동1가 203	근저당권	
						5*25.5/306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41다길 ** -10 ***호	최*덕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41다길 ** -10 ***호				
						5*25.5/306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41가길 ** ***호	오*부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41가길 ** ***호				
		5*25.5/306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41가길 ** ***호	김*옥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41가길 ** ***호								
		5*25.5/306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41가길 ** ***호	김*희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41가길 ** ***호								
		5*25.5/306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41가길 ** ***호	이*호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41가길 ** ***호	주식회사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서울 중로구 종로 47						
변경	홍은동	188-24	대지	5	5 (변경없음)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248	서대문구						

○ 사업명 : 홍은2동 203-2 ~ 188-9 간 도로개설

연번	구분	소재지 (위치)		지목	공부 영면적 (㎡)	면적 면적 (㎡)	성명	소유자		성명	이해관계인		비고
		동	번지					주소	주소		성명	주소	
2	당초	홍은동	188-105	대지	25	25*31.56/294	김*철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7 ***호	신원은행 주식회사	서울 중구 세종대로92길20	근저당권		
							이*우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41길 *** 2동 ***호	중소기업 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2가 50	근저당권		
							오*남						
							장*희	서울 송파구 오륜로**길4-14,***호					
							오*자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41길 103-*, ***호					
							채*은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51-*** 연희그린빌 비-***	통조림가공수산업 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큰우물로 75	근저당권		
3	당초	홍은동	188-108	대지	11	임*영	서울 성북구 증암로 ***, 102동 ***호	한화생명보험주식 회사	서울 영등포구 63로 50	근저당권			
						송*자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17길 **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60	근저당권			
						함*옥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188-***호						
						권*은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188-***호	주식회사국민은행	서울 중구 남대문로2가 9-1	근저당권			
						서대문구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248						
						심*수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41길 ***호						
3	당초	홍은동	188-108	대지	11	최*요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41길 ***호	주식회사국민은행	서울 중구 남대문로 84	근저당권			
								주식회사 대성파트너스대부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082, 801-12호	근저당권			

○ 사업명 : 홍은2동 203-2 ~ 188-9 간 도로개설

연번	구분	소재지 (위치)		지목	공부 영역 면적 (㎡)	면적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동	번지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이외의 관리사항		
4	변경	홍은동	188-108	대지	11 (변경없음)	11*31.151/34 4	11*217 *46.021/344	천*찬	서울 성북구 성북로4길 27-** *층	연*순	서울 동작구 등운로 ** 103동 ****호	채권자	
								박*호	서울 은평구 불광동 1-**				
								이*영	서울 은평구 수색동 340-* 2층 ***호				
								한*호	서울 서대문구 홍재원6길 ** ***호	주식회사 신원은행	서울 중구 세종대로9길 20	근저당권	
								손*임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41리길 ** ***호				
								안*현	경기도 광주시 담안길 51-*, ***동 101호				
								이*현	서울 송파구 석촌동 ***-14, 비**호				
								서대문구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248				
								홍*진	경기 고양군 신도읍 동산리 83-*				
								박*숙	서울 서대문구 홍은중앙로7길 **				
4	당초	홍은동	188-02	대지	5	5*34.72/210	이*희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188-* ***호					
							김*진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41리길 *, 2동 ***호	주식회사 우디은행	서울 중구 소공로 51	근저당권		
								주식회사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25	근저당권			

○ 사업명 : 홍은2동 203-2 ~ 188-9 간 도로개설

연번	구분	소재지 (위치)		지목	공부 영역 면적 (㎡)	면적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동	번지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이외의 관리사항		
5	변경	홍은동	188-92	대지	5	5*34.72/210	이*채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41리길 *, 지음 ***호	리드코프				
							박*중	인천 미추홀구 제일로 46-* 기동 ***호					
							서대문구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248					
							홍*진	경기 고양군 신도읍 동신리 **-6					
							박*숙	서울 서대문구 홍은중앙로7길 **					
당초	홍은동	188-93	대지	19	19*34.72/210	이*희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188-* ***호	주식회사 우디엔행	서울 중구 소공로 51	근저당권			
						김*진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41리길 *, 2동 ***호	주식회사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25	근저당권			
						이*채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41리길 *, 지음 ***호	리드코프					
						박*중	인천 미추홀구 제일로 46-* 기동 ***호						
6	변경	홍은동	188-93	도로	714	19*35.28/210	서대문구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248					
							김*황	서울 종로구 가회동 1-***					
							유*조	서울 성북구 인암동 5가 ***					

○ 사업명 : 홍은2동 203-2 ~ 188-9 간 도로개설

연번	구분	소재지 (위치)		지목	공부 영역 면적 (㎡)	면적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동	번지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이외의 관리사항					
7	당초	홍은동	191-283	대지	14		장*환	서울 종로구 관판동 108-*								
							윤*로	서울 서대문구 북이현동 3-***								
							엄*철	서울 종로구 이화동 25-*								
							관*필	서울 종로구 은니동 37-*								
							강*영	서울 중구 신당동 427-*								
							백*빈	서울 중구 순화동 43-*								
							김*덕	서울 성동구 행당동 ***								
							안*식	서울 종로구 종로3가 **								
							연*성	서울 중구 신당동 363-**								
							서대문구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248								
							장*내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4리길 **, ***호								
							나*욱	서울 성북구 정릉로20길 *, 202동 ***호								
							장*희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342-** 대일빌라 비**호					주식회사 국민은행	서울 중구 남대문로2가 9-1	근저당권	201호
김*미	서울 강남구 청담동 19-** *층									202호						
최*순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 102동 ****호										301호					
김*식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4리길 **, ***호											주식회사 신한은행	서울 중구 세종대로9길 20	근저당권	302호	
김*후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4리길 **, ***호												주식회사 하나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 66	근저당권	401호

○ 사업명 : 흥은2동 203-2 ~ 188-9 간 도로개설

연번	구분	소재지 (위치)		지목	공부 영점 면적 (㎡)	면적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동	번지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 관리사항	
8	당초	흥은동	191-283	대지	14	14*30.01/239	이*희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4리길 ** 지***호	주식회사 국민은행	서울 중구 남대문로2가 9-1	근저당권	지층 제101호
						14	서대문구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248				
						18/2*38.76/7 11	박*웅	서울 서대문구 흥은동 189-*, ***호				
						18/2*38.76/7 11	조*숙	서울 서대문구 흥은동 189-*, ***호				101호
						18*36.83/711	장*규	서울 마포구 성미산로 57-*, ***호				102호
						18*38.76/711	장*숙	서울 서대문구 흥은동 458, ***-***				201호
						18*39.06/711	김*주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4리길 **, ***호	주식회사한국스텐 디드차터드은행	서울 종로구 종로 47	근저당권	202호
						18*36.83/711	이*성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4리길 **, ***호	주식회사 국민은행	서울 중구 남대문로 84	근저당권	203호
						18*39.01/711	박*숙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4리길 **, ***호	농협은행주식회사 수원새무서	서울 중구 통일로 120	근저당권 압류	301호
						18*39.06/711	최*수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4리길 **, ***호	주식회사신은행	서울 중구 태평로2가 120	근저당권	302호
						18*36.83/711	김*철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4리길 **, ***호	주식회사한국외환 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2가 181	근저당권	303호
						18*39.01/711	김*용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4리길 **, ***호				401호
18*39.06/711	최*상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4리길 **, ***호				402호						
18*36.51/711	오*선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4리길 **, ***호				403호						
18*39.01/711	이*복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4리길 **, ***호				501호						
18*39.06/711	임*춘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4리길 **, ***호	주식회사국민은행	서울 중구 남대문로 84	근저당권	502호						

○ 사업명 : 흥은2동 203-2 ~ 188-9 간 도로개설

연번	구분	소재지 (위치)		지목	공부 영점적 면적 (㎡)	면적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동	번지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 관리사항	
9	당초	흥은동	199-26	대지	5	18*34.02/711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41길 ** A-***호	최*미	주식회사우리은행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 중구 소공로 51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32	근저당권 압류	503호
						18*35.64/711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41길 **, ***호	안*욱	주식회사신한은행	서울 중구 태평로2가 120	근저당권	601호
						18*39.06/711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41길 **, ***호	김*수	한국주주금융공사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6-1	근저당권	602호
						18*38.66/711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41길 **, ***호	정*진	주식회사하나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 66	근저당권	603호
						18/2*26.77/711	경기도 고양시덕양구 무원로**,1002동***호	홍*자				701호
						18/2*26.77/711	경기도 고양시덕양구 무원로**,1002동***호	정*실				
						18*39.06/711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로6길 **, ***호	천*철	주식회사우리은행	서울 중구 소공로 51	근저당권	702호
						18 (반경없음)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248	서대문구				
						5*57.4/861	서울 서대문구 흥은동 199-** 비**	승*희	주식회사 하나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 66	근저당권	101호
						5*57.4/861	서울 서대문구 흥은동 199-** ***호	김*열				102호
5*57.4/861	서울 서대문구 남기좌동 *** 104-***	김*자				103호						
5*57.4/861	서울 서대문구 흥은동 199-** ***호	김*광	중소기업은행 주식회사모광해미 리마트	서울 중구 을지로2가 50 서울 강남구 삼성동 141-32	근저당권 근저당권	104호						
5*57.4/861	인천 계양구 호서로 *** 2동 ***호	이*민				105호						
5*57.4/861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가길 29-**	이*우				201호						
5*57.4/861	서울 서대문구 흥은동 199-** ***호	김*태				202호						
5*8/10* 57.4/861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41길 ** ***호	김*규	주식회사 우리은행	서울 중구 소공로 51	근저당권	203호						
5*2/10*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41길 ** ***호	김*진										

○ 사업명 : 흥은2동 203-2 ~ 188-9 간 도로개설

연번	구분	소재지 (위치)		지목	공부 영역 면적 (㎡)	면적 면적 (㎡)	소유자 성명	주소	성명	이해관계인		비고
		동	번지							주소	소유이외의 관리사항	
10	당초	흥은동	204-66	대지	9	57.4/861	승*자	서울 서대문구 흥은동 206-*** **호	주식회사 국민은행	서울 중구 남대문로2가 9-1	근저당권	204호
							강*자	서울 서대문구 중기로6길 * *층	주식회사 국민은행	서울 중구 남대문로 84	근저당권	205호
							위*자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41가길 ** **호	주식회사 우림은행	서울 중구 소공로 51	근저당권	301호
							김*권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41가길 ** 니동 **호	주식회사 우림은행	서울 중구 소공로 51	근저당권	302호
							승*자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41가길 ** **호	주식회사 우림은행			303호
							김*임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41가길 ** **호	한국주택 금융공사	부산 남구 문현금융로 40	근저당권	304호
							강*구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 **호	주식회사 국민은행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6	근저당권	305호
							서대문구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248				
							김*필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동 *** 홍제현대아파트 101-***				지하제1호
							노*중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41가길 **, 지하층 *호				지하제2호
10	당초	흥은동	204-66	대지	9	9*31.22/301	백*영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41가길 **, **호	국민은행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6(여의도동)	근저당권	101호
							김*재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41가길 **, **호				102호
						9*37.19/301	한*복	서울시 서대문구 흥은동 204-*** 청디빌라 **호			201호	

○사업명 : 홍은2동 203-2 ~ 188-9 간 도로개설

연번	구분	소재지 (위치)		지목	공부 영역 면적 (㎡)	면적 단위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동	번지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이외의 관리사항	
	변경	홍은동	204-66	대지	9	9*31.22/301	승*숙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동 205-*** 지흥*호				202호
							이*련	서울시 모래내로 362-(서홍은동)				301호
							송*복	서울시 서대문구 모래내로 450-**(홍재동)				302호
							정*기	서울시 관악구 인현16길 25-*, **호(봉천동)	신대방1동 새마을금고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602-15	근저당권	401호
11	변경	홍은동	191-284	대지	2	2	윤*숙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189-**				
							서대문구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248				
							서대문구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248				
12	변경	홍은동	191-285	도로	81	81	안*희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1가 *				
							서대문구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248				
							서대문구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248				
13	변경	홍은동	191-286	대지	7	7	한*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41길 29-**				
							서대문구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248				
							서대문구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248				
14	변경	홍은동	188-20	도로	35	35	이*호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277-**				
							서대문구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248				
							서대문구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248				
15	당초	홍은동	206-80	대지	3	3	김*미	서울 은평구 신사동 354 라이프스타이어파트 102-***				

○ 사업명 : 홍은2동 203-2 ~ 188-9 간 도로개설

연번	구분	소재지 (위치)		지목	공부 영역 면적 (㎡)	면적 단위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동	번지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이외의 관리사항	
16	변경	홍은동	206-80	대지	3	3 (변경없음)	서대문구	서대문구 연희로 248				
	당초	홍은동	206-81	대지	6	6	권* 임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206-*				
	변경	홍은동	206-81	대지	6	6 (변경없음)	서대문구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248				
17	당초	홍은동	206-82	대지	8	8	권* 임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206-*				
	변경	홍은동	206-82	대지	8	8 (변경없음)	서대문구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248				
18	당초	홍은동	208-17	대지	12	12*2/3	정* 은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41가길 ** ***호 (홍은동, 스위스빌리지)	쥬한주주택은행	서울 강남구 역삼동 814	기업류	
	변경	홍은동	208-17	대지	12	12*1/3	무* 주식회사	경기 광주시 퇴촌면 도마리 25-*				
19	당초	홍은동	188-110	대지	19	19*27.6/37	이* 분	서울 서대문구 흥재동 ***	주* 덕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280-*	근저당권	
	변경	홍은동	188-110	대지	19	19*9.4/37	김* 기	서울 은평구 진관3로 70 821-***	김* 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136-**	근저당권	
20	당초	홍은동	188-109	대지	27	27	대관불교 조* 종 원성* 사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188-**				
	변경	홍은동	188-109	대지	27	27 (변경없음)	서대문구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248				
21	당초	홍은동	189-65	전	2	2	심* 석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202-* 현대아파트201-***				

○ 사업명 : 홍은2동 203-2 ~ 188-9 간 도로개설

연번	구분	소재지 (위치)		지목	공부 면적 (㎡)	면적 단위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동	번지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이외의 관리사항	
22	변경	홍은동	189-65	전	2	2	서대문구 연희로 248					
	당초	홍은동	188-87	대지	24	24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7- [*] 미성아파트 비동 ***호					
23	변경	홍은동	188-87	대지	24	24	서대문구 연희로 248					
	당초	홍은동	191-42	도로	65	65	서울 용산구 효창동 3- [*]	서울시 마포구청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212		압류	
24	변경	홍은동	191-42	도로	65	65	서대문구 연희로 248					
	당초	홍은동	191-287	도로	357	357	서울 용산구 효창동 3- [*]					
25	변경	홍은동	191-287	도로	357	357	서대문구 연희로 248					
	당초	홍은동	204-65	대지	8	8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					
26	변경	홍은동	204-65	대	8	8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248					
	당초	홍은동	206-12	대지	2	2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동 249- [*]					
27	변경	홍은동	206-12	대	2	2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248					
	당초	홍은동	206-83	대지	2	2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 , 104동 ^{****} 호	서서울 새마을금고	서울 서대문구 응암로 97		지상권,근저당권	
28	변경	홍은동	206-83	대	2	2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248					
	변경 없음	홍은동	208-16	대지	16	16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248					
29	변경	홍은동	206-58	도로	205	150	세종시 도움6로11					

○ 사업명 : 홍은2동 203-2 ~ 188-9 간 도로개설

연번	구분	소재지 (위치)		지목	공부 영역 면적 (㎡)	면적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동	번지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이외의 관리사항	
30	변경 영역	홍은동	188-28	도로	142	142	서울특별시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31	변경 영역	홍은동	188-83	도로	93	93	서울특별시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32	변경 영역	홍은동	188-84	도로	10	10	서울특별시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33	변경 영역	홍은동	188-104	도로	8	8	서대문구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248				
34	변경 영역	홍은동	191-230	도로	609	412	서대문구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248				
35	변경 영역	홍은동	197-2	대지	42	42	서대문구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248				
36	변경 영역	홍은동	199-1	전	66	11	서대문구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248				
37	변경 영역	홍은동	204-23	도로	420	230	서대문구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248				
38	변경 영역	홍은동	204-31	도로	851	338	서대문구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248				
39	변경 영역	홍은동	206-79	도로	30	30	서대문구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248				
40	변경 영역	홍은동	208-15	도로	197	197	서대문구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248				
41	변경 영역	홍은동	466-1	도로	73.1	15	서대문구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248				
42	변경 영역	홍은동	466-2	도로	533.5	282	서대문구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248				
43	변경 (추가)	홍은동	197-1	대지	66	66	이*영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				

○ 사업명 : 홍은2동 203-2 ~ 188-9 간 도로개설

연번	구분	소재지 (위치)		지목	공부 면적 (㎡)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동	번지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이익의 권리사항	
44	변경 (추가)	홍은동	207-3	도로	248	204.69	이*영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				
45	변경 (추가)	홍은동	204-6	도로	344	344	이*영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				

◆ 영등포구고시 제2024-60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지하도로)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20-194호(2020.10.29.)로 결정되고, 영등포구 고시 제 2023-99호(2023.8.24.)로 도시계획시설(도로: 지하도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최초) 인가된 신풍역 지하도로 설치공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 91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5월 30일
영 등 포 구 청 장

1. 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3610번지 일원(변경 없음)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 없음)
 - 종류: 교통시설(도로: 지하도로) 사업
 - 명칭: 지하철(7호선 신풍역) 연결통로 개설공사
3. 사업규모(변경 없음)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소로	2	1	9~9.7	특수도로	4.5	신길동 3616	신길동 3610	지하도로 (지하층 연결로)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없음)
 - 성명: 김정기 (법인명: ㈜랜드코퍼레이션)
 - 주소: 울산광역시 북구 화암7길 5, 상가동 115호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 기정: 인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 ~ 2023. 5. 31.
 - 변경: 2023. 10. 6. ~ 2024. 8. 28.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변경 없음)

연번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지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1	신길동 3610	대	642	12.7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2	신길동 3616	도	2,492	30.5	서울특별시	-

7.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 시설물 관리자: 사업시행자(㈜랜드코퍼레이션)
8. 관계도면(열람장소에 비치한 도서로 같음)

구 공 고

◆ **중랑구공고 제2024-789호**

도시계획시설(유수지,주차장,문화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168-4번지 도시계획시설(유수지,주차장,공공청사) 결정(변경) (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 본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서를 열람 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5월 30일
중랑구청장

가.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나. 열람장소 : 중랑구청 도시계획과

다. 입안취지 : 現 용마지구대 시설노후화에 따른 근무여건 악화 여건을 개선코자 공공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임.

라. 열람내용

1. 도시계획시설(유수지,주차장,문화시설) 결정(변경)조서 및 사유서

■ 도시계획시설(유수지,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초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변경	유수지	유수시설	면목동 168-2번지 일대	68,624.9	감) 1,100	67,524.9	1972. 2. 9. (건설부공고 제9호)	경미한 변경
	주차장	노외주차장		53,428.4	감) 900	52,528.4	1991. 8. 3. (市고시 제234호)	

■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

구분	시설명	위 치	규모및 범위				최초결정일	비 고
			구분	기 정	변 경	변경 후		
기정	문화시설	면목동 168-2번지 일대	면적(㎡)	8,167	-	8,167	2023. 6. 8. (市고시 제2023-21호)	수평투영면적: 8,167㎡ 연면적: 8,936㎡ (2층 8,167㎡/3층 769㎡)
			층수	2~3층	-	2~3층		

■ 변경 사유서

구분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유수지	◦면적변경 감) 1,100㎡	◦용마지구대 신축부지 제척
변경	주차장	◦면적변경 감) 900㎡	

2.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조서 및 사유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초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신설	공공청사	파출소	면목동 168-4	-	증) 1,100	1,100	-	

■ 건축범위 결정조서(공공청사)

구분	건폐율	용적율	높이	비고
신설	20%	50%	4층 이하	자연녹지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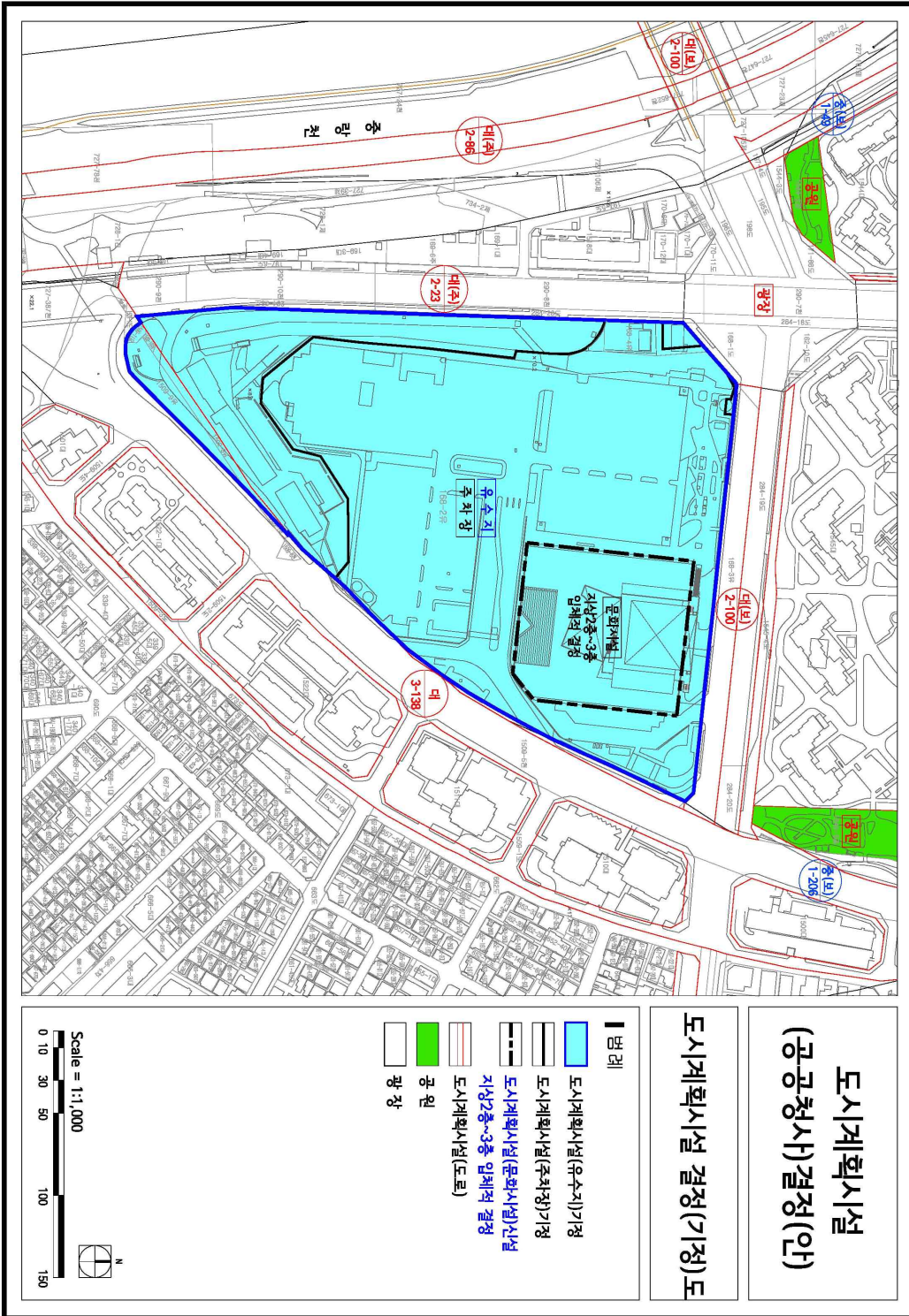
■ 결정사유서

구분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신설	공공청사	■ 신설 증) 1,100㎡	■ 노후된 용마지구대 시설환경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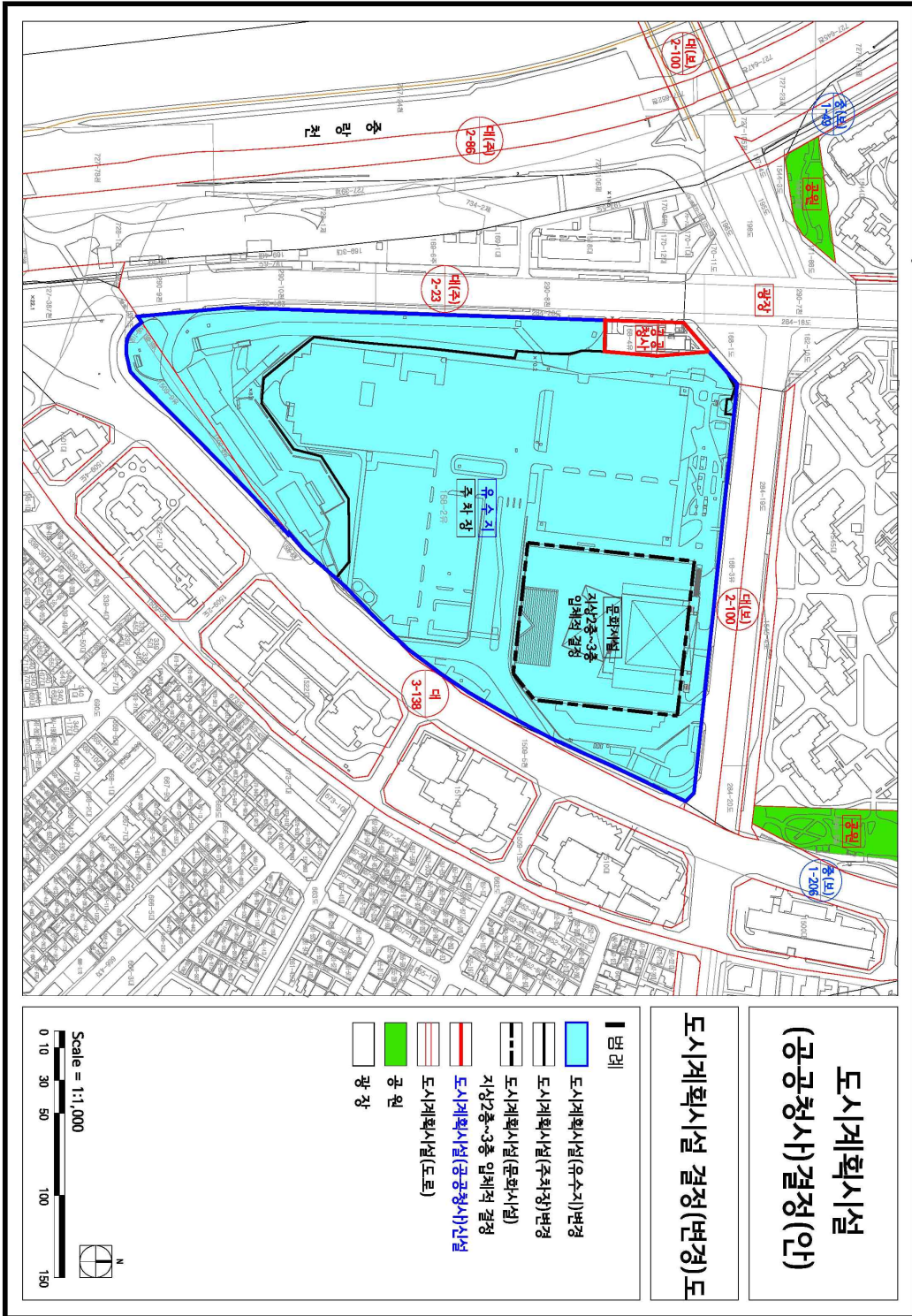
마. 관계도서 : 생략 (열람장소 비치)

바. 본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랑구청 도시계획과(☎2094-21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 기정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 변경 -



◆ 도봉구공고 제2024-912호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 체결 공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2에 의거 도시공원 부지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30일
도 봉 구 청 장

1.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 체결 내용
 - 가. 시 설 명 : 초안산 도시자연공원구역
 - 나. 위 치 :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산137-61번지
 - 다. 지 목 : 임야
 - 라. 부지사용계약 면적 : 134㎡
 - 마. 계약목적 :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공원·녹지 조성 등을 통하여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부지사용 계약일 : (최초) 2021. 7. 1.
3. 부지사용 (연장)계약기간 : 2024. 6. 1. ~ 2027. 5. 31.(3년)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청 공원여가과(☎2091-37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로구공고 제2024-1088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우수지, 체육시설, 문화시설, 도로) 결정(변경)(안)
재열람 공고**

1. 구로구 구로동 689-7 일원 신구로우수지 체육시설 및 문화시설 조성을 위하여 구로구 공고 제2023-1403호(2023. 7.27.)로 열람공고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우수지, 체육시설, 문화시설, 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2024년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재열람공고 합니다.

2024년 5월 30일
구로구청장

가. 도시계획시설(우수지, 체육시설, 문화시설, 도로) 결정(변경)(안)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2	107	33~143	주간선 도로	10,330 (105)*	영등포구 양화동 10-2	금천구 독산동 706-1	자동차 전용도로	서부 간선도로, 안양천	서고 제2014-69호 ('14.2.27)	-
변경	대로	2	107	33~143	주간선 도로	10,330 (105)*	영등포구 양화동 10-2	금천구 독산동 706-1	자동차 전용도로	서부 간선도로, 안양천	서고 제2014-69호 ('14.2.27)	체육시설(709㎡), 문화시설(844㎡) 중복결정
신설	소로	3	1	2.5	특수도로	50	남부 순환로	신구로 우수지	보행자 전용도로	구일로, 남부순환로	-	체육시설(40㎡), 도로(129㎡) 중복결정

* ()는 도시계획시설(우수지) 내 연장

2) 문화시설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문화시설	-	구로구 구로동 689-7	-	증)2,525	2,525	-	중복결정 지상: 문화시설 지하: 우수지, 대로2류

○ 건축물의 범위 결정조서(문화시설)

구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비고
내용	60% 이하	400% 이하	4층 이하	

3) 체육시설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㉔	체육 시설	-	구로구 구로동 689-7 일대	-	증)25,029	25,029	-	중복결정 지상: 체육시설 지하: 유수지, 대로2류

4) 유수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㉕	유수지	유수시설	구로구 구로동 689-7 일대	52,800	감)593	52,207	'76.03.26 (서고 36호)	면적 변경 중복결정 지상: 문화시설, 체육시설 지하: 유수지

나.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다. 열람장소 : 구로구청 도시계획과(신관3층) (문의 : ☎02-860-2955)

라. 관련도서 : 홈페이지 게시자료 및 열람장소에 비치된 자료 참고

마. 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유수지, 체육시설, 문화시설, 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 도시계획과(☎02-860-2955)로 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구로구공고 제2024-1100호

온수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열람공고

건설부고시 제465(1971.08.06.)호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최초 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 1999-11호 (1999.01.20.)로 공원조성계획 최초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 2022-254호(2022.06.16.)로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최종 고시된 온수근린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열람공고합니다.

2024년 5월 30일
구로구청장

1. 공원현황

- 가. 도시계획시설(공원)명 : 온수근린공원
- 나. 위 치 : 서울시 구로구 오류동 산5-85번지 일대
- 다. 면 적 : 427,993.00㎡
구로구(163,983.70㎡), 양천구(264,009.30㎡)

2. 공고내용 : 온수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안)

- 가. 목 적 : 온수근린공원 중 문학지구 내 기초성된 지역의 현행화 및 조성계획 중 제반사항에 따른 변경계획을 수립·반영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휴식·여가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함
- 가. 변경내용 : 온수근린공원(문학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공원 내 시설 종류 및 면적 변경
- 나. 변경내역
 - 온수근린공원(문학지구) 시설면적 : 8,663.78㎡ → 7,507.74㎡ (감 1,156.04㎡)
 - 기반시설 : 4,043.61㎡ → 3,087.35㎡ (감 956.26㎡)
 - 조경시설 : 2,680.36㎡ → 2,577.90㎡ (감 102.46㎡)
 - 휴양시설 : 501.34㎡ → 167.69㎡ (감 333.65㎡)
 - 유희시설 : 196.50㎡ → 0㎡ (감 196.50㎡)
 - 운동시설 : 761.78㎡ → 1,382.20㎡ (증 620.42㎡)
 - 교양시설 : 282.99㎡ → 222.50㎡ (감 60.49㎡)
 - 편익시설 : 197.20㎡ → 70.10㎡ (감 127.10㎡)
 - 녹 지 : 18,102.92㎡ → 19,258.96㎡ (증 1,156.04㎡)

3. 관계도서 : 열람장소에 비치

4.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열람장소 : 구로구청 공원녹지과(☎02-860-3114)

6. 본 조성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열람장소에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수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조서

■ 은수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총괄표

구	분	변					경					전			변				비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시설면적 (㎡)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동수 응수 (동)	연면적 (㎡)	공작물 응수 (기)	동수 응수 (동)	연면적 (㎡)	공작물 응수 (기)	
				동수 응수 (동)	비대면적 (㎡)	연면적 (㎡)				공작물 응수 (기)									
	계	427,993.00	68,474.98	8	929.44	971.44	269	427,993.00	67,318.94	8	909.72	951.72	272						
	소계	427,993.00	68,474.98	8	929.44	971.44	269	427,993.00	67,318.94	8	909.72	951.72	272						
	지양지구	80,208.90	14,847.73	1	37.51	37.51		80,208.90	14,847.73	1	37.51	37.51							
	연의지구	28,155.50						28,155.50											
	강월지구	2,755.60	1,161.26	1	125.25	125.25	27	2,755.60	1,161.26	1	125.25	125.25	27						
	강신지구	15,463.20	1,710.26				9	15,463.20	1,710.26				9						
	농암지구	48,695.10	7,017.72	1	207.00	249.00	43	48,695.10	7,017.72	1	207.00	249.00	43						
	매봉지구	88,731.00	4,413.54				48	88,731.00	4,413.54				48						
	잣밭지구	77,320.60	17,508.19	2	48.74	48.74		77,320.60	17,508.19	2	48.74	48.74							

공원
시설
구역

구	분	경 전						경 후						비 고
		변			진			변			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공작물 (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공작물 (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반달지구	1,529.20	726.14	17			1,529.20	726.14	17					
	문학지구	26,766.70	8,663.78	7	1	242.22	26,766.70	7,507.74	10	1	222.50	222.50		
	텃밭지구	6,026.00	1,291.66	1	1	214.72	6,026.00	1,291.66	1	1	214.72	214.72		
	공동지구	888.00	485.62	1			888.00	485.62	1					
	벽산지구	26,074.70	3,767.60	36			26,074.70	3,767.60	36					
	온수골지구	7,985.30	2,060.77	10			7,985.30	2,060.77	10					
	온수체육지구	17,413.20	4,820.71	70	1	54.00	17,413.20	4,820.71	70	1	54.00	54.00		
	시설물 (범정40%이하)	68,474.98 / 427,993.00 x 100 = 16.00%						67,318.94 / 427,993.00 x 100 = 15.73%						감) 0.27%
	건폐율 (범정10%이하)	929.44 / 427,993.00 x 100 = 0.22%						909.72 / 427,993.00 x 100 = 0.21%						감) 0.01%

온수근린공원(문학지구) 조성계획결정(변경)조서

1. 총괄표

구	분	변			경			전			변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공작물 (기)	동수 (등)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동수 (등)	건 축 물			공작물 (기)
						바다면적 (㎡)	연면적 (㎡)					바다면적 (㎡)	연면적 (㎡)		
계		26,766.70	8,663.78	1	242.22	242.22	242.22	7	26,766.70	7,507.74	1.00	222.50	222.50	10	감) 1,136.32
기 반 시 설	소 계	4,043.61	4,043.61						3,087.35	3,087.35					감) 956.26
	도 로	3,772.37	3,772.37						2,875.66	2,875.66					감) 896.71
	광 장	271.24	271.24						211.69	211.69					감) 59.55
	조 경 시 설	2,680.36	2,680.36						2,577.90	2,577.90					감) 102.46
	휴 양 시 설	501.34	501.34					7	167.69	167.69				10	감) 333.65

구	관	변 경 진				변 경 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동수 (동)	비대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비대면적 (㎡)
유희시절		196.50	196.50								합) 196.50
운동시절		761.78	761.78				1,382.20				증) 620.42
교양시절		282.99	282.99	1	242.22	242.22	222.50	1.00	222.50	222.50	합) 60.49
편익시절		197.20	197.20				70.10				합) 127.10
관리시절											
복지맞기타		18,102.92					19,258.96				증) 1,156.04

2. 시설조서(문학지구)

구분	시설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동)	건축물(㎡) 바닥면적	연면적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동)	건축물(㎡) 바닥면적	연면적	공작물 (기)
	합계			26,766.70	8,663.78		1	242.22	242.22			26,766.70	7,507.74		1	222.50	222.50	10	감) 1,166.04	
	소계			4,043.61	4,043.61							3,087.35	3,087.35						감) 956.26	
	도로(소계)			3,772.37	3,772.37							2,875.66	2,875.66						감) 896.71	
	광장(소계)			271.24	271.24							211.69	211.69						감) 59.55	
기반 시설	광장-1	가-1	오류동 산 5-88입	24.53	24.53							35.82	35.82						변경	
	광장-2	가-2	오류동 산 5-88입	40.44	40.44															폐지
	광장-3	가-3	오류동 산 5-88입	49.27	49.27							7.88	7.88							변경
	광장-4	가-4	오류동 산 5-59입	8.11	8.11															폐지
	광장-5	가-5	오류동 산 5-59입	42.65	42.65							43.59	43.59							변경
	광장-6	가-6	오류동 산 5-18입	9.54	9.54															폐지
	광장-7	가-7	오류동 산 4면	44.11	44.11							44.11	44.11							
	광장-8	가-8	오류동 산 4면	52.59	52.59							70.06	70.06							변경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동)	건 축 물 (㎡) 바닥면적	연면적	공작물 양구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동)	건 축 물 (㎡) 바닥면적		연면적	공작물 양구물 (기)
	광장-9	가-9																		신설
	소계			2,680.36	2,680.36							2,577.90	2,577.90							감) 102.46
	전망테크-1	나-1	오류동 산 5-59임	39.84	39.84							48.00	48.00							변경
	전망테크-2	나-2	오류동 산 4임	13.92	13.92															폐지
	관철테크	다	오류동 산 4임	16.94	16.94															폐지
	데크쉘터-1	라-1	오류동 산 5-59임	115.66	115.66															폐지
	데크쉘터-2	라-2	오류동 산 5-89임	98.64	98.64															폐지
	잔디마당-1	마-1	오류동 산 5-59임	404.93	404.93							404.93	404.93							
	잔디마당-2	마-2	오류동 산 5-59임	277.16	277.16							277.16	277.16							
	잔디마당-3	마-3	오류동 산 4임	340.46	340.46															폐지
	장미원-1	바-1	오류동 산 4임	221.11	221.11															폐지
	장미원-2	바-2	오류동 산 5-63임 외	1,074.00	1,074.00							361.80	361.80							명칭변경 (초화→장미)

조정
시행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동)	건 축 물 (㎡) 바닥면적	연면적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동)	건 축 물 (㎡) 바닥면적		연면적	공작물 (기)		
조경 시설	장미원-3	바-3										바-3	오류동 산 5-63임 외	160.31	160.31						신설	
	이웃공원	가									가	오류동 산 5-88임	716.40	716.40							신설	
	문학정원-1	나-1									나-1	오류동 산 4임	389.10	389.10							신설	
	문학정원-2	나-2									나-2	오류동 산 4임	220.20	220.20							신설	
	생태연못	사	오류동 산 4임	77.70	77.70																	폐지
	소계				501.34	501.34									167.69	167.69				10	감) 333.65	
휴양 시설	휴게공간-1	아-1	오류동 산 5-63임	47.59	47.59						아-1	오류동 산 5-63임	47.59	47.59								폐지
	휴게공간-2	아-2	오류동 산 5-48임	138.03	138.03																	폐지
	휴게공간-3	아-3	오류동 1-23데 외	113.45	113.45																	폐지
	휴게공간-4	아-4	오류동 산 4임	80.13	80.13																	폐지
	휴게공간-5	아-5	오류동 산 4임	67.04	67.04																	폐지
	휴게공간-6	아-6	오류동 산 5-43임	10.00	10.00							아-6	오류동 산 5-43임	10.00	10.00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동)	건축물(㎡)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동)	건축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교양 시설	소계			282.99	282.99		1.00	242.22	242.22			222.50	222.50		1		222.50	222.50		감) 60.49		
	아외무대	파	오류동 1-23대	40.77	40.77																폐지	
	책읽터	1	오류동 신4입	242.22	242.22	철골조	1.00	242.22	242.22		1	오류동 신4입	222.50	222.50	철골조	1		222.50	222.50		감) 19.72 명경변경 (문화회관 → 책읽터)	
편의 시설	소계			197.20	197.20							70.10	70.10								감) 127.10	
	주차장-1	하-1	오류동 산 5-48입	101.20	101.20																	폐지
	주차장-2	하-2	오류동 산 4입	96.00	96.00						하-2	오류동 산 4입	70.10	70.10								변경 (주차장 일반2대 정애인:1대)
관리 시설	소계																					
복지 및 기타	소계			18,102.92								19,258.96									증) 1,166.04	
	복지			18,102.92								19,258.96										

3-2. 도로조서(문학지구)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m ²)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초	합 계				1,998.79	3,772.37					
변경					1,389.24	2,875.66					
당초	계				136.83	695.37					
변경					68.82	311.53					
당초	소 로	3류	1	2.5~6.5	28.80	78.65	진입로	공원경계	광장-1		
변경		3류	1	2.5~6.5	15.65	59.50	진입로	공원경계	광장-1		
폐지		3류	2	6.0	26.00	156.00	연결도로	소로3-3	산책로-13		
당초		3류	3	4.0	22.83	91.32	진입로	공원경계	소로3-2		
변경		3류	3	4.0	18.86	79.94	진입로	공원경계	산책로-14		
당초		3류	4	3.0	45.00	270.00	연결도로	광장-7	산책로-23		
변경		3류	4	3.6	20.11	72.69	연결도로	광장-7	주차장-2		
당초		3류	5	6.0	14.20	99.40	진입로	공원경계	산책로-36		
당초		계				1861.96	3077.00				
변경						1320.42	2564.13				
폐지	산책로	3류	1	2.0	6.40	12.80	산책로	소로3-1	휴게공간-2		
폐지		3류	2	1.5	31.60	47.40	산책로	광장-1	산책로-5		
폐지		3류	3	1.0	9.00	9.00	산책로	산책로-2	다목적운동장		
폐지		3류	4	1.0	11.70	11.70	산책로	산책로-2	다목적운동장		
폐지		3류	5	1.5	114.00	171.00	산책로	공원경계	산책로-41		
폐지		3류	6	1.0	13.45	13.45	산책로	다목적운동장	산책로-5		
폐지		3류	7	1.5	14.00	21.00	산책로	광장-2	산책로-5		
폐지		3류	8	1.5	14.20	21.30	산책로	광장-2	산책로-6		
폐지		3류	9	1.2	12.50	15.00	산책로	광장-3	광장-2		
폐지		3류	10	2.0	2.40	4.80	산책로	다목적운동장	광장-2		
폐지		3류	11	2.0	3.10	6.20	산책로	다목적운동장	어린이놀이터		
폐지		3류	12	3.0	27.30	81.90	산책로	다목적운동장	산책로-14		
폐지		3류	13	1.2	10.80	12.96	산책로	소로3-2	휴게공간-2		
당초		3류	14	3.0	21.00	63.00	산책로	소로3-3	광장-3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m ²)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변경	산책로	3류	14	3.0	116.00	348.00	산책로	소로3-3	광장-1	
폐지		3류	15	1.5	21.00	31.50	산책로	공원경계	산책로-14	
폐지		3류	16	1.8	6.80	12.24	산책로	광장-4	산책로-32	
당초		3류	17	1.2	101.50	121.80	산책로	산책로-36	광장-3	
변경		3류	17	1.5	101.68	152.53	산책로	산책로-14	산책로-36	
폐지		3류	18	1.5	11.80	17.70	산책로	산책로-32	광장-6	
당초		3류	19	1.5	53.80	80.70	산책로	산책로-22	산책로-32	
변경		3류	19	1.5	66.17	99.25	산책로	산책로-22	산책로-17	
폐지		3류	20	2.0	3.28	6.56	산책로	산책로-19	잔디마당-3	
폐지		3류	21	1.2	12.20	14.64	산책로	산책로-19	휴게공간-3	
당초		3류	22	1.5~4.0	14.83	49.32	산책로	광장-7	산책로-19	
변경		3류	22	1.5~4.0	17.38	53.10	산책로	광장-7	산책로-19	
당초		3류	23	1.2	104.25	125.10	산책로	소로3-4	산책로-19	
변경		3류	23	1.2	132.80	159.36	산책로	주차장-2	산책로-19	
당초		3류	24	1.2	67.25	80.70	산책로	산책로-22	산책로-23	
변경		3류	24	1.2	64.44	80.69	산책로	산책로-22	산책로-23	
당초		3류	25	1.2	29.00	34.80	산책로	산책로-24	산책로-19	
변경		3류	25	1.2	26.66	32.35	산책로	산책로-24	산책로-19	
당초		3류	26	1.2	11.25	13.50	산책로	산책로-25	산책로-23	
폐지		3류	27	1.2	32.30	38.76	산책로	산책로-23	산책로-23	
폐지		3류	28	1.5~4.5	5.00	8.65	산책로	산책로-23	잔디마당-3	
폐지		3류	29	3.0	2.65	7.95	산책로	산책로-23	휴게공간-5	
폐지		3류	30	2.0	3.10	6.20	산책로	휴게공간-5	산책로-32	
폐지	3류	31	1.2	141.80	170.16	산책로	산책로-44	산책로-23		
폐지	3류	32	1.8	291.20	524.16	산책로	산책로-33	광장-3	데크로드	
당초	3류	33	2.5	73.90	184.75	산책로	공원경계	공원경계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m ²)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산책로	3류	34	1.5	7.20	10.80	산책로	산책로-33	체력단련장	
당초		3류	35	1.0	3.00	3.00	산책로	체력단련장	산책로-33	
당초		3류	36	3.0	81.00	243.00	산책로	공원경계	광장-5	
당초		3류	37	3.0	6.50	19.50	산책로	공원경계	산책로-36	
당초		3류	38	2.0	10.90	21.80	산책로	공원경계	산책로-36	
당초		3류	39	1.0	43.00	43.00	산책로	산책로-36	산책로-41	
변경		3류	39	1.0	39.26	42.36	산책로	산책로-36	산책로-49	
당초		3류	40	3.0	3.40	10.20	산책로	공원경계	광장-5	
변경		3류	40	3.0	4.65	13.96	산책로	공원경계	광장-5	
당초		3류	41	1.5	120.00	180.00	산책로	산책로-5	공원경계	
변경		3류	41	3.0	76.65	230.40	산책로	광장-5	공원경계	
당초		3류	42	1.0	38.10	38.10	산책로	산책로-41	휴게공간-1	
변경		3류	42	1.0	46.20	49.10	산책로	산책로-41	휴게공간-1	
당초		3류	43	1.8	220.20	396.36	산책로	산책로-9	데크쉼터-1	데크로드
변경		3류	43	2.0	162.60	332.70	산책로	광장-3	휴게공간-1	
폐지		3류	44	1.8	50.30	90.54	산책로	공원경계	산책로-32	데크로드
신설		3류	45	2.0	18.00	36.00	산책로	산책로-43	전망데크	데크로드
신설		3류	46	2.0	25.35	50.70	산책로	산책로-14	산책로-43	데크로드
신설		3류	47	2.0	18.00	36.00	산책로	산책로-43	산책로-48	데크로드
신설		3류	48	2.0	42.50	93.00	산책로	산책로-17	산책로-49	데크로드
신설		3류	49	1.5	38.45	65.90	산책로	광장-5	산책로-451	
신설		3류	50	1.5	14.10	21.13	산책로	전망데크	산책로-49	
신설		3류	51	1.5	56.00	88.10	산책로	산책로-41	산책로-42	
신설		3류	52	1.5	17.78	26.67	산책로	산책로-51	산책로-42	
신설	3류	53	2.0	7.40	14.95	산책로	광장-9	산책로-23		
신설	3류	54	1.2	34.60	41.53	산책로	광장-8	산책로-23		

조성계획도 [변경후]

운수근린공원

●용량표

구분	총면적	4인용	6인용	8인용	10인용	12인용	14인용	16인용	18인용	20인용	22인용	24인용	26인용	28인용	30인용	32인용	34인용	36인용	38인용	40인용	42인용	44인용	46인용	48인용	50인용	52인용	54인용	56인용	58인용	60인용	62인용	64인용	66인용	68인용	70인용	72인용	74인용	76인용	78인용	80인용	82인용	84인용	86인용	88인용	90인용	92인용	94인용	96인용	98인용	100인용																																																																																																																																																																																																																																																																																																																																																																																																																																																																																																																																																																																																																																																	
부지 총 면적	427,693.00	80,208.00	15,463.20	2,755.60	261,152.50	2,755.60	15,463.20	80,208.00	427,693.00	48,685.10	9,737.00	1,947.40	18,731.00	3,746.20	7,492.40	11,238.60	14,984.80	18,731.00	22,477.20	26,223.40	29,969.60	33,715.80	37,462.00	41,208.20	44,954.40	48,700.60	52,446.80	56,193.00	59,939.20	63,685.40	67,431.60	71,177.80	74,924.00	78,670.20	82,416.40	86,162.60	89,908.80	93,655.00	97,401.20	101,147.40	104,893.60	108,639.80	112,386.00	116,132.20	119,878.40	123,624.60	127,370.80	131,117.00	134,863.20	138,609.40	142,355.60	146,101.80	149,848.00	153,594.20	157,340.40	161,086.60	164,832.80	168,579.00	172,325.20	176,071.40	179,817.60	183,563.80	187,310.00	191,056.20	194,802.40	198,548.60	202,294.80	206,041.00	209,787.20	213,533.40	217,279.60	221,025.80	224,772.00	228,518.20	232,264.40	236,010.60	239,756.80	243,503.00	247,249.20	251,000.00	254,750.00	258,500.00	262,250.00	266,000.00	269,750.00	273,500.00	277,250.00	281,000.00	284,750.00	288,500.00	292,250.00	296,000.00	299,750.00	303,500.00	307,250.00	311,000.00	314,750.00	318,500.00	322,250.00	326,000.00	329,750.00	333,500.00	337,250.00	341,000.00	344,750.00	348,500.00	352,250.00	356,000.00	359,750.00	363,500.00	367,250.00	371,000.00	374,750.00	378,500.00	382,250.00	386,000.00	389,750.00	393,500.00	397,250.00	401,000.00	404,750.00	408,500.00	412,250.00	416,000.00	419,750.00	423,500.00	427,250.00	431,000.00	434,750.00	438,500.00	442,250.00	446,000.00	449,750.00	453,500.00	457,250.00	461,000.00	464,750.00	468,500.00	472,250.00	476,000.00	479,750.00	483,500.00	487,250.00	491,000.00	494,750.00	498,500.00	502,250.00	506,000.00	509,750.00	513,500.00	517,250.00	521,000.00	524,750.00	528,500.00	532,250.00	536,000.00	539,750.00	543,500.00	547,250.00	551,000.00	554,750.00	558,500.00	562,250.00	566,000.00	569,750.00	573,500.00	577,250.00	581,000.00	584,750.00	588,500.00	592,250.00	596,000.00	599,750.00	603,500.00	607,250.00	611,000.00	614,750.00	618,500.00	622,250.00	626,000.00	629,750.00	633,500.00	637,250.00	641,000.00	644,750.00	648,500.00	652,250.00	656,000.00	659,750.00	663,500.00	667,250.00	671,000.00	674,750.00	678,500.00	682,250.00	686,000.00	689,750.00	693,500.00	697,250.00	701,000.00	704,750.00	708,500.00	712,250.00	716,000.00	719,750.00	723,500.00	727,250.00	731,000.00	734,750.00	738,500.00	742,250.00	746,000.00	749,750.00	753,500.00	757,250.00	761,000.00	764,750.00	768,500.00	772,250.00	776,000.00	779,750.00	783,500.00	787,250.00	791,000.00	794,750.00	798,500.00	802,250.00	806,000.00	809,750.00	813,500.00	817,250.00	821,000.00	824,750.00	828,500.00	832,250.00	836,000.00	839,750.00	843,500.00	847,250.00	851,000.00	854,750.00	858,500.00	862,250.00	866,000.00	869,750.00	873,500.00	877,250.00	881,000.00	884,750.00	888,500.00	892,250.00	896,000.00	899,750.00	903,500.00	907,250.00	911,000.00	914,750.00	918,500.00	922,250.00	926,000.00	929,750.00	933,500.00	937,250.00	941,000.00	944,750.00	948,500.00	952,250.00	956,000.00	959,750.00	963,500.00	967,250.00	971,000.00	974,750.00	978,500.00	982,250.00	986,000.00	989,750.00	993,500.00	997,250.00	1,001,000.00	1,004,750.00	1,008,500.00	1,012,250.00	1,016,000.00	1,019,750.00	1,023,500.00	1,027,250.00	1,031,000.00	1,034,750.00	1,038,500.00	1,042,250.00	1,046,000.00	1,049,750.00	1,053,500.00	1,057,250.00	1,061,000.00	1,064,750.00	1,068,500.00	1,072,250.00	1,076,000.00	1,079,750.00	1,083,500.00	1,087,250.00	1,091,000.00	1,094,750.00	1,098,500.00	1,102,250.00	1,106,000.00	1,109,750.00	1,113,500.00	1,117,250.00	1,121,000.00	1,124,750.00	1,128,500.00	1,132,250.00	1,136,000.00	1,139,750.00	1,143,500.00	1,147,250.00	1,151,000.00	1,154,750.00	1,158,500.00	1,162,250.00	1,166,000.00	1,169,750.00	1,173,500.00	1,177,250.00	1,181,000.00	1,184,750.00	1,188,500.00	1,192,250.00	1,196,000.00	1,199,750.00	1,203,500.00	1,207,250.00	1,211,000.00	1,214,750.00	1,218,500.00	1,222,250.00	1,226,000.00	1,229,750.00	1,233,500.00	1,237,250.00	1,241,000.00	1,244,750.00	1,248,500.00	1,252,250.00	1,256,000.00	1,259,750.00	1,263,500.00	1,267,250.00	1,271,000.00	1,274,750.00	1,278,500.00	1,282,250.00	1,286,000.00	1,289,750.00	1,293,500.00	1,297,250.00	1,301,000.00	1,304,750.00	1,308,500.00	1,312,250.00	1,316,000.00	1,319,750.00	1,323,500.00	1,327,250.00	1,331,000.00	1,334,750.00	1,338,500.00	1,342,250.00	1,346,000.00	1,349,750.00	1,353,500.00	1,357,250.00	1,361,000.00	1,364,750.00	1,368,500.00	1,372,250.00	1,376,000.00	1,379,750.00	1,383,500.00	1,387,250.00	1,391,000.00	1,394,750.00	1,398,500.00	1,402,250.00	1,406,000.00	1,409,750.00	1,413,500.00	1,417,250.00	1,421,000.00	1,424,750.00	1,428,500.00	1,432,250.00	1,436,000.00	1,439,750.00	1,443,500.00	1,447,250.00	1,451,000.00	1,454,750.00	1,458,500.00	1,462,250.00	1,466,000.00	1,469,750.00	1,473,500.00	1,477,250.00	1,481,000.00	1,484,750.00	1,488,500.00	1,492,250.00	1,496,000.00	1,499,750.00	1,503,500.00	1,507,250.00	1,511,000.00	1,514,750.00	1,518,500.00	1,522,250.00	1,526,000.00	1,529,750.00	1,533,500.00	1,537,250.00	1,541,000.00	1,544,750.00	1,548,500.00	1,552,250.00	1,556,000.00	1,559,750.00	1,563,500.00	1,567,250.00	1,571,000.00	1,574,750.00	1,578,500.00	1,582,250.00	1,586,000.00	1,589,750.00	1,593,500.00	1,597,250.00	1,601,000.00	1,604,750.00	1,608,500.00	1,612,250.00	1,616,000.00	1,619,750.00	1,623,500.00	1,627,250.00	1,631,000.00	1,634,750.00	1,638,500.00	1,642,250.00	1,646,000.00	1,649,750.00	1,653,500.00	1,657,250.00	1,661,000.00	1,664,750.00	1,668,500.00	1,672,250.00	1,676,000.00	1,679,750.00	1,683,500.00	1,687,250.00	1,691,000.00	1,694,750.00	1,698,500.00	1,702,250.00	1,706,000.00	1,709,750.00	1,713,500.00	1,717,250.00	1,721,000.00	1,724,750.00	1,728,500.00	1,732,250.00	1,736,000.00	1,739,750.00	1,743,500.00	1,747,250.00	1,751,000.00	1,754,750.00	1,758,500.00	1,762,250.00	1,766,000.00	1,769,750.00	1,773,500.00	1,777,250.00	1,781,000.00	1,784,750.00	1,788,500.00	1,792,250.00	1,796,000.00	1,799,750.00	1,803,500.00	1,807,250.00	1,811,000.00	1,814,750.00	1,818,500.00	1,822,250.00	1,826,000.00	1,829,750.00	1,833,500.00	1,837,250.00	1,841,000.00	1,844,750.00	1,848,500.00	1,852,250.00	1,856,000.00	1,859,750.00	1,863,500.00	1,867,250.00	1,871,000.00	1,874,750.00	1,878,500.00	1,882,250.00	1,886,000.00	1,889,750.00	1,893,500.00	1,897,250.00	1,901,000.00	1,904,750.00	1,908,500.00	1,912,250.00	1,916,000.00	1,919,750.00	1,923,500.00	1,927,250.00	1,931,000.00	1,934,750.00	1,938,500.00	1,942,250.00	1,946,000.00	1,949,750.00	1,953,500.00	1,957,250.00	1,961,000.00	1,964,750.00	1,968,500.00	1,972,250.00	1,976,000.00	1,979,750.00	1,983,500.00	1,987,250.00	1,991,000.00	1,994,750.00	1,998,500.00	2,002,250.00	2,006,000.00	2,009,750.00	2,013,500.00	2,017,250.00	2,021,000.00	2,024,750.00	2,028,500.00	2,032,250.00	2,036,000.00	2,039,750.00	2,043,500.00	2,047,250.00	2,051,000.00	2,054,750.00	2,058,500.00	2,062,250.00	2,066,000.00	2,069,750.00	2,073,500.00	2,077,250.00	2,081,000.00	2,084,750.00	2,088,500.00	2,092,250.00	2,096,000.00	2,099,750.00	2,103,500.00	2,107,250.00	2,111,000.00	2,114,750.00	2,118,500.00	2,122,250.00	2,126,000.00	2,129,750.00	2,133,500.00	2,137,250.00	2,141,000.00	2,144,750.00	2,148,500.00	2,152,250.00	2,156,000.00	2,159,750.00	2,163,500.00	2,167,250.00	2,171,000.00	2,174,750.00	2,178,500.00	2,182,250.00	2,186,000.00	2,189,750.00	2,193,500.00	2,197,250.00	2,201,000.00	2,204,750.00	2,208,500.00	2,212,250.00	2,216,000.00	2,219,750.00	2,223,500.00	2,227,250.00	2,231,000.00	2,234,750.00	2,238,500.00	2,242,250.00	2,246,000.00	2,249,750.00	2,253,500.00	2,257,250.00	2,261,000.00	2,264,750.00	2,268,500.00	2,272,250.00	2,276,000.00	2,279,750.00	2,283,500.00	2,287,250.00	2,291,000.00	2,294,750.00	2,298,500.00	2,302,250.00	2,306,000.00	2,309,750.00	2,313,500.00	2,317,250.00	2,321,000.00	2,324,750.00	2,328,500.00	2,332,250.00	2,336,000.00	2,339,750.00	2,343,500.00	2,347,250.00	2,351,000.00	2,354,750.00	2,358,500.00	2,362,250.00	2,366,000.00	2,369,750.00	2,373,500.00	2,377,250.00	2,381,000.00	2,384,750.00	2,388,500.00	2,392,250.00	2,396,000.00	2,399,750.00	2,403,500.00	2,407,250.00	2,411,000.00	2,414,750.00	2,418,500.00	2,422,250.00	2,426,000.00	2,429,750.00	2,433,500.00	2,437,250.00	2,441,000.00	2,444,750.00	2,448,500.00	2,452,250.00	2,456,000.00	2,459,750.00	2,463,500.00	2,467,250.00	2,471,000.00	2,474,750.00	2,478,500.00	2,482,25

조성계획도 [변경전]



은수근린공원(문학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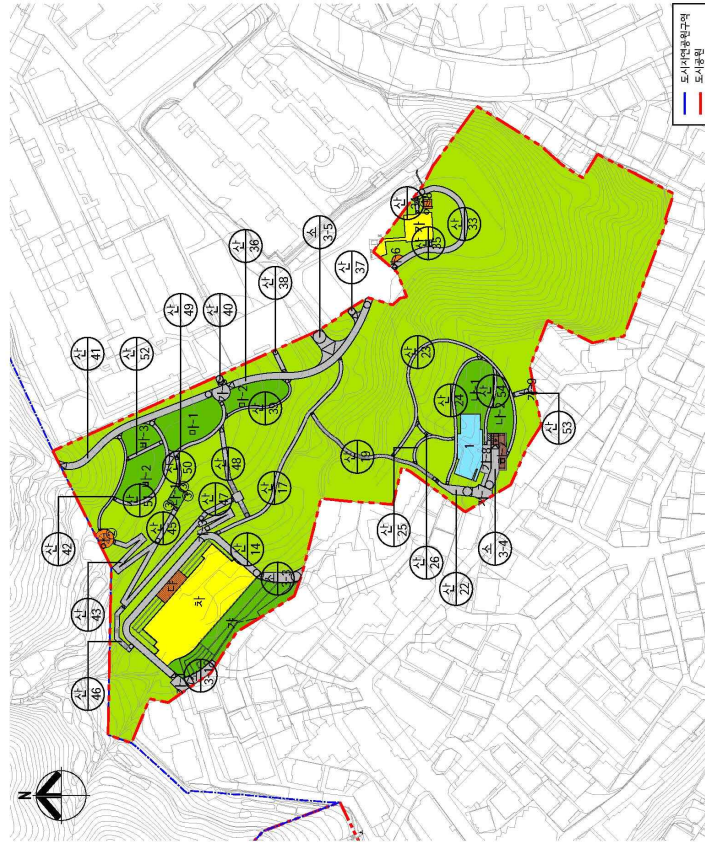
■ 시·군별 상세

구분	부지면적 (㎡)	서유면적 (㎡)	구조 면적 (㎡)	건축물면적 (㎡)	공유면적 (㎡)
기타	25,096.00	8,662.79	242.22	242.22	-
기타	4,035.61	4,035.61	-	-	-
기타	271.24	271.24	-	-	-
기타	24.53	24.53	-	-	-
기타	49.24	49.24	-	-	-
기타	8.11	8.11	-	-	-
기타	42.65	42.65	-	-	-
기타	9.54	9.54	-	-	-
기타	52.59	52.59	-	-	-
기타	2,695.36	2,695.36	-	-	-
기타	79.84	79.84	-	-	-
기타	16.84	16.84	-	-	-
기타	115.66	115.66	-	-	-
기타	98.64	98.64	-	-	-
기타	277.16	277.16	-	-	-
기타	340.46	340.46	-	-	-
기타	231.11	231.11	-	-	-
기타	77.70	77.70	-	-	-
기타	501.34	501.34	-	-	-
기타	47.69	47.69	-	-	-
기타	113.95	113.95	-	-	-
기타	80.13	80.13	-	-	-
기타	67.34	67.34	-	-	-
기타	16.00	16.00	-	-	-
기타	29.10	29.10	-	-	-
기타	-	-	-	-	-
기타	196.50	196.50	-	-	-
기타	781.78	781.78	-	-	-
기타	193.00	193.00	-	-	-
기타	92.66	92.66	-	-	-
기타	242.22	242.22	242.22	242.22	-
기타	197.20	197.20	-	-	-
기타	101.20	101.20	-	-	-
기타	18,102.92	18,102.92	-	-	-
기타	-	-	-	-	-



조성계획도 [변경후]

은수근린공원(문화지구)



■ 시설표지서

구분	명칭	면적 (㎡)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문화시설 (㎡)	비고
기본 시설	주차장	3,097.95	3,097.95	-	-	-	-	-	-
	관리사무소	211.69	211.69	-	-	-	-	-	-
	광장-1	35.82	35.82	-	-	-	-	-	-
	광장-2	7.88	7.88	-	-	-	-	-	-
	광장-3	4.21	4.21	-	-	-	-	-	-
	광장-4	44.11	44.11	-	-	-	-	-	-
	광장-5	70.95	70.95	-	-	-	-	-	-
	광장-6	10.23	10.23	-	-	-	-	-	-
	광장-7	16.00	16.00	-	-	-	-	-	-
	광장-8	46.90	46.90	-	-	-	-	-	-
공원 시설	산책로	404.93	404.93	-	-	-	-	-	-
	산책로-1	277.16	277.16	-	-	-	-	-	-
	산책로-2	127.77	127.77	-	-	-	-	-	-
	산책로-3	166.31	166.31	-	-	-	-	-	-
	산책로-4	716.40	716.40	-	-	-	-	-	-
	산책로-5	385.10	385.10	-	-	-	-	-	-
	산책로-6	167.69	167.69	-	-	-	-	-	-
	산책로-7	47.59	47.59	-	-	-	-	-	-
	산책로-8	10.00	10.00	-	-	-	-	-	-
	산책로-9	81.00	81.00	-	-	-	-	-	-
문화 시설	문화공연장	1,382.20	1,382.20	-	-	-	-	-	-
	문화공연장-1	1,192.20	1,192.20	-	-	-	-	-	-
	문화공연장-2	190.00	190.00	-	-	-	-	-	-
	문화공연장-3	200.00	200.00	-	-	-	-	-	-
	문화공연장-4	81.00	81.00	-	-	-	-	-	-
	문화공연장-5	10.00	10.00	-	-	-	-	-	-
	문화공연장-6	10.00	10.00	-	-	-	-	-	-
	문화공연장-7	10.00	10.00	-	-	-	-	-	-
	문화공연장-8	10.00	10.00	-	-	-	-	-	-
	문화공연장-9	10.00	10.00	-	-	-	-	-	-
기타 시설	주차장	222.50	222.50	-	-	-	-	-	-
	주차장-1	222.50	222.50	-	-	-	-	-	-
	주차장-2	222.50	222.50	-	-	-	-	-	-
	주차장-3	222.50	222.50	-	-	-	-	-	-
	주차장-4	222.50	222.50	-	-	-	-	-	-
	주차장-5	222.50	222.50	-	-	-	-	-	-
	주차장-6	222.50	222.50	-	-	-	-	-	-
	주차장-7	222.50	222.50	-	-	-	-	-	-
	주차장-8	222.50	222.50	-	-	-	-	-	-
	주차장-9	222.50	222.50	-	-	-	-	-	-



구분	면적 (㎡)	비율 (%)
문화시설	1,382.20	100.00
공원시설	404.93	29.29
기타시설	222.50	16.10
합계	2,009.63	146.39

◆ 관악구공고 제2024-1128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관악11) 보상계획 공고-봉천동 산58일대

「건설부고시 제369호(1980.11.15.)」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서울시고시 제 2019-210호(2019.07.04.)」로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고시되고, 「서울시고시 제2024-45호(2024.04.22.)」로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 관악산도시자연공원(관악11)」 중 봉천동 산58일대의 보상사업을 부지사용계약 종료에 따라 시행하고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편입 토지 내 지장물권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권리자)은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 이의신청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5월 30일
관 악 구 청 장

1. 사업개요

- 가. 사업위치 : 관악구 봉천동 산58번지 일대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 2) 명 칭 : 2019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 관악산도시자연공원(관악11)
 - 3) 사업내용 :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 및 공원조성 등
 - 4) 면 적 : 8,950㎡
- 다. 사업시행자 : 관악구청장(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45)
- 라. 시설관리청 : 서울특별시청
- 마. 사업기간 : 2020. 2. 13. ~ 2025. 12. 31.

2. 보상대상

- 가. 토 지: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산58번지 외 2필지(3,768㎡)
- 나. 지장물권: 상기 토지상의 지장물권(권리포함) 별지참조
 - ※ 세부내역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토지 및 지장물권 조서 열람 가능하며, 개인별 보상대상(물건조서)은 개별 통지함.

3. 보상계획 열람 및 이의신청

- 가. 열람(이의신청)기간: 2024. 5. 30. ~ 2024. 6. 13.(15일간)
- 나.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관악구청 공원녹지과 관악산공원관리팀 (☎02-879-6524)
- 다. 이의신청: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이의신청)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공원녹지과(관악산공원관리팀)로 서면 제출

4. 보상절차 및 방법

가. 보상절차: 보상계획 공고(열람 및 이의신청) ⇒ 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 ⇒ 보상협의요청 ⇒ 보상협의 ⇒ 소유권이전 및 보상금 지급(계좌입금)

※ 협의 불성립의 경우: 수용재결 ⇒ 재결보상금 지급 또는 공탁

나. 보상금 산정방법: 2개 감정평가업체(서울시1, 관악구1 추천) 또는 3개 감정평가업체(서울시1 및 관악구1, 토지소유주1 추천)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지급(계좌입금)

5. 보상시기

- 2024년 6월(1차 보상협의 진행예정)
- 보상금액, 구비서류 등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감정평가 완료 후 보상시기에 맞춰 개별 통지(우편발송) 안내할 예정
- 본 사업은 여건에 따라 보상물건 및 추진시기 등이 변동 또는 조정될 수 있음
- 토지 내 지장물건에 설정된 권리(근저당권, 압류 및 가압류 등)는 해지 후 계약체결
- 보상 감정평가전 세입자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부분 제출 요청

6. 기타사항

- 편입토지 내 지장물 점유자와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개별통지하고, 주소나 거소 불명으로 인하여 송달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서 공시 송달을 대신합니다.
- 지장물건 조서내용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추후 관계법령에 위반되거나 점유사실이 허위인 물건으로 확인되면 보상대상에서 제외되며, 점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주소 등 변동사항이 있으면 우리구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문의사항은 관악구 공원녹지과(☎02-879-6524)로 문의바랍니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6. 6. 14.>

토지 조서

공익사업의 명칭		2019년 정박지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 관악산도시자연공원(관악1)
사업인정의 근거 및 고시일		관악구고시 제2021-195호(2021.12.30.)
사업시행자	성명(또는 명칭)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주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45
물건소유자	성명(또는 명칭)	전주이씨 익양군파 청계리장계령계문중
	주소	의왕시 청계동 338

토지의 명세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목	현실 적인 이용 상황	전체 면적 (㎡)	편입면 적 (㎡)	용도지역 및 지구	관계인			비고
							성명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관악구 봉천동	산58	임야	임야	581	581	공원	전주이씨 익양군파	의왕시 청계동 338		
	산58-3	임야	임야	2,791	2,791					
	산58-1	임야	임야	396	396					

그 밖에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사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토지조서를 작성합니다.

2024년 4월 19일

사업시행자

관악구청장 (인)

토지소유자

전주이씨 익양군파 장계령계문중 대표이 (서명 또는 인)

관계인

토지소유자(관계인 포함)가 서명(인)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토지소유자별로 작성합니다.
2. 해당 공익사업에 따라 토지가 분할되는 경우에는 분할 전의 지번은 "지번(원래 지번)"란에 ()로 적습니다.
3. "관계인"란에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를 적습니다.
4. 공부(公簿)상 면적과 실측(實測) 면적이 다른 경우 실측 면적을 "비고"란에 적습니다.
5. 도로부지인 경우에는 도로의 구분, 이용상황 및 위치 등 그 특성을 "비고"란에 다른 참고사항과 같이 적습니다.

210mm x 297mm [백상지 80g/㎡]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6. 6. 14.>

물 건 조 서

공익사업의 명칭	2019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 관악산도시자연공원(관악11)	
사업인정의 근거 및 고시일	관악구고시 제2021-195호(2021.12.30.)	
사업시행자	성명(또는 명칭)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주 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45
물건소유자	성명(또는 명칭)	전주이씨 익양군파 청계리장계령계문중
	주 소	의왕시 청계동 338

물건의 명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면적)	관 계 인			비고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관악구 봉천동	산58	목련나무	Ø300	1	전주이씨 익양군파	의왕시 청계동 338		

그 밖의 물건은 별지 참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물건조서를 작성합니다.

2024년 4월 19일

사업시행자

관악구청장 (인)

물건소유자

전주이씨 익양군파 장계령계문중 대표이 (서명 또는 인)

관 계 인

토지소유자(관계인 포함)가 서명(인)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물건소유자별로 작성합니다.
2. 건물이 일부 편입되는 경우에는 "수량(면적)"란에 편입 면적을 적고, "비고"란에 연면적을 적습니다.
3. "관계인"란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를 적습니다.
4. 공부(公簿)상 면적과 실측(實測) 면적이 다른 경우에는 공부상 면적을 "비고"란에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물건의 명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면적)	단위	관계인			비고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관악구 봉천동	산58	주목	∅120	2	주	전주이씨 의왕시 익양군파 청계동 338			
		복숭아나무	∅280	1	주				
		감나무	∅300	2	주				
		단풍나무	∅350, ∅400	2	주				
		이팝나무		1	주				
		밤나무	∅440	1	주				
		벚나무	∅370, ∅400	2	주				
		은행나무	∅500	1	주				
		두릅	∅110~150	5	주				
		엄나무	∅200	1	주				
		메쉬웬스	2,000×1,600	15	경간				
	산58-3	분묘		5	개				
		활개		1	개				
		묘비	석재	3	개				
		제상	석재	3	개				
		안내판	스테인레스	1	개				
		매실나무	∅200	2	주				
		잣나무	∅160~280	110	주				
		메쉬웬스	2,000×1,600	38	경간				
		단풍나무	∅350	1	주				
	산58-1	반송		23	주				
		사철		30	주				
		조팝나무		20	주				

◆ 강남구공고 제2024-1392호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 체결 공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라 도시공원(대모산도시자연공원구역) 부지사용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2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30일
강 남 구 청 장

1.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 체결내역

연번	공원명	위치(소재지)	지목	부지사용계약면적(㎡)
1	대모산도시자연공원구역	강남구 개포동 산212-2	임야	20,849㎡
2	대모산도시자연공원구역	강남구 일원동 산63-1	임야	68,433㎡

2. 부지사용 계약일: 2024. 5. 27.

3. 부지사용 계약기간: 2024. 5. 27. ~ 2027. 5. 26.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청 공원녹지과(☎02-3423-699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강동구공고 제2024-1158호

**천호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
천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공고 제2003-372호(2003.11.18.)에 의거 천호뉴타운지구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281호(2014.7.31.)에 의거 천호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고시(의제처리)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368호(2014.10.3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376호(2014.11.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59호(2015.3.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321호(2015.10.1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79호(2016.9.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45호(2017.4.2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36호(2017.7.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28호(2018.1.2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94호(2018.3. 29.),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272호(2018.8.3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391호(2018.12.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243호(2019.7.25.),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653호(2021.12.2.),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734호(2021.12.30.),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57호(2023.2.23.),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205호(2023.5.25.)로 변경결정 고시된 천호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 3항,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 공 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열람하오 니, 본 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공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강동구청 도시계획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5월 30일
강 동 구 청 장

- 공람기간 : 2024. 05. 29. ~ 2024. 06. 13. [강동구 구보 공고일(29일) 기준]
- 공람 및 의견서 제출 장소 : 강동구청 제2청사 3층 도시계획과 (☎02-3425-6052)
- 공람내용 : 천호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 천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 재정비촉진지구 및 촉진계획 결정(변경) (안)

가.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 및 지정 목적 (변경)

명칭	유형	위치		면적(㎡)			지정목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천호 재정비촉진지구	주거지형	강동구 천호동 362-60 일대	강동구 천호동 578 일대	409,010.9	감) 337,517.1	71,493.8	강동구 천호동 일대 기성 시가지 재정비 및 활성화, 집장촌과 노후 재래시장 정비 등을 통해 신 주거 문화 중심지로 개발하기 위함

나.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목표 연도 : 변경

- 1) 기준년도 : 2004년
- 2) 목표연도 : (기정) 2022년 / (변경) 2026년

다.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 변경

1)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변경)

구 분		면 적(㎡)			비율(%)
		기정	변경	변경 후	
계		409,010.9	감) 337,517.1	71,493.8	100.0
획지	소계	282,893.5	감) 282,893.5	54,479.4	76.2
	공동주택용지	45,689.6	감) 19,173.2	26,516.4	37.1
	근린생활시설용지	33,468.8	감) 33,468.8	-	-
	주상복합용지	27,510.0	-	27,510.0	38.5
	종교용지	453.0	-	453.0	0.6
	존치	175,772.1	감) 175,772.1	-	-
정비기반시설	소계	126,117.4	감) 126,117.4	-	-
	유수지	10,626.6	감) 10,626.6	-	-
	공공청사	1,406.2	-	1,406.2	2.0
	공원	35,407.7	감) 29,986.7	5,421	7.6
	도로	78,676.9	감) 68,489.7	10,187.2	14.2

※ 촉진지구 제척에 따른 단순 면적 변경

2) 인구·주택수용계획 (변경없음)

3) 교육시설, 기반시설 설치계획 (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5	공공청사	-	천호동 422-1	1,406.2	-	1,406.2	09.11.26	천호1구역 (주차장, 체육시설 중복결정)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삭제	1	유수지	천호 유수지	천호동 329	10,626.6	-	10,626.6	75.10.07	-
기정	5	체육시설	수영장	천호동 422-1	6,827.2	-	6,827.2	-	천호1,3구역 (공공청사, 소공원 중복결정) (지하1~지하3층)

※ 축진지구 제척에 따른 단순 조서내용 삭제

4) 공원 녹지 및 환경계획 (변경)

구분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삭제	14	천호 근린공원	근린 공원	천호동 360	26,696.8	-	26,696.8	97.1.15	도로중복결정
삭제	21	천사공원	어린이 공원	천호동 363-5	1,617.2	-	1,617.2	72.4.22 09.11.26	천호5구역
기정	47-1	-	소공원	천호동 422-1	5,421.0	-	5,421.0	-	천호1,3구역
삭제	-	광진공원	어린이 공원	천호동 338-19	1,672.7	-	1,672.7	-	천호7구역

※ 축진지구 제척에 따른 단순 조서내용 삭제

5) 교통계획 (변경)

(1) 도로 (변경)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삭제	대로	3	110	25~33	주간선 도로	3,000 (456)	풍납동 광로5	암사동 강변	일반도로	올림픽로	2009.11.30. (서고2009-472)	
기정	중로	1	406	20 (2~6)	보조 간선 도로	618 (235)	천호동 217-134	천호동 550-6	일반도로	구천면로	2001.6.2. (서고 158) 2006.7.27. (서고2006-264)	구천면로 (천호1구역)
기정	소로	2	16	8~10 (2~8)	집산 도로	549 (162)	천호동 367-1	천호동 393-20	일반도로	-	2021.12.2. (서고2021-653)	천호3구역
기정	중로	2	1	15	집산 도로	399	천호동 357-1	천호동 397-16	일반도로	-	2006.2.8. (서고2006-49)	천호1구역, 천호2구역
삭제	소로	2	44	8	국지 도로	150	천호동 337-98	천호동 337-17	일반도로	-	-	천호7구역
삭제	중로	2	20	15	집산 도로	65	천호동 357-12	천호동 357-1	일반도로	-	2005.10.13. (강고2005-59)	존치시설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삭제	소로	2	17	8	국지 도로	237	천호동 392-1	천호동 386-19	일반도로	-	-	천호5구역
기정	중로	3	7	12~15 (8~14)	집산 도로	134	천호동 417-57	천호동 423-158	일반도로	-	1969.1.18	천호1구역, 천호2구역
삭제	소로	1	5	10	국지 도로	45	천호동 373-2	천호동 373-2	일반도로	-	-	천호13구역
삭제	소로	1	6	10	국지 도로	71	천호동 377	천호동 377	일반도로	-	-	천호13구역
삭제	소로	2	8	8	국지 도로	108	천호동 358-9	천호동 358-3	일반도로	-	-	천호3구역
기정	소로	2	9	8~10	국지 도로	119	천호동 373-2	천호동 563-1	일반도로	-	2006.2.8. (서고2006-49)	천호2구역
삭제	소로	2	11	8	국지 도로	214	천호동 361	천호동 362-3	일반도로	-	-	천호11구역
기정	소로	3	8	6	국지 도로	66	천호동 357-1	천호동 373-2	일반도로	-	2006.2.8. (서고2006-49)	천호2구역
삭제	소로	2	18	8	국지 도로	200	천호동 391-1	천호동 382-13	일반도로	-	1978.6.1	천호5구역
삭제	소로	3	1	6	국지 도로	120	천호동 398-5	천호동 399-50	일반도로	-	-	천호4구역
삭제	소로	3	7	6	국지 도로	100	천호동 282-25	천호동 280-15	일반도로	-	1990.11.12	천호6구역

※ ()는 천호 재정비촉진지구 내 사항임
 ※ 촉진지구 제척에 따른 단순 조서내용 삭제

(2) 주차장 (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삭제	1	주차장	천호동 329	7,004.0	-	7,004.0	-	천호7구역
기정	2	주차장	천호동 422-1	6,827.2	-	6,827.2	-	천호1, 3구역

※ 촉진지구 제척에 따른 단순 조서내용 삭제

- 6) 경관계획 (변경없음)
- 7)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없음)
- 8)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에 관한 계획 (변경)

구분	면적(㎡)			사업 방식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총 계	409,010.9	감) 337,517.1	71,493.8	-	
재정비 촉진구역	소 계	71,493.8	-	71,493.8	-

구 분		면 적(㎡)			사업 방식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천호1구역	38,509.2	-	38,509.2	도시정비형 재개발	'24.09 완료 예정	
	천호2구역	9,900.9	-	9,900.9	주택재건축	'22.07 완료	
	천호3구역	23,083.7	-	23,083.7	주택재건축	'26.01 완료 예정	
존치 지역	소 계	337,517.1	감) 337,517.1	-	-		
	존치 관리 구역	천호4구역	15,503.7	감) 15,503.7	-	-	
		천호5구역	50,796.2	감) 50,796.2	-	-	
		천호6구역	40,201.3	감) 40,201.3	-	-	
		천호7구역	117,313.2	감) 117,313.2	-	-	
		천호11구역	10,840.9	감) 10,840.9	-	-	
		천호12구역	6,401.2	감) 6,401.2	-	-	
		천호13구역	24,802.7	감) 24,802.7	-	-	
		천호14구역	13,980.4	감) 13,980.4	-	-	
	존치시설 등	57,677.5	감) 57,677.5	-	-		

9) 존치지역의 관리 및 정비계획 (변경)

-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계획은 일괄 폐지 후,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

10) 용도지역·지구계획 (변경)

(1) 용도지역 (변경)

구 분		면 적(㎡)			비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409,010.9	감) 337,517.1	71,493.8	100.0	
주거 지역	소 계	395,879.9	감) 330,969.1	64,910.8	90.8	
	제1종일반주거지역	49,403.9	감) 47,489.1	1,914.8	2.7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138,204.4	감) 138,204.4	-	-	
	제2종일반주거지역	106,072.1	감) 84,903.2	21,168.9	29.6	
	제3종일반주거지역	74,794.5	감) 60,372.4	14,422.1	20.2	
	준주거지역	27,405.0	-	27,405.0	38.3	
상업 지역	소 계	13,131.0	감) 6,548.0	6,583.0	9.2	
	일반상업지역	13,131.0	감) 6,548.0	6,583.0	9.2	

※ 축진지구 제척에 따른 편입면적 단순 변경

- 11) 축진사업별 용적률, 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 (변경없음)
- 12)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 (변경없음)
- 13)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 (변경없음)
- 14)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 15) 광고물 관리계획 (변경없음)
- 16) 폐기물 관리계획 (변경없음)
- 17) 방재계획 (변경없음)
- 18) 정보화계획 (변경없음)
- 19) 에너지순환계획 (변경없음)
- 20) 특성화계획 (변경없음)
- 21) 기타계획 (변경없음)
- 22) 재정비축진구역별 정비계획 (변경없음)

② 도시관리계획(천호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계획 : 신설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구 분	도면 표시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	천호 지구단위계획구역	강동구 천호동 578 일대	-	증) 411,392.2	411,392.2	-	-

※ 상기 면적은 cad상 구적면적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음

나.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사항

(1) 용도지역

구 분	면 적(㎡)	비율(%)	비고
계	411,392.2	100.0	
주거지역	소 계	398,261.2	96.8
	제1종일반주거지역	49,403.9	12.0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138,204.4	33.6
	제2종일반주거지역	108,453.4	26.4
	제3종일반주거지역	74,794.5	18.2
	준주거지역	27,405.0	6.7
상업지역	소계	13,131.0	3.2
	일반상업지역	13,131.0	3.2

※ 상기 면적은 cad상 구적면적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음

(2) 용도지구 : 해당없음

2)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1) 교통시설

① 도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대로	3	110	25~33	주간선 도로	3,000 (456)	풍납동 광로5	암사동 강변	일반도로	올림픽로	2009.11.30. (서고2009-472)	
기정	중로	1	406	20 (2~6)	보조 간선 도로	618 (235)	천호동 217-134	천호동 550-6	일반도로	구천면로	2001.6.2. (서고 158) 2006.7.27. (서고2006-264)	구천면로 (천호1구역)
기정	소로	2	16	8~10 (2~8)	집산 도로	549	천호동 367-1	천호동 393-20	일반도로	-	2021.12.2. (서고2021-653)	천호3구역
기정	중로	2	1	15	집산 도로	399	천호동 357-1	천호동 397-16	일반도로	-	2006.2.8. (서고2006-49)	천호1구역, 천호2구역
기정	소로	2	44	8	국지 도로	150	천호동 337-98	천호동 337-17	일반도로	-	-	
기정	중로	2	20	15	집산 도로	65	천호동 357-12	천호동 357-1	일반도로	-	2005.10.13. (강고2005-59)	
기정	소로	2	17	8	국지 도로	237	천호동 392-1	천호동 386-19	일반도로	-	-	
기정	중로	3	7	12~15 (8~14)	집산 도로	134	천호동 417-57	천호동 423-158	일반도로	-	1969.1.18	천호1구역, 천호2구역
기정	소로	1	5	10	국지 도로	45	천호동 373-2	천호동 373-2	일반도로	-	-	
기정	소로	1	6	10	국지 도로	71	천호동 377	천호동 377	일반도로	-	-	
기정	소로	2	8	8	국지 도로	108	천호동 358-9	천호동 358-3	일반도로	-	-	천호3구역
기정	소로	2	9	8~10	국지 도로	119	천호동 373-2	천호동 563-1	일반도로	-	2006.2.8. (서고2006-49)	천호2구역
기정	소로	2	11	8	국지 도로	214	천호동 361	천호동 362-3	일반도로	-	-	
기정	소로	3	8	6	국지 도로	66	천호동 357-1	천호동 373-2	일반도로	-	2006.2.8. (서고2006-49)	천호2구역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2	18	8	국지 도로	200	천호동 391-1	천호동 382-13	일반도로	-	1978.6.1	
기정	소로	3	1	6	국지 도로	120	천호동 398-5	천호동 399-50	일반도로	-	-	
기정	소로	3	7	6	국지 도로	100	천호동 282-25	천호동 280-15	일반도로	-	1990.11.12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사항임

② 주차장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주차장	천호동 329	7,004.0	-	7,004.0	-	
기정	2	주차장	천호동 422-1	6,827.2	-	6,827.2	-	천호1, 3구역

(2) 공간시설

① 공원

구분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4	천호 근린공원	근린 공원	천호동 360	26,696.8	-	26,696.8	97.1.15	도로중복결정
기정	21	천사공원	어린이 공원	천호동 363-5	1,617.2	-	1,617.2	72.4.22 09.11.26	
기정	47-1	-	소공원	천호동 422-1	5,421.0	-	5,421.0	-	천호1,3구역
기정	-	광진공원	어린이 공원	천호동 338-19	1,672.7	-	1,672.7	-	

(3) 공공문화체육시설

① 공공청사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5	공공청사	-	천호동 422-1	1,406.2	-	1,406.2	09.11.26	천호1구역 (주차장, 체육시설 중복결정)

② 체육시설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5	체육시설	수영장	천호동 422-1	6,827.2	-	6,827.2	-	천호1,3구역 (공공청사, 소공원 중복결정) (지하1~지하3층)

(4) 방재시설

① 유수지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유수지	천호 유수지	천호동 329	10,626.6	-	10,626.6	75.10.07	-

3)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사항

① 가구 및 획지

구분	가구 번호	가구 개수	비고
신설	A1, A2, A3, A4, A5, A6, A7, A8, A9, A10, A11, A12, A13, A14, A15, A16, A17, A18, A19, A20, A21, A22, A23, A24, A25, A26, A27, A28, A29, A30, A31, A32, A33, A34, A35, A36, A37, A38, A39, A40, A41, A42, A43, A44, A45, A46, A47, A48, A49, A50, A51, A52, A53, A54, A55, A56, A57, A58, A59, A60, A61, A62, A63, A64, A65, A66, A67, A68, A69, A70, A71	71개 가구	결정도 참고
	B1, B2, B3	3개 가구 (특별계획구역)	

② 공동개발

구분	결정 내용		비고
	적용대상	계획내용	
공동개발 (특별지정)	공동개발 특별지정이 계획된 필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천면로 미확보 구간(중로 1-406)의 개설을 위하여, 개발 시 단독개발이 불가능한 필지 중 소유자가 상이한 경우 특별지정이 계획된 필지는 공동개발 시 필지분할선으로 계획된 부분을 도로로 조성 후 기부채납 	8개 필지
공동개발 (지정)	공동개발 지정이 계획된 필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천면로 미확보 구간(중로 1-406)의 개설을 위하여, 개발 시 단독개발이 불가능한 필지 중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 	4개 필지
공동개발 (권장)	공동개발 권장이 계획된 필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독개발이 불가능한 과소필지(90㎡ 미만), 부정형 필지, 맹지 등 	36개 필지

결정도
참고

- ※ 공동개발 특별지정이 계획된 필지는 공동개발 시 허용용적률이 아닌 상한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하며, 공공시설 부지 제공에 따른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등은 별도로 적용이 가능함
- ※ 기 결정된 공동개발 특별지정을 변경(필지 추가·제외) 시 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을 통해 변경 가능
- ※ 최대개발규모 범위 내 자율적 공동건축 허용

③ 필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 조서 (생략, 열람장소 비치 도서와 같음)

④ 최대개발규모

구분	적용대상	최대개발규모	비고
간선가로변	올림픽로, 구천면로, 천중로	제한 없음	결정도 참고
이면도로변	간선가로변 제외 지역	3,000㎡	

- ※ 간선부-이면부 통합개발 시 간선부 기준을 적용함
- ※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개발규모 적용 예외
 - 기 개발된 대지면적이 최대개발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 특별계획구역, 공동개발(권장)계획, 용도지역 조정 가능지 등의 계획지침에 따라 최대개발규모를 초과한 경우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 개별법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2) 건축물 용도에 관한 사항

① 불허용도

구분	계획 내용	비고
불허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주택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도시형 생활주택 중 소형주택)1)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주거용도 이외의 용도와 복합하는 경우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 시설, 정수장, 양수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설소,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골프연습장,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옥외철타골프연습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마권 장외발매소 등 유사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타골프연습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중 투전기업소, 카지노영업소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 	일반 상업 지역
불허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주택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도시형 생활주택 중 소형주택)1)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 시설, 정수장, 양수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골프연습장,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옥외철타골프연습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마권 장외발매소 등 유사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타골프연습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교육환경보호구역에 포함되는 대지에 한함) 	제3종 일반 주거 지역

구분	계획 내용	비고
<p>품역 C</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도시형 생활주택 중 소형주택)1)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 시설, 정수장, 양수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골프연습장,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옥외철타골프연습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마권 장외발매소 등 유사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타골프연습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및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교육환경보호구역에 포함되는 대지에 한함) 	<p>제2종 (7층) 및 제2종 일반 주거 지역</p>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계 법령에 의거 해당 용도지역에서 제한되는 건축물 및 시설은 불허

※ 공동개발, 용도지역 등 한 대지에 서로 다른 불허용도가 적용될 경우에는 면적이 더 넓은 대지에 적용되는 지침을 적용함

※ 주1) 도시형 생활주택 중 소형주택(전용 60㎡ 이하)은 불허용도로 하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용함

- 주차대수 기준 : 0.6대/세대 → 0.8대/세대

② 권장용도

구분	위치	적용대상	비고
권장 1	구천면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대규모점포), 상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일반상업지역
권장 2	구천면로 이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 및 상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제3종 일반주거지역

※ 권장용도 면적 : 권장용도는 전층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주차장 등 공용면적을 제외한 전체 연면적의 20% 이상 설치 시 권장용도를 준수한 것으로 인정

※ 용도지역 조정 가능지에서 용도지역을 상향하는 경우, 권장용도는 용도지역 조정 가능지 계획지침에 따름

※ 공동개발, 용도지역 등 한 대지에 서로 다른 권장용도가 적용될 경우에는 면적이 더 넓은 대지에 적용되는 지침을 적용함

(3) 건축물 밀도에 관한 사항

① 건폐율

구분		건폐율	비고
상업지역	일반상업	60% 이하	
주거지역	준주거	60%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50%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60%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60% 이하	
	제1종일반주거지역	60% 이하	

※ 건폐율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4조 적용
 ※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를 따름

② 용적률

구분	용적률			비고
	기준	허용	상한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600%이하	800%이하	법적용적률 2배이하 상업지역 중 상향 (건교부 고시 제198호, 71.4.7)
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250%이하	250%이하	법적용적률 2배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200%이하	200%이하	법적용적률 2배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200%이하	200%이하	법적용적률 2배이하

※ 상한용적률 산정은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제7조를 준수함
 ※ 법적용적률이란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하는 용도지역별 용적률을 말함
 ※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비율 및 용적률은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 제3항 관련 [별표3]을 따름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 개별법 및 관련 기준에 따른 개발사업 추진 시 해당 사업 운영 기준의 용적률 체계를 적용함
 ※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를 따름
 ※ 향후 추진과정에서 관련 법령 등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변경 시, 변경된 지침에 따라 계획 내용이 바뀔 수 있음

- 용적률 인센티브

구 분		일반상업지역 A (600%-800%)		
적용구역		일반상업지역		
용도지역		일반상업지역		
위치특성		간선부		
기준용적률/허용용적률		600%/800% 이하		
중점계획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호대로변 상업지역과 기능적 연계를 위한 적정 공동개발 및 권장용도 유도 • 간선변 창의적 건축 디자인 유도 		
항 목	세 분		완화기준(지침)	비고
중점 항목 (50% 이상)	공동개발	자율적 공동개발	필지수	$기준용적률 \times \alph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개 필지 : $\alpha=0.15$ • 3개 필지 : $\alpha=0.20$ • 4개 필지 이상 : $\alpha=0.25$
	건축물 용도	권장용도		$기준용적률 \times$ $(권장용도 면적/연면적) \times \alph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lpha=0.5$
	건축물 우수디자인			$기준용적률 \times \alph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lpha=0.2$
계획 유도 항목 (50% 이내)	대지내 공지	공개공지		$기준용적률 \times \{ (설치면적 - 의무면적) /$ $대지면적 \times \alpha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로티구조 : $\alpha=1.0$ • 침상형구조 : $\alpha=2.0$ • 개방형구조 : $\alpha=3.0$
		건축한계선		$기준용적률 \times (제공면적/대지면적) \times \alph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lpha=1.0$
		공공보행통로		$기준용적률 \times (조성면적/대지면적) \times \alph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lpha=1.0$
	건축물 용도	특정층(꼭대기층) 개방		$기준용적률 \times$ $(설치면적/연면적) \times \alph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lpha=1.0$ • 전용면적 기준
	지능형 건축물	지능형건축물 인증		$기준용적률 \times \alph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등급 : $\alpha=0.10$ • 2등급 : $\alpha=0.08$ • 3등급 : $\alpha=0.06$ • 4등급 : $\alpha=0.04$
	보행개선	가로지장을 이중화 또는 이전설치, 지하 연결통로 설치		$기준용적률 \times \alph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lpha=0.1$

※ 건축물 우수디자인의 세부 항목은 민간부문 시행지침 26조를 준용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용 여부 결정
 ※ 향후 추진과정에서 관련 법령 등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변경 시, 변경된 지침에 따라 계획 내용이 바뀔 수 있음

③ 높이

구분		높이(m)		적용 대상	비고
		최고	완화		
일반상업지역	간선도로변	120m	140m	올림픽로, 구천면로	결정도 참고
제3종일반주거지역	간선도로변	70m	미적용	올림픽로	
	이면도로변	50m		구천면로, 천중로, 이면부	
제2종(7층)·제2종 일반주거지역	간선도로변	70m		올림픽로	
	이면도로변	50m		구천면로, 천중로, 이면부	

- ※ 완화 높이 :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기부채납 시 완화높이를 적용하고, 상한용적률과 중복 적용 가능
→ 완화높이 : 최고높이 x [1 +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당초 대지면적)] ≤ 최고높이의 1.2배 이내
- ※ 간선도로변, 이면도로변 공동개발 시 간선부 높이 기준 적용
-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 개별법 및 관련 기준에 따른 개발사업 추진 시 해당 사업 운영 기준의 높이 체계를 적용함

(4) 건축물 배치 및 형태에 관한 사항

① 건축물 배치

- 건축선

구분	적용지역	계획내용	비고
건축 한계선	천중로14길	1m~2m	결정도 참고
	올림픽로77길	1m~3m	
	올림픽로, 구천면로	2m~3m	
	소로2-16, 그 외 도로	1m	
	천중로, 선사로, 올림픽로81길, 올림픽로79길, 올림픽로76길, 구천면로21길, 구천면로11길, 천중로2길, 천중로12길	2m	
	구천면로35길, 천중로(4m미만 일부)	0.5m~4.5m	

-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 개별법에 따른 개발사업 추진 시에는 민간부문 시행지침 40조에 따른 도로 확보계획을 준용하되(소로 2-16, 주요 도로 10m~12m 계획 등), 관련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함

② 건축물 형태

구분	계획 내용	비고
건축물의 형태 및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로활성화 및 보행 연속성을 위해 생활가로변 필로티 형태 금지 (도로변 건축물 길이의 1/2 이상이 도로에 인접 해야함) • 개구부는 연접 필지 내 기존 건축물의 높이와 조화되도록 건축 • 구역내 모든 건축물의 1층 개구부 및 1층부 창문은 안쪽으로 개폐되도록 설치 • 간선도로에 면한 건축물은 간선도로 방향으로 1층 개구부가 없는 벽면을 설치해서는 안됨 	결정도 참고

구분	계획 내용	비고
1층 바닥높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의 1층 바닥 높이는 접한 보도 또는 도로와 동일 높이로 계획 (무장애공간으로 계획) 	
외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벽의 외장, 재료, 색채에 있어 통일성을 유지하며, 주변 경관과 조화된 양질의 재료와 인접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는 색조 사용 폭 10m 이상의 도로에 면한 건축물은 개구부가 없는 벽면 노출을 금지한다. (단, 벽면에 조정, 상층부와 연결된 디자인 등 설계적 요소를 포함 한 경우는 제외) 	
투시벽 및 투시형 셔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폭 10m 이상의 도로에 면한 건축물은 1층 전면 벽면 면적의 50% 이상을 투시벽으로 처리 셔터 설치를 지양하되, 셔터 설치 시 가로에서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셔터 면적의 1/2 이상이 개방되어 있는 투시형으로 설치 	
측면공지 차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지의 측면경계선과 건물사이의 이격거리가 3m 미만이고, 이격부분이 통로로 사용되지 않을 경우, 이격공지는 조정식재 3m 이상의 이격공지는 보행자를 위한 통로 또는 공개공간 등으로 조성 권장 	
옥외 광고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등 관련 규정 준수 	
기타 구조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옥탑, 냉각탑, 환기구, 냉방배기장치 등의 건축설비는 도로변에 노출 설치 금지 보행로에 면한 건축물의 외벽면은 기계환기설비 및 쓰레기통 등 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 설치금지 담, 문, 지하층 출입구 등은 건물의 벽면과 조화되는 재료 및 색채를 사용 	<p>환기구, 배관, 냉방배기장치 등의 설치시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름</p>

(5) 기타사항에 관한 사항

① 대지 내 공지

구분	계획 내용	적용기준	비고
전면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한계선을 통한 차도부속형·보도부속형 전면공지 확보 • 차도부속형 전면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면도로변의 건축선 후퇴부분 공지(4m 미만) - 기존 차도와 단차 없이 조성 • 보도부속형 전면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선도로 및 생활가로변 건축선 후퇴부분 공지 - 도로변 미관증진 및 보행공간 확보 - 접하는 보도와 단차를 없애고,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설치 - 주차장, 통행 방해물의 설치 금지 	건축한계선	결정도참고
대지안의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안에 조성하여야 하는 식수 등 조경 기준은 「서울시 건축 조례」 제24조의 규정 준용 • 식재기준은 「건축법」 제42조2항의 규정에 의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름 	-	

② 교통처리계획

구분	계획 내용	비고	
차량진출입불허구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선도로변에서 대지로의 직접 차량진출입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 단, 기 개설 또는 인·허가를 득한 경우는 제외 	간선도로변 (구천면로, 올림픽로, 천중로)	
주차출입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 출입은 원칙적으로 이면도로변에서 허용하되, 이면도로변 차량출입이 불가한 경우 간선도로변에서 차량진출입 제한적 허용 	이면도로변	
보차혼용통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내로 보행자와 차량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고, 보도나 차도의 단차가 없도록 계획 		
공공보행통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선부-이면부를 통하는 공공보행통로 지정 		

(6) 특별계획구역 및 용도지역 조정가능지에 관한 사항

① 특별계획구역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신설	천호1 특별계획구역	천호동 423-112번지 일대	38,509.2㎡	천호1촉진구역
신설	천호2 특별계획구역	천호동 578번지 일대	9,900.9㎡	천호2촉진구역
신설	천호3 특별계획구역	천호동 359-16번지 일대	23,083.7㎡	천호3촉진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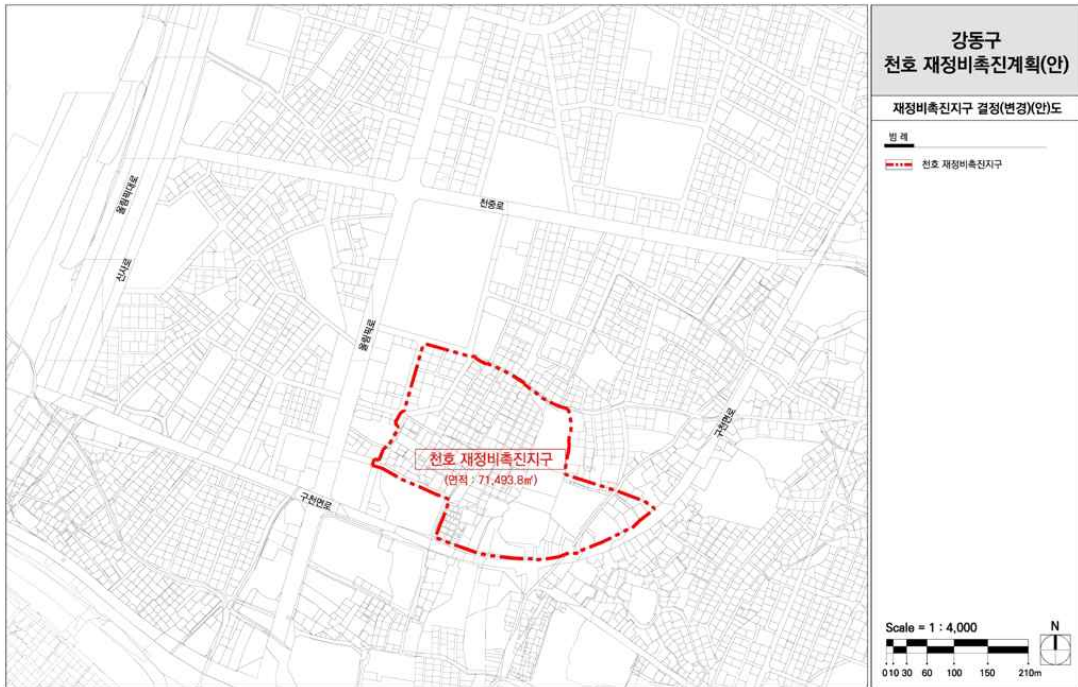
② 용도지역 조정가능지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신설	용도지역 조정 가능지 ①	천호동 334-2번지 일대	10,241.9㎡

■ 천호 재정비촉진지구 _ 재정비촉진지구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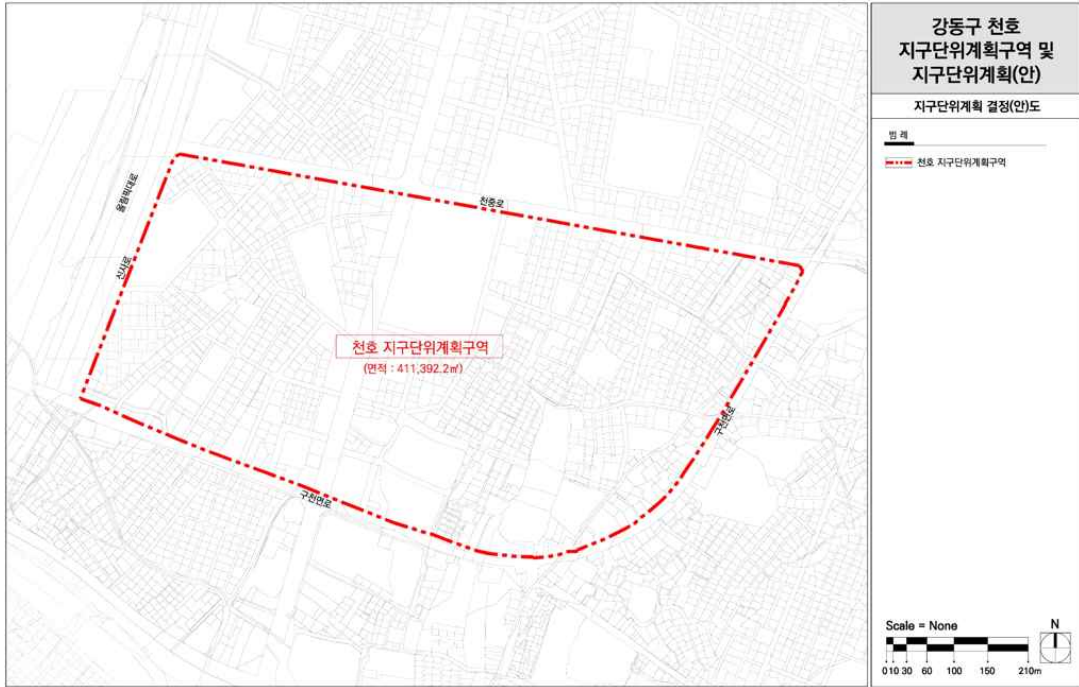
■ 천호 재정비촉진지구 _ 재정비촉진지구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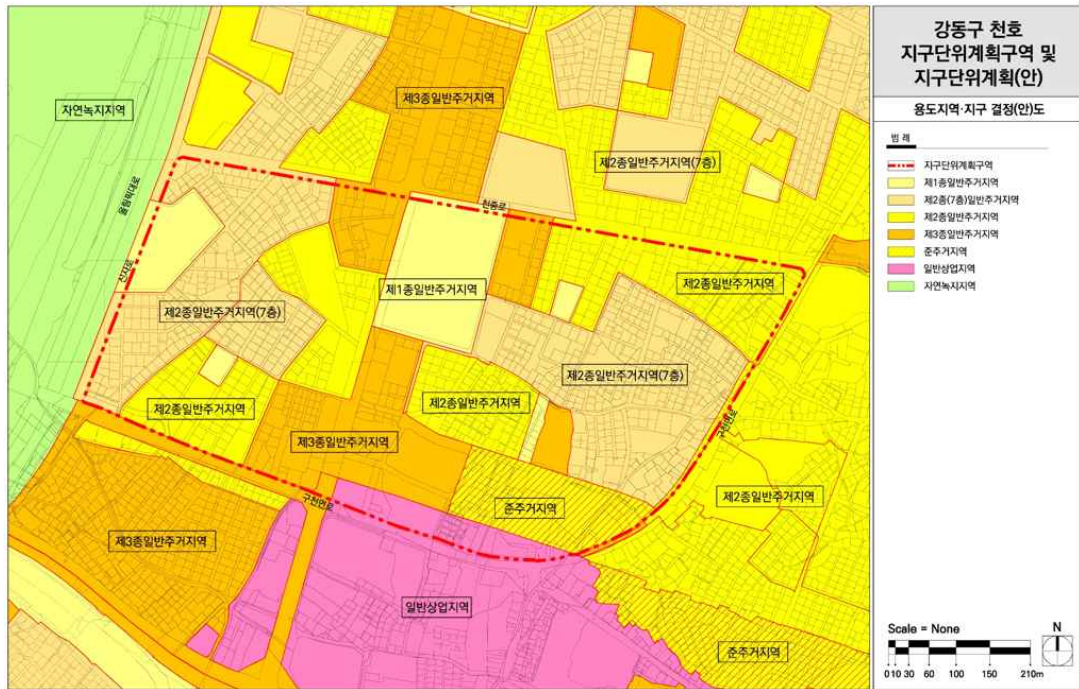
■ 천호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구역 결정(변경) (안)도



■ 천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안)도



■ 천호 지구단위계획구역 용도지역·지구 결정(안)도



- 천호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 및 천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도서 : 게재 생략, 공람장소 비치
- 문 의 처 : 강동구청 제2청사 3층 도시계획과 (☎02-3425-6052)
- 기 타
 - 공람내용에 관하여 공고 시 생략되었거나 구체적인 내용은 공람장소에서 공람하여야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람장소에 비치된 도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은 최종결정 사항이 아니며, 구의회 의견청취, 공청회, 관련부서 협의,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되므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끝.

◆ 강동구공고 제2024-1172호

도시관리계획(강동구 길동 368-5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 열람공고

- 1.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으로 선정된 강동구 길동 368-5일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강동구 길동 368-5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 및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 본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 토지등소유자, 이해관계인 등은 열람기간 내에 열람 장소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열람 장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5월 30일
강 동 구 청 장

가. 공고건명: 도시관리계획(강동구 길동 368-5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

나. 도시관리계획(강동구 길동 368-5번지 일대 역세권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에 관한 사항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기 정	증 감	변 경	
합 계	1,927.7	-	1,927.7	100.0
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1,927.7	-	-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	1,927.7	100.0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신설) 조서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기정	증감	변경	
신 설	강동구 길동 368-5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강동구 길동 368-5일대	-	1,927.7	1,927.7	-

○ 기타 도시관리계획(안)에 관한 사항: 관계도서 참조

다. 열람기간: 공고일 다음 날로부터 14일간

라. 열람장소: 주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강동구청 도시계획과(☎ 3425-8807), 길동 주민센터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으며, 강동구청 홈페이지, 서울도시계획포털에서도 열람가능

마. 관계도서: 게재(생략)

사업소고시

◆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4-155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법 시행령 제 38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5월 30일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 연월일
성명	주소	운항구역/ 점용위치	점용목적	점용면적	점용기간	
쥬골든블루 마리나 (대표 김재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올림픽대로 683(반포동)	행주대교 ~ 잠실대교	수상레저사업	수상오토바이 1대 카약 30대 패들보드 5대	2024.6.1. ~ 2024.9.30	2024. 5.28.

기 타

◆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4-199호**

하천점용(일시)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일시)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5월 30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의 명칭: 안양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주)화성에스엔씨
 - 주 소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시청로 1393-6, 나동2층
3. 점용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 732-3
 - 면 적 : 6㎡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경일선 구일역 등 12개역 이동편의시설 확충설계를 위한 지반조사
 - 내 역 : 지반조사 1공
5. 점용기간 : 2024.05.23. ~ 2024.06.22. (기간 중 2일)

◆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4-201호

하천점용(일시)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일시) 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5월 30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의 명칭 : 한강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주)한국시설안전연구원
 - 주 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58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115-5 외 2필지
 - 면 적 : 일시 40㎡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지반조사
5. 점용기간 : 2024.05.28.~2024.06.15.(기간 중 2일)



기관의 장	
선	
람	

공 람									